

日本の 政治改革法制

1994. 2.

연구자 : 박영도(수석연구원)
김인재(선임연구원)
김명연(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目 次

I. 政治改革論議의 經過	1
---------------------	---

II. 政治改革關聯 4法制의 主要內容	6
----------------------------	---

1. 概要	6
-------------	---

2. 政治改革關聯 4法の 主要特徵과 內容	8
------------------------------	---

(1) 公職選舉法	8
-----------------	---

(2) 政治資金規正法	11
-------------------	----

(3) 政黨助成法	14
-----------------	----

(4) 衆議院議員選舉區劃定審議會設置法	17
----------------------------	----

III. 앞으로의 展望	19
--------------------	----

『 附 錄 』

○ 公職選舉法	21
---------------	----

○ 衆議院議員選舉區劃定審議會設置法	172
--------------------------	-----

○ 政治資金規正法	175
-----------------	-----

○ 政黨助成法	200
---------------	-----

日本の 政治改革法制

I. 政治改革論議의 經過

지난 6여년동안 일본정치의 최대쟁점이었던 政治改革關聯法案이 드디어 1994년 1월 29일 衆・參兩院本會議에서 가결되어 성립하였다. 냉전구조의 붕괴 등 격동을 계속한 국제정치 및 경제정세의 변화에는 기민한 대응을 유지하면서도 일본의 정치는 후진성을 면치 못한채 유효한 대응책을 확립할 수 없었고 일종의 폐쇄상황속에서 國政의 정체현상을 지속하여 왔던 것이다. 특히 일본의 정치는 1980년대이후 록히드사건, 共和사건, 佐川사건 등 일련의 오직사건으로 점차 정치부패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규탄이 절정에 달하였으며, 이러한 정치불신을 배경으로 정치부패의 근저에 있는 금권구조를 타파하여 정치와 돈과의 유착관계를 단절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大綱, 要綱, 案, 答申 등 수많은 정치개혁안이 제출되었으나 일단 실현의 단계에 이르면 역대정권은 당리당락에 집착하여 改革의 단행을 주저하였으며, 그 결과 일련의 오직사건이 속출하는 등 혼미양상을 거듭하면서 內閣이 붕괴하기도 하였다.¹⁾ 그리하여 지난 38년에 걸친 自民黨 일당지배로 부터 「정치개혁실현」의 점에서 비자민·비공산의 당파가 집결한 연립정권 발족 5개월만에 드디어 법안이 성립한 것이다.

이번 국회에서 성립된 법안으로 일본의 政治改革은 그 종지부를 찍게 되었으나, 일본에서 정치개혁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1989년 리쿠르트사건

1) 이 점에 관한 자세한 것은 한국법제연구원, 「日本の 政治改革動向과 關聯法制的 整備」, 현안분석 93-8(1993.10) 참조.

의 발각을 계기로 당시의 竹下 登수상이 정치불신과 내각지지율의 저하에 위기감을 느끼게 되자 정치의 최우선과제로서 정치개혁을 주창한 것에서 비롯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野黨側은 「수상은 정치개혁의 이름을 빌어 자민당에게 유리한 소선거구제도입을 시도하려 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竹下수상은 그 후 리크루트社로 부터의 자금제공을 받은 사실이 판명되어 衆議院에의 소선거구제도도입을 명기한 「정치개혁대강」을 남겨놓은 채 퇴진하고 말았다. 그 뒤를 이어 성립한 宇野宗佑수상은 1989년 6월 자문기관인 제8차 선거제도심의회를 17여년만에 재개하여 선거제도와 정치자금규제의 개혁에 관하여 자문을 받았으나, 7월에 參議院選舉에서 자민당이 패배한 책임을 지고 퇴진하고 말았다.

그 후 海部俊樹수상이 취임하여 「정치개혁은 내각의 지상명제」라고 하면서 정치개혁에 전력을 다할 의향을 표명하였다. 한편 選舉制度審議會는 1990년 4월 ①중의원에 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제를 도입, ②총정수는 500인 정도, 소선거구와 비례대표의 정수비는 6 대 4, ③정치가의 자금조달단체는 1인 2단체로 제한, ④정당에의 공비조성도입 등을 기초로 하는 答申을 海部수상에게 제출하였다.²⁾ 그러나 자민당내의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는 매우 냉담하였다. 동년 2월의 중의원선거에서 286의석을 차지하여 대승한 자민당은 결함이 지적되어도 결국 현행제도가 自民黨에게 일단 유리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선거제도중심의 정치개혁에 대해 자민당내에는 개혁추진파와 반대·신중파가 대립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대립은 점차 격화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당시의 야당은 「자민당지배를 영속화하는 제도이며 용인할 수 없다」고 竝立制를 강력히 반대하였다. 그러나 海部내각은 1991년 선

2) 동 答申의 전문은 法律時報社, 「資料/選舉制度と政黨助成」, 法律時報 1992.2., 126~135面 參照.

거제도심의회의 답신을 기초로 한 정치개혁관련3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법안은 ①소선거구 300, 비례대표 171의 병립제 ②비례대표는 전국단위 ③ 정치가의 자금조달단체는 2개이내로 한정 ④국민1인당 연간 250円, 총액 약 300억円을 정당에 조성 등이 그 내용이었다. 그러나 중의원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자민당의원이 「정부안은 憲法違反의 우려가 있다」라고 반대를 표명하여 결국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의종료·폐안을 결정하여 海部내각은 총사퇴하고 말았다.

이어 집권한 宮澤喜一수상은 「병립제 도입으로 돈과 관련없는 정치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다. 중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連記投票제도 검토대상」이라고 말한 바 있으며, 정치개혁을 「정치가의 도덕성의 문제」라고 파악하는 의식이 강하여 제도개혁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으나, 취임직후 1992년 1월 宮澤派의 간부인 阿部文男 전북해도개발청장관이 共和汚職事件으로 동경지검에 체포되고, 또한 東京佐川急便사건이 발각되었으며 1993년 3월에는 金丸信 전자민당부총재가 거액의 탈세혐의로 체포되는 등 정치개혁이 긴급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그리하여 동년 4월 自民黨은 단순소선거구제, 사회·공명당은 비례대표제주체의 소선거구비례대표병용제를 주축으로 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한편 衆議院은 자민당, 參議院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였기 때문에 양법안은 그대로는 성립할 수가 없어서 중의원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심의에서 양측의 의견접근이 초점으로 되었다. 이에 학자들로 구성된 政治改革推進協議會가 발표한 소선거구비례대표연용제는 그 타협안으로서 주목되었다. 한편 야당 6당파는 5월 連用制수정안으로 보조를 맞추어 자민당에게 타협을 촉구하였다. 자민당이 단순소선거구제를 채용한 것은 야당이 절대동의할 수 없음을 예상한 것이었다. 연용제는 병립제의 변형안으로서 자민당이 병립제로 전환한다면 타협의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개혁신

중파가 강력히 반발, 전환을 저지하였다. 그 결과 野黨의 내각불신임안에 자민당 일부파가 동조함으로써 해산·총선거가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 자민당이 과반수획득을 실패하여 政權交代가 발생하는 격변을 초래하였다.

1993년 7월 중의원의원선거의 결과 비자민의 細川護熙연립정권이 탄생하고 수상은 「정치개혁의 연내실현」을 공약하였다. 細川내각은 동년 9월에 ① 소선거구, 비례대표 각 250 ②비례대표는 전국단위 ③정당이외의 기업·단체헌금금지 ④정당에 총액 414억円을 공비조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치개혁관련 4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自民黨도 총정수 471인으로서 소선거구 300, 비례대표 171, 비례대표는 도도부현단위 등으로 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³⁾ 이에 衆議院은 11월 18일 본회의에서 정부수정안을 찬성 270, 반대 226으로 가결하였으며 자민당안은 부결되었다. 중의원을 통과한 법안은 參議院에 송부되었으나 자민당은 계속심의를 거부하는 등 심의의 연기 전술을 도모하였다. 이에 연립여당은 이미 국회회기말인 12월 15일 자민당원의 대다수가 불참한 채 찬성다수로서 會期の 45일 연장을 결정하였고, 1994년 1월 여당측은 자민당을 제외한 참의원정치개혁특별위의 심의를 재개하는 등 강경자세를 취하였다. 特別委는 20일 자민당으로 부터 1인이 이탈하여 법안을 찬성다수로서 가결하였으나, 21일의 本會議에서는 사회당으로 부터 17인의 의원이 반대표를 던짐으로써 찬성 118, 반대 130으로 법안은 부결되고 말았다.

그 후 여당은 중·참양원협의회에서 성안을 모색하였으나, 자민당이 이탈자를 유입하여 중의원본회의에서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廢案 등 중의원해산·총선거에 임하는 구도를 취하였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首相과 河野

3) 自民黨提出 정치개혁관련5법안에 관한 것은 自由民主黨, 「政治改革關聯5法案要綱」, 자유민주 1993.11., 249~272面 參照.

洋平 자민당총재의 정상회담이 실현되어 수상이 소선거구 300, 정치가예의 기업·단체헌금인정 등 自民黨案에 대폭양보하여 정치개혁법안의 통과에 합의하였다. 그 결과 회기말인 1994년 1월29일 중·참의원본회의에서 통상국회에서 수정을 행하여 4법의 시행일을 별도의 法案으로 정하는 조건하에 정치개혁관련4법안이 가결되어 결국 성립하였다. 일본의 정치개혁의 역사와 주된 사건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47.	3	중의원의원선거법 개정(중선거구제가 부활)
1948.	7	정치자금규정법 제정
1955.	11	자민당결성
1974.	10	田中金脈사건 발생(11월 田中角榮 首相사임)
1976.	2	룩히드사건 발각(7월 田中角榮 前首相 체포)
1980.	11	정치자금규정법개정(정치가개인에의 헌금의 수지보고를 의무화)
1982.	8	공직선거법 개정(참의원전국구를 비례대표제로 함)
1984.	1	각료의 재산공개최초실시
1988.	6	리쿠르트사건 발각
	11	竹下登首相 선거제도심의회를 재개하여 정치개혁의 방향을 검토할 의향표명
1989.	5	자민당 정치개혁위원회에서 정치개혁대강을 결정
1990.	4	제8차선거제도심의회가 정치개혁을 위한 답신을 海部俊樹 首相에게 제출
1991.	10	정치개혁 3법안이 중의원에서 폐안, 海部俊樹 首相 퇴진
1992.	2	東京佐川急便사건 발각
	5	일본신당 결성
1993.	3	金丸信 전자민당부총재 탈세혐의로 체포
	4	자민당 정치개혁4법안(사회·공명당 정치개혁5법안)을 제출(6월 중의원에서 폐안됨)
	6	宮澤喜一내각 불신임결의안가결, 중의원해산 신생당, 新黨さきがけ 결성
	7	중의원의원선거에서 자민당 참패
	8	細川護熙 연립내각 탄생
	9	연립내각이 정치개혁 4법안을 국회제출(자민당도 정치개혁5법안을 국회제출)
	11	중의원본회의에서 정부안의 여당수정안가결, 자민당안부결
1994.	1	참의원본회의에서 정부안을 부결 細川護熙수상과 河野洋平 자민당총재 정치개혁관련법안의 성립에 극적 합의
		양원에서 정치개혁관련 4법안을 통과
	2	정치개혁관련 4법안 공포

II. 政治改革關聯 4法制의 主要内容

1. 概 要

이번에 성립한 政治改革關聯4法案(개정공직선거법·중의원의원선거구획정심의회설치법·개정정치자금규정법·정당조성법)은 細川護熙수상과 河野洋平 자민당총재와의 합의에 의거하여* 중의원측의 여당이 시행일을 삭제한 정부안을 타협안으로서 提案하여 성안된 것이다. 합의된 내용은 거의 자민당의 주장을 받아들인 내용으로서 합동기자회견에서 細川수상은 「정치개혁 관련법안을 성립시키는데 대국적인 입장에서 대폭 양보, 國益을 생각하여 판단하였다」고 말하였다. 정치개혁관련법안의 합의안과 정부 및 각당안을 대비하면 다음과 같다.

- 4) 야당과 자민당과의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比例代表選舉는 지역명부, 지역집계로 한다. 지역은 제8차선거제도심의회가 답신의 11개지역을 기본으로 한다. ②기업등의 단체의 기부는 지방의원 및 首長을 포함하여 정치가의 지금관리단체(1개에 한함)에 대해 5년에 한하여 연간 50만円을 한도로 인정한다. ③호별방문은 현행대로 금지한다. ④소선거구선출의원의 수는 300인, 비례대표선출의원의 수는 200인으로 한다. ⑤소선거구의 후보자신고정당, 비례대표선거의 명부신고정당과 정치자금규정법 및 정당조성법의 정당요건의 3%는 2%로 한다. ⑥각정당에 대한 정당조성의 상한선은 전년수지실적의 40%로 한다. 다만 합리적인 구조가 가능한한 경우에 한한다. ⑦투표방법은 기호식의 2표제로 한다. ⑧기부금지를 위한 경조전보등의 취급은 현행대로 한다. ⑨중의원선거구획정을 위하여 제3자기관은 총리부에 설치한다. ⑩이상의 합의의 법제화를 위하여 중참양원으로 부터 연립여당 및 자유민주당 각 6인(계12인)의 위원으로 협의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毎日新聞 1994년 1월 29일자.

	합 의 안	수정정부안	자민당안 (하야집행부)	자민당안 (공택정권)	사회·공명 안(1993년)
선거제도	소선거구비례대표병 립제	좌 동	좌 동	단순소선거 구제	소선거구비 례대표병용 제
총정수와 정수배분	총정수 : 500 소선거구 : 300 비례대표 : 200	총정수 : 500 소선거구 : 274 비례대표 : 226	총정수 : 471 소선거구 : 300 비례대표 : 171	총정수: 500 소선거구 : 500	총정수: 500 소선거구 : 200 비례대표 : 300
비례대표 선거단위	전국 11개 지역	전국단위(득 표율이 3%미 만의 정당에 는 의석배분 없음)	각도도부현 별		전국 12개 지역
기업과 단 체로 부터 수령한 정 치헌금의 취급	정당·정치자금단체 에 더하여 정치가의 정치단체 1개에 대해 서도 인정	정당·정치자 금단체에만 인정. 정치가와 그 정치단체에 대해서는 금 지. 5년후 재검토 정치의 자 금관리단체는 1개. 헌금액의 총 액은 현행대 로 유지.	정당·정치자 금단체와 정 치의 2개 자금조달단체 에는 인정. 정치가개인에 게는 금지 헌금액의 총 액 현행의 1. 5배.	정당·정치 자금단체와 정치의 2 개자금조달 단체에는 인정. 정치가개인 에게는 금 지. 헌금액의 총액은 현 행의 2배.	기업·단체 헌금은 전면 금지. 정치가에의 개인헌금도 금지. 정당에의 개 인헌금은 최 고 1000만엔

2. 政治改革關聯4法의 主要特徵과 內容

(1) 公職選舉法

이번에 성립한 개정 공직선거법의 가장 큰 특징은 일본정치사상 69년간 지속되어 왔던 中選舉區制가 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제로 바뀐 점이라 할 수 있다.⁵⁾ 또한 總定數가 현행 511인에서 500인으로 감소되었으며, 전국 300개의 소선거구선거와 정수 200으로 전국을 12개지역으로 나눈 비례대표선거의 두가지 선거제도가 행해지게 되었다. 입후보는 중선거구제에서는 候補者個人이 신고하였으나, 소선거구제에서는 政黨이 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었다. 비례대표는 각당이 후보자에게 순위를 붙인 명부를 지역별로 제출한다. 政黨이란 「국회의원 5인이상」 또는 「국정선거에서 득표율이 2%이상」을 충족할 것이 요건이며, 충족되지 않은 政治團體의 입후보는 소선거구에는 개인별로 입후보하는 수 밖에 없다. 호별방문은 현행대로 금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有權者는 소선거구의 후보자와 비례대표의 정당에게 각 1표, 計2票를 투표한다. 투표용지에는 후보자명, 정당명이 인쇄되어 있으며 그에 날인한다. 소선거구는 최다득표자 1인이 당선하며, 비례대표는 각당의 득표를 지역(블록)별로 집계, 동트방식으로 획득의석수를 결정하여 명부상위로 부터 당선자를 결정한다.

한편 竝立制라 하더라도 대정당에게 유리한 소선거구정수를 수정하여 증가하였기 때문에 이 제도로 인하여 정당의 集約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5) 일본의 선거제도개혁논의에 관한 상세한 것은 堀江 堪(編), 「政治改革と選舉制度」, 芦書房 1993 參照.

다. 정당후보자에 한정하는 소선거구와 비례대표에의 중복입후보를 인정하는 것이 종래에는 없던 방식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소선거구낙선자에 구제의 길을 모색함과 동시에 명부순위를 둘러싼 후보자간의 다툼을 방지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통상국회에서의 수정협회의 하나 중복입후보는 그 소선거구가 포함되는 비례대표지역과의 사이에서 인정될 전망이다. 그리고 소선거구의 정수배분은 우선 47개 도도부현에 1개씩 할당하고 나머지 253개를 인구비례로서 배분한다. 개정 공직선거법의 주요골자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항목	주요내용
선거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제 ° 중의원의원정수 500인(소선거구선출 274인, 비례대표선출 226인)
선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선거구선출의원은 각선거구에서 선거, 선거구는 별도법률로 정하며 각선거구의 선출의원수는 1인으로 함 ° 비례대표선출의원은 전도도부현의 구역을 통하여 선거
선거일 및 투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선거일은 적어도 12일전에 공시하여야 함 ° 투표는 기호식투표방식에 의해 투표용지마다 그 기호를 기재하는 난에 ○의 기호를 기재
후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선거구선출의원의 후보자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정당등에 소속하는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의원을 5인이상 가지거나 직근에 행해진 중의원의원총선거 또는 참의원의원통상선거에서 당해정당등의 득표총수가 당해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인 정당 기타 정치단체는 당해정당등에 소속하는 자를 보자로 하려는 경우에는 당해선거일의 공시 또는 고시가 있는 날에 문서로서 그 취지를 당해선거장에게 신고 - 본인신고 또는 추천신고에 의한 입후보도 가능

항목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례대표선출의원의 명부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정당등에 소속하는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의원을 5인이상 가지거나 직근에 행해진 중의원의원총선거 또는 참의원의원통상선거에서 당해정당등의 득표총수가 당해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 명부신고를 함으로써 후보자가 되는 명부등재자를 30인이상 가지는 정당 기타 정치단체는 당해선거일의 공시 또는 고시가 있는 날에 당해정당등의 명칭(하나의 약칭을 포함)과 그 소속하는 자의 성명 및 그러한 자 사이에서 당선인으로 될 수 있는 순위를 기재한 명부를 선거장에게 신고함으로써 명부등재자를 당해선거에서 후보자로 할 수 있음 ° 중복입후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정당등에 소속하는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의원을 5인이상 가지는 정당 기타 정치단체는 당해선거와 동시에 행해지는 소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에서 당해정당등의 신고와 관련한 후보자를 명부등재자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당선인이 될 수 있는 순위를 동일한 것으로 할 수 있음 ° 명부등재자의 수는 당해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서 선거하여야 할 의원수를 초과할 수 없음
공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후보자는 300만엔을 공탁, 후보자의 득표가 유효투표총수의 10분의 1에 달하지 않은 경우 국고귀속 ° 비례대표선출의원의 경우 명부신고하려는 정당 기타 정치단체는 당해명부의 명부등재자 1인당 600만엔(중복입후보자는 300만엔)을 공탁, 명부신고정당등에 관해 일정의 산식에 의해 산출한 금액이 당해명부신고정당등과 관련한 공탁액에 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액은 국고에 귀속
당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선거구선출의원의 경우 최다유효투표득표자로 하며, 단 유효투표총수의 6분의 1이상 득표하여야 함 ° 비례대표선출의원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부신고정당등(당해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 득표한 것에 한함)의 득표수에 의거 동트식에 의해 당선인수를 결정

항목	주요내용
선거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자 및 정당등의 선거운동을 선거사무소·자동차, 선박 및 확성기사용·문서도화의 배포 및 게시·신문광고·정견방송·경력방송·연설회 및 가두연설·선거공보의 발행·투표기재소의 성명등의 게시·교통기관의 이용 등 10개의 사항으로 정함 ◦ 정당 기타 정치활동을 행하는 단체는 그 정치활동중 정당연설회 및 가두정당연설의 개최, 포스터의 게시, 입찰 및 간판류의 게시와 배라의 배포 및 선전고지를 위한 자동차, 선박과 확성기의 사용에 관해서는 총선거일의 공시일로 부터 선거당일까지에 한해 허용되지 않음
소송	선거의 효력 및 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송에 관해 각각 원고가 될 수 있는 자를 정함
벌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선거구선출의원의 후보자가 될 자의 선정 또는 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명부등제자의 선정권한의 행사에 관하여 청탁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자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 또는 신청, 약속한 자에 관한 벌칙을 둔 ◦ 수뢰죄를 범하여 형이 부과된 자에 대한 5년간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정지 ◦ 호별방문은 허용하되 시간에 관해서는 오전8시부터 오후8시로 한정 ◦ 공직의 후보자등은 당해선거구내의 자에게 경조, 격려, 감사 기타 유사한 인사장을 보내는 것을 금지 ◦ 일정한 자가 매수죄등의 죄를 범하고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연좌제의 적용을 받음 ◦ 벌금액을 인상함

(2) 政治資金規正法

정부안은 「정치가와 돈의 유착」을 근절하기 위해 기업, 업계단체현금의 수취를 政黨에게 한정, 정치가와 그 계열정치단체에 대해서는 금지하였

다. 그러나 기업·단체헌금은 자민당원의 最大收入源이기 때문에 동당이 강력하게 저항하여 결국 국회의원, 지방의원, 首長도 5년간에 한해 자금관리단체를 1개로 가지고, 1社로 부터 연간 50만円까지 수취하는 것을 용인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6년후부터는 금지된다. 종래 정치가는 후원회 등 자금조달을 위한 정치단체를 몇 개라도 가질 수 있고 비서나 知人을 회계책임자로 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團體名만으로는 어느 정치가의 것인가가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⁶⁾ 나아가 헌금의 공개기준이 「100만円 초과」이기 때문에 다액의 헌금을 받아도 100만円이하로 분산하고 다수단체에서 받는다면 헌금자가 표면화되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었다. 개정법에서 정치가의 자금관리단체를 1개로 한정하는 것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나아가 개정 정치자금규정법은 헌금의 공개기준도 「50만円 초과」로 인하하였다.

이러한 규제는 종래보다는 강화되었으나 중·참양원의 심의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즉 정당을 악용하여 企業이 특정정치를 지정하여 정당본부에 헌금하는 「조건부헌금」의 문제, 정당은 50만円을 초과하는 헌금자와 50만円이상의 지출은 공개하나 정당이 매개가 되는 곳에서 기업과 정치가사이의 접수가 분명하지 않게 된다는 문제 및 정당의 지역지부뿐 아니라 청년부등 그 内部部局까지 정치단체로서 신고하면 지부취급을 받아 기업·단체헌금을 받게 된다는 문제 등이 제기되었으나, 개정법에서 결국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였다. 개정된 정치자금규정법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6) 日本選舉學會, 「政治資金の研究」, 選舉研究シリーズ No.13., 1993, 37面.

항목	주요내용
정당의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의원을 5인 이상 가지는 것 ◦ 직근에 행해진 중의원의원 총선거에서 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 참의원의원 통상선거에서 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 또는 선거구선출의원 선거에서 당해정치단체의 득표총수가 당해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인 것 ◦ 정당 또는 정치자금단체의 명칭과 동일 또는 유사명칭 사용금지
자금관리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관리단체는 공직후보자가 그 자를 위하여 정치자금의 거출을 받을 수 있는 정치단체로서 그 자가 대표자인 정치단체중에서 지정한 것으로서 당해공직의 후보자에 의해 신고되고 있는 것 ◦ 공직후보자는 자금관리단체의 지정을 한 경우 그 지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취지, 그 자와 관련한 공직의 종류, 자금관리단체의 명칭, 주된 사무소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을 도도부현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 자금관리단체의 회계책임자는 특정기부에 관하여 정치단체의 회계장부 및 보고서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기부등의 공개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 및 정치자금단체에 대한 기부 공개기준을 연간 5만엔 이상으로 인상함과 동시에 그 이외의 정치단체에 대한 기부 공개기준을 연간 5만엔 이상으로 인하함 ◦ 정치자금파티의 대가지불의 공개기준을 1개 정치자금파티당 20만엔 이상으로 인하함
기부제한등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 노동조합, 직원단체 기타 단체는 정당 및 정치자금단체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정치활동에 관한 기부를 할 수 없고, 누구라도 이에 위반하여 기부를 받을 수 없도록 함 ◦ 누구라도 회사, 노동조합, 직원단체 기타 단체에 대해서 정치활동에 관한 기부를 하는 것을 권유, 요구할 수 없게 함 ◦ 정당의 지부로서 1개 이상의 시정촌의 구역 또는 선거구의 구역을 단위로 하여 설치되는 지부이외의 것은 정당 및 정치단체이외의 정치단체로 간주함 ◦ 누구라도 공직후보자의 정치활동에 관해 기부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하여 기부를 받을 수 없도록 함

항목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 및 정치자금단체에 대해 하는 기부의 한도액은 개인이 하는 것은 연간 2000만엔, 회사, 노동조합 직원단체 기타 단체가 하는 것은 당해단체의 규모의 구분에 상응하여 연간 750만엔부터 1억엔까지로 함 ◦ 개인이 하는 정치활동에 관한 기부로서 정당 및 정치자금단체이외의 자에 대해서 행하는 한도액은 연간 1000만엔으로 함
벌칙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의 임직원 또는 구성원이 이 법에 위반하는 경우 행위자뿐 아니라 그 단체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과함 ◦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 금고,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공민권이 정지됨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이 정치활동에 관한 기부를 한 경우는 당해기부에 관하여 소득세의 과세에서 특별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 이 법률의 시행후 5년을 경과한 경우에 정치자금의 개인에 의한 거출상황을 파악, 정당재정의 상황등을 감안하여 회사, 노동조합, 직원단체 기타 단체의 정당 및 정치자금단체에 대해서 하는 기부의 방식에 관하여 재검토를 행하는 것으로 함

(3)政黨助成法

정치가개인에게 향한 기업·단체헌금을 금지하는 대신 정당에 대한 조성을 도입하려는 취지로 새로이 제정된 정당조성법으로 인하여 국민1인당 250円, 총액 309억円の 公費(세금)가 각정당에 조성된다. 각당별의 조성액은 소속의원수나 直近의 중의원선거, 전회와 전전회의 참의원선거의 득표율에 의해서 산정된다. 조성되는 정당은 「소속국회의원 5인이상」, 「국회의원이 있고 중참의원 어느선거에서 득표율이 3%이상」이 조건이다. 이를 충족하더라도 自治省에 교부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성하지 않는다. 이에 共產黨은 공

비조성은 「지지하지 않은 정당에게도 세금으로 지급되어 헌법위반」이라고 하여 이를 신청하지 않을 것을 표명하고 있다. 또한 細川수상과 河野자민당 총재와의 합의에서 정당의 전년도수지실적의 40%를 조성상한으로 하는 방향이 타진되었다. 이는 조성액이 연간수입을 상회하는 정당이 나오기 때문에 국민감정으로 볼때 문제라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앞으로 개최될 통상국회에서 「實績」을 수입, 지출을 어느 것으로 하는가를 협의한다. 이 조치로 감액되는 조성액은 국고에 귀속한다. 정당조성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항목	주요내용
교부대상이 되는 정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의원을 5인이상 가지는 것 ◦ 위의 정치단체에 소속하지않은 중의원의원·참의원의원을 가지고 직근에 행해진 중의원의원 총선거에서 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 참의원의원 통상선거에서 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 또는 선거구선출의원 선거에서 당해정치단체의 득표총수가 당해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인 것
교부금의 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교부금은 의원수 및 득표수비율로 함 ◦ 국가는 정당교부금의 교부에 있어서 조건을 달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없음
정당의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부금을 받으려는 정당은 매년 1월 1일(기준일) 현재 명칭, 주된 사무소소재지 및 소속국회의원의 성명등을 기준일의 익일로 부터 15일이내에 자치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함 ◦ 신고에는 강령 기타 당해정당의 목적, 기본정책 등을 기재한 문서등을 동시에 제출함 ◦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고시함

항목	주요내용
정당교부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교부금의 총액은 기준일에 있어서 인구에 250엔을 곱한 액을 기준으로 예산으로 정함 ◦ 매년분의 의원수할당의 총액 및 득표수할당의 총액은 위의 총액의 각각 2분의 1로 함 ◦ 매년분으로서 각정당에 교부하여야 할 정당교부금액은 의원수할당액과 득표수할당액을 합계한 액으로 하며, 각각의 금액산정방법에 관하여 정함 ◦ 그 年分으로서 각정당에 교부하여야 할 정당교부금액은 그 해의 기준일현재 산정한 액으로 함. 다만 기준일에 속하는 해에 총선거 또는 통상선거가 행해지는 경우의 특례를 설정함 ◦ 각정당에 교부할 정당교부금은 매년 4월, 7월, 10월 및 12월에 각각 교부하며, 이 경우 각정당은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교부금을 교부하지 않음 ◦ 정당의 회계책임자는 정당교부금과 관련한 수지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장부를 비치하여 정당교부금에 의한 지출등을 기재함 ◦ 정당의 회계책임자는 12월 31일 현재로 당해정당의 그 해에 있어서 정당교부금에 의한 지출등에 관하여 기재한 보고서를 그 날의 익일부터 3월이내에 자치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함 ◦ 정당의 회계책임자는 정당의 보고서를 제출하는 때 회계감사를 행할 자의 감사의견서와 함께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법인이 행한 감사에 의거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를 동시에 제출하도록 함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의 합병, 분할, 해산등이 행해진 경우의 정당교부금의 교부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자치대신은 정당보고서 등을 수리한 경우에는 그 요지를 공표함 ◦ 정당의 신고서, 보고서 등의 서류는 5년간 보존하며, 이 기간동안은 누구든지 그 열람을 청구할 수 있음 ◦ 자치대신은 정당이 이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교부금의 교부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정당교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교부를 정지 또는 반환하여야 함 ◦ 자치대신은 정당이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정당에 대해 정당교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교부를 정지할 수 있음

항목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대신 또는 도도부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서류등에 형식상의 불비가 있거나 기재가 불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자에 대해 설명, 이유를 제시하여 그 정정을 명할 수 있음 ° 이 법률에 의거한 처분에 관해서는 행정불복심사법에 의한 불복신청을 할 수 있음 ° 이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자외에 정당도 처벌함 ° 이 법률의 시행일로 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에 정당교부금의 총액에 관하여 개정후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규정법의 시행상황을 고려하여 정당의 정치활동의 상황, 정당재정의 상황, 개인에 의한 정치자금의 거출상황, 회사, 노동조합 기타 단체의 기부상황등을 감안하여 그 재검토를 행함

(4)衆議院議員選舉區劃定審議會設置法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새로이 도입된 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제로 인하여 선거구획정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根據法으로서 제정된 것이 중의원선거구획정심의회설치법이다. 정치개혁법의 시행일이 통상국회의 개시일인 1994년 2월경에 정부는 소선거구의 구역을 심의할 심의회위원 7인의 인선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동심의회는 권고에 의거 정부는 300개 소선거구의 구역을 공직선거법개정안으로서 국회에 제안하게 되며, 앞으로 병립제와 정당조성 등은 이 개정안시행에 이어 본격적으로 착수될 전망이다기 때문에 그 내용이 성립시기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인사안건으로서 국회에 제출, 중·참양원의 의결을 얻은후 심의회가 總理府에 설치되며 구역획정작업에 착수한다. 200소선거구획정은 제8차선거제도심의회가 1991년에 答申한 바가 있으며, 이것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금번작업은 신속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라고 한다. 새로이 성립한 중의원의원선거구획정심의회설치법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항목	주요내용
심의회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리부에 중의원의원선거구획정심의회를 설치함 ◦ 심의회는 중의원소선거구선출위원의 선거구의 개정에 관해 조사심의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개정안을 작성하여 내각총리대신에게 권고함
개정안작성의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안작성은 각선거구의 인구의 균형을 도모하고 각선거구의 인구중 그 가장 많은 곳에 가장 적은 곳을 제한 수가 2이상으로 되지 않도록 하며, 행정구획, 지세, 교통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행함 ◦ 개정안작성에 있어서는 각도도부현의 구역내의 중의원소선거구선출위원의 선거구의 수는 1로, 중의원소선거구선출위원의 정수에 상당하는 수로 부터 도도부현의 수를 공제한 수를 인구에 비례하여 각도도부현에 배당한 수를 더한 수로 함
권고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고는 10년마다 행하는 국세조사의 결과에 의한 인구가 최초의 관보에 공시되는 날로부터 1년이내에 행함 ◦ 심의회는 각선거구의 인구의 현저한 불균형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권고를 행할 수 있음 ◦ 내각총리대신은 심의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경우 이를 존중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회는 위원 7인으로 조직함 ◦ 위원은 국회의원외의 자로서 식견이 높고 중의원소선거구선출위원의 선거구개정에 관해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로서 양의원의 동의를 얻어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함 ◦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함 ◦ 위원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직을 퇴임한 후에도 마찬가지임 ◦ 심의회에 회장을 두고 위원의 호선에 의해 정하도록 함 ◦ 심의회는 그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기관 및 지방공공단체장에 대해 자료의 제출, 의견개진, 설명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Ⅲ. 앞으로의 展望 日本에서의 정치개혁은 일단 성과있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법안의 내용 면에서는 이른바 政·官·財의 구조적 부패구조척결과 새로운 정치문화의 형성이라는 정치개혁본래의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지만 냉전후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기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日本改造의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립한 법안의 핵심을 보면 확실히 現行法制보다도 진전된 부분이 있는 반면 다수의 문제점이 미해결인채 남아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새로운 문제점도 다수 지적되고 있다. 금권부패정치의 온상이 되었던 기업·단체헌금은 결국 수정 정부안보다 후퇴하여 「1단체로 한한다」라고 하면서도 정치가개인에의 헌금을 인정하고 말았다. 이는 현행제도와 아무런 변함도 없고 기업·단체헌금의 즉시철폐를 요구하는 輿論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였다. 한편 정치자금의 투명성확보도 불철저하게 종결되고 말았으며, 정치가가 정당의 지역·직역 지부의 대표가 되어 정당에의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기업헌금을 공공연하게 수취하는 것이 다반사인 현재의 실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도 미해결인채이다. 일본에서는 최초로 政黨活動에 대한 공비조성이 도입되었으나, 본래 정당의 재정은 당원, 지지자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비조성은 정치가가 더러운 돈에 손을 내밀거나 정치자금수집에 부심하여 국민의 대표로서의 임무를 망각하지 않도록 소극적 부패방지책으로서 자금을 공비로서 보조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취지로 부터 본다면 정치부패에 관련되지 쉬운 기업헌금의 존속은 공비조성의 목적과 모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개혁론의 최대의 쟁점이었던 選舉制度改革은 결국 1925년이래 전후의 한시기를 제외한 69년에 걸쳐서 채용되어온 중선거구제에 대신하여 중의원에 최초로 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병립제」는 논의의 과정에서 民意의 집약에 의한 정권의 창출, 정책에 의한 정당간의 경합촉진, 유권자와 밀접한 결부 등의 점에서 장점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民意의 정확한 반영을 훼손하며, 선거구획이 적어지게 되어 한층 지역밀착형이 되며 나아가 돈과 관련하며, 의원의 고정화와 연관된다는 등의 결점이 강하게 지적되었다. 「돈과 관련없는」제도라는 당초의 주장은 퇴색된 감이 있으나, 「부패를 조장한다」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규정법의 보다 한층의 강화, 영국형부패방지법의 제정등으로 종합적으로 감시와 규제를 강화하여 부패의 여지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강하게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이번에 성립한 정치개혁제도가 국민의 기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 대비하여 제도운용의 견제와 근본적인 재검토를 행하고 공정하고 강력한 권고권한을 가지는 제3자기관의 설치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결국 이와 같은 법안의 내용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일부에서는 金權政治의 청산을 갈망하던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야합정치」의 산물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여하튼 이같은 논란속에서도 日本은 이제 본격적인 정치제도의 개혁의 구체적 실현단계에 들어섰으며,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 경우 현 細川内閣은 출범당시 알려진 잠정정권이 아니라 本格政權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있다.

7) 毎日新聞 1994.1.30 社説 參照.

公職選舉法¹⁾

<目次>

- 제1장 총칙
- 제2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
- 제3장 선거에 관한 구역
- 제4장 선거인명부
- 제5장 선거기일
- 제6장 투표
- 제7장 개표
- 제8장 선거 및 선거분회
- 제9장 공직후보자
- 제10장 당선인
- 제11장 특별선거
- 제12장 선거를 동시에 행하기 위한 특례
- 제13장 선거운동
- 제14장 선거운동에 관한 수입·지출및 기부
- 제14장의2 중의원의원 및 참의원의원의 선거특례
- 제14장의3 정당 기타 정치단체등의 선거에 있어서 정치활동
- 제15장 쟁송
- 제16장 벌칙
- 제17장 보칙
부칙

1) 동법률은 1950년 4월 15일 법률제100호로 제정되고, 그 이후 60여회 개정을 거쳐, 1994년 2월 4일 법률제2호로 전면개정되었다. 1994년 2월 4일에 신설·개정된 내용은 해당조문에 밑줄(____)을 그어 표시하였다.

제1장 총 칙

제1조 (법률의 목적) 이 법률은 일본국 헌법의 정신에 입각하여 중의원의원, 참의원의원 및 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을 공선하는 선거제도를 확립하고 그 선거가 선거인의 자유롭게 표명한 의사에 의하여 공명 또한 적정하게 행하여지는 것을 확보하고 그러므로써 민주정치에의 건전한 발달을 기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률의 적용범위) 이 법률은 중의원의원, 참의원의원 및 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 (공직의 정의) 이 법률에 있어서 “공직”이란 중의원의원, 참의원의원 그리고 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職을 말한다.

제4조 (의원의 정수) ①중의원의원의 정수는 500인으로 하고, 그 중 274인을 소선거구 선출의원, 226인을 비례대표선출의원으로 한다.

②참의원의원의 정수는 252인으로 하고 그중 100인을 비례대표선출의원, 152인을 선거구선출의원으로 한다.

③지방공공단체의회의원의 정수는 지방자치법(1947년 법률제67호)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 (선거사무의 관리 및 감독) ①이 법률에서 선거에 관한 사무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의원(비례대표선출)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 대하여는 中央選舉管理會가 관리하고,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과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 都·道·府·縣의회의원, 都·道·府·縣지사의 선거에 대하여는 都·道·府·縣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고, 市·町·村의회의원 또는 市·町·村장 의 선거에 대하여는 市·町·村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②자치대신은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 이외의 선거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都·道·府·縣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감독한다.

③중앙선거관리회는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都·道·府·縣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감독한다.

제5조의2 (중앙선거관리회) ①중앙선거관리회는 위원 5인으로 조직한다.

②위원은 국회의원 이외의 자로 참의원의원의 피선거권을 갖는 자중에서 국회의 의결에 의한 지명에 의거하여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한다.

③전항의 지명에 있어서는 동일한 정당 기타의 정치단체에 속하는 자가 3인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내각총리대신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위원을 파면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참의원의원의 피선거권을 갖지 못하게 된 경우 또는 준금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경우.

2. 심신의 장애 때문에 직무를 집행할 수가 없는 경우
3.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기타 위원임에 적합하지 못한 비행이 있을 경우
- ⑤위원중 동일한 정당 기타의 정치단체에 속하는 자가 3인 이상이 된 경우에는 내각총리대신은 추첨으로 정한 2인 이외의 위원을 파면하는 것으로 한다.
- ⑥국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지명을 행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위원과 동수의 예비위원의 지명을 하여야 한다. 예비위원이 결원된 경우에는 동시에 위원의 지명을 행할 때에 한하여 예비위원의 지명을 행한다.
- ⑦예비위원은 위원이 결원된 경우 또는 고장이 있는 경우에 그의 직무를 행한다.
- ⑧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예비위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 ⑨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의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⑩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은 국회의 폐회 또는 중의원의 해산의 경우에 임기가 만료됐을 때에는 새로운 위원이 그후 최초로 소집된 국회에서의 지명에 의거하여 임명될 때까지의 기간은 여전히 재임하는 것으로 한다.
- ⑩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⑩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여야 한다.
- ⑩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회를 대표하여 그 사무를 총리한다.
- ⑩중앙선거관리회의 회의는 그 위원의 반수이상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할 수가 없다.
- ⑩중앙선거관리회의 의사는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결정하고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⑩중앙선거관리회의 사무는 자치성에서 행한다.
- ⑩전각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중앙선거관리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회가 정한다.

제6조 (선거에 관한 계발, 주지등) ①자치대신, 중앙선거관리회, 都·道·府·縣선거관리위원회 및 市·町·村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공명하고도 적정하게 행해지도록 항상 모든 기회를 통하여 선거인의 정치상식의 향상에 노력함과 함께 특히, 선거에 임해서는 투표의 방법, 선거위반 기타 선거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선거인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②중앙선거관리회, 都·道·府·縣선거관리위원회 및 市·町·村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결과를 선거인에 대하여 신속하게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선거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거당일 그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주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 (선거단속의 공정확보) 검찰관, 都·道·府·縣公安위원회의 위원 및 경찰관은 선거의 단속에 관한 규정을 공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제8조 (특정지역에 관한 특례) 교통이 불편한 도서 기타 지역에 있어서 이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기가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령으로 특별한 규정을 할 수 있다.

제2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9조 (선거권) ①일본국민으로 만20세이상의 자는 중의원의원 및 참의원의원의 선거권을 갖는다.

②일본국민인 만20세 이상의 자로서 계속하여 3개월이상 市·町·村의 구역내에 주소로 갖는 자는 그가 속하는 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갖는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속하는 市·町·村을 포괄하는 都·道·府·縣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갖는 자로 해당 市·町·村의 구역내에서 계속하여 동일 都·道·府·縣의 구역내의 타 市·町·村의 구역내로 주소를 이전한 자는 동항에 규정하는 주소에 관한 요건에도 불구하고, 해당 都·道·府·縣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계속하여 갖는다.

④제2항의 3개월의 기간은 市·町·村의 폐치분합 또는 경계변경 때문에 중단되는 일이 없다.

제10조 (피선거권) ①일본국민은 다음의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의원 또는 장의 피선거권을 갖는다.

1. 중의원의원에 대해서는 만25세이상의 자
2. 참의원의원에 대해서는 만30세이상의 자
3. 都·道·府·縣의회의원에 대해서는 그 선거권을 갖는 자로 만25세 이상의 자
4. 都·道·府·縣지사에 대해서는 만30세이상의 자
5. 市·町·村의회의원에 대해서는 그 선거권을 갖는 자로 만25세 이상의 자
6. 市·町·村장에 대해서는 만25세 이상의 자

②전항 각호의 연령은 선거기일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1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지 않는 자) ①다음의 각호에 게시하는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지 않는다.

1. 금치산자
2. 금고이상의 형에 처해져 그 집행을 종료하기까지의 자
3. 금고이상의 형에 처해져 그 집행을 받는 일이 없게 되기까지의 자 (형의 집행유예중의 자를 제외함)

4. 공직에 있는 기간에 범한 형법 제197조(수회 및 사전수회죄), 제197조의2(제3자공회죄), 제197조의3(枉法수회 및 사후수회죄), 제197조의4(알선수회죄)의 죄에 의하여 형에 처해져,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혹은 그 집행의 면제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중인 자

5. 법률로 정해지는 바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선거, 투표 및 국민심사에 관한 범죄에 의하여 금고이상의 형에 처해져 그 형의 집행유예중인 자

②이 법률이 정하는 선거에 관한 범죄에 의하여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제252조(선거범죄에 의한 처형자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정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市·町·村長은 그 市·町·村에 본직을 갖는 자로 다른 市·町·村에 주소를 갖는 자에 대해서 제1항 또는 제2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지 않게 될 사유가 발생한 것 또는 그 사유가 없어진 것을 안 때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당해 다른 市·町·村의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선거에 관한 구역

제12조 (선거의 단위) ①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 및 都·道·府·縣의회의원은 각각 각선거구에서 선거한다.

②중의원(비례대표선출) 및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은 全都·道·府·縣의 구역을 통하여 선거한다.

③都·道·府·縣지사 및 市·町·村장은 당해 지방공공단체의 구역에서 선거한다.

④市·町·村的회의원은 선거구가 있는 경우에는 각 선거구에서, 선거구가 없는 경우에는 그 市·町·村의 구역에서 선거한다.

제13조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구) ①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하고, 각 선거구에서 선거해야 할 의원의 수는 1인으로 한다.

②행정구획 기타의 구역에 변경이 있어도 선거구는 계속 종전의 구역에 의한다. 다만, 2이상의 선거구에 걸쳐서 市·町·村的의 경계변경이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전항 단서의 경우에 당해 市·町·村的의 경계변경에 관계되는 구역의 새롭게 속하게 된 市·町·村이 2 이상의 선거구로 분할되어 있을 때에는 당해구역의 선거구의 소속에 대하여는 정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구)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구 및 각선거구에 있어서 선거해야 할 의원수는 별표로 정한다.

제15조(지방공공단체의회의원의 선거구) ①都·道·府·縣의회의원의 선거구는 郡·市の 구역에 의한다.

②전항의 구역의 인구가 당해 都·道·府·縣의 인구를 당해 都·道·府·縣의회의원의 정수로 나누어 얻은 수(이하 본조중 “의원1인당인구”라고 함)의 반수에 달하지 않는 때는, 조례로 인접하는 다른 郡·市の 구역과 합하여 1선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구역의 인구가 의원1인당인구의 반수이상이라도 의원1인당인구에 달하지 않는 때는 조례로 인접하는 다른 郡·市的 구역과 합하여 1선거구를 설치할 수가 있다.

④하나의 郡의 구역이 다른 郡·市的 구역에 의하여 2이상의 구역에 분단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전3항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당해 각 구역 또는 그들 구역을 합한 구역을 郡의 구역으로 볼 수 있다. 하나의 郡의 구역이 다른 郡·市的 구역에 의하여 분단되어 있지 않지만, 지세 및 교통상 이에 유사한 상황이 있을 때도 또한 같다.

⑤하나의 郡·市的 구역이 2 이상의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구에 속하는 구역으로 분할되어 있는 경우에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의 적용(전항의 규정의 적용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각 구역을 郡·市的 구역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⑥市·町·村은 특히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의회의원의 선거에 대하여 조례로 선거구를 설치할 수가 있다. 다만, 지방자치법제252조의19제1항의 지정도시(이하 “지정도시”라고 함)에 대해서는 區의 구역을 선거구로 한다.

⑦제2항, 제3항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행정구역,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구, 지세, 교통등의 사정을 총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행하여야 한다.

⑧각선거구에 있어서 선거해야 할 지방공공단체의회의원의 수는 인구에 비례하여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대체로 인구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간의 균형을 고려해서 정할 수가 있다.

⑨전 각항에 정하는 것 외에 지방공공단체의회의원의 선거구 및 각선거구에 있어서 선거해야 할 의원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 (선거구의 선거기간중의 특례) ①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기일의 공시 또는 고시가 된 날로부터 그 선거기일까지의 사이에 있어서 2이상의 선거구에 걸쳐 市·町·村的 경계변경이 있어도 당해 선거구는 제13조(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구)제2항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선거에 대해서는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②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기일의 공시 또는 고시가 된 날로부터 그 선거기일까지의 사이에 있어서 都·道·府·縣의 경계의 변경이 있어도 당해 선거구는 제 14조(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구)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선거에 대해서는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③都·道·府·縣의회의원의 선거기일의 고시가 된 날로부터 그 선거기일까지의 사이에 있어서 郡·市의 구역의 변경(都·道·府·縣의 경계에 걸친 것을 제외함)이 있어도, 해당 선거구는 전조 제1항에서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선거에 대해서는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16조(선거구의 이동과 현임자의 지위) 현임의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 都·道·府·縣의회의원 및 市·町·村的회의원은 행정구획 기타의 구역의 변경에 의하여 그 선거구에 이동이 있어도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제17조 (투표구) ①투표구는 市·町·村의 구역에 의한다.

②市·町·村선거관리위원회는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市·町·村의 구역을 구분하여 수개의 투표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구를 설치한 때는 市·町·村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고시하여야 한다.

제18조(개표구) ①개표구는 市·町·村의 구역에 의한다. 다만,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구 혹은 都·道·府·縣의회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市·町·村이 2 이상의 선거구로 분할되어 있을 때 또는 제15조제6항(市·町·村的회의원의 선거구)의 규정에 의한 선거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선거구의 구역에 따라 市·町·村의 구역을 나누어 여러 개표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②都·道·府·縣선거관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市·町·村의 구역을 구분하여 수개의 개표구를 설치하거나 또는 수개의 町·村的의 구역을 합하여 1개표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구를 설치한 때는 都·道·府·縣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고시하여야 한다.

제4장 선거인명부

제19조 (영구선거인명부) ①선거인명부는 영구히 비치하는 것으로 하고 또한 각 선거를 통하여 하나의 명부로 한다.

②市·町·村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보관의 임무를 담당하고, 매년 9월 및 선거를 행하는 경우에, 선거인명부의 등록을 행하는 것으로 한다.

③선거를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가 있는 때는 선거인명부의 사본을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 (선거인명부의 양식등) ①선거인명부는 카드식명부로 한다.

②선거인명부에는 선거인의 성명, 주소, 성별 및 생년월일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선거인명부는 市·町·村의 구역을 분할하여 수개의 투표구를 설정한 경우에는 그 투표구마다 편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규정하는 것 외에 선거인명부의 양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21조 (피등록자격등) ①선거인명부의 등록은 당해 市·町·村의 구역외에 주소를 갖는 만20세이상의 일본국민(제11조제1항 및 제2항(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지 않는 자)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을 갖지 않는 자를 제외한다)으로 그 자에 관계되는 당해 市·町·村의 주민표가 작성된 날(다른 市·町·村에서 당해 市·町·村의 구역 내로 주소를 이전한 자로 주민기본대장법(1967년 법률제81호) 제22조(전입계)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당해 신고를 한 날)로부터 계속하여 3개월이상 당해 市·町·村의 주민기본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자에 대해서 행한다.

②전항의 주민기본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기간은, 市·町·村의 폐치분합 또는 경계 변경 때문에 중단되지 아니한다.

③市·町·村선거관리위원회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市·町·村의 선거인명부에 등록되는 자격을 갖는 자를 조사하고, 그 자를 선거인명부에 등록하기 위한 정리를 하여야 한다.

(1969 법30·개정)

제22조 (등록) ①市·町·村선거관리위원회는 매년 9월1일 현재에 의하여 당해 市·町·村의 선거인명부에 등록될 자격을 갖는 자를 동월 2일에 선거인명부에 등록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만, 市·町·村선거관리위원회는 9월1일부터 동월7일까지의 사이에 선거기일이 있는 선거를 행하는 경우,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市·町·村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市·町·村의 선거인명부에 등록될 자격을 갖는 자를 선거인명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3조 (공람) ①市·町·村선거관리위원회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대해서 9월3일부터 동월7일까지의 사이(동항 단서에 규정하는 경우에는 정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대해서는 당해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

거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회가 정하는 기간에 市廳, 町·村事務所 또는 당해 市·町·村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 있어서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인명부에 등록한 자의 성명·주소 및 생년월일을 기재한 서면을 공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市·町·村선거관리위원회는 공람개시일전 3일까지 공람의 장소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4조 (이의신청) ①선거인은 선거인명부의 등록에 관하여 불복이 있을때는 공람기간 내에 문서로 당해 市·町·村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市·町·村선거관리위원회는 전항의 이의신청을 받을 때는 그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그 이의신청의 정당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 이의신청을 정당하다고 결정한 때는 그 이의신청에 관계되는 자를 즉시 선거인명부에 등록하거나 또는 선거인명부에서 말소하고 그 취지를 이의신청인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고 동시에 이것을 고시하여야 한다. 그 이의신청을 정당하지 않다고 결정한 때는 즉시 그 취지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행정불복심사법(1962년 법률 제160호)제15조(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제1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와 제6호 및 제4항, 제21조(보정), 제25조(심리의 방식), 제26조(증거서류등의 제출), 제31조(직원에 의한 심리절차), 제36조(절차의 병합 또는 분리), 제39조(심사청구의 취하), 제44조(증거서류등의 반환)의 규정은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해서 준용한다.

④제214조(쟁송의 제기와 처분의 집행)의 규정은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해서 준용한다.

제25조 (소송) ①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이의신청인 또는 관계인은 당해 市·町·村선거관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제소할 수 있다.

②전항의 소송은, 당해 市·町·村선거관리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③전항의 법원의 판결에 불복이 있는 자는 항소할 수는 없지만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④제213조(쟁송의 처리), 제214조(쟁송의 제기와 처분의 집행) 및 제219조제1항(선거관계소송에 대한 소송 법규의 적용)의 규정은 제1항 및 전항의 소송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동조제1항중 “하나의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수개의 청구, 제207조(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송) 혹은 제208조(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송)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선거에 있어서의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수개의 청구, 제2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의 후보자였던 자의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수개의 청구, 제211조(총괄주제자, 출납책임자등의 선거범죄에 의한 공직후보자였던 자의 당

선무효 및 입후보금지의 소송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후보자등이었던 자의 당선의 효력 혹은 입후보의 자격을 다루는 수개의 청구 또는 선거의 효력을 다루는 청구와 그 선거에 있어서의 당선의 효력에 관한 제207조 또는 제20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것을 다루는 청구"라고 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공람에 관계되는 선거인명부부의 등록 또는 선거인명부로부터의 말소에 관하여 다루는 수개의 청구"와 대체하여 읽는 것으로 한다.

제26조 (보정등록) 市·町·村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조(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인명부의 등록을 한 날 이후, 당해 등록을 할 당시 선거인명부에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또한 계속하여 그 자격을 갖는 자가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지 않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자를 즉시 선거인명부에 등록하고 그 취지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7조 (표시 및 정정등) ①市·町·村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가 제11조제2항 및 제2항(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지 않는 자)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을 갖지 않게 된 것 또는 당해 市·町·村의 구역내에 주소를 갖지 않게 된 것을 안 경우에는 즉시 선거인명부에 그 취지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市·町·村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의 기재내용이 변경이 있는 것 또는 잘못이 있는 것을 안 경우에는 즉시 그 기재의 수정 또는 정정을 하여야 한다.

제28조 (등록의 말소) 市·町·村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市·町·村의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에 대해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게 된 때는 이러한 자를 즉시 선거인명부에서 말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 해당할 때는 그 취지를 고시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것 또는 일본의 국적을 상실한 것을 알았을 때
2. 전조제1항에 표시된 자가 해당 市·町·村의 구역내에 주소를 갖지 않게된 날 후 4개월을 경과하게 되었을 때
3. 등록시에 등록을 할 수 없게된 것을 알았을 때

제29조 (통보 및 열람등) ①市·町·村長 및 市·町·村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의 주소의 무효 기타 선거자격의 확인에 관하여 그 갖고 있는 자료에 대하여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②市·町·村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일의 공시 또는 고시일로부터 선거기일후 5일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사이를 제외하고, 선거인명부의 사본을 열람에 공하고 기타 적당한 편의를 공여하여야 한다.

③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탈루, 오재 또는 오기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市·町·村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명부의 수정에 관하여 조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30조 (선거인명부의 재작성) ①천재사변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필요가 있을 때에는

市·町·村선거관리위원회는 다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선거인명부의 작성, 공람 및 확정에 관한 기일 및 기간 기타 그 작성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5장 선거기일

제31조 (총선거) ①중의원의원의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는 의원의 임기종료일전30일 이내에 행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선거를 행할 기간이 국회개회중 또는 국회폐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걸리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총선거는 국회폐회일로부터 31일이후 35일 이내에 행한다.

③중의원의 해산에 의한 중의원의원의 총선거는 해산일로부터 40일 이내에 행한다.

④총선거기일은 적어도 12일전에 공시하여야 한다.

⑤중의원의원의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기일의 공시가 된 후 그 기일전에 중의원이 해산된 때는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의 공시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32조 (통상선거) ①참의원의원의 통상선거는 의원의 임기종료일전 30일 이내에 행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선거를 행할 기간이 참의원개회중 또는 참의원폐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걸리는 경우에 있어서는 통상선거는 참의원폐회일로부터 31일이후 35일 이내에 행한다.

③통상선거의 기일은 적어도 17일전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33조 (일반선거, 長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및 설치선거) ①지방공공단체의회의원의 임기만료에 의한 일반선거 또는 장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는 그 임기종료일전 30일 이내에 행한다.

②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 해산에 의한 일반선거는 해산일로부터 40일 이내에 행한다.

③市·町·村의 설치에 의한 의회의원의 일반선거 및 장의 선거는 지방자치법제7조 제6항(市·町·村의 설치의 고시)고시에 의한 당해 市·町·村의 설치일로부터 50일 이내에 행한다.

④지방공공단체의회의원의 임기만료에 의한 일반선거의 前日의 고시가 된 후 그 임기만료일전에 당해 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원이 모두 없게된 때,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장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기일의 만료일전에 당해 지방공공단체장이 없게 되거나 퇴직을 신고한때는 다시 이러한 사유에 의한 선거의 고시는 행하지 않는다. 다

만,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기일전에 당해 지방공공단체의 의회가 해산된 때는 또는 장이 해직되거나 불신임의 의결에 의하여 그 직을 상실한 때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고시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선거기일은 다음의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都·道·府·縣지사의 선거에 있어서는 적어도 17일전에
2. 지정도시의 長의 선거에 있어서는 적어도 14일전에
3. 都·道·府·縣의회의원 및 지정도시의 의회위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적어도 9일전에
4. 지정도시 이외의 시의 의회위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적어도 7일전에
5. 町·村의 의회위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적어도 5일전에

제34조 (기타의 선거) ①중의원의원 및 참의원의원의 재선거 또는 보결선거는 이것을 행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40일이내에, 지방공공단체의 의회위원 및 長의 재선거, 보결선거(제114조(長이 결원인 경우 및 퇴직신청이 있는 경우)의 선거를 포괄함.) 또는 증원선거나 제116조(의원 또는 당선인이 모두 없는 경우)의 규정에 의한 일반선거는 이를 행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0일이내에 행한다.

②전항에 게시하는 선거중 제109조(재선거), 제110조(재선거) 또는 제113조(보결선거 및 증원선거)의 규정에 의한 중의원의원, 참의원의원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의회위원의 재선거, 보결선거 또는 증원선거는 이것을 행할 사유가 당해 의원의 임기(참의원의원에 대해서는 재임기간을 같이하는 자의 임기를 말함)가 끝나기 전 6개월이내에 발생한 때는 행하지 않는다. 다만, 지방공공단체의회의위원의 재선거, 보결선거 또는 증원선거에 대하여, 의원수가 그 정수의 3분의 2에 달하지 않게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에 게시하는 선거는 중의원의원 및 참의원의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선거를 필요로 하게된 선거에 대한 제204조(선거의 효력에 관한 소송) 또는 제208조(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송)의 규정에 의한 소송의 제소기간 또는 소송이 법원에 계속하고 있는 사이, 지방공공단체의 의회위원 및 長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선거를 필요로 하게된 선거에 대한 제202조(선거의 효력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또는 제203조(선거의 효력에 관한 소송), 제206조(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또는 제207조(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송)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 심사청구기간이나 소송의 제소기간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확정하지 않는 동안, 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이 확정하지 않는 동안이나 소송이 법원에 계속하고 있는 동안은 행할 수가 없다.

④제1항의 기간은 당해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회)가 그

선거를 필요로 하게 된 선거에 대하여 제203조, 제204조, 제207조 또는 제208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220조제1항(선거관계소송에 대한 통지)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이 계속하지 않게 된 취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제109조제5호에 게시하는 사유에 의한 재선거에 대해서는 제2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제109조제6호에 게시하는 사유에 의한 재선거에 대해서는 제254조(당선인등의 처형의 통지)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제109조제5호에 게시하는 사유중 제210조제1항(총괄주재자, 출납책임자등의 선거범죄에 의한 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송)의 규정에 의한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것에 관계되는 것에 의한 재선거에 대해서는 同項에 규정하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⑤제1항의 기간은 동항의 보결선거 또는 증원선거에 대해서는 전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회)가 최후로 제111조제1항 또는 제3항(의원 또는 長이 결원된 경우등의 통지)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⑥제1항의 선거기일은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참의원의원 및 都·道·府·縣지사의 선거에 있어서는 적어도 17일전에
2. 지정도시의 長의 선거에 있어서는 적어도 17일전에
3. 중의원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적어도 12일 전에
4. 都·道·府·縣의회의 의원 및 지정도시의회의 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적어도 9일전에
5. 지정도시 이외의 시의회의원 및 시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적어도 7일전에
6. 町·村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적어도 5일전에

제6장 투 표

제35조 (선거방법) 선거는 투표에 의하여 행한다.

제36조 (1인1표) 투표는 각 선거에 대하여 1인 1표에 한한다. 다만, 중의원의원의 선거에 대하여는 소선거구선출의원 및 비례대표선출의원마다, 참의원의원의 선거에 대하여는 선거구선출의원 및 비례대표선출의원마다 1인 1표로 한다.

제37조(투표관리자) ①각 선거마다 투표관리자를 둔다.

②투표관리자는 당해 선거의 선거권을 갖는 자중에서 市·町·村선거관리위원회가

선임한 자로 이에 충당한다.

③중의원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소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와 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를 동시에 행하는 경우에, 市·町·村선거관리위원회는 소선거구선출의원에 대한 투표관리자를 동시에 비례대표선출의원에 대한 투표관리자로 할 수 있다.

④참의원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와 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를 동시에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市·町·村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선출의원에 대한 투표관리자를 동시에 비례대표선출의원에 대한 투표관리자로 할 수 있다.

⑤투표관리자는 투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⑥투표관리자가 당해 선거의 선거권을 갖지 않게 된 때는 그 직을 상실한다.

제38조 (투표입회인) ①市·町·村선거관리위원회는 각선거마다 각투표구에 있어서의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자중에서 본인의 승락을 얻어 3인이상 5인이하의 투표입회인을 선임하고, 그 선거기일전 3일까지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투표입회인으로 참회하는 자가 투표소를 열 시각이 되어도 3인에 달하지 않는 때 또는 그 후 3인에 달하지 않게 된 때는 투표관리자는 그 투표구에 있어서의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자중에서 3인에 달하기까지의 투표입회인을 선임하고, 즉시 이것을 본인에게 통지하고 투표에 입회시켜야 한다.

③당해 선거의 공직후보자는 투표입회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④동일정당 기타의 정치단체에 속하는 자는 투표구에 있어서 3인이상을 투표입회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⑤투표입회인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제39조 (투표소) 투표소는 市廳, 町·村事務所 또는 市·町·村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 설치한다.

제40조 (투표소의 개폐시간) ①투표소는 오전 7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는다. 다만, 市·町·村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의 투표의 편의를 위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선거인의 투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미리 都·道·府·縣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투표소를 여는 시각 또는 투표소를 닫는 시각을 각각 2시간이내의 범위내에 있어서 앞당기거나 또는 늦출 수 있다.

②市·町·村선거관리위원회는 전향단서의 경우에 있어서는 즉시 그 취지를 고시함과 함께 이를 투표소의 투표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 (투표소의 고시) ①市·町·村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일로부터 적어도 5일간에 투표소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천재 기타 피할수 없는 사고에 의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투표소를 변경한 때는 선거당일을 제외하고는 市·町·村선거관리위원회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

하고 즉시 그 취지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2조 (선거인명부의 등록과 투표) ①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자는 투표를 할 수 없다. 다만, 선거인명부에 등록될 취지의 결정서 또는 확정판결서를 소지하고 선거당일 투표소에 도착한 자가 있을 때는 투표관리자는 그 자에게 투표를 시켜야 한다.

②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록될 수가 없는 자인 때는 투표를 할 수 없다.

제43조 (선거당일 선거권이 없는 자의 투표) 선거당일, 선거권을 갖지 않는 자는 투표를 할 수 없다.

제44조 (투표소에 있어서의 투표) ①선거인은 선거당일 스스로 투표소에 나아가 선거인명부 또는 그 사본의 대조를 거쳐 투표를 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都·道·府·縣의 구역내의 다른 市·町·村의 구역내로 주소를 이전한 선거인이 종전의 市·町·村에 있어서 당해 都·道·府·縣의 의회의원 또는 장의 선거의 투표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전항의 선거인명부 또는 그 사본의 대조를 거치는 때에 계속하여 당해 都·道·府·縣의 구역내에 주소를 갖는 것을 증명함에 족한 문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5조 (투표용지의 교부 및 양식) ①투표용지는 선거당일 투표소에서 선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투표용지의 양식은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自治省令으로 정하고, 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원 또는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46조 (투표의 기재사항 및 投函) ①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의 투표에 대하여, 선거인은 스스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에 성명이 인쇄된 후보자중 투표하고자 하는 자의 1인에 대하여 투표용지의 기호를 기재하는 란에 ○의 기호를 기재하여 이를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다만, 제47조(접자투표)의 규정에 의한 투표를 하는 선거인 또는 스스로 ○의 기호를 기재할 수 없는 선거인중 정령으로 정하는 자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에 후보자 1인의 성명을 自書하여 이를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②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의 투표에 대하여, 선거인은 스스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에 명칭(정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약칭, 이하 본조에서 "명칭등"이라 한다)이 인쇄된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제86조의2(명부에 의한 입후보의 신고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정당 기타의 정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중 투표하고자 하는 것의 1에 대하여 투표용지의 기호를 기재하는 란에 ○의 기호를 기재하여 이를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다만,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투표를 하는 선거인 또는 스스로 ○의 기호를 기재할 수 없는 선거인중 정령으로 정하는 자는 투표소에

서 투표용지에 하나의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의 제86조의2제1항의 신고에 관계되는 명칭 또는 약칭을 自書하여 이를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③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의 투표에 대해서는 선거인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에 하나의 참의원명부신고정당등(제86조의3(명부에 의한 입후보의 신고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정당 기타의 정치단체를 말함. 이하 같음.)의 동향의 신고에 관계되는 명칭 또는 약칭을 자서해서 이것을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④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 이외의 선거의 투표에 대하여, 선거인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에 당해선거의 공직의 후보자 1인의 성명을 自書하여 이를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⑤투표용지에는 선거인의 성명을 기재해서는 안된다.

⑥제1항 본문의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후보자의 성명의 순서는 선거구마다 都·道·府·縣선거관리위원회가, 제2항 본문의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의 명칭등의 순서는 중앙선거관리회가 추첨으로 정한다.

⑦후보자(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의 제86조(공직후보자의 입후보의 신고등)제4항에 규정하는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은 전항의 추첨에 입회할 수 있다.

⑧전2항에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투표에서 ○의 기호의 기재방법, 후보자가 사망하거나 후보자의 후보자신고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거나 또는 후보자가 사퇴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에 투표용지에서의 후보자의 표시방법,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의 명칭등의 표시방법 기타 이들의 규정에 의한 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⑨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의 투표에 대하여 제56조(繰上투표)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의 기입을 정한 경우 또는 천재 기타 피치못할 사고 기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후보자의 성명이 인쇄된 투표용지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都·道·府·縣선거관리위원회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인이 투표소에서 투표용지에 후보자 1인의 성명을 자서하여 이를 투표함에 넣는 방법에 의하여 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제48조(대리투표)제1항중 “○의 기호”는 “후보자의 성명”으로, “제46조(투표의 기재사항 및 투함)제1항 내지 제4항”은 “제46조제1항 단서 및 제9항(자서식투표)”로 하고, 제68조(무효투표)제1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고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⑩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의 투표에 대하여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의 기입을 정한 경우 또는 천재 기타 피치못할 사고 기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의 명칭등이 인쇄된 투표용지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都·道·府·縣선거관리위원회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선거인이 투표소에서 투표용지에 하나의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의 제86조의2제1항의 신고에 관계되는 명칭 또는 약칭을 자서하여 이를 투표함에 넣는 방법에 의하여 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제48조제1항중 “○의 기호”는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의 명칭 또는 약칭”으로, “제46조(투표의 기재사항 및 투함)제1항 내지 제4항”은 “제46조제2항 단서 및 제10항(자서식투표)”로, 동조제2항중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에 대하여 ○의 기호”는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의 명칭 또는 약칭”으로 하고, 제68조제2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고 동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6의2 (任意制記號式투표) ①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원 또는 장의 선거의 투표(다음 조 및 제49조(부재자투표)의 규정에 의한 투표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지방공공단체는 전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인이 스스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에 성명이 인쇄된 공직후보자중 그 투표하려고 하는 자 1인에 대하여 투표용지의 기호를 기재하는 란에 ○의 기호를 기재하여 이것을 투표함에 넣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48조(대리투표)제1항중 “당해 선거의 공직후보자의 성명”은 “○의 기호”로, “제46조(투표의 기재사항 및 투함)제1항 내지 제4항”은 “제46조의2(기호식투표)제1항”으로, 동조제2항중 “공직후보자 1인의 성명”은 “후보자 1인에 대하여 ○의 기호”로, 제68조제3항(무효투표)제1호중 “사용하지 않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 것 또는 所定の ○의 기호의 기재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으로, 동항 제2호중 “공직후보자가 될 수 없는 자의 성명”은 “공직후보자가 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의 기호”로, 동항 제4호 및 제5호중 “공직후보자의 성명”은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의 기호”로, 동항 제6호중 “공직후보자의 성명 외에 다른 것을 기재한 것. 다만, 직업·신분·주소 또는 경칭류를 기입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의 기호 이외의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동항 제7호중 “공직후보자의 성명을 자서하지 않은 것”은 “○의 기호를 스스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동항제8호중 “공직후보자인 何人이라고 있는 것”은 “공직후보자인 何人에 대하여 ○의 기호”로, 제86조의4(공직후보자의 입후보의 신고등) 제5항중 “3일”이라고 있는 것은 “4일”로, “2일”이라고 있는 것은 “3일”로, 동조제6항중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규정의 예에 의하여 都·道·府·縣지사 또는 시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기일전 3일까지에, 町·村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기일전 2일까지에, 당해 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의 신고할 수가 있는 것”은 “선거기일은 정령으로 정하는 날에 연기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그 취지를 고시하여야 한다”로, 동조제7항중 “전항”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기일을 연기한 경우에 있어서의 다음항”으로 “제33조(장의 선거)제5항, 제34조(기타의 선거)제6항 또는 제119조(동시선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기일후 5일에

해당하는 날"은 "정령으로 정하는 날"로, 동조제8항중 "전항"은 "전2항"으로, "당해 선거기일전3일까지에"은 "정령으로 정하고 있는 날까지에"로, 제126조제1항중 "제7항(장의 후보자가 1인으로 된 경우)"은 "제6항 또는 제7항(장의 후보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후보자임을 사퇴한 것으로 본 경우)"로, 동조제2항중 "제7항"은 "제6항 또는 제7항"으로, "7일 이내"는 "정령으로 정하고 있는 날 이내"로, 동조제3항중 "제7항"은 "제6항 또는 제7항"으로 하고, 제68조제3항제3호 및 제68조의2(동일 성명의 후보자등에 대한 투표의 효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의 기호의 기재방법,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공직후보자의 성명의 순서의 결정방법 및 공직후보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공직후보자임을 사퇴한 것으로 본 경우에 있어서의 투표용지에 있어서의 공직후보자의 표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47조 (접자투표) 투표에 관한 기재에 대해서는 정령으로 정하는 접자는 문자로 본다.

제48조 (대리투표) ①신체의 고장 또는 문맹에 의하여 스스로 중의원의원의 선거의 투표에 있어서 ○의 기호를,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의 투표에 있어서 참의원명부신고정당등의 명칭 및 약칭을, 중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 이외의 선거의 투표에 있어서 당해 선거의 공직후보자의 성명을 기재할 수가 없는 선거인(중의원의원의 선거의 투표에 있어서 전조의 규정에 의한 투표를 할 수 있는 자를 제외한다)은 제46조(투표의 기재사항 및 투합)제1항 내지 제4항, 제50조(선거인의 확인 및 투표의 거부)제4항 및 제5항 그리고 제68조(무효투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표관리자에게 신청하여 대리투표를 시킬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투표관리자는 투표입회인의 의견을 들어 당해 선거인의 투표를 보조할 자 2인을 그의 승락을 얻어 정하고 그 1인에게 투표의 기재를 하는 장소에서 투표용지에,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의 투표에 있어서는 당해선거인이 지시하는 후보자의 1인에 대하여 ○의 기호를,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의 투표에 있어서는 당해선거인이 지시하는 하나의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에 대하여 ○의 기호를,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의 투표에 있어서는 당해선거인이 지시하는 하나의 참의원명부신고정당등의 명칭 또는 약칭을, 중의원의원의 선거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 이외의 선거의 투표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인이 지시하는 공직후보자 1인의 성명을 기재시키고, 다른 1인을 이에 입회시켜야 한다.

③전2항의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49조(부재자투표) ①선거인으로 다음 각호에 게시하는 사유의 1에 의하여 선거당일 스스로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자의 투표에 대하여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2조(선거인명부의 등록과 투표)제1항 단서, 제44조(투표소에 있어서의 투표), 제45조(투표용지의 교부 및 양식), 제46조(투표의 기재사항 및 투함)(제5항을 제외한다), 전조 및 다음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재자투표관리자가 관리하는 투표를 기재하는 장소에서, 투표용지에 공직후보자 1인의 성명(중의원비례대표선출위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의 제86조의2(명부에 의한 입후보신고등)제1항의 신고에 관계되는 명칭 또는 약칭, 참의원비례대표선출위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참의원명부신고정당등의 제86조의3(명부에 의한 입후보신고등)제1항의 신고에 관계되는 명칭 또는 약칭, 다음 항에 있어서도 같다)을 기재하는 방법에 의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

1. 선거인이 그가 속하는 투표구의 구역외에 있어서 직무 또는 업무에 종사중일 것.
2. 선거인이 부득이한 용무 또는 사고때문에 그가 속하는 투표구가 있는 市·町·村의 구역외에 여행중 또는 체재중일 것.
3. 선거인의 질병, 부상, 임신, 노쇠나 신체의 장애때문에 또는 산육에 있기 때문에 보행이 현저하게 곤란한 것 또는 교도소, 소년원이나 부인보도원에 수용중일 것.
4. 교통지난의 도서 기타 곳에서 자치성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중이거나 체재중 또는 기타 지역에서 직무나 업무에 종사중일 것.
5. 선거인이 그가 속하는 투표구의 구역이 속하는 都·道·府·縣의회의원의 선거구의 지역외의 주소에 거주중일 것.

②선거인으로서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신체장애자복지법(1949년 법률제283호)제4조에 규정하는 신체장애자 또는 전상병자특별원호법(1973년 법률제168호)제2조제1항에 규정하는 전상병자로 정령이 정하는 자를 말함.)의 투표에 대해서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2조제1항 단서, 제44조, 제45조, 제46조(제5항을 제외한다), 전조 및 다음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가 현재하는 장소에서 투표용지에 공직후보자 1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이것을 우송하는 방법에 의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 (선거인의 확인 및 투표의 거부) ①투표관리자는 투표를 하려고 하는 선거인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본인이라는 취지를 선언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 선언을 하지 않는 자는 투표를 할 수 없다.

②투표의 거부는 투표입회인의 의견을 들어 투표관리자가 결정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결정을 받은 선거인이 불복이 있을 때는 투표관리자가 투표를 시켜야 한다.

④전항의 투표는 선거인으로 하여금 이것을 봉투에 넣어 봉하고, 표면에 스스로 그

성명을 기재하여 투표함에 넣게 하여야 한다.

⑤투표입회인이 이의가 있는 선거인에 대해서도 또한 전2항과 마찬가지로 한다.

제51조 (퇴출된 자의 투표) 제60조(투표소에 있어서의 질서유지)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소외로 퇴출된 자는 최후로 투표를 할 수 있다. 다만, 투표관리자는 투표소의 질서를 문란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투표를 시키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52조 (투표의 비밀유지) 누구든지 선거인이 투표한 피선거인의 성명 또는 정당 기타의 정치단체의 명칭이나 약칭을 진술할 의무는 없다.

(1982 법81·일부개정)

제53조(투표함의 폐쇄) ①투표소를 폐쇄할 시각이 된 때는 투표관리자는 그 취지를 고하고 투표소의 입구를 폐쇄하며 투표소에 있는 선거인의 투표의 종료하는 것을 기다려 투표함을 폐쇄하여야 한다.

②누구든지 투표함의 폐쇄후에는 투표를 할 수 없다.

제54조 (투표록의 작성) 투표관리자는 투표함을 작성하고 투표에 관한 전말을 기재하여 투표입회인과 함께 이것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55조 (투표함등의 송치) 투표관리자가 동시에 당해 선거의 개표관리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표관리자는 1인 또는 수인의 투표입회인과 함께 투표당일, 그 투표함, 투표록 및 선거인명부 또는 그 사본을 개표관리자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제56조 (繰上투표) 도서 기타 교통불편지에 대하여 투표당일에 투표함을 송치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고 인정할 때는 당해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 대해서는 都·道·府·縣선거관리위원회)는 적절히 그 투표기일을 정하고 개표기일까지에 그 투표함, 투표록 및 선거인명부 또는 그 사본을 송치시킬 수 있다.

제57조 (繰延투표) ①천재 기타 피할 수 없는 사고에 의하여 투표를 행할 수 없을 때 또는 다시 투표를 행할 필요가 있을 때는 당해 선거에 관한 사고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 대해서는 都·道·府·縣선거관리위원회)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투표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일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적어도 5일전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중의원의원, 참의원의원 또는 都·道·府·縣의 의회의원 혹은 장의 선거에 대하여 전항에 규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는 市·町·村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선거의 선거장(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 대해서는 선거분회장)을 경유하여 都·道·府·縣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58조 (투표소에 출입할 수 있는 자) 선거인, 투표소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 투표소

를 감시하는 직권을 갖는 자 및 당해 경찰관이 아니면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1954 법163·일부개정)

제59조 (투표소의 질서유지를 위한 처분의 청구) 투표관리자는 투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당해 경찰관의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954 법163·일부개정)

제60조 (투표소에 있어서의 질서유지) 투표소에서 연설, 토론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거나 또는 투표에 관하여 협의 혹은 권유를 하거나 기타 투표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투표관리자는 이를 제지하고, 명에 따르지 않을 때는 투표소외에 퇴출시킬 수 있다.

제7장 개 표

제61조 (개표관리자) ①각 선거마다 개표관리자를 둔다.

②개표관리자는 당해 선거의 선거권을 갖는 자중에서 市·町·村선거관리위원회가 선임한 자로 이에 충당한다.

③중의원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소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와 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를 동시에 행하는 경우에, 市·町·村선거관리위원회는 소선거구선출의원에 대한 개표관리자를 동시에 비례대표선출의원에 대한 개표관리자로 할 수 있다.

④참의원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와 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를 동시에 행하는 경우에, 市·町·村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선출의원에 대한 개표관리자를 동시에 비례대표선출의원에 대한 개표관리자로 할 수 있다.

⑤개표관리자는 개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⑥개표관리자는 당해 선거의 선거권을 갖지 않게 된 때는 그 직을 상실한다.

제62조 (개표입회인) ①공직후보자(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 신고정당(제86조(공직후보자의 입후보의 신고등)제1항 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정당 기타 정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공직후보자(후보자신고정당의 신고에 관계되는 자를 제외한다),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참의원명부신고정당등)는 당해 선거의 각 개표구의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중에서 본인의 승락을 얻어 개표입회인이 될 자 1인을 정하여 그 선거기일前 3일까지 市·町·村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을 당해 선거와 같은 날에 행하게 될 다른 선거에 있어서의 개표입회인이 될 자로 신고를 할 수는 없다.

②前項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각호에 정하는 것의 신고에 관계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가 10인을 초과하지 않은 때에는 즉시 그 자를 개표입회인으로 하고, 10인을 초과할 때는 신고를 한 자 중에서 市·町·村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으로 정한 자 10인을 개표입회인으로 하여야 한다.

1. 공직후보자(후보자신고정당의 신고에 관계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사망한 때, 제86조제9항 혹은 제86조의4(공직후보자의 입후보의 신고등)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후보자의 신고가 각하된 때 또는 제86조제12항 혹은 제86조의4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후보자가 후보를 사퇴한 때(제91조(공무원이었던 후보자의 취급)제2항 또는 제103조(당선인이 겸직금지직에 있는 경우등의 특례)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후보자를 사퇴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당해 공직 후보자

2. 후보자신고정당의 신고에 관계되는 후보자가 사망한 때, 제8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신고정당이 한 후보자의 신고가 각하된 때 또는 동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신고정당이 후보자의 신고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당해 후보자신고정당.

3.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에 대해 제86조의2(명부에 의한 입후보의 신고등)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행해진 때 또는 동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가 있었던 때. 당해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

4. 참의원명부신고정당등에 대해 제86조의3(명부에 의한 입후보의 신고등)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86조의2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행해진 때 또는 제86조의3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86조의2제1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가 있었던 때. 당해 참의원명부신고정당등.

③동일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속하는 공직후보자의 신고에 관계되는 자는 하나의 개표구에 있어서 3인이상 개표입회인이 될 수 없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자로, 동일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속하는 공직후보자의 신고에 관계되는 자가 3인이상 있을 때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자중에서 市·町·村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으로 정한 자 2인 이외의 자는 개표입회인이 될 수 없다.

⑤제2항 또는 前項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입회인이 정해진 후에 동일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속하는 공직후보자의 신고에 관계되는 개표입회인이 3인이상이 된 때는 市·町·村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으로 정한 자 2인이외의 자는 그 직을 상실한다.

⑥제2항, 제4항 또 前項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행할 장소 및 일시는 市·町·村선거관리위원회가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⑦제2항 각호에 계기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각호에 정하는 바의 신고에 관계되는 개표입회인은 그 직을 상실한다.

⑧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입회인이 3인에 달하지 않은 때 또는 선거기일의 前일까지에 3인에 달하지 않게 된 때는 市·町·村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입회인이 선거기일 이후에 3인에 달하지 않게 된 때 또는 개표입회인으로 참회하는 자가 개표소를 여는 시각이 되어도 3인에 달하지 않게 된 때는 개표관리자가, 그 개표구에 있어서의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자중에서 3인에 달할 때까지의 개표입회인을 선임하고, 즉시 이것을 본인에게 통지하여 개표에 입회시켜야 한다. 다만, 동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인을 신고한 공직후보자가 속하는 정당 기타 정치단체, 동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입회인을 신고한 후보자신고정당,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 혹은 참의원명부신고정당등 또는 市·町·村선거관리위원회나 개표관리자가 선임한 개표입회인이 속하는 정당 기타 정치단체와 동일한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속하는 자를 당해 공직후보자, 후보자신고정당,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 혹은 참의원명부신고정당등의 신고에 관계되는 개표입회인 또는 市·町·村선거관리위원회나 개표관리자의 선임에 관계되는 개표입회인을 통틀어 3인이상 선임할 수 없다.

⑨당해 선거의 공직후보자는 개표입회인이 될 수 없다.

⑩개표입회인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제63조 (개표소의 설치) 개표소는 市廳, 町·村事務所 또는 市·町·村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 설치한다.

제64조 (개표의 장소 및 日時의 고시) 市·町·村선거관리위원회는 미리 개표 장소 및 日時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65조 (개표일) 개표는 투표당일 또는 그 익일(1개표구에 수개의 투표구가 있을 때는 모든 투표함의 송치를 받은 날 또는 그 익일)에 행한다.

제66조 (개표) ①개표관리자는 개표입회인의 입회하에 투표함을 개함하여 먼저, 제50조(선거인의 확인 및 투표의 거부)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를 조사하고, 개표입회인의 의견을 들어 그 투표를 수리하는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개표관리자는 개표입회인과 함께 당해 선거에 있어서의 각투표소의 투표를 개표구마다 혼합하여 투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투표의 점검이 끝났을 때에는 개표관리자는 즉시 그 결과를 선거장(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 대하여는 선거분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7조 (개표의 경우의 투표효력의 결정) 투표의 효력은 개표입회인의 의견을 들어 개표관리자가 결정하여야 한다. 그 결정에 있어서는 제68조(무효투표)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그 투표한 선거인의 의사가 명백하면 그 투표를 유효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8조 (무효투표) ①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의 투표(제46조제1항 단서(자서식투표) 또는 제49조(부재자투표)의 규정에 의한 투표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무효로 한다.

1. 소정의 용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
2. 소정의 ○의 기호의 기재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것.
3. 후보자가 아닌 자 또는 제86조의8제1항(피선거권이 없는 자의 입후보의 금지), 제87조(중복입후보등의 금지)제1항 혹은 제2항, 제88조(선거사무관계자의 입후보제한) 혹은 제251조의2(총괄주재자, 출납책임자등의 선거범죄에 의한 공직후보자등이었던 자의 입후보의 금지)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후보자가 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의 기호를 기재한 것.
4. 제86조(공직후보자의 입후보의 신고등)제1항 혹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정당 기타 정치단체로서 동조제1항 각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았던 것의 당해 신고에 관계되는 후보자, 동조제9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계되는 후보자 또는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 신고에 관계되는 후보자에 대하여 ○의 기호를 기재한 것.

5. 1투표중에 2인이상의 후보자에 대하여 ○의 기호를 기재한 것.
6. 피선거권이 없는 후보자에 대하여 ○의 기호를 기재한 것.
7. ○의 기호 이외의 사항을 기재한 것
8. ○의 기호를 스스로 기재하지 아니한 것

9. 후보자의 누구에 대하여 ○의 기호를 기재하였는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

②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의 투표(제46조제2항 단서(자서식투표)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투표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무효로 한다.

1. 소정의 용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
2. 소정의 ○의 기호의 기재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것.
3.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 이외의 정당 기타 정치단체(제86조의2(명부에 의한 입후보의 신고등)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정당 기타 정치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의 기호를 기재한 것
4. 제8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정당 기타 정치단체로서 동항 각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았던 것 또는 제87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제86조의2제1항의 중의원명부를 중복하여 신고한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대하여 ○의 기호를 기재한 것.

5. 제86조의2제1항의 중의원명부등재자의 전원에 대해 동조제7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있거나 또는 동향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행해지고 있는 경우의 당해 중의원명부에 관계되는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대하여 ○의 기호를 기재한 것.

6. 1투표중에 2이상의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에 대하여 ○의 기호를 기재한 것.

7. ○의 기호 이외의 사항을 기재한 것

8. ○의 기호를 스스로 기재하지 아니한 것

9.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의 어느 것에 대하여 ○의 기호를 기재하였는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

③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이외의 선거의 투표(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의 투표에 있어서는 제46조제1항 단서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투표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무효로 한다.

1. 소정의 용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

2. 공직후보자가 아닌 자 또는 제86조의8제1항, 제87조제1항 혹은 제2항, 제88조 혹은 제25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후보자가 될 수 없는 자의 성명을 기재한 것.

3. 제86조제1항 혹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정당 기타의 정치단체로서 동조제1항 각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았던 것의 당해 신고에 관계되는 후보자 또는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 신고에 관계되는 후보자의 성명을 기재한 것.

4. 1투표중에 2인이상의 공직후보자의 성명을 기재한 것.

5. 피선거권이 없는 공직후보자의 성명을 기재한 것.

6. 공직후보자의 성명외에 다른 사항을 기재한 것. 다만, 직업, 신분, 주소 또는 경칭의 類를 기입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공직후보자의 성명을 자서하지 않은 것.

8. 공직후보자의 누구를 기재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것.

④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의 투표(제46조제2항단서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투표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무효로 한다.

1. 소정의 용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

2.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 이외의 정당 기타 정치단체(제86조의2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정당 기타 정치단체를 포함함)의 명칭 또는 약칭을 기재한 것.

3. 제8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정당 기타 정치단체로 동향 각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고 있지 않았던 것 또는 제87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86조의2제1항의 중의원명부를 중복하여 신고하고 있는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명칭 또는 약칭을 기재한 것.

4. 제86조의2제1항의 중의원명부등재자의 전원에 대해 동조제7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있거나 또는 동항 後段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중의원명부에 관계되는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명칭 또는 약칭을 기재한 것.

5. 1투표중에 2이상의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의 제8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계되는 명칭 또는 약칭을 기재한 것.

6.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의 제8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계되는 명칭 및 약칭이외에 다른 사항을 기재한 것. 다만, 본부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또는 경칭의 類를 기입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의 제8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계되는 명칭 또는 약칭을 자서하지 않은 것.

8.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의 어느 것을 기재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것.

⑤전항의 규정은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의 투표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항중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은 “참의원명부신고정당등”으로, 제86조의2 제10항”은 “제86조의3(명부에 의한 입후보의 신고등)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86조의2 제10항”으로, “제86조의2제1항”은 “제86조의3제1항”으로, “제87조제5항”은 “제87조 제6항에서 준용하는 동조제5항”으로, “중의원명부”는 “참의원명부”로, “중의원명부 등재자”는 “참의원명부등재자”로, “동조제7항 각호”는 “제86조의3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86조의2제7항 각호”로 대체한다.

제68조의2 (동일성명의 후보자등에 대한 투표의 효력) ①동일한 姓名, 姓 또는 名の 공직후보자가 2인이상 있을 경우에 있어서 그 姓名, 姓 또는 名만을 기재한 투표는 전조제3항제8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효로 한다.

②제86조의2(명부에 의한 입후보의 신고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계되는 명칭 또는 약칭이 동일한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이 2이상인 경우에 그 명칭 또는 약칭만을 기재한 투표는 전조제4항제8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효로 한다.

③제86조의3(명부에 의한 입후보의 신고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계되는 명칭 또는 약칭이 동일한 참의원명부신고정당등이 2이상 또는 경우에 있어서 그 명칭 또는 약칭만을 기재한 투표는 前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동조제4항제8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효로 한다.

④前3항의 유효투표는 개표구마다 당해 후보자, 당해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 또는 당해 참의원명부신고정당등 기타의 유효투표수에 따라 按分하고 각각 이것에 가산 하는 것으로 한다.

제69조 (개표의 참관) 선거인은 그 개표소에 대하여 개표의 참관을 구할 수가 있다.

제70조 (개표록의 작성) 개표관리자는 개표록을 작성하여, 개표에 관한 전말을 기재하고 개표입회인과 함께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71조 (투표, 투표록 및 개표록의 보존) 투표는 유효·무효를 구별하여 투표록 및 개표록과 함께 市·町·村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해 선거에 관계되는 의원 또는 長의 임기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제72조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의 개표) 선거의 일부가 무효로 되어 재선거를 행한 경우의 개표에 있어서는 그 투표의 효력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73조 (繰延개표) 제57조(繰延투표)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은 개표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74조 (개표소의 단속) 제58조(투표소에 출입할 수 있는 자), 제59조(투표소의 질서유지를 위한 처분의 청구) 및 제60조(투표소에 있어서의 질서유지)의 규정은 개표소의 단속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8장 선거회 및 선거분회

제75조 (선거장 및 선거분회장) ①각선거마다 선거장을 둔다.

②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 있어서의 前項의 선거장을 두는 외에 都·道·府·縣마다 선거분회장을 둔다.

③선거장은 당해 선거의 선거권을 갖는 자중에서 당해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회)가 선임한 자를, 선거분회장은 당해 선거의 선거권을 갖는 자중에서 都·道·府·縣선거관리위원회가 선임한 자로 이에 충당한다.

④선거장은 선거회에 관한 사무를, 선거분회장은 선거분회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⑤선거장 및 선거분회장은 당해 선거의 선거권을 갖지 않게된 때는 그 직을 상실한다.

제76조 (선거입회인) 제62조(개표입회인)의 규정은 선거회 및 선거분회의 선거입회인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동조제1항, 제2항, 제4항 내지 제6항 및 제8항중 “市·町·村선거관리위원회”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당해 선거장(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분회의 선거입회인에 대해서는 당해선거분회장)으로 동조제8항중 “선거기일”이라고 규정한 것은 “선거회나 선거분회의 기일”로 대체하여 읽는 것으로 한다.

제77조 (선거회 및 선거분회의 개최장소) ①선거회는 都·道·府·縣廳 또는 당해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회)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개최한다.

②선거분회는 都·道·府·縣廳 또는 都·道·府·縣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서 개최한다.

제78조 (선거회 및 선거분회의 장소 및 일시) 당해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회)는 미리 선거회의 장소 및 일시를 각각 고시하여야 한다.

제79조 (개표사무와 선거회사무와의 합동) ①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원 혹은 장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회의 구역과 개표구의 구역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66조(개표)제1항 및 제2항, 제67조(개표의 경우의 투표의 효력의 결정), 제68조(무효투표)제1항 및 제3항 그리고 제68조의2제1항 및 제4항(동일성명등의 후보자에 대한 투표의 효력)의 규정을 제외한 제7장(개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선거의 개표사무는 선거회장에서 선거회의 사무에 합하여 행할 수 있다.

②前項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의 사무를 선거회의 사무에 합하여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개표관리자 또는 개표입회인은 선거장 또는 선거입회인으로 이에 충당하고 개표에 관한 전말은 선거기록에 병행하여 기재하는 것으로 한다.

제80조 (선거회 또는 선거분회의 개최) ①선거장(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 있어서의 선거장을 제외함.) 또는 선거분회장은 모든 개표관리자로부터 제66조제3항(투표의 점검종료후의 결과보고)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날 또는 그 익일에 선거회 또는 선거분회를 개최하고, 선거입회인의 입회하에 그 보고를 조사하여 각 공직후보자, 각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 또는 각 참의원명부신고정당등의 득점총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②前條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선거장은 前項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표의 점검의 결과에 의하여 각공직후보자의 득표총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규정하는 선거장 또는 선거분회장은 선거의 일부가 무효가 되어 재선거를 행한 경우에 있어서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는 제1항의 규정의 예에 의하여 다른 부분의 보고와 함께 다시 이것을 조사하여 각공직후보자, 각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 또는 각 참의원명부신고정당등의 득표총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제81조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경우의 선거회의 개최) ①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에 있어서 선거분회장은 前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종료한때는 선거기록의 사본을 첨부하여 즉시 그 결과를 당해 선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선거장은 모든 선거분회장으로부터 同項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날 혹은 중앙선거관리회로부터 제101조제4항(당선인결정의 통지)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중 늦은 날(당해 선거가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와 동시에 행해

지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모든 선거분회장으로부터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그 익일에 선거회를 개최하고 선거입회인의 입회하여 그 보고를 조사하여 각명부신고정당등의 득표총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③선거의 일부가 무효로 되어 재선거를 행한 경우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는 당해 선거장은 前項의 규정의 예에 의하여 다른 부분의 보고와 함께 다시 이것을 조사하여 각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의 득표총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④전3항의 규정은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2항 중 “동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날 혹은 중앙선거관리회로부터 제101조 제4항(당선인결정의 통지)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중 늦은 날(당해 선거가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와 동시에 행해지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모든 선거분회장으로부터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날)”은 “동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날”로,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은 “참의원명부신고정당등”으로, 전항중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은 “참의원명부신고정당등”으로 대체한다.

제82조 (선거회 및 선거분회의 참관) 선거인은 그 선거회 및 선거분회의 참관을 요구할 수 있다.

제83조 (선거록의 작성 및 선거록 기타 관계서류의 보존) ①선거장 또는 선거분회장은 선거록을 작성하고, 선거회 또는 선거분회에 관한 전말을 기재하여 선거입회인과 함께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②선거록은 제66조제3항(투표의 점검종료후의 결과보고)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관한 서류(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제81조제1항(선거분회장의 선거장에의 보고)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관한 서류,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동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관한 서류)와 함께 당해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의 선거회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회, 선거분회에 관계되는 것에 대해서는 당해 都·道·府·縣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해 선거에 관한 의원 또는 長의 임기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③제79조(개표사무와 선거회사무와의 합동)의 경우에 있어서는 투표의 유효·무효를 구별하고, 투표록 및 선거록과 함께 당해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해 선거에 관계되는 의원 또는 장의 임기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제84조 (繰延선거회 또는 繰延선거분회) 제57조(繰延투표)제1항 본문의 규정은 선거회 및 선거분회에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동항 본문중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 대해서는 都·道·府·縣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함은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회에 관해서는 중앙선거관리회, 선거분회에 관해서는 都·道·府·縣선거관리위원회)”로 대체한다.

제85조(선거회장 및 선거분회장의 단속) 제58조(투표소에 출입할 수 있는 자), 제59조(투표소의 질서유지를 위한 처분의 청구) 및 제60조(투표소에 있어서의 질서유지)의 규정은 선거회장 및 선거분회장의 단속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9장 공직후보자

제86조(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입후보신고등) ①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정당 기타 정치단체는 당해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소속하는 자를 후보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선거기일의 공시 또는 고시가 있는 날에, 우편에 의하지 않고 문서로 그 내용을 당해 선거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당해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소속하는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의원을 5인 이상 가질 것.

2. 최근에 행해진 중의원의원의 총선거에 있어서 소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 혹은 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 또는 참의원의원의 통상선거에 있어서 당해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득표총수가 당해 선거에 있어서 유효투표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일 것.

②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전항의 공시 또는 고시가 있는 날에, 우편에 의하지 않고 문서로 그 내용을 당해 선거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자가 타인을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의 후보자로 하려고 할 때는, 본인의 승락을 얻어 제1항의 공시 또는 고시가 있는 날에, 우편에 의하지 않고 문서로 그 추천의 신고를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문서에는 당해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명칭, 본부의 소재지 및 대표자(총재, 회장, 위원장 기타 이들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 내지 제86조의7(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명칭의 신고등), 제169조(선거공보의 발행절차)제6항, 제175조(투표기재소의 성명등의 계기)제3항 및 제180조(출납책임자의 선임 및 신고)제2항에 있어서 같다)의 성명 및 후보자가 될 자의 성명, 본적, 주소, 생년월일 및 직업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문서에는 다음에 계기하는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강령, 당칙, 규약 기타 이들에 상당하는 것을 기재한 문서

2. 제1항의 각호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하는 정령으로 정하는 문서

3. 당해 신고가 제87조(중복입후보등의 금지)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대표자가 서약한 내용의 宣誓書

4. 후보자가 될 자의 후보자가 되는 것에 대한 동의서 및 제86조의8제1항(피선거권이 없는 자의 입후보의 금지), 제87조제1항 혹은 제2항 또는 제251조의2(총괄주재자, 출납책임자의 선거범죄에 의한 공직후보자등이었던 자의 입후보의 금지)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후보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아닐 것을 당해 후보자가 될 자가 서약한 내용의 宣誓書

5. 후보자가 될 자의 선정을 당해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서 행하는 기관의 명칭, 그 구성원의 선출방법 및 후보자가 될 자의 선정절차를 기재한 문서 및 당해 후보자가 될 자의 선정을 적정하게 행할 것을 당해기관을 대표하는 자가 서약한 宣誓書

6.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문서

⑥제2항 및 제3항의 문서에는, 공직후보자가 될 자의 성명, 본적, 주소, 생년월일 및 직업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⑦제2항 및 제3항의 문서에는 제86조의8제1항, 제87조제1항 혹은 제2항 또는 제25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후보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아닐 것을 당해 후보자가 될 자가 서약한 내용의 宣誓書, 당해 후보자가 될 자가 소속하는 정당 기타의 정치단체의 명칭(2이상의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소속할 때는, 어느 1정당 기타의 정치단체의 명칭)을 기재한 문서 및 당해 기재에 관한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대표자의 증명서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⑧제1항의 공시 또는 고시가 있는 날에, 신고를 한 후보자가 2인 이상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날 후 당해 후보자가 사망하거나 당해 신고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고, 당해 후보자가 후보자임을 사퇴한 것이라고 간주되거나 또는 다음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신고가 각하된 때에는, 전 각항의 규정의 예에 의하여, 당해 선거기일前 7일까지 후보자의 신고를 할 수 있다

⑨다음 각호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안 때에, 선거장은 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항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제명, 탈당 기타 사유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신고정당에 소속하지 않는 자라는 내용의 신고가 당해 선거기일전까지에 당해 후보자신고정당으로부터 문서로 행해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1. 제1항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신고가 제1항 각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의하여 행해진 것일 것

2. 제1항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신고가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해진 것일 것

3. 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제86조의8제1항, 제87조제1항 혹은 제2항 또는 제25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후보자가 되거나 또

는 공직후보자일 수 없는 자일 것

㉔전항후단의 문서에는 당해 신고에 관계되는 사유가, 제명일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제명의 절차를 기재한 문서 및 당해 제명이 적정하게 행해진 것을 대표자가 서약하는 내용의 宣誓書를, 탈당인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후보자가 후보자신고정당에 제출한 탈당계의 사본을, 기타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사유를 증명하는 문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11)후보자신고정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동항의 공시 또는 고시가 있는 날에,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선거기일전 7일까지에 선거장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그 후보자의 신고를 취할 수 있다.

(12)후보자(후보자신고정당의 신고에 관계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후보자에게 있어서는 제1항의 공시 또는 고시가 있는 날에,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후보자에게 있어서는 당해 선거기일전 7일까지에 선거장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그 후보자임을 사퇴할 수 있다.

(13)제1항 내지 제3항, 제8항, 제11항 혹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각하한 때 또는 후보자가 사망 혹은 제91조(공무원으로 된 후보자의 취급)제1항 혹은 제2항 혹은 제103조(당선인이 겸직금지의 직에 있는 경우등의 특례)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었음을 안 때에는 선거장은 즉시 그 내용을 고시함과 동시에 都·道·府·縣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4)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의원의 숫자의 산정, 동항제1호에 규정하는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득표총수(제7항의 문서에 그 명칭을 기재한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득표총수를 포함한다. 다음조 제14항에서 같다)의 산정 기타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86조의2(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명부에 의한 입후보의 신고등) ①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당 기타 정치단체는 당해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명칭(하나의 약칭을 포함함.) 및 소속하는 자의 姓名 및 그들 사이에 있어서의 당선인으로 될 순위를 기재한 문서(이하 “중의원명부”라고 한다)를 선거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그 중의원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자(이하 “중의원명부등제자”라고 한다)를 당해 선거에 있어서의 후보자로 할 수 있다.

1. 당해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소속하는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의원이 5인이상 있을 것.

2. 최근에 행하여진 중의원의원의 총선거에 있어서 소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 혹은

비례대표선출위원의 선거 또는 참의원의원의 통상선거에 있어서 비례대표선출위원의 선거 혹은 선거구선출위원의 선거에서 당해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득표총수가 당해 선거에 있어서의 유효투표의 총수의 100분의 3이상일 것.

3. 당해 선거에 있어서 이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후보자가 되는 중의원명부등재자가 30인이상 있을 것.

②前項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당해 선거기일의 공시 또는 고시가 있는 날에 우편에 의하지 않고 당해 중의원명부에 다음에 계기하는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명칭, 본부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그리고 중의원명부등재자의 성명, 본적, 주소, 생년월일 및 직업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문서

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강령, 당칙, 규약 기타 이에 상당하는 것을 기재한 문서

3. 前項 각호 1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하는 정령으로 정하는 문서

4. 당해 신고가 제87조(중복입후보등의 금지)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이 아닌 것을 대표자가 서약하는 내용의 선서서

5. 중의원명부등재자의 공직후보자가 되는 것에 대한 동의서 및 제86조의8(피선거권이 없는 자의 입후보의 금지) 또는 제87조제1항 혹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후보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아닌 것을 당해 중의원명부등재자가 서약하는 내용의 선서서

6. 중의원명부등재자의 선정 및 그들 사이에 있어서의 당선인으로 될 순위의 결정(이하 간단히 “중의원명부등재자의 선정”이라고 한다)을 당해 정당 기타의 정치단체에서 행할 기관의 명칭, 그 구성원의 선출방법 및 중의원명부등재자의 선정절차를 기재한 문서 및 당해 중의원명부등재자의 선정을 적정하게 행한 것을 당해 기관을 대표하는 자가 서약하는 내용의 선서서.

7.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문서

③중의원명부에 기재하는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명칭 및 약칭은 제86조의6(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명칭신고등)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 관계되는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있어서는 당해 고시에 관계되는 명칭 및 약칭이어야 하고, 동항의 고시에 관계되는 정당 기타 정치단체 이외의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있어서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명칭 및 약칭 그리고 이에 유사한 명칭 및 약칭 그리고 그 대표자나 명부등재자의 姓名이 표시되거나 또는 그들의 성명이 유추되는 것과 같은 명칭 및 약칭 이외의 명칭 및 약칭이어야 한다. 이 경우에 동항의 고시에 관계된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당해고시에 관계된 명칭 및 약칭이 그 대표자 혹은 중의원명부등재자의 성명이 표시되거나 또는 그들의 성명이 유추될 수 있는 명칭 및 약칭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당해 정당 기타 정치단체는 이항 전단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동조제

6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 관계되는 정당 기타 정치단체가 아닌 것으로 본다.

④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정당 기타 정치단체는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선거와 동시에 행해지는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신고에 관계되는 후보자(후보자가 될 자를 포함한다. 다음 항 및 제6항에서도 같다)를 당해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신고에 관계되는 중의원명부의 중의원명부등재자로 할 수 있다.

⑤각 중의원명부의 중의원명부등재자(당해 선거와 동시에 행해지는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로서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중의원명부의 중의원명부등재자로 된 자를 제외한다)의 수는 당해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할 의원의 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⑥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정당 기타 정치단체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선거와 동시에 행해지는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를 2이상 당해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신고에 관계되는 중의원명부의 중의원명부등재자로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들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당선인이 될 순위를 동일한 것으로 할 수 있다.

⑦당해 선거기일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때에는 선거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계되는 중의원명부에 있어서 당해 중의원명부등재자에 관계되는 기재를 말소함과 동시에, 즉시 그 내용을 당해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중의원명부등재자에 대하여 제명, 탈당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당해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에 소속하는 자가 아니게 된 내용의 신고가 당해 선거기일의 前日까지에 당해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으로부터 문서로 행해진 때에도 또한 같다.

1. 중의원명부등재자가 사망한 것
 2. 중의원명부등재자가 제86조의8제1항 또는 제87조제1항 혹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후보자로 되거나 또는 공직후보자가 될 수 없는 자인 것
 3. 중의원명부등재자가 제91조(공무원으로 된 후보자의 취급)제3항 혹은 제103조(당선인이 겸직금지)의 직에 있는 경우 등의 특례)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것
 4.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정당 기타 정치단체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선거와 동시에 행해지는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될 자를 포함한다)를 당해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신고에 관계되는 당해 중의원명부등재자로 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중의원명부등재자가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의 후보자로 되지 않거나 또는 제1항 각호 혹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날에 있어서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의 후보자가 되지 않았을 것
- ⑧前項 後段의 문서에는 당해 신고에 관계되는 사유가 제명인 경우에 있어서는 당

해 제명의 절차를 기재한 문서 및 당해 제명이 적정하게 행하여진 것을 대표자가 서약하는 내용의 선서서를, 탈당인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중의원명부등재자가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에 제출한 탈당서의 사본을, 기타의 사유인 경우에는 당해 사유를 증명하는 문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후(이하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는 당해 신고후)에 중의원명부등재자가 아니게 된 자의 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에 있어서의 중의원명부등재자수의 4분의1에 상당하는 수를 초과하게 된 때는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은 당해 선거기일전 10일까지의 사이에 同項 및 제2항(제2호에서 제4호까지를 제외한다)의 규정의 예에 의하여 당해 중의원명부등재자가 아니게 된 자의 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 있어서 중의원명부등재자의 보충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당해 신고시에 현재 중의원명부등재인 자의 당선인으로 될 순위도 변경할 수 있다.

⑩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은 전항에 규정하는 날까지에 우편에 의하지 않고 문서로 선거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중의원명부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취하의 사유를 증명하는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1)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동항 각호의 어느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 또는 제3항 혹은 제5항 혹은 제87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되었음을 안 때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계되는 명부에 대하여 제9항에 규정하는 기한경과후에 있어서 중의원명부등재자의 전원이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중의원명부에 있어서의 기재를 말소할 자인 것을 안 때는 선거장은 당해 신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12)제9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同項의 규정에 위반된 것 또는 당해 신고의 결과 당해 중의원명부등재자의 수가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게 되었음을 안 때에 선거장은 당해 신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13)제1항, 제9항 혹은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의원의원명부에서의 중의원명부등재자에 관계되는 기재를 말소한 때 또는 제11항 혹은 前項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각하한 때에, 선거장은 즉시 그 내용을 고시함과 동시에 중앙선거관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4)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의원 수의 산정, 동항제2호에 규정하는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득표총수의 산정 기타 동항의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86조의3(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명부에 의한 입후보의 신고등) ①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당 기타 정치단체는 당해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명칭(하나의 약칭을 포함함.) 및 소속하는

자(당해 정당 기타 정치단체가 추천하는 자를 포함한다. 제98조(피선거권의 상실과 당선인의 결정등)제3항에 있어서도 같다)의 姓名 및 그들 사이에 있어서의 당선인으로 될 순위를 기재한 문서(이하 “참의원명부”라고 한다)를 선거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그 참의원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자(이하 “참의원명부등재자”라고 한다)를 당해 선거에 있어서의 후보자로 할 수 있다.

1. 당해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소속하는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의원이 5인이상 있을 것.

2. 최근에 행하여진 중의원의원의 총선거에 있어서 소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 혹은 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 또는 참의원의원의 통상선거에 있어서 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 혹은 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에서 당해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득표총수가 당해 선거에 있어서의 유효투표의 총수의 100분의 4이상일 것.

3. 당해 참의원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이하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후보자가 되는 참의원명부등재자를 포함한다)가 10인이상 있을 것.

②전조제2항, 제3항, 제5항, 제7항(제4호를 제외한다) 및 제8항 내지 제14항의 규정은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조제2항중 “제87조(중복입후보등의 금지)제5항”은 “제87조(중복입후보등의 금지)제6항에서 준용하는 동조제5항”으로, “제87조제1항 혹은 제4항”은 “제87조제1항 혹은 동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동조제4항”으로, “참의원명부등재자의 선정”은 “참의원명부등재자의 선정”으로, 동조제3항중 “제86조의6(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명칭신고등)제6항”은 “제86조의7(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명칭신고등)제4항”으로, “동조제6항”은 “동조제4항”으로, 동조제5항중 “각 참의원명부의 참의원명부등재자(당해선거와 동시에 행해지는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에서의 후보자로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참의원명부의 참의원명부등재자로 된 자를 제외한다)”은 “각 참의원명부의 참의원명부등재자”로, 동조제7항중 “참의원명부신고정당등”은 “참의원명부신고정당등”으로, “소속하는 자”는 “소속하는 자(당해 정당 기타 정치단체가 추천하는 자를 포함한다)”로, “제87조제1항 혹은 제4항”은 “제87조제1항 혹은 동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동조제4항”으로, 동조제8항 내지 제10의 규정중 “참의원명부신고정당등”은 “참의원명부신고정당등”으로, 동조제11항중 “제87조제5항”은 “제87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동조제5항”으로, 동조제12항중 “위반된 자일 것 또는 당해 신고결과 당해 참의원명부등재자의 수가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게 되었을 것”은 “위반된 자일 것”으로 대체한다.

제86조의4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출이외의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입후보신고등) ①공직후보자(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후보자를 제외함. 이하 본조에 있어서 같다.)가 되려고 하는 자는, 당해 선거기일의

공시 또는 고시가 있는 날에, 우편에 의하지 않고 문서로 그 취지를 당해 선거장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자가 타인을 공직후보자로 하려고 할때는, 본인의 승락을
얻어 前項의 공시 또는 고시가 있는날에, 우편에 의하지 않고 문서로 그 추천의 신
고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문서에는, 공직후보자가 될 자의 성명, 본적, 주소, 생년월일, 직업 기
타 소속하는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명칭(2이상의 정당 기타의 정치단체에 소속할
때는, 어느 1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명칭으로 하고, 다음 항에 규정하는 증명서에
관계되는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명칭을 말하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정령으로 정
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문서에는 제86조의8제1항(피선거권이 없는 자의 입후보의 금
지), 제87조제1항(중복입후보의 금지) 또는 제251조의2(총괄주제자, 출납책임자등의
선거범죄에 의한 공직후보자등이었던 자의 입후보의 금지)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선
거에서 공직후보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아닌 것을 당해 공직후보자로 될 자가 선서
하는 취지의 선서서, 소속하는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명칭을 기재하는 경우에 있어
서는 당해 기재에 관한 당해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증명서(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의
후보자에 대해서는, 당해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대표자의 증명서)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원의 선거에 대해서는, 제1
항의 공시 또는 고시가 있는 날에 신고를 한 공직후보자가, 그 선거에 있어서의 의
원의 정수를 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날 후 당해 후보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공직후
보자임을 사퇴한 것이라고 간주된 때는 前 各항의 규정의 예에 의하여, 참의원(선
거구 선출)의원 또는 都·道·府·縣 및 市의 의회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
기일前 3일까지에, 町·村의 의회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기일前 2일까지
에, 당해 선거에 있어서의 공직후보자의 신고를 할 수 있다.

⑥지방공공단체의 선거에 대해서는 제1항의 고시가 있는 날에 신고를 한 후보자가
2인이상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날 후 당해 후보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후보자임을
사퇴한 것이라고 간주된 때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의 예에 의하여, 都·道·
府·縣지사 또는 市長의 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기일前 3일까지에, 町·村長의 선
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기일前 2일까지에, 당해 선거에 있어서의 후보자의 신고를
할 수 있다.

⑦지방공공단체장의 선거에 대하여 제1항, 제2항 또는 前項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를 한 후보자가 2인이상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선거기일의 前日까지에 당해 후보
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후보자임을 사퇴한 것이라고 간주되었기 때문에 후보자가 1

인이 된 때는, 선거기일은, 제33조(長의 선거)제5항, 제34조(기타의 선거)제6항 또는 제119조(동시선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기일후 5일에 해당한 날로 연기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그 취지를 고시하여야 한다.

⑧前項 또는 제126조제2항(長의 동시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1인이 된 경우)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당해 선거기일前 3일까지에,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의 예에 의하여, 당해 지방공공단체장의 후보자의 신고를 할 수 있다.

⑨제1항, 제2항, 제5항, 제6항 또는 前項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제86조의8제1항, 제87조제1항 또는 제25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선거에 있어서 공직후보자가 되거나 또는 공직후보자일 수가 없는 자인것을 안때는, 선거장은 그 신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⑩공직후보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공직후보자에 있어서는 제1항의 공시 또는 고시가 있는 날에, 제5항, 제6항 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공직후보자에 있어서는 당해 각항에 정하는 날까지 선거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후보자가 되려는 것을 사퇴할 수 없다.

⑩제1항, 제2항, 제5항, 제6항, 제8항 혹은 前項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각하한 때 또는 공직후보자가 사망하거나, 제91조제2항(공무원이 되었기 때문에 입후보의 사퇴로 간주되는 경우)이나 제103조(당선인이 겸직금지직에 있는 경우 등의 특례)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것을 안 때는, 선거장은, 즉시 그 취지를 고시함과 함께 당해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6조의5(후보자선정절차의 신고등) ①제86조(공직후보자의 입후보의 신고등)제1항 각호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정당 기타 정치단체는 당해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의 후보자가 될 자의 선정 및 중의원명부등재자의 선정(이하 이조에서 "후보자의 선정"이라 한다)의 절차를 정할 때에는 그날로부터 7일 이내 우편에 의하지 않고 문서로 그 내용을 자치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문서에는 당해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명칭, 본부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및 후보자선정을 행할 기관의 명칭, 그 구성원의 선출방법 및 후보자의 선정절차를 기재하는 것으로 한다.

③제1항의 문서에는 당해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강령, 당칙, 규약 기타 이에 상당하는 것을 기재한 문서 및 제86조제1항 각호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하는 정령으로 정하는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정당 기타 정치단체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의 異動이 있을 때에는 그 이동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우편에 의하지 않고

문서로 그 이동에 관계되는 사항을 자치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자치대신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에는 신속히 당해 신고에 관계되는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명칭, 본부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및 후보자의 선정을 행할 기관의 명칭, 그 구성원의 선출방법 및 후보자의 선정절차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정당 기타 정치단체는 제3항의 문서의 내용에 이동이 있을 때에는 그 이동일로부터 7일 이내에 문서로 그 이동에 관계되는 사항을 자치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정당 기타 정치단체가 해산하거나 또는 제86조제1항 각호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정당 기타 정치단체가 아니게 된 때에, 그 대표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문서로 그 내용을 자치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자치대신은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86조의6(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서의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명칭 신고등)

①제86조의2(공직후보자의 입후보의 신고등)제1항에 규정하는 정당 기타 정치단체 중 동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정당 기타 정치단체는 중의원의원의 총선거 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당해 기간이 중의원의 해산일에 관한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해산일까지의 사이)에 우편에 의하지 않고 문서로 당해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명칭 및 하나의 약칭을 중앙선거관리회에 신고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당해 명칭 및 약칭은 그 대표자 혹은 중의원명부등재자가 되려고 하는 자의 성명이 표시되거나 또는 그들의 성명이 유추될 수 있는 명칭 및 약칭이어서는 아니된다.

②제86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정당 기타 정치단체 중 동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정당 기타 정치단체는 중의원의원의 총선거의 기일 후 24일을 경과하는 날로부터 당해 중의원의원의 임기만료일전 90일에 해당하는 날 또는 중의원해산일 중 빠른 날까지의 사이에 동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전항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7일 이내(당해 기간이 중의원의 해산일에 관한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해산일까지의 기간)에 우편에 의하지 않고 문서로 당해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명칭 및 하나의 약칭을 중앙선거관리회에 신고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동항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전2항의 문서에는 당해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명칭 및 하나의 약칭, 본부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문서에는 당해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강령, 당칙, 규약 기타 이에 상당하는 것을 기재한 문서 및 당해 정당 기타 정치단체가 제86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하는 정령으로 정하는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정당 기타 정치단체는 이들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날 이후 중의원의원의 임기만료일전 90일에 해당하는 날 또는 중의원의 해산일 중 빠른 날의 사이에 이들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에 異動이 있을 때에는 그 이동일로부터 7일 이내(당해 기간이 중의원의 해산일에 관한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해산일까지의 기간)에 우편에 의하지 않고 문서로 그 이동에 관계되는 사항을 중앙선거관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⑥중앙선거관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에는 신속히 이들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계되는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명칭, 본부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들 사항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⑦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정당 기타 정치단체는 제4항의 문서의 내용에 異動이 있을 때에는 그 이동일로부터 7일 이내에 문서로 그 이동에 관계되는 사항을 중앙선거관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⑧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정당 기타 정치단체가 이들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날 이후 중의원의원의 임기만료일전 90일에 해당하는 날 또는 중의원의 해산일 중 빠른 날의 사이에 해산 또는 제86조의2제1항제1호 혹은 제2호에 해당하는 정당 기타 정치단체가 아니게 된 때에는 그 대표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문서로 그 내용을 중앙선거관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중앙선거관리회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⑨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정당 기타 정치단체는 중의원의원의 임기만료일전 90일에 해당하는 날 또는 중의원의 해산일 중 빠른 날 이후에도 우편에 의하지 않고 문서로 중앙선거관리회에 당해 신고를 철회하는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중앙선거관리회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⑩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재선거 및 보궐선거에 있어서 제1항, 제2항, 제3항 또는 제7항 내지 전항의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86조의7(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서의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명칭의 신고 등) ①제86조의3(명부에 의한 입후보의 신고등)제1항에 규정하는 정당 기타 정치단체중 同項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정당 기타 정치단체는 참의원의원의 임기만료일전 90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7일을 경과하는 날까지의 사이에 우편에 의하지 않고, 문서로 당해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명칭 및 하나의 명칭을 중앙선거관리회에 신고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당해 명칭 및 약칭은 그 대표자 또는 중의원명부등재자로 하려는 자의 성명이 표시되거나 또는 그들의 성명이 유추될 수 있는 명칭 및 약칭이어서는 안된다.

②전항의 문서에는 당해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명칭 및 하나의 약칭, 본부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문서에는 당해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강령, 당칙, 규약 기타 이에 상당하는 것을 기재한 문서 및 당해 정당 기타 정치단체가 제86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하는 정령으로 정하는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중앙선거관리회는 제1항의 기간경과후에 신속하게 동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계되는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명칭 및 약칭, 본부의 소재지 그리고 대표자의 성명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정당 기타 정치단체는 前項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는날 이후에 있어서도 우편에 의하지 않고 문서로 중앙선거관리회에 당해 신고를 철회하는 취지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회는 그 취지의 고시를 하여야 한다.

⑥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재선거 및 보궐선거에 있어서의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86조의8(피선거권이 없는 자등의 입후보의 금지) ①제11조(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지 않는 자)제1항 및 제252조(선거범죄에 의한 처형자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정지)의 규정에 의하여 피선거권을 갖지 않는 자는 공직후보자가 되거나 또는 공직후보자일 수 없다.

②제251조의2(총괄주재자, 출납책임자등의 선거범죄에 의한 공직후보자등이었던 자의 입후보의 금지)제1항 각호에 계기하는 자의 선거에 관한 범죄에 의하여 공직후보자가 되거나 또는 공직후보자일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동조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7조 (중복입후보등의 금지) ①하나의 선거에 있어서 공직후보자로 된 자는 동시에 다른 선거에 있어서의 공직후보자로 될 수 있다.

②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하나의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신고에 관계되는 후보자는 당해 선거에 있어서 동시에 다른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신고에 관계되는 후보자가 될 수 없다.

③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신고정당은 하나의 선거구에 있어서 중복하여 후보자를 신고할 수 없다.

④하나의 중의원명부의 공직후보자인 중의원명부등재자는 당해 선거에 있어서 동시에 다른 중의원명부의 공직후보자인 중의원명부등재자일 수 없다.

⑤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은 중복하여 중의원명부를 신고할 수 없다.

⑥전2항의 규정은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4항중 “중의원명부”는 “참의원명부”로, “중의원명부등재자”는 “참의원명부등재자”로,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은 “참의원명부신고정당등”으로, “중의원명부”는

“참의원명부”로 대체한다.

제88조 (선거사무관계자의 입후보제한) 아래의 각호에 계기하는 자는 재직중, 그 관계 구역내에 있어서 당해 선거의 공직후보자로 될 수 없다.

1. 투표관리자
2. 개표관리자
3. 선거장 및 선거분회장.

제89조 (공무원의 입후보제한) ①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공무원은 재직중 공직후보자로 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계기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내각총리대신 기타의 국무대신, 내각관방부장관 및 정무차관
2. 기술자, 감독자 및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자 이외의 자로 정령으로 규정하는 자
3. 전무로 위원, 고문, 참여, 촉탁원 기타 이에 준하는 직에 있는 자로 임시 또는 비상근의 자에 대하여 정령으로 지정하는 자
4. 소방단장 기타의 소방단원(상근자를 제외) 및 수방단장 기타의 수방단원(상근자를 제외)
5. 지방공영기업노동관계법(1952년 법률제289호) 제3조제2항에 규정하는 직원으로 정령으로 지정하는 자

②중의원의원의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 또는 참의원의원의 통상선거가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의원은 前項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직중 그 선거에 있어서의 공직후보자로 될 수 있다. 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원 또는 長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가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의원 또는 長이 그 선거에 있어서의 공직후보자로 되는 경우도 또한 같다.

③제4항 본문의 규정은 同項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에 계기하는 자 그리고 전항에 규정하는 자가 그 직에 수반하여 겸하는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공무원인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제90조 (입후보를 위한 공무원의 퇴직) 前條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후보자로 될 수 없는 공무원이 제86조(공직후보자의 입후보신고등)제1항 내지 제3항 혹은 제8항, 제86조의2(명부에 의한 입후보신고등)제1항 혹은 제9항, 제86조의3(명부에 의한 입후보의 신고등)제1항 혹은 동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86조의2제9항 또는 제86조의4(공직후보자의 입후보의 신고등)제1항, 제2항, 제5항, 제6항 혹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공직후보자로 된 때는 당해 공무원의 퇴직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신고일에 당해 공무원인 것을 사퇴한 것으로 본다.

제91조 (공무원으로 된 후보자의 취급) ①제86조(공직후보자의 입후보의 신고등)제1항 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후보자신고정당의 신고에 관계되는 자에 한한다)가 제88조(선거사무관계자의 입후보제한) 또는 제89조(공무원의 입후보제한)

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후보자가 될 수 없는 자가 된 때에는 당해 신고는 취하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②제86조제2항, 제3항 혹은 제8항 또는 제86조의4(공직후보자의 입후보신고등)제1항, 제2항, 제5항, 제6항 혹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후보자로 신고한 자(후보자신고정당의 신고에 관계되는 것을 제외한다)가 제88조 또는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로 될 수 없는 자로 된 때는 그 공직후보자인것을 사퇴한 것으로 본다.

③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중의원명부등재자 또는 참의원명부등재자가 제86조 또는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후보자로 될 수 없는 자가 된 때는 그 자는 공직후보자인 명부등재자가 아닌 것으로 본다.

제92조 (공탁) ①町·村의 의회의원의 선거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86조(공직후보자의 입후보신고등)제1항 내지 제2항 혹은 제8항 또는 제86조의4(공직후보자의 입후보의 신고등)제1항, 제2항, 제5항, 제6항 혹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후보자의 신고를 하려고 하는 자는 공직후보자 1인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또는 이에 상당하는 액면의 국채증서를 공탁하여야 한다.

- | | |
|-------------------------|-------|
| 1.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 | 200萬엔 |
| 2.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 | 200萬엔 |
| 3. 都·道·府·縣의 의회의원의 선거 | 40萬엔 |
| 4. 都·道·府·縣지사의 선거 | 200萬엔 |
| 5. 지정도시의 의회의원의 선거 | 30萬엔 |
| 6. 지정도시의 長의 선거 | 120萬엔 |
| 7. 지정도시 이외의 시의 의회의원의 선거 | 20萬엔 |
| 8. 지정도시 이외의 시장의 선거 | 50萬엔 |
| 9. 町·村長의 선거 | 24萬엔 |

②제86조의2(명부에 의한 입후보의 신고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려고 하는 정당 기타 정치단체는 당해 중의원명부의 중의원명부등재자 1인에 대하여 600만엔(당해 중의원명부등재자가 당해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와 동시에 행해지는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될 자를 포함한다)인 경우에 있어서는 300만엔) 또는 이에 상당하는 액면의 국채증서를 공탁하여야 한다.

③제86조의3(명부에 의한 입후보신고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려고 하는 정당 기타 정치단체는 당해 참의원명부의 참의원명부등재자 1인에 대하여 600萬엔 또는 이에 상당하는 액면의 국채증서를 공탁하여야 한다.

제93조 (공직후보자에 관계되는 공탁물의 몰수) ①제86조(공직후보자의 입후보신고등) 제1항 내지 제2항 혹은 제8항 또는 제86조의4(공직후보자의 입후보의 신고등)제1항, 제2항, 제5항, 제6항 혹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가 있는 공직후보자의 득표수가 그 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수에 달하지 않을때는 前條제1항의 공탁물은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 및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국고에, 都·道·府·縣의 의회의원 또는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都·道·府·縣에, 市の 의회의원 및 長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市에, 町·村長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町·村에 귀속한다.

1. 중의원(소선거구)의원의 선거

당해 선거구역의 의원의 정수로 유효투표의 총수의 10분의1

2.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

통상선거에 있어서의 당해 선거구내의 의원의 정수로 유효투표의 총수를 나누어 얻은 수의 8분의1. 다만, 선거할 의원수가 통상선거에 있어서의 당해 선거구내의 의원의 정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선거할 의원의 수로 유효투표의 총수를 나누어 얻은 수의 8분의 1

3. 都·道·府·縣 또는 市の 의회의원의 선거

당해 선거구내의 의원의 정수(선거구가 없을 때는 의원의 정수)로 유효투표의 총수를 나누어 얻은 수의 10분의 1

4. 지방공공단체의 장의 선거

유효투표의 총수의 10분의 1

②前項의 규정은 同項에 규정하는 공직후보자의 신고가 취하되거나 또는 공직후보자가 공직후보를 사퇴한 경우(제91조제1항(공무원이 된 후보자의 취급)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포함함) 및 前項에 규정하는 공직후보자의 신고가 제86조제9항 또는 제86조의4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된 경우에 준용한다.

제94조 (참의원명부신고정당등에 관계되는 공탁물의 몰수) ①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에 대하여 300만엔에 제1호에 제기하는 수를 곱하여 얻은 금액과 600만엔에 제2호에 제기하는 수를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하여 얻은 금액이 당해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에 관계되는 제92조(공탁)제2항의 공탁물의 금액에 미달할 때에는 당해 공탁물 중 당해 공탁물의 금액으로부터 당해 합산하여 얻은 금액을 감하여 얻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공탁물은 국고에 귀속한다.

1. 당해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의 신고에 관계되는 중의원명부의 중의원명부등재자 중 당해 선거와 동시에 행해진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의 당선인으로 된 자의 수

2. 당해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에 관계되는 당선이의 수에 2를 곱하여 얻은 수
- ②제86조의2(명부에 의한 입후보의 신고등)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의원명부를 취하하거나 또는 동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각 하된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관계되는 제92조제2항의 공탁물은 국고에 귀속한다.
- ③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참의원명부신고정당등에 대하여 제1호에 제기하는 수가 제2호에 제기하는 수에 달하지 않을 때는 당해 참의원명부신고 정당등에 관계되는 제92조제3항의 공탁물중 400萬엔에 동호에 제기하는 수에서 제1호에 제기하는 수를 빼서 얻은 수를 곱하여 얻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의 공탁물은 국고에 귀속한다.
1. 당해 참의원명부신고정당등에 관계되는 당선인수에 2를 곱하여 얻은 수
 2. 제86조의3(명부에 의한 입후보신고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에 있어서의 명부등재자수
- ④제86조의3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86조의2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의원명부를 취하하거나, 또는 제86조의3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86조의2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8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각하된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관계되는 제92조제3항의 공탁물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10장 당선인

제95조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 이외의 선거에 있어서의 당선인) ①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 이외의 선거에 있어서는 유효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득표가 있어야 한다.

1.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
유효투표의 총수의 6분의 1이상의 득표
2.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
통상선거에 있어서의 당해 선거구내의 의원의 정수로 유효투표의 총수를 나누어 얻은 수의 6분의 1 이상의 득표. 다만, 선거할 의원수가 통상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할 의원수로 유효투표의 총수를 나누어 얻은 수의 6분의 1이상의 득표
3. 지방공공단체의 의회위원의 선거
당해 선거구내의 의원정수(선거구가 없을 때는 의원정수)로 유효투표의 총수를 나누어 얻은 수의 4분의 1이상의 득표
4. 지방공공단체장의 선거

유효투표의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득표

② 당선인을 정함에 있어 득표수가 같을 때는 선거회에서 선거장이 추천으로 정한다.

제95조의2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 있어서의 당선인의 수 및 당선인) ①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각 중의원 명부신고정당등(당해 선거에 있어서 유효투표의 총수의 100분의 3이상의 득표가 있었던 것에 한한다. 이하 이항, 다음 항 및 제4항에 있어서 같다)의 득표수를 하나로부터 당해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에 관계되는 중의원명부등재자(당해 선거기일에 있어서 공직후보자인 자에 한한다. 제103조(당선인이 겸직금지 직에 있는 경우 등의 특례)제4항을 제외하고, 이하 本章 및 다음 章에 있어서 같다)의 수에 상당하는 수까지의 각정수로 순차적으로 나누어 얻은 모든 몫중 그 수치가 가장 큰 것으로부터 순차로 세어서 당해 선거에 있어서 선거한 의원수에 상당하는 수로 되기까지에 있는 몫으로 각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의 득표수에 관계되는 자의 個數로써 각각의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의 당선인수로 한다.

② 前項의 경우에 있어서 2이상의 몫이 동일한 수치이기 때문에 동항의 규정에 의해서 각각의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에 관계되는 당선인의 수를 정할 수가 없을 때는 이들 몫중 당해 선거에 있어서 선거할 의원수에 상당하는 수에 이르기까지에 있을 몫을 선거회에서 선거장이 추천으로 정한다.

③ 중의원명부에 있어서 제86조의2(명부에 의한 입후보의 신고등)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중의원명부등재자에 대하여 당선인이 될 순위가 동일하게 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당선인으로 될 순위가 동일하게 된 자 사이에서 당선인이 될 순위는 당해 선거와 동시에 행해진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득표수의 당해 선거구에서의 유효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에게 관계되는 득표수에 대한 비율이 가장 큰 자로부터 순차적으로 정한다. 이 경우에 당선인이 될 순위가 동일하게 된 중의원명부등재자 중 당해 비율이 동일하게 된 때에는 그들 사이에서 당선인이 될 순위는 선거회에서 선거장이 추천으로 정한다.

④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각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의 신고에 관계되는 중의원명부등재자중 그들 사이에 있어서의 당선인으로 될 순위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당해 각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의 선거인의 수에 상당하는 수의 중의원명부등재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⑤ 제1항, 제2항 및 전항의 경우에, 당해 선거와 동시에 행해진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의 당선인이 된 중의원명부등재자가 있을 때에는 당해 중의원명부등재자는 중의원명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이들 규정을 적용한다.

⑥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 대하여 준용

한다. 이 경우에 이들 규정중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은 “참의원명부신고정당등”으로, 제1항중 “(당해 선거에 있어서 유효투표의 총수의 100분의 3이상의 득표가 있었던 것에 한한다. 이하 이항, 다음 항 및 제4항에 있어서 같다)의 득표수”는 “의 득표수”로, “중의원명부등제자”는 “참의원명부등제자”로, 제4항중 “중의원명부등제자”는 “참의원명부등제자”로 대체한다.

제96조 (당선인의 갱정결정) 제206조(당선효력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제207조(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송)제1항 또는 제208조(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소송의 결과, 재선거를 행하지 않고 당선인 (중의원비례대표선출위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에 관계되는 당선인수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위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참의원명부신고정당등에 관계되는 당선인수 또는 당선인. 이하 본조에 있어서 같음.)을 정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즉시 선거회를 열어 당선인을 정하여야 한다.

제97조 (중의원비례대표선출위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위원선거 이외의 선거에 있어서의 당선인의 繰上보충) ①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이외의 선거에 대하여 당선인이 사망자인 때 또는 제99조(피선거권의 상실), 제103조(당선인이 겸직금지직에 있는 경우 등의 특례)제2항 혹은 제4항이나 제104조(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원 또는 長의 당선인이 청부등을 증지하지 않는 경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을 상실한 때는 즉시 선거회를 열어 제95조제1항 단서(법정득표수)의 규정에 의한 득표자로 당선인으로 되지 않는 자(중의원소선거구선출위원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長의 선거에 대하여는 동조제2항(동점자의 경우)의 규정의 적용을 받은 득표자로 당선인으로 되지 않은 자) 중에서 당선인을 정하여야 한다.

②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원선거에 대하여, 제109조(재선거)제5호나 제6호의 사유가 그 선거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제9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득표자로 당선인으로 되지 않은 자가 있을 때 또는 이들 사유가 그 선거기일로부터 3개월 경과후에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同條제2항의 규정적용을 받은 득표자로 당선인으로 되지 않은 자가 있을 때는 즉시 선거회를 열어 그 자중에서 당선인을 정하여야 한다.

③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장의 선거에 대하여 제109조제5호 또는 제6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제95조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은 득표자로 당선인으로 되지 않은자가 있을 때는 즉시 선거회를 열어 그 자중에서 당선인을 정하여야 한다.

제97조의2 (중의원비례대표선출위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위원 선거에 있어서의 당선인의 繰上보충) ①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 대하여 당선인이 사망자인

경우, 제99조(피선거권의 상실) 혹은 제103조(당선인이 결직금지의 직에 있는 경우 등의 특례)제2항 혹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을 상실한 경우 또는 제251조(당선인의 선거범죄에 의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당선인이 관계되는 중의원명부의 중의원명부등재자로 당선인으로 되지 않는 자가 있을 때는 즉시 선거회를 개최하여 그 자중에서 그 중의원명부에 있어서의 당선인으로 될 순위에 따라 당선인을 정하여야 한다.

②제95조의2(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선거에 있어서 당선인)제5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은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항중 “중의원명부”는 “참의원명부”로, “중의원명부등재자”는 “참의원명부등재자”로 대체한다.

제98조 (피선거권의 상실과 당선인의 결정등) ①前제3조의 경우에 있어서 제95조제1항 단서(법정득표수)의 규정에 의한 득표수, 동조제2항(동점자의 경우)의 규정의 적용을 받은 득표자, 중의원명부등재자 또는 참의원명부등재자로 당선인으로 되지 않는 자가 그 선거기일후에 있어서 피선거권을 갖지않게 된 때 또는 제251조의2(총괄주재자, 출납책임자등의 선거범죄에 의한 공직후보자등이었던 자의 입후보의 금지)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선거에 관계되는 선거구(선거구가 없을 때에는 선거가 행해지는 구역)에서 행해지는 당해 공직에 관계되는 선거에 있어서 공직후보자가 되거나 혹은 공직후보자가 될 수 없는 자로 된 때에는 이 자를 당선인으로 정할 수 없다.

②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에 관계되는 제96조(당선인의 개정결정) 또는 제97조(당선인의 繰上보충)의 경우에 후보자신고정당이 신고한 후보자이었던 자중, 제95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득표자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은 득표자로서 당선인으로 되지 않았던 자에 대하여 제명, 탈당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신고정당에 소속하는 자가 아니게 된 내용의 신고가 문서로 제96조 또는 제97조에 규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날까지 선거장에게 행해지고 있을 때에는 이를 당선인으로 정할 수 없다.

③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 관계되는 제96조 또는 前條의 경우에 있어서 중의원명부등재자 또는 참의원명부등재자로 당선인으로 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제명, 탈당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당해 중의원명부 신고정당등 또는 참의원명부신고정당등에 소속하는 자가 아니게 된 취지의 신고가 문서로 이들 條에 규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前日까지에 선거장에게 되어 있는 때는 이 자를 당선인으로 정할 수 없다. 중의원명부 또는 참의원명부를 취하하는 취지의 신고가 문서로 이들 條에 규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前日까지에 선거장에게 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중의원명부의 중의원명부등재자 또는 참의원명부의 참

의원명부등재자로서 당선인이 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④제86조(공직후보자의 입후보의 신고등)제10항의 규정은 제2항의 신고에 대하여, 제86조의2(명부에 의한 입후보의 신고등)제8항 및 제10항 후단(이들 규정을 제86조의3(명부에 의한 입후보의 신고등)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전항의 신고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99조 (피선거권의 상실에 의한 당선인의 실격) 당선인은 그 선거기일후에 있어서 피선거권을 갖지 않게 된 때는 당선을 상실한다.

제100조 (무투표당선) ①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제86조(공직후보자의 입후보의 신고등)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었던 후보자가 1인일 때 또는 1인으로 된 때에는 투표를 행하지 않는다.

②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제86조의2(명부에 의한 입후보의 신고등)제1항 혹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계되는 중의원명부등재자의 총수가 그 선거에서 선거할 의원의 수를 초과하지 않을 때 혹은 초과하지 않게 된 때 또는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이 하나일 때 혹은 하나로 된 때에는 투표를 행하지 않는다.

③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제86조의3(명부에 의한 입후보의 신고등)제1항 또는 동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86조의2제9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계되는 참의원명부등재자의 총수가 그 선거에서 선거할 의원의 수를 초과하지 않을 때 혹은 초과하지 않게 된 때에는 투표를 행하지 않는다.

④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 혹은 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 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제86조의4(공직후보자의 입후보의 신고등)제1항, 제2항 혹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었던 후보자의 총수가 그 선거에서 선거할 의원의 수를 초과하지 않을 때 혹은 초과하지 않게 된 때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동조제1항, 제2항, 제6항 혹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후보자가 1인일 때 혹은 1인으로 된 때에는 투표를 행하지 않는다.

⑤前各項 또는 제27조(동시선거의 경우의 무투표당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를 행하지 않게 된 때는 선거장은 즉시 그 취지를 당해 선거의 각 투표관리자에게 통지하고 동시에 이것을 고시하며, 또한 당해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4항(제2항의 규정의 적용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가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와 동시에 행해지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제127조의 경우에 있어서는 선거장은 그 선거기일로부터 5일이내에 선거회를 개최하여 당해 공직후보자를 당선인으로 정하여야 한다.

⑦전항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제86조의2제1항 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계되는 중의원명부등재자의 총수가 그 선거에서 선거할 의원의 수를 초과하지 않을 때 또는 초과하지 않게 된 때에는 선거장은 다음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었던 날 또는 그 익일에 선거회를 열어 당해 중의원명부등재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95조의2(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당선인)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전항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제8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이 하나일 때 또는 하나로 된 때에는 선거장은 다음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었던 날 또는 그 익일에 선거회를 열어 당해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의 신고에 관계되는 중의원명부등재자중 그 중의원명부에서 당선인으로 될 순위에 따라 그 선거에서 선거할 의원의 수에 상당하는 수의 중의원명부등재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95조의2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前3項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공직후보자의 피선거권의 유무는 선거입회인의 의견을 들어 선거장이 결정하여야 한다.

제101조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에서의 당선인 결정의 경우의 보고·고지 및 고시) ①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에서 당선인이 결정되어어진 때는 선거장은 지체없이 당선인의 주소, 성명, 득표수 및 그 당선인의 후보자신고정당의 명칭, 그 선거에서의 각 후보자의 득표총수 기타 선거의 경과를 당해 都·道·府·縣選舉管理委員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가 있는 때는 당해 都·道·府·縣選舉管理委員會는 지체없이 당선인에게는 당선취지를, 후보자신고정당에게는 당선인의 주소 및 성명을 고지하여야 하며 또한 당선인의 주소, 성명 및 당해 당선인의 후보자신고정당의 명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중의원의원선거에 있어서 소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와 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는 제1항의 보고를 받은 都·道·府·縣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당해 당선인의 주소, 성명, 득표수 및 당해 당선인의 후보자신고정당의 명칭, 그 선거에 있어서 각 후보자의 득표총수 기타 선거의 경과를 중앙선거관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가 있는 때는 중앙선거관리회는 지체없이 당해 당선인의 주소, 성명, 득표수 및 당해 당선인의 후보자신고정당의 명칭, 그 선거에 있어서 각 후보자의 득표수 기타 선거의 경과를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의 선거장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1조의2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서의 당선인결정의 경우의 보고·고지 및 고시) ①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에 관계되는 당선인수 및 당선인이 정해진 때는 선거장은 즉시 명부신고정당등에 관계되는 득표수, 당선인수 그리고 당선인의 주소 및 성명 기타 선거의 경과를 중앙선거관리회에 보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가 있는 때는 중앙선거관리회는 즉시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에게는 득표수, 당선인수 그리고 당선인의 주소 및 성명을, 당선인에게는 당선인의 취지를 고지하고, 또한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에 관계되는 득표수, 당선인수 그리고 당선인의 주소 및 성명을 고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③제97조의2 (명부신고정당등에 관계되는 당선인의 조상보충) 또는 제112조제2항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이 없게 된 경우의 조상보충)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2항중 "득표수, 당선인수 및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한다.

④전3항의 규정은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중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은 "참의원명부신고정당등"으로, 전항중 "제112조제2항"은 "제112조제4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동조제2항"으로 한다.

제101조의3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 이외의 선거에서의 당선인결정의 경우의 보고·고지 및 고시) ①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 이외의 선거에서 당선인이 결정되어진 때는 선거장은 지체없이 당선인의 주소, 성명, 득표수 및 그 선거에서의 각 공직후보자의 득표총수 기타 선거의 경과를 당해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가 있는 때는 당해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인의 뜻을 고지하여야 하며 또한 당선인의 주소 및 성명을 고시하여야 한다. 市·町·村의회의 의원 또는 장의 선거의 경우에는 동시에 都·道·府·縣의 선거관리위원회에게도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2조 (당선등의 효력의 발생) 당선인의 당선의 효력(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서는 당선인의 수의 결정의 효력을 포함한다)은 제101조제2항(당선인의 고시), 제101조의2제2항(명부신고정당등의 당선인의 수 및 당선인의 고시, 동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발생한다.

제103조 (당선인이 겸직금지의 직에 있는 경우등의 특례) ①당선인으로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거에 관계되는 의원 또는 장과 겸할 수 없는 직에 있는 자가 제101조제2항(당선인결정의 고지), 제101조의2제2항(명부신고정당등의 당선인의 수 및 당선인의 결정의 고지)(동조제4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는 같다) 또는 제101조의3제2항(당선인결정이 고지)의 규정에 의하여 당

선의 고지를 받은 때는 그 고지를 받은 날에 그 직을 사퇴한 것으로 본다.

②제96조(당선인의 경정결정), 제97조(당선인의 조상보충), 제97조의2(명부신고정 당등에 관계되는 당선인의 조상보충) 또는 제112조(의원 또는 자이 없게된 경우 등의 조상보충)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으로 정해진 자로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거에 관계되는 의원 또는 장과 겸할 수 없는 직에 있는 자가 제101조제2항, 제101조의2제2항 또는 제10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고지를 받은 때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회)에 대하여 그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직을 사퇴한 취지의 신고를 하지 않을 때는 그 당선을 상실한다.

③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동항에 규정하는 공무원이 그 퇴직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퇴직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신고일에 당해 공무원인 것을 사퇴한 것으로 본다.

④하나의 선거에 대하여 제96조, 제97조, 제97조의2 또는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으로 정해진 자가 다른 선거에 대하여 제86조(공직후보자의 입후보의 신고 등) 제1항내지 제3항 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일 때, 제86조의2(명부에 의한 입후보신고 등) 제1항 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관련한 중의원명부등재자인 때, 제86조의3(명부에 의한 입후보신고 등) 제1항 또는 동조제2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제8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계되는 중의원명부등재자인 때 또는 제86조의4(공직후보자의 입후보의 신고 등) 제1항, 제2항, 제5항, 제6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는 제91조(공무원으로 된 후보자의 취급) 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01조제2항, 제101조의2제2항 또는 제10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선거의 당선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회)에 그 당선을 사퇴할 취지의 신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다른 선거에 대하여 그 공직후보자의 후보자신고가 취하되거나, 공직후보자임을 사퇴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또는 그 공직후보자인 중의원명부등재자 또는 참의원명부등재자가 아니게 되거나 또는 그 당선을 상실한다.

제104조 (청부등을 중지하지 않는 경우의 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원 또는 장의 당선인의 실격) 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원 또는 장의 선거에 있어서의 당선인으로써 당해 지방공공단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92조의2(의원이 청부인등으로 되는 것의 금지) 또는 제142조(장이 청부인등으로 되는 것의 금지)에 규정하는 관계를 갖는 당해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제101조의3제2항(당선인 결정의 고지)의 규정에 따라 당선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동법제92조의2 또

는 제142조에 규정하는 관계를 갖지 않게 된 취지의 신고를 하지 않을 때는 그 당선증을 상실한다.

제105조 (당선증서의 교부 및 고시) ①제103조(당선인이 겸직금지의 직에 있는 경우의 특례) 제2항 및 제4항 그리고 전조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회)는 제102조(당선등의 효력의 발생)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의 당선의 효력이 발생한 때는 즉시 당해 당선인에게 당선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03조제2항 및 제4항 그리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증을 상실하지 않은 당선인에 대해서는 당해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에서는 중앙선거관리회)는 제103조제2항 및 제4항 그리고 전조에 규정하는 신고가 있을 때는 즉시 당해 당선인에게 당선증서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증서를 교부한 때는 당해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에서는 중앙선거관리회)는 그 취지 그리고 당선인의 주소 및 성명을 고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106조 (당선인이 없는 경우 등의 보고 및 고시) ①당선인이 없을 때 또는 당선인이 그 선거에 있어서의 의원정수에 달하지 않을 때는 선거장은 즉시 그 취지를 당해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에서는 중앙선거관리회)에 보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가 있는 때는 당해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에서는 중앙선거관리회)는 즉시 그 취지를 고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107조 (선거 및 당선의 무효의 경우의 고시) 제15장(쟁송)의 규정에 의한 쟁송의 결과, 선거나 당선이 무효로 된 때 또는 제210조제1항(총괄주재자, 출납책임자 등의 선거범죄에 의한 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송)의 규정에 의한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것, 당해 소송에 대한 소를 각하하거나 소장을 각하하는 재판이 확정된 것 또는 당해 소송이 취하된 것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또는 제251조(당선인의 선거범죄에 의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는 당해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회)는 즉시 그 취지를 고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108조 (당선등에 관한 보고) ①전3조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선

거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회)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즉시 그 취지를 보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1. 중의원의원, 참의원의원 및 都·道·府·縣지사의 선거에 있어서는 자치대신에게
2. 都·道·府·縣의회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都·道·府·縣知事에게
3. 市·町·村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都·道·府·縣知事, 都·道·府·縣 선거관리위원회에게
4. 市·町·村의회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都·道·府·縣知事, 都·道·府·縣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市·町·村장에게

②자치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의원의 선거에 대하여 제105조(당선증서의 교부 및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증서를 교부한 취지의 보고를 받은 때는 즉시 그 취지 그리고 당선인의 주소 및 성명을 내각총리대신에게 보고하고, 내각총리대신은 즉시 이것을 각각 중의원의장 또는 참의원의장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11장 특별선거

제109조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 또는 지방공공단체장의 재선거)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재임기간을 같이 하는 자를 말함) 또는 지방공공단체장의 선거에 대하여 다음의 각호에 열거한 사유의 1이 발생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제96조(당선인의 경정결정), 제97조(당선인의 조상보충) 또는 제98조(피선거권의 상실과 당선인의 결정)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을 결정할 수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당해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일을 결정하여 이것을 고시하고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인에 관하여 다음에 열거한한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또는 제113조(보결선거) 또는 제114조(장이 결원일 경우 및 퇴직신청이 있을 경우의 선거)의 규정에 의한 선거기일을 고시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선인이 없을 때 또는 당선인이 그 선거에 있어서의 의원정수에 미달한 때
2. 당선인이 사망자인 때
3. 당선인이 제99조(피선거권의 상실의 경우), 제103조(당선인이 겸직금지 직에 있는 경우등의 특례) 제2항 및 제4항 또는 제104조(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원 또는 장의 당선인이 講負를 증지하지 않는 경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을 상실하였을 때

4. 제202조(선거의 효력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제203조(선거의 효력에 관한 소송), 제204조(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송), 제206조(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207조(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송) 또는 제208조(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송)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소송의 당선인이 없게 되거나 또는 당선인이 그 선거에 있어서의 의원정수에 미달한 때

5. 제210조제1항(총괄주재자, 출납책임자등의 선거범죄에 의한 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송등) 또는 제211조(총괄주재자, 출납책임자등의 선거범죄에 의한 당선무효의 소송)의 결과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로 된 때 또는 제2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을 때, 당해 소송에 관한 소를 각하하거나 또는 소장을 각하하는 재판이 확정되거나 또는 당해 소송이 취하됨으로써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로 되었을 때

6. 제251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로 되었을 때

제110조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의회 의원의 재선거) ①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재임기간을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 또는 지방공공단체의회의원의 선거에 대하여 전조 각호에 열거된 사유중 1이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제96조(당선인의 경정결정), 제97조(당선인의 조상보충), 제97조의2(각부신고정당등에 관계되는 당선인의 조상보충) 또는 제98조(피선거권의 상실과 당선인의 결정등)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을 정할 수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당해 선거의 당선인의 부족수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선거에서는 중앙선거관리회)는 전조의 규정의 예에 의하여 재선거를 하여야한다.

1.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경우에는 제113조제1항(보결선거)에서 말하는 그 의원의 결원수가 총선거에 있어서의 의원정수의 4분의 1를 초과하는 때

2.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재임기간을 같이하는 자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제113조제1항에서 말하는 그 의원의 결원의 수가 통틀어 통상선거에 있어서의 의원의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게 될 때

3. 都·道·府·縣의회의원의 경우에는 동일선거구에 있어서 제113조제1항에서 말하는 의원의 결원의 수와 통틀어서 2인이상에 달할 때, 다만, 의원정수가 1인인 선거구에 있어서는 1인에 달할 때.

4. 市·町·村의회의원의 경우에는 제113조제1항에서 말하는 그 의원의 결원의 수와 통틀어 당해 선거구에 있어서의 의원정수(선거구가 없을 때는 의원정수)의 6분의 1을 초과함에 이르렀을 때.

②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재임기간을 같이하는 자를

말한다.)의 선거에 대하여 제204조(선거의 효력에 관한 소송) 또는 제209조(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의 선거무효의 결정, 재결 또는 판결)의 규정에 의한 소송의 결과,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로 되었을 때는 중앙선거관리회는 전조의 예에 의하여 재선거를 행하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③지방공공단체의 의회위원의 선거에 대하여 제202조(선거의 효력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제203조(선거의 효력에 관한 소송) 또는 제209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소송의 결과, 당선인이 없어지거나 또는 당선인이 그 선거에 있어서 의원의 정수에 달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당해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조의 예에 의하여 재선거를 행하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④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재임기간을 같이하는 자를 말한다.)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의회위원의 선거에 있어서 그 당선인의 부족수가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아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선거가 행해질 때는 동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선거와 동시에 재선거를 행한다. 다만, 제1항에 규정하는 사유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선거기일의 고시가 있는 후에(시·정·천의 의회위원의 선거에 대해서는 당해 市·町·村의 다른 선거기일의 고시일전 10일이내) 발생한 것일 때는 이와 무관하다.

1.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경우에는 재임기간을 달리하는 비례대표선출위원의 선거가 행해질 때

2. 지방공공단체의회의위원의 경우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구가 없을 때는 그 구역)에 있어서 동일한 지방공공단체의 다른 선거가 행해질 때

⑤전항의 재선거의 기일은 동항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행하는 선거의 기일에 의한 다.

⑥제4항제2호의 동일한 지방공공단체의 다른 선거가 지방공공단체장의 임기만료에 의한 것일 때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시에 행해야할 지방공공단체의회의위원의 재선거에 대한 제34조(기타의 선거)제2항 본문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동항 본문 중 “이를 행하게 하는 사유”라고 되어 있음은 “당해 지방공공단체장의 임기”로,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음은 “만료하는 것으로 된다.”로 한다.

제111조 (의원 또는 장이 결원된 경우등의 통지) ①중의원의원, 참의원의원 또는 지방공공단체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의회위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장이 결원 또는 그의 퇴직의 신청이 있던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그의 취지를 통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1.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및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에 대해서는 국회법(1947년 법률 제79호) 제110조(의원의 결원인 경우의 의장의 통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결원을 발생한 취지의 통지가 있던 날로부터 5일이내에 내각총리대신은 자치대신에게 통지하고, 자치대신은 都·道·府·縣知事를 경유하여 都·道·府·縣선거관리위원회에게

2.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및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에 대해서는 국회법제 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결원을 발생한 취지의 통지가 있던 날로부터 5일이내에 내각총리대신은 자치대신에게 통지하고 자치대신은 중앙선거관리회에

3. 지방공공단체의회의원에 대해서는 그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그의 지방공공단체의회의 의장으로부터 당해 都·道·府·縣 또는 市·町·村의 선거관리위원회에게

4. 지방공공단체장에 대하여는 그가 없게 된 경우에는 없게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로부터 그 퇴직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5일이내에 지방공공단체의회의 의장으로부터 당해 都·道·府·縣 또는 市·町·村의 선거관리위원회에

②전항의 통지를 받은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중앙선거관리회는 제112조(의원 또는 장이 없게된 경우 등의 조상보충)의 규정의 적용이 있다고 인정할 때는 의원이 결원으로 된 취지 또는 장이 없거나 그 퇴직신청이 있는 취지를 즉시 당해 선거장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③지방자치법제91조제4항(의원정수의 증가)의 규정에 의하여 市·町·村의회의원의 정수를 증가한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조례 시행일로부터 5일이내에 그 市·町·村의회의장으로부터 당해 市·町·村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취지를 통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112조 (의원 또는 장이 없게된 경우 등의 조상보충) ①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5조제2항(동점자의 경우)의 규정의 적용을 받은 득표자으로써 당선인이 되지 않은 자가 있는 때에는 선거회를 개최하여 그 자 중에서 당선인을 정하여야 한다.

②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의원과 관련한 중의원명부의 중의원명부등재자으로써 당선인이 되지 아니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 중에서 그 중의원명부상으로 당선인이 되어야 할 순위에 따라 당선인을 정하여야 한다.

③제95조의 2(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에서의 당선인) 제5항의 규정은 전항에 경우에 준용한다.

④제2항의 규정은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결원이 발행한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동항 중 “중의원명부”는 “참의원명부”로, “중의원명부등재자”는 “참의원명부등재자”로 한다.

⑤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지방공공단체의회의원의 결원이 당해 의원의 선거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제95조제1항 단서(법정득표수)의 규정에 의한 득표자로 당선인으로 되지 않은 자가 있을 때 또는 당해 의원의 선거기일로부터 3개월 경과후에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동조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은 득표자로 당선인으로 되지 않은 자가 있을 때는 선거회를 열어 그 자중에서 당선인을 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⑥지방공공단체장이 없거나 또는 그 퇴직신청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제95조제2항의 규정을 받은 선거자로 당선인으로 되지 않은 자가 있을 때는 선거회를 열어, 그 자중에서 당선인을 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⑦제98조(피선거권의 상실과 당선인의 결정등)의 규정은 전 각항의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⑧선거장은 전조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선거회를 열어 당선인을 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113조 (보결선거 및 증원선거) ①중의원의원, 참의원의원(재임기간을 같이 하는 자를 말함.) 또는 지방공공단체의회의원의 결원에 대하여 제111조(의원의 결원의 경우의 통지)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 있어서 전조제1항 내지 제5항, 제7항 또는 제8항에 의하여 당선인을 정할 수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원결원수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게 된 때는 당해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회)는 선거기일을 정하여 이것을 고시하고 보결선거를 행하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만 동일인에 관하여 제109조(재선거) 또는 제110조(재선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기일을 고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의 경우에는 1인에 달한 때.

2.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경우에는 제110조제1항에서 말하는 그 당선인의 부족수가 총선거에서의 의원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한 때

3.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재임기간을 같이 하는 자를 말함.)의 경우에는 제110조제1항에서 말하는 그 당선인의 부족수와 통틀어 통상선거에 있어서의 의원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게 된때

4.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재임기간을 같이 하는 자를 말함.)의 경우에는 통상선거에 있어서의 당해 선거구의 의원정수의 4분의1을 초과하게 된 때

5. 都·道·府·縣의회의원의 경우에는 동일 선거구에 있어서 제110조제1항에서 말하는 그 당선인의 부족수와 통틀어 2인이상에 달한때 다만, 의원정수가 1인인 선거구에 있어서는 1인에 달한때

6. 市·町·村的회의원의 경우에는 제110조제1항에서 말하는 그 당선인의 부족수와

통틀어 당해 선거구에 있어서의 의원정수(선거구가 없을 때는 의원정수)의 6분의1을 초과하게 된다

②제111조제3항(정수증가의 통지)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市·町·村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일을 정하여 이것을 고시하고 중원선거를 행하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③참의원의원(재임기간을 같이 하는 자를 말함.) 또는 지방공공단체의회의원의 결원의 수가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아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선거가 행하여진 때는 동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선거와 동시에 보궐선거를 행한다. 다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선거기일의 고시가 있는 후에(市·町·村의회의원의 선거에 대하여는 당해 市·町·村의 다른 선거의 기일의 고시일전 10일이내에)당해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회)가 제111조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경우에는 재임기간을 달리하는 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가 행하여질 때

2.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의 경우에는 당해 선거구에 있어서 재임기간을 같이 하는 선거구선출의원의 재선거 또는 재임기간을 달리하는 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가 행하여질 때

3. 지방공공단체의회의원의 경우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구가 없을 때는 그 구역)에 있어서 동일 지방공공단체의 다른 선거가 행하여질 때

④전항의 보궐선거기일은 동항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선거기일에 의한다.

⑤제110조제6항의 규정은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공단체의회의원의 보궐선거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14조 (장이 없게된 경우 및 퇴직신청이 있는 경우의 선거) 지방공공단체장이 없게 되거나 또는 그 퇴직신청이 있는 것에 의하여 제111조(장이 없는 경우등의 통지)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제112조(장이 없는 경우등의 조상보충)제6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을 정할 수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당해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일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고, 선거를 행하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만 동일인에 관하여 제109조(재선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기일을 고시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5조 (합병선거 및 재임기간을 달리하는 의원의 선거의 경우의 당선인) ①다음 각호에 게시하는 선거를 각호의 구분마다 동시에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의 선거(참의원의원의 경우에는 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마다)로써

합병하여 행한다.

1. 참의원의원의 경우에는 그 통상선거,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

2. 지방공공단체의회의원의 경우에는 동일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그 재선거, 보궐선거 또는 증원선거

②재임기간을 달리하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에 대하여 선거를 합병하여 행한 경우에 있어서는 각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에 관계되는 당선인의 수 중 제95조의2(명부신고정당등에 관계되는 당선인의 수 및 당선인) 제6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동 조제1항 및 제2항중 “당해 선거에 있어서 선거할 의원의 수”로 되어 있는 것은 “당해 선거에 있어서 선거할 재임기간이 긴 의원의 수”로 하여, 이들 규정을 적용한 경우에 있어서의 각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에 관계되는 당선인수를 각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에 관계되는 재임기간이 긴 의원의 선거의 당선인수로 한다.

③재임기간을 달리하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에 대하여 선거를 합병하여 행한 경우에 있어서 제100조(무투표당선) 제3항의 규정의 적용이 있을 때는 추천에 의하여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에 관계되는 재임기간이 긴 의원의 선거의 당선인의 수를 정한다.

④재임기간을 달리하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에 대하여 선거를 합병하여 행한 경우에 있어서는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의 신고에 관계되는 중의원명부등재자중 그들의 사이에 있어서의 당선인으로 될 순위에 따라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당해 명부신고정당등에 관계되는 재임기간이 긴 의원의 선거의 당선인수에 상당하는 수의 명부등재자를 재임기간이 긴 의원의 선거의 당선인으로 한다.

⑤재임기간을 달리하는 참의원(선거구선출)선거의원에 대하여 선거를 합병해서 행한 경우에 있어서는 제95조제1항 단서(법정득표수)의 규정에 의한 득표자중에서 득표가 가장 많은 자로부터 순차로 재임기간이 긴 의원의 당선인을 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⑥재임기간을 달리하는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에 대하여 선거를 합병하여 행한 경우에 있어서 제100조제4항의 규정의 적용이 있을 때는 추천에 의하여 어느 후보자로 재임기간이 긴 의원의 선거의 당선인으로 하는가를 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⑦제100조제9항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있어서의 재임기간이 긴 의원의 선거의 당선인의 결정 및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⑧재임기간을 달리하는 참의원의원에 대하여 선거를 합병하여 행한 경우에 있어서 재임기간이 긴 선거의 의원의 당선인 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제97조(당선인의 조상보충), 제97조의 2(명부신고정당등에 관계되는 당선인의 조상보충) 또는 제112조((의원 또는 장이 없게 된 경우 등의 조상보충)에 규정하는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들 규정에 의하여 조상보충을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

거에 있어서는 당해 의원 또는 당선인에 관계되는 중의원명부의 중의원명부등재자로 재임기간이 짧은 의원 또는 그 당선인이 있을 때는 그 자증에서 그 중의원명부에 있어서는 당선인으로 될 순위에 따라, 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에 있어서 선거된 재임기간이 짧은 의원 또는 그 당선인이 있을 때는 그 자증에서 당선인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16조 (의원 또는 당선인이 모두 없는 경우의 일반선거) 지방공공단체의회의원 또는 그 선거에 있어서는 당선인에 대하여 제110조(재선거) (선거의 일부무효에 관계되는 부분을 제외함.) 또는 제113조(보결선거 및 증원선거)에 규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의원 또는 당선인이 모두 없을 때 또는 모두 없게 된 때는 이들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일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고, 일반선거를 행하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117조 (설치선거) 市·町·村이 설치된 경우에 있어서는 市·町·村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市·町·村의 의회의원 및 장에 대하여 각각 선거기일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고 일반선거 및 장의 선거를 행하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118조 삭제

제12장 선거를 동시에 행하기 위한 특례

제119조 (동시에 행하는 선거의 범위) ①都·道·府·縣의회의원의 선거 및 都·道·府·縣知事의 선거 또는 市·町·村의회의원의 선거 및 市·町·村장의 선거는 각각 동시에 행할 수 있다.

②都·道·府·縣선거관리위원회는 제120조제1항(市·町·村의 선거를 행하는 경우의 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제108조(당선인이 없는 경우, 선거 및 당선무효등의 경우의 보고)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기하여 당해 市·町·村의 선거(市·町·村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말함. 본장중 이하 같음.)를 都·道·府·縣의 선거(都·道·府·縣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말함. 본장중 이하 같음.)와 동시에 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기일은 都·道·府·縣선거관리위원회가 고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120조 (선거를 동시에 행하는가 여부의 결정절차) ①市·町·村선거관리위원회는 市·町·村의 의회의원 또는 장의 선거를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대해서는 임기만료일전 60일까지,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에 의한 선거에 대해서는 제108조(당선인이 없는 경우, 선거 및 당선무효등의 경우의 보고)제1

항제3조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를 행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취지를 都·道·府·縣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②都·道·府·縣선거관리위원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제10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가 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市·町·村의 선거를 都·道·府·縣의 선거와 동시에 행하는가 여부를 당해 市·町·村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121조 (선거의 동시시행결정까지의 市·町·村의 선거의 시행정지) 市·町·村의 선거는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을 때까지의 사이에는 행할 수 없다. 다만 동조제2항의 기간내에 통지가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2조 (투표 및 개표의 순서)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시에 선거를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투표 및 개표의 순서는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있어서는 都·道·府·縣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123조 (투표, 개표 및 선거회에 관한 규정의 적용) ①제119조(선거의 동시시행)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시에 선거를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36조(1인 1표) 및 제62조(개표입회인)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정에 각 선거를 통틀어 적용한다.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시에 선거를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선거회의 구역이 동일할 때는 제76조(선거입회인)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선거회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124조 (조상투표) 都·道·府·縣의 선거와 市·町·村의 선거를 동시에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56조(조상투표)의 규정에 의한 투표의 기일은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都·道·府·縣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125조 (조정투표) ①都·道·府·縣의 선거와 市·町·村의 선거를 동시에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57조제1항(조정투표)에 규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都·道·府·縣선거관리위원회는 동항의 규정의 예에 의하여 다시 투표를 행하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市·町·村선거관리위원회는 都·道·府·縣의 선거의 선거장을 경유하여 都·道·府·縣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취지를 신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126조 (장의 후보자가 1인으로 된 경우의 서너기일의 정지) ①都·道·府·縣의 선거와 市·町·村장의 선거를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市·町·村장의 선거에 대하여 제86조의 4의 제7항(장의 후보자가 1인으로 된 경우)에 규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市·町·村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그 취지를 都·道·府·縣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②都·道·府·縣知事의 선거와 市·町·村장의 선거를 동시에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都·道·府·縣知事의 선거에 대하여 제86조의 4의 제7항에 규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또한 市·町·村장의 선거에 대해서도 또한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의하여 동조제7항에 규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때는 都·道·府·縣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일을 정하고 그 보고가 있는 날(2이상의 보고가 있는 때는 최후의 보고가 있는날)로부터 7일이내에 선거를 동시에 행하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기일은 적어도 5일전에 고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③제119조(선거의 동시시행)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시에 선거를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지방공공단체장의 선거에 대하여 제86조의 4의 제7항에 규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지방공공단체장의 선거에 대하여 제86조의 4의 제7항에 규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령으로 정한다.

제127조 (부투표당선) 제119조(선거의 동시시행)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시에 선거를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100조(무투표당선) 제4항에 규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당해 선거에 관계되는 투표는 행하지 않는다.

제128조 삭제

제13장 선거운동

제129조 (선거활동의 기간) 선거운동은 각선거에 대하여 각각 제86조(공직후보자의 입후보의 신고) 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후보자의 신고, 제86조의 2(명부에 의한 입후보의 신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의원명부의 신고 또는 제86조의 3(명부에 의한 입후보의 신고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의원명부의 신고 또는 제86조의 4(공직후보자의 입후보자신고) 제1항, 제2항, 제5항, 제6항 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후보자의 신고가 있는 날로부터 당해 선거기일의 전일까지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제130조 (선거사무소의 설치 및 신고) ①선거사무소는 다음 각호에 열거한 자가 아닌 설치할 수 없다.

1.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는 공직후보자 및 그 추천신고자(추천신고자가 수인인 때는 그 대표자. 이 조, 다음 조 및 제139조(음식물의 제공금지)에 있어서는 이와 같다) 또는 후보자신고정당

2.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는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

3.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는 참의원명부신고정당등

4. 전 3호에 열거한 선거이외의 선거에 있어서는 공직후보자 또는 그 추천신고자

② 전항 각호에 열거한 자가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市·町·村의 선거이외의 선거에 대해서는 당해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중의원비례대표선거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거의원의 선거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회 및 당해 선거사무소가 설치된 都·道·府·縣선거관리위원회) 및 당해 선거사무소가 설치된 市·町·村선거관리위원회에, 市·町·村의 선거에 대해서는 당해 市·町·村선거관리위원회에 즉시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선거사무소에 이동이 있는 때 도 또한 같다.

제131조 (선거사무소의 수) ① 전조제1항 각호에 열거한 자가 설치하는 선거사무소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곤란등의 사정이 있는 구역에서는 제1호의 선거사무소의 경우는 3개까지, 제4호의 선거사무소의 경우는 5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

1. 중의원(소선거선출)의원선거의 경우의 선거사무소는 후보자 또는 그 추천신고자가 설치하는 경우는 후보자 1인 당 1개소, 후보자신고정당이 설치하는 경우는 그 후보자신고정당이 신고한 후보자의 선거구당 1개소

2.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의 경우의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의 선거사무소는 都·道·府·縣에 1개소

3.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의 경우의 참의원명부신고정당등의 선거사무소는 都·道·府·縣에 1개소

4. 중의원(선거구선출)의원 또는 都·道·府·縣지사선거의 경우의 선거사무소는 그 공직후보자 1인당 1개소

5. 지방공공단체의회의 의원 또는 市·町·村장선거의 경우의 선거사무소는 그 공직후보자 1인당 1개소

② 전항 각호의 선거사무소에 대하여는 당해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자는 당해 선거사무소마다 1일에 대하여 1회를 초과하여 이를 이동(폐지에 수반하는 설치를 포함함.)할 수 없다.

③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선거사무소에 대하여는 당해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중의원비례대표선거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거의원의 선거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회)가 교부하는 표찰을 선거사무소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 입구에 게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132조 (선거당일의 선거사무소의 제한) 선거사무소는 제129조(선거운동의 기간)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거당일에 있어서도 당해 투표소를 설치한 장소의 입구에서 300

미터 이외의 구역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133조 (휴게소등의 금지) 휴게소 기타 이에 유사한 설비는 선거운동을 위해 설치할 수 없다.

제134조 (선거사무소의 폐쇄명령) ①제130조(선거사무소의 설치)제1항, 제131조제3항 (선거사무소의 표시) 또는 제132조(선거당일의 선거사무소의 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소의 설치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市·町·村의 선거이외의 선거에 대해서는 당해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위원의 선거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회 또는 당해 선거사무소가 설치된 都·道·府·縣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당해 선거사무소가 설치된 市·町·村선거관리위원회, 市·町·村의 선거에 대해서는 당해 市·町·村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그 선거사무소의 폐쇄를 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②제131조제1항(선거사무소의 수)의 규정에 의한 정수를 초과하여 선거사무소의 설치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 초과한 수의 선거사무소에 대하여도 또한 전항과 같다.

제135조 (선거사무관계자의 선거운동의 금지) ①제88조(임후보제한을 받는 선거사무관계자)에 게시하는 자는 재직중 그 간계구역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②부재자투표관리자는 부재자투표에 관하여 그 자의 업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36조 (특정공무원의 선거활동의 금지) 다음 각호에 게시하는 자는 재직중 선거활동을 할 수 없다.

1. 중앙선거관리회의 위원 및 중앙선거관리회의 서무에 종사하는 자치성의 직원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
2. 재판관
3. 검찰관
4. 회계검사관
5. 공안위원회의 위원
6. 경찰관
7. 수세관리 및 징세의 리원

제136조의2 (공무원등의 지위이용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공무원
2. 일본도로공단, 농용지정비공단, 삼림개발공단, 석유공단, 지역진흥정비공단, 선박정비공단, 일본철도건설공단, 신동경국제공항공단, 수자원개발공단, 국민금융공고, 주택금융공고, 농림어업금융공고, 중소기업금융공고, 북해도동북개발공고, 공

영기업금융공고, 중소기업신용보험공고, 환경위생공고 또는 충승진흥개발금융공고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주택·도시정비공단, 수도권고속도로공단, 판신고속도로공단이나 목주사국연락고공단의 관리위원회의 위원·임원이나 직원(이하 공단등의 임직원등 이라고 함.)

②전항 각호에 제기한 자가 공직후보자 또는 공직후보자로 되려는 자(공직에 있는 자를 포함함.)를 추천하거나 지지하거나 또는 이에 반대할 목적으로 하는 다음의 각호에 게시하는 행위 또는 공직후보자나 공직후보자로 되려고 하는 자(공직에 있는 자를 포함함.)인 동항 각호에 게시하는 자가 공직후보자로서 추천되거나 지지받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의 각호에 게시하는 행위는 동항에 규정하는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그 지위를 이용하여 공직후보장의 추천에 관여하거나 관여하는 것을 원조하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이들 행위를 하게 하는 것.
2. 그 지위를 이용하여 투표의 조의·권유·연설회의 개최 기타의 선거운동의 기획에 관여하고, 그 기획의 실시에 대하여 지시하거나 지도하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이들 행위를 하게 하는 것.
3. 그 지위를 이용하여 제199조의5(후원단체에 관한 기부등의 금지)제1항에 규정하는 후원단체를 결성하고 그 결성의 준비에 관여하며 동항에 규정하는 후원단체의 구성원으로 되는 것을 권유하거나 이들 행위를 원조하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이들 행위를 하게 하는 것.
4. 그 지위를 이용하여 신문 기타의 간행물을 발행하거나 문서도화를 게시하거나 배포하거나 또는 이들 행위를 원조하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이들 행위를 하게 하는 것.
5. 공직후보자 또는 공직후보자로 되려고 하는 자(공직에 있는 자를 포함함.)를 추천하거나 지지하거나 또는 이에 반대하는 것을 권유 또는 약속한 자에 대하여 그 대상으로서 그 직무집행에 있어 당해 권유 또는 약속한 자에 관계되는 이익을 공여하거나 또는 공여하는 것을 약속하는 것.

제137조 (교육자의 지위이용의 선거운동의 금지) 교육자[학교교육법(1947년 법률제26호)에 규정하는 학교의 장 및 교원을 말함.]는 학교의 아동, 생도 및 학생에 대한 교육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37조의2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의 금지) ①연령 만20년 미만의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연령 만20년 미만의 자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을 위한 노무에 이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7조의3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지 않는 자의 선거운동의 금지) 제252조(선거법

죄에 의한 처형자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정지)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지 않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38조 (야간호별방문의 금지) ①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선거에 관하여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거나 또는 얻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호별방문을 할 수 없다.

②어떠한 방법에 의한 것임을 불문하고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연설회의 개최 또는 연설을 행하는 것에 대하여 고지를 하는 행위 또는 특정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 기타의 정치단체의 명칭을 말하고 다니는 행위는 전항에 규정하는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138조의2 (서명운동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거나 얻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하여 서명운동을 할 수 없다.

제138조의3 (인기투표의 공표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공직에 취임할 자(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정당 기타의 정치단체에 관계되는 공직에 취임할 자 또는 그 수)를 예상하는 인기투표의 경과 또는 결과를 공표해서는 안된다.

제139조 (음식물의 제공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에 관하여 어떠한 명의를 의한 것임을 불문하고 음식물(탕다 및 이에 수반하여 보통 이용되는 정도의 과자를 제외함.)을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이외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신고정당이 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 있어서는 같다)에 종사하는 자 및 선거운동을 위해서 이용하는 노무자에 대하여 공직후보자 1인당 당해 선거의 선거운동기간중 정령으로 정하는 도시락료의 액의 범위내에서 또한 양자를 통해서 15인분(45식분) [제131조제1항(선거사무소의 수)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후보자 또는 그 추천신고자가 설치할 수 있는 선거사무소의 수가 1을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1을 증가할 때마다 여기에 6인분(18식분)을 더한 것]에 당해 선거에 있어 선거기일의 공시 또는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그 선거기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얻은 수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선거사무소에 있어서 식사하기 위해 제공하는 도시락(선거운동에 종사하는 자 및 선거운동 때문에 이용하는 노무자가 휴행하기 위해 제공된 도시락을 포함함.)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0조 (기세를 고조시키는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자동차를 일렬로 나란히 하거나 또는 대오를 조직하여 왕래하는 등에 의하여 기세를 고조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40조의2 (연호행위의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호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 이외의 선거에 있어서 연설회장 및 가두연

설(연설을 포함함.)의 장소에 있어서 하는 경우 그리고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의 사이에 한하여 다음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위해서 이용되는 자동차 또는 선박의 위에서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연호행위를 하는 자는 학교(학교교육법제1조에 규정하는 학교를 말함. 이하 같음.) 및 병원, 진료소 기타의 요양 시설의 조변에 있어서는 정온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141조 (자동차, 선박 및 확성기의 이용) ①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 이외의 선거에 있어서는 주로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용되는 자동차[도로교통법(1960년 법률제105호)제2조제1항제9호에 규정하는 자동차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선박 및 확성기는 공직후보자1인에 대하여 자동차(그 구조상 선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함.) 1대 또는 선박 1쌍 및 확성기 1세트 오에는 이용할 수 없다. 다만, 확성기에 대해서는 개인연설회(연설을 포함함.)의 개최중 그 회장에서 별도로 1세트를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②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의원(소선거선출)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신고정당은 그 신고한 후보자의 선거구를 포괄하는 都·道·府·縣 마다 자동차 1대 또는 선박 1척 및 확성기 1기를 선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당해 都·道·府·縣에서의 당해 후보자신고정당의 신고후보자(당해 都·道·府·縣 구역 안의 선거구에 당해 후보자신고정당이 신고한 후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가 3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수가 5명을 초과할 때 마다 넘는 경우마다 이것에 추가하여 자동차 1대 또는 선박 1척 및 확성기 1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확성기에 대하여서는 정당연설회(연설을 포함한다)의 개최 중 그 회장에서 별도로 1기를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③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중의원명부신고정당은 자동차 6대 또는 선박 6척(양자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는 합산하여 6) 및 확성기 6기를, 중의원명부명부등재자의 수가 30명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 초과하는 수가 10명을 초과할 때마다 이것에 추가하여 자동차 1대 또는 선박 1척 및 확성기 1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확성기에 대해서는 정당연설회(연설을 포함한다)의 개최 중 그 회장에서 별도로 1기를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④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확성기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이 사용하는 것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⑤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자동차, 선박 및 확성기를 주로 선거운동을 위해서 이용할 수 없다.

⑥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또는 제3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선박 또는 확성기를 이용하는 자는 자동차 확성기 또는 선박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중의원비례대표선출위원의 선거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회)가 정하는 바의 표시(자동차와 선박에 대해서는 양자에 통용하는 표시)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⑦제1항의 자동차는, 정·촌의 의회의원 또는 장의 선거 이외의 선거에 있어서는 정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또는 소형화물자동차(도로운송차량법(1951년 법률제 185호)제3조의 규정에 기하여 정해진 소형자동차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를 말함.)에 한하는 것으로 한다.

⑧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 또는 참의원(선거구선출) 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공직후보자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령으로 정하는 액의 범위내에서 제1항의 자동차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공직후보자에 관계되는 공탁물이 제 93조(공탁물의 몰수)제1항(동조제3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 한한다.

⑨都·道·府·縣의회의 의원 또는 장의 선거에 대해서 都·道·府·縣은, 시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대해서 시는 각각 전항의 규정에 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직후보자의 제1항의 자동차이용을 무료로 할 수 있다.

제141조의2(자동차등의 승차제한) ①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위해서 이용되는 자동차 또는 선박에 승차 또는 승박하는 자는 공직후보자(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의 후보자로서 당해 선거와 동시에 행하여지는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의 후보자인 자 이외의 자 및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제외한다. 다음 항에 있어서 같음.), 운전수(자동차 1태에 대하여 1인에 한한다. 동항에 있어서 같음.) 및 선원을 제외하고, 자동차 1태 또는 선박 1쌍에 대하여 4인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②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위해서 이용되는 자동차 또는 선박에 승차 또는 승박하는 자(공직후보자, 운전수 및 선원을 제외함.)는 당해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완장을 착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141조의3 (차위에서 선거운동의 금지) 누구든지 제141조(자동차, 선박 및 확성기의 이용)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위해서 이용되는 자동차위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정지한 자동차상에 있어서 선거운동을 위한 연설을 하는 것 및 제 140조의2제1항(연호행위의 금지)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위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연호행위를 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2조 (문서도화의 배포) ①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 이외의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운동을 위해서 이용하는 문서도화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통상엽서 그리고,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뼈라외에는 배포할 수 없다. 이 경우에 있어서 뼈라에 대해서는 산포할 수 없다.

1.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 1인에 대하여 통상엽서 3만5천매, 당해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2종류 이내의 뼈라 7만 5천매

2.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 1인에 대하여 당해 都·道·府·縣의 구역내의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구의 수가 하나인 경우에는 통상엽서 3만5천매, 당해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2종류이내의 뼈라 10만매, 당해 都·道·府·縣의 구역내의 중의원의원의 선거구의 수가 하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하나를 증가할 때마다 통상엽서 3천매를 3만5천매에 더한 수, 당해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2종류 이내의 뼈라 3만매를 10만매에 더한 수(그 수가 30만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만매).

3. 都·道·府·縣知事의 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 1인에 대하여 당해 都·道·府·縣의 구역내의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구의 수가 하나인 경우에는 통상엽서 3만5천매, 당해 都·道·府·縣의 구역내의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구의 수가 하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하나가 증가할 때마다 3천매를 3만 5천매에 더한 수.

4. 都·道·府·縣의회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 1인에 대하여 통상엽서 8천매

5. 지정도시의 선거에 있어서는 장의 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 1인에 대하여 통상엽서 3만5천매, 의회의원의 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 1인에 대하여 통상 엽서 4천매.

6. 지정도시 이외의 시의 선거에 있어서는 장의 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 1인에 대하여 통상엽서 8천매, 의회의원의 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 1인에 대하여 통상엽서 2천매.

7. 정·촌의 선거에 있어서는 장의 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 1인에 대하여 통상엽서 2천500매, 의회의원의 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 1인에 대하여 통상엽서 800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신고정당은 그 신고한 후보자의 선거구를 포함하는 都·道·府·縣 마다 3만 5천매에 당해 都·道·府·縣에서의 당해 후보자신고정당의 신고후보자를 곱하여 얻은 수 이내의 통상엽서 및 전단을 선거운동을 위하여 배포(살포하는 것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③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에서는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3종류 이내의 전단을 선거운동을 위하여 배포(살포하는 것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④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에서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문서도화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이 배포할 수 있는 전단 외에는 배포할 수 없다.

⑤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문서도화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배포할 수 없다.

⑥제1항의 통상엽서는 동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것은 무료로 하고, 제3항의 통상엽서는 유료로 하며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호에서 제7호까지의 것을 자료로 하며,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정성에서 표시를 한 것이 아니면 안된다.

⑦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2항 및 제3항의 전단은 신문속에 끼워넣기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지 않으면 배포할 수 없다.

⑧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2항 및 제3항의 전단은 당해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교부하는 증지를 첨부하지 않으면 배포할 수 없다.

⑨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빠라는 길이 29.7cm, 폭21c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⑩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2항 및 제3항의 빠라에는 그 표면에 배포책임자 및 인쇄자의 성명(법인이면 명칭)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전단의 경우는 당해 후보자신고정당의 명칭을, 제3항의 전단의 경우는 당해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의 명칭 및 동항의 전단이라는 취지를 표시하는 기호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11)중의원(소선거선출)의원 또는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에 있어서의 공직후보자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액의 범위내에서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통상엽서 및 빠라를 무료로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제141조(자동차, 선박 및 확성기의 사용) 제8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12)선거운동을 위해서 이용하는 회람판 기타의 문서도화 또는 간판(플랑카드를 포함. 이하 같음.)의 류를 다수의 자에게 회람시키는 것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배포로 본다. 다만, 다음조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것을 동호에 규정하는 자동차 또는 선박에 부착시킨 채 회람시키는 것 및 공직후보자(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의 후보자로서 당해 선거와 동시에 행하여지는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의 후보자인 자 이외의 자 및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제외한다)가 동항제2호에 규정하는 것을 착용한 채 회람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3)중의원회원의 총선거에 대해서는, 중의원의 해산에 관하여 공직후보자 또는 공직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공직에 있는 자를 포함함.)의 성명 또는 이들의 성명이 유지되는 것과 같은 사항을 표시하여 우편 또는 전보에 의하여 선거인에게 인사하는 행위는 제1항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143조 (문서도화의 게시) ①선거운동을 위하여 이용하는 문서도화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제1호, 기타의 선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의 경우는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이 사용하는 것) 외에는 게시할 수 없다.

1. 선거사무소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 장소에서 이용하는 포스터, 입간판·제등 및 간판류

2. 제141조(자동차, 선박 및 확성기의 이용)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용되는 자동차 또는 선박에 부착하여 이용하는 포스터, 입간판, 제등 및 간판류

3. 공직후보자가 이용하는 띠, 완장 및 완장의 류

4. 연설회장에 있어서 그 연설회의 개최중 이용하는 포스터, 입간판, 제등류 및 간판류

4의2. 개인연설회고지용포스터(중의원소서거구선출의원,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 또는 都·道·府·縣知事의 선거의 경우에 한함)

5. 전각호에 게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용하는 포스터

②선거운동을 위하여 애드발룬, 네온사인 또는 전광에 의한 표시, 슬라이드 기타의 방법에 의한 영사등의 류를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③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 또는 都·道·府·縣知事의 선거에 대하여는 제1항제4조의2의 개인연설회고지용포스터 및 동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용하는 포스터(중의원소서거구선출의원의에 있어서 후보자신고정당이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은 제144조의2제1항(포스터게시장)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포스터게시장마다 공직후보자 1인에 대하여 각각 1매에 한하여 게시하는 외에는 게시할 수 없다.

④제144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 포스터게시장을 설치하게 되는 都·道·府·縣의 회의원과 市·町·村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용하는 포스터는 동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포스터게시장마다 공직후보자 1인에 대하여 각각 1매를 게시하는 외에는 게시할 수 없다.

⑤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소를 표시하기 위한 문서도화는 제129조(선거운동의 기간)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거당일에 있어서도 게시할 수 있다.

⑥제1항제4호의2의 개인연설회고지용포스터 및 동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위해 이용하는 포스터는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거당일에 있어서도 게시하여 줄 수 있다.

⑦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게시할 수 있는 포스터, 입간판 간판의 류의 수는 선거사무소마다 통산 3개를 넘을 수 없다.

⑧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게시할 수 있는 포스터, 입간판 및 간판의 류의 수는 연설회장 외에 게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장마다 합계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⑨제1항에 규정하는 포스터(동항제4호의2 및 제5호의 포스터를 제외함), 입간판 및 간판의 류는 세로 273cm, 가로 73cm(동항제1호의 포스터, 입간판 및 간판의 류에 있어서는 세로 350cm, 가로 100c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⑩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시할 수 있는 제증의 류는 각각 1개로 하고 그 크기는 높이 85cm 직경 45c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11)제1항제4호의2의 개인연설회고지용포스터는 길이 42cm, 너비 10c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12)전항의 포스터는 제1항제5호의 포스터와 함께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

(13)제1항제4호의2의 개인연설회고지용포스터에는 그 표면에 게시책임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지 않으면 안된다.

(14)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 또는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공직후보자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령으로 정하는 액의 범위내에서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입간판 및 간판, 동항 제4호의2의 개인연설회고지용포스터 및 동항 제5호의 포스터를 무료로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제141조 제8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15)都·道·府·縣議會의 의원 및 장의 선거에 대해서는 都·道·府·縣은 그리고 市議會의 의원 및 장의 선거에 대해서는 市는 각각 전항의 규정에 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직후보자의 제1항 제4호의 2의 개인연설회고지용포스터(都·道·府·縣의 知事選舉의 경우에 한한다) 및 동항 제5호의 포스터의 작성에 대해서 무료로 할 수 있다.

(16)공직후보자 또는 공직후보자로 되려는 자(공직에 있는 자를 포함함. 이하 본항에 있어서 「공직후보자등」이라고 함.)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이용되는 당해 공직후보자등의 성명이 유지되는 것과 같은 사항을 표시하는 문서도화 및 제199조의5(후원단체에 관한 기부등의 금지)제1항에 규정한 후원단체(이하 본항에 있어서 「후원단체」라고 함.)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이용되는 당해 후원단체의 명칭을 표시하는 문서도화로 다음에 게시하는 것 이외의 것을 게시하는 행위는 제1항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입간판 및 간판의 류로 공직후보자등 1인에 대하여 또는 동일공직후보자등에 관계되는 후원단체의 전부를 통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총수의 범위내에서 또한 당해 공직후보자등 또는 당해 후원단체가 정치활동을 위하여 이용하는 사무소마다 그 장소에서 합계 2매에 한하여 게시된 것.

2. 포스터로, 당해 포스터를 게시하기 위한 합판, 플라스틱판 기타 이에 유사한 것

을 이용하여 게시된 것 이외의 것(공직후보자등이나 후원단체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이용하는 사무소나 연락소를 표시하거나 또는 후원단체의 구성원인 것을 표시하기 위하여 게시되는 것 및 제19조 각호의 구분에 의한 당해 선거 마다의 일정기간 안에 당해 선거구(선거구가 없는 때에는 선거가 행하여지는 구역) 안에 게시되는 것을 제외한다)

3. 정치활동을 위하여 하는 연설회, 구연회, 연수회 기타 이에 유사한 집회(이하 본호에 있어서 「연설회등」이라고 함.)의 회장에 있어서 당해 연설회등의 개최중 이용되는 것.

4. 제14장의 3(정당 기타의 정치단체등의 선거에 있어서는 정치활동)의 정규에 의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것

(17)전항제1호의 입간판 및 간판의 류는 세로 150cm, 가로 40cm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또한 당해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회)가 정하는 바의 표시를 한 것이 아니면 안된다.

(18)제16항 제2호의 포스터에는 그 표면에 게시책임자 및 인쇄자의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19)제16항에서 “일정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1. 중의원의원의 총선거의 경우는 중의원의원 임기만료의 6월전일부터 당해 총선거 기일까지의 기간 또는 중의원해산일의 다음날부터 당해 총선거의 기일까지의 기간

2. 참의원의원의 총선거의 경우는 참의원의원 임기만료의 6월전일부터 당해 통상선거 기일까지의 기간

3. 지방공공단체의 의회 의원 또는 장의 선거(재선거 및 보결선거를 제외한다)의 경우 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는 그 임기만료의 6월 전일부터 당해 선거의 기일까지의 기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이외의 선거는 당해 선거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그 뜻을 당해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고시한 일의 다음 날부터 당해 선거 기일까지의 기간

4. 중의원의원, 참의원의원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의회 의원 및 장의 재선거 또는 보결선거의 경우는 당해 선거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그 뜻을 당해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의 경우는 중앙선거관리회)가 고시한 일의 다음 날부터 당해 선거 기일까지의 기간

제143조의2 (문서도화의 철거의무) 전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포스터, 입간판, 제증 및 간판류를 게시한 자는 선거사무소를 폐지한 때 제141조(자동차, 선박 및 확성기의 이용) 제1항 내지 3항의 자동차나 선박을 주로 선거운동을 위해서 이

용하는 것을 그만 둔 때 또는 연설회가 종료한 때는 즉시 이것들을 철거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144조 (포스터의 수) ①제143조(문서도화의 게시)제1항제5호의 포스터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수를 초과할 수 없다.

1.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신고정당이 사용하는 것인 경우는 그 신고한 후보직의 선거구를 포함하는 都·道·府·縣 마다 천 5백매에 당해 都·道·府·縣에 있어서의 당해 후보자신고정당이 신고한 후보자 수를 곱한 수

2.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에 있어서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이 사용하는 것인 경우는 7만매, 당해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의 중의원명부등재자 수가 30명을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수가 10인을 넘는 경우 마다 5천매를 7만매에 더한 수

3. 都·道·府·縣의회의원, 시의회의원 또는 시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공직후보자 1인에 대하여 천 200매, 다만 지정도시의 시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 1인에 대하여 4천 500매.

4. 정·촌의회의원 또는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공직후보자 1인에 대하여 500매.

②전항의 포스터는 당해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중의원비례대표 선출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회, 이하 이 항에 있어서는 같다)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하는 검인을 받거나 또는 그 교부하는 증지를 첨부하지 않으면 게시할 수 없다.

③전2항의 규정은 다음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스터게시장을 설치하기로 한 都·道·府·縣의회의원 그리고 市·町·村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④제143조 제1항 제5호의 포스터는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에서 후보자신고정당이 사용하는 것 및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에서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이 사용하는 것은 길이 85cm, 너비 60cm, 그 밖의 선거에서는 길이 42cm, 너비 30cm를 초과할 수 없다.

⑤제143조제1항제5호의 포스터에는 그 표면에 게시책임자 및 인쇄자의 성명(법인은 그 명칭)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신고정당 또는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이 사용하는 것에는 당해 후보자신고정당 또는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의 명칭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144조의2 (포스터의 게시장) ①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 또는 都·道·府·縣知事의 선거에 있어서는, 市·町·村선거관리위원회는 제143조(문서도화의 게시)제1항제5호의 포스터(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에 후보자신고정당이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게시장을 설치하지 않으면 안된다.

②전항의 게시장의 총수는 1투표구에 대하여 5개소이상 10개소이내에 있어서 정령

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市·町·村선거관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市·道·府·縣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그 총수를 감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게시장은 市·町·村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구마다 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중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④市·町·村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게시장을 설치한 때는 즉시 그 게시장의 설치장소를 고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⑤공직후보자는 제1항의 게시장에 당해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여 미리 고시하는 날로부터 제143조제1항제4호의2 및 제5호의 포스터 각각 1매를 게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市·町·村선거관리위원회는 포스터의 게시에 관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사정이 허용하는 한 편의를 공여하는 것으로 한다.

⑥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공직후보자 1인이 게시할 수 있는 게시장의 구획은 종 및 가로 각각 42cm이상으로 한다.

⑦전각항에 규정하는 것 외에, 제1항의 게시장에 있어서의 포스터의 게시의 순서, 기타 포스터의 게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⑧都·道·府·縣의 의회의원의 선거에 대하여는 都·道·府·縣은, 市·町·村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대하여는 市·町·村은 각각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43조제1항제5호의 포스터게시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⑨都·道·府·縣 또는 市·町·村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스터게시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게시장의 총수는 1투표구에 대하여 5개소이상 10개소이내에 있어서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都·道·府·縣 또는 市·町·村은 각각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총수를 감할 수 있다.

⑩제3항내지 제7항의 규정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스터의 게시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44조의3(포스터게시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천재 기타 피할 수 없는 사고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전조제1항 또는 제8항의 게시장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4조의4(임의제포스터게시장) 제144조의2(포스터게시장)제8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都·道·府·縣의회의원의 선거에 대하여는 都·道·府·縣은, 市·町·村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대하여는 市·町·村은 각각 동조제3항에서 제7항까지 및 전조의 규정에 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43조(문서도화의 게시)제1항

제5호의 포스터게시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포스터게시장의 수는 1투표구에 대하여 1개소이상으로 한다.

제144조의5 (포스터게시장의 설치에 대한 협력) 제144조의2(포스터 게시장) 및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스터게시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 토지 또는 공작물의 거주자, 관리자 또는 소유자는 포스터의 게시장의 설치에 관하여 사정이 허용하는 한 협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145조 (포스터의 게시장소등) ①누구든지 중의원의원, 都·道·府·縣의회의원 또는 市·町·村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제144조의2(포스터게시장)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스터게시장을 설치하기로 한 선거를 제외함.]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 또는 부재자투표관리자가 관리하는 투표를 기재하는 장소에는 제143조(문서도화의 게시)제1항제5호의 포스터를 게시할 수 없다. 다만 교량, 전주, 공영주택 기타 자치성령으로 정하는 것, 제144조의 2 및 제144조의 4(임의제포스터게시장)의 게시장에 게시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전항의 선거에 대하여는, 제143조제1항제5호의 포스터를 타인의 공작물에 게시하려고 할때는 그 거주자, 거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관리자, 관리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다음 항에 있어서「거주자등」이라고 총칭한다.)의 승락을 얻지 않으면 안된다.

③전항의 승락을 얻지 않고 타인의 공작물에 게시된 제143조제1항제5호의 포스터는 거주자등이 철거할 수 있다. 제1항의 선거 이외의 선거에 있어서 거주자등의 승락을 얻지 않고 당해 거주자등의 공작물에 게시된 포스터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146조 (문서도화의 배포 또는 게시에 대하여 금지를 면하는 행위의 제한) ①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중에는 저술·인쇄등의 광고 기타 어떠한 명의로써 하든 불문하고 제142조(문서도화의 배포)또는 제 143조(문서도화의 게시)의 금지를 면하는 행위로서 공직후보자의 성명이나 심볼·마크, 정당 기타의 정치단체의 명칭 또는 공직후보자를 추천하며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자의 명을 표시하는 문서도화를 배포하거나 또는 게시할 수 없다.

②전항의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선거운동기간중, 공직후보자의 성명, 정당 기타의 정치단체의 명칭 또는 공직후보자의 추천신고자 기타 선거운동에 종사하는 자나 공직후보자와 동일 호적내에 있는 자의 성명을 표시한 연하장, 한중문안상, 서중문안상 기타 이에 유사한 인사장을 당해 공직후보자의 선거구(선거구가 없을때는 그 구역) 내에 배포하거나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제142조 또는 제143조의 금지를 면하는 행위로 본다.

제147조 (문서도화의 철거) 都·道·府·縣 및 市·町·村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서도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이를 철폐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都·道·府·縣 또는 市·町·村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미리 그 뜻을 당해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43조(문서도화의 게시), 제144조(포스터의 수) 또는 제164조의 2(개인연설회장의 게시의 특례)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게시한 것

2. 제143조 제16항에 규정된 공직후보자등 또는 후원단체가 당해 공직후보자등 또는 후원단체로 되기 전에 게시한 문서도화로 동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나 또는 동항의 공직후보자등 또는 후원단체와 관련한 동조 제19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당해 선거에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기간 전 또는 기간 중에 게시한 포스터로 당해 기간중에 있어서 동조 제16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

3. 제143조의 2(문서도화의 철폐의무)의 규정에 위반하여 철폐하지 아니한 것

4. 제145조(포스터의 게시장소등) 제1항 또는 제2항(제114조의 2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게시한 것

5. 선거운동기간 전이나 기간 중에 게시한 문서도화로 전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

제147조의2(문안편지의 금지) 공직후보자 또는 공직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공직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당해 선거구(선거구가 없는 때는 선거가 행하여지는 지구) 내에 있는 자에게 답례를 위한 자필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연하장, 겨울인사편지, 여름인사편지 기타 이와 유사한 인사편지(전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또는 경조, 격려, 감사 기타 이와 유사한 인사편지를 보낼 수 없다.

제148조 (신문, 잡지의 보도 및 평론등의 자유) ①법률에 정하는 바의 선거운동의 제한에 관한 규정[제138조의3(인기투표의 공표의 금지)의 규정을 제외함.]은 신문(이에 유사한 통신류를 포함함. 이하 같음.) 또는 잡지가 선거에 관하여 보도 및 평론을 게재하는 자유를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또는 사실을 왜곡하여 기재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남용하여 선거의 공정을 해하여서는 안 된다.

②신문 또는 잡지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는 전항에 규정하는 신문 또는 잡지를 통상의 방법(선거운동기간중 및 선거당일에 있어서 정기구독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 배포하는 신문 또는 잡지에 대하여는 유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배포하거나 또는 都·道·府·縣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에 게시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 신문 또는 잡지라 함은 선거운동기간중 및 선거당일에 한하여 다음에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점자신문에 대하여는 제1호 '나'의 규정(동호 '다' 및 제2호중 제1호 '나'에 관계되는 부분을 포함함.)은 적용하지 않는다.

1. 다음의 조건을 구비하는 신문 또는 잡지

가. 신문에 있어서는 매월 3회이상, 잡지에 있어서는 매월 1회이상, 호에 따라 정기로 유상배포하는 것일 것.

나. 제3종 우편물의 인가가 있는 것일 것.

다. 당해 선거의 선거기일의 공시 또는 고시일전 1년(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있어서는 6월)이래 「가」 및 「나」에 해당하고 계속하여 발행하는 것일 것.

2. 전호에 해당하는 신문 또는 잡지를 발행하는 자가 발행하는 신문 또는 잡지로 동호 「가」 및 「나」의 조건을 구비하는 것.

제148조의2 (신문·잡지의 불법이용등의 제한) ①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또는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신문 또는 잡지의 편집 기타 경영을 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의 재산상의 이익의 공여, 그 공여의 신청이나 약속을 하거나 또는 향응접대와 그 신청 또는 약속을 하여 이에 선거에 관한 보도 및 평론은 게재시킬 수 없다.

②신문 또는 잡지의 편집 기타 경영을 담당하는 자는 전항의 공여, 향응접대를 받거나 요구하거나 또는 전항의 신청을 승락하여 이에 선거에 관한 보도 및 평론을 게재할 수 없다.

③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또는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신문 또는 잡지에 대한 편집 기타 경영상의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이에 선거에 관한 보도 및 평론을 게재하거나 또는 게재시킬 수 없다.

제149조 (신문광고) ①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는 자치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 규격으로 어느 하나의 신문에 선거 운동기간중 5회에 한하여 선거에 관한 광고를 하고, 후보자신고정당은 자치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都·道·府·縣에서의 당해 후보자신고정당의 신고후보자 수(16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6인으로 한다. 이하 이 장에서는 같다)에 따라 자치성령이 정하는 규격으로 어느 하나의 신문에 선거운동기간 중 자치성령이 정하는 회수의 범위 안에서 선거에 관하여 광고를 할 수 있다.

②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에서는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은 자치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의원명부신고자 수(211명을 초과하는 경우는 211명으로 한다. 이하 이 장에서는 같다)에 따라 자치성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어느 하나의 신문에 선거운동기간 중 자치성령이 정하는 회수의 범위 안에서 선거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다.

③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 대하여는 참의원명부신고정당등은 자치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의원명부등재자수(25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25인으로 한다. 이하 본장에 있어서 같음.)에 따라 자치성령으로 정하는 규격으로 어느 하나의 신문에 선거운동기간중 자치성령으로 정하는 회수에 한하여 선거에 관한 광

고를 할 수 있다.

④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 이외의 선거에서는 공직후보자는 자치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방법으로 어느 하나의 신문에 선거운동기간 중 2회(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선거의 경우는 4회)에 한하여 선거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다.

⑤ 전 각항의 광고를 게재한 신문은 제142조(문서도화의 배포) 또는 제143조(문서도화의 게시)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문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통상의 방법(정기구독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 배포하는 신문에 대하여는 유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배포하거나 또는 都·道·府·縣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에 게시할 수 있다.

⑥ 중의원의원, 참의원의원 또는 都·道·府·縣知事의 선거에 있어서는 무료로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광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의 경우는 당해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의 득표총수가 당해 선거에서의 유효투표총수의 천분의 4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150조 (정견방송) ①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신고정당은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운동기간중 일본방송협회 및 일반방송업자의 라디오방송 또는 텔레비전방송의 방송(방송법(1950년 법률 제132호) 제2조 제2호의 3에 규정된 텔레비전방송을 말한다. 이와 같다)의 방송설비로 공익을 위해 그 정견(당해 후보자신고정당이 신고한 후보자의 소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는 같다)을 무료로 방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본방송협회 및 일반방송사업자는 녹음 또는 녹화한 정견 또는 후보자신고정당이 녹음 또는 녹화한 정견을 그대로 방송할 수 없다.

② 후보자신고정당은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령이 정하는 액의 범위 안에서 전항의 정견의 방송을 위한 녹음 또는 녹화를 무료로 할 수 있다.

③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 또는 都·道·府·縣知事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공직후보자(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에서는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에서는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 제5하에 있어서도 같다)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운동기간중 일본방송협회 및 일반방송업자의 라디오방송 및 텔레비전방송의 방송설비에 의하여 공익을 위해 그 정견(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에서는 중의원명부등재자,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에서는 명부등재자의 소개를 포함한다. 이하 본항에 있어서 같음.)을 무료로 방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일본방송협회 및 일반방송사업자는 그 정견을 녹음하거나 또는 녹화하여 이것을 그대로 방송하지 않으면 안된다.

④ 제1항의 방송에 관하여는 당해 都·道·府·縣에 신고후보자가 있는 모든 후보자 신고정당에 대하여 동일한 방송설비를 사용하며, 당해 都·道·府·縣에의 당해 후

보자신고정당의 신고후보자의 수에 따라 정령이 정하는 시간수를 부여하는 등 동등한 편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방송엔 관하여는 각각의 선거마다 당해 선거구(선거구가 없을 때는 그 구역)의 모든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동일방송설비를 사용하고 동일시간수(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에서는 중의원명부등재등재자 수,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에서는 참의원명부등재자 수에 따라 정령으로 정하는 시간수)를 부여하는 등 동등한 편리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된다.

⑥전 각항의 방송의 회수, 일시 기타 방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치대신이 일본방송협회 및 일반방송사업자와 협의한 후 정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에서의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참의원명부신고정당등의 방송에 관하여는 그 편리의 제공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를 가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150조의2 (정견방송에 있어서의 품위의 유지) 공직후보자, 후보자신고정당, 중의원명부신고정당 및 참의원명부신고정당은 그 책임을 자각하여 전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규정하는 방송(이하 「정견방송」이라함.)을 함에 있어서는 타인 또는 다른 정당 기타의 정치단체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또는 특정한 상품광고 기타 영업에 관한 선전을 하는 등 적어도 정견방송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언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1조 (경력방송) ①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 또는 都·道·府·縣知事の 선거에 있어서는 일본방송협회는 그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직후보자의 성명, 연령, 당파별(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에서는 당해 후보자의 후보자신고정당의 명칭), 주요한 경력등을 관계구역의 선거인에게 주지시키기 위해 방송을 하는 것으로 한다.

②전항의 방송회수는 공직후보자 1인에 대하여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라디오방송에 의하여 대략 10회 및 텔레비전방송에 의하여 1회, 기타의 선거에 있어서는 라디오방송에 의하여 대략 5회 및 텔레비전방송에 의하여 1회로 한다. 다만, 일본방송협회는 사정이 허용하는 한 그 회수를 많게 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③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 또는 府縣知事の 선거에 있어서는 전2항에 정하는 것 외에 일본방송협회 및 일반방송사업자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텔레비전방송에 의한 정견방송을 행함에 있어서 텔레비전방송에 의한 경력방송을 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151조의2 (정견방송 및 경력방송을 중지하는 경우) ①제100조(무투표당선)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투표를 행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된 때는 정견방

송(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에서 행하여지는 것을 제외한다) 및 경력방송의 절차는 중지한다.

②한 都·道·府·縣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에서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고 투표를 행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때는 당해 都·道·府·縣에서 행하여지는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와 관련한 정견방송절차는 중지한다.

③천재 기타 피할 수 없는 사고 기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정견방송 또는 경력방송이 불가능으로 된 경우에 있어서는 이에 대신한 정견방송 또는 경력방송은 행하지 않는다.

제151조의3 (선거방송의 프로그램편집의 자유) 이 법률에 정하는 바의 선거운동의 제한에 관한 규정[제138조의3(인기투표의 공표의 금지)의 규정을 제외함.]은 일본방송협회 또는 일반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선거에 관한 보도 또는 평론에 대하여 방송법의 규정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을 편집하는 자유를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허위사실을 방송하거나 또는 사실을 왜곡하여 방송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남용하여 선거의 공정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1조의4 삭제

제151조의5 (선거운동방송의 제한) 누구든지 이 법률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송설비(광고방송설비, 공동청취용설비 기타의 유선전기통신설비를 포함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해 방송을 하거나 또는 방송을 하게 할 수 없다.

제152조(인사를 목적으로 하는 유료광고의 금지) ①공직후보자 또는 공직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공직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다음 항에서는 『공직후보자등』이라 한다) 및 제199조의 5(후원단체에 관한 기부등의 금지) 제1항에 규정된 후원단체(다음 항에서는 『후원단체』라 한다)는 당해 선거구(선거구가 없는 때에는 선거가 행하여지는 지역. 다음 항에서도 같다) 내에 있는 자에게 인사(년가, 겨울인사, 여름인사 기타 이와 유사한 인사. 및 조의, 격려, 감사 기타 이와 유사한 인사에 한한다. 다음 항에서도 같다)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광고를 유료로 신문, 잡지, 전단, 팸프리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게재하거나 또는 일반방송사업자, 유선텔레비전방송사업자(유선텔레비전방송법(1972년 법률114호) 제2조 제4항의 유선텔레비전사업자를 말한다. 다음 항에서도 같다) 또는 유선라디오방송(유선라디오방송업무운영규정에 관한법률(1951년 법률135호) 제2조의 유선라디오방송을 말한다. 다음 항에서도 같다)의 업무를 행하는 자의 방송설비로 방송할 수 없다.

②누구라도 공직후보자등 또는 후원단체에 대하여 당해 선거구내에 있는 자에게 인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광고를 신문, 잡지, 전단, 팸프리트 기타 유사한 것에 유료로 게재하거나 또는 일반방송사업자, 유선텔레비전방송사업자 및 유선라디오방송

업무를 행하는 자의 방송설비에 의하여 유료로 방송을 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3조내지 제160조 삭제

제161조 (공영시설사용의 개인연설회등) ①공직후보자(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의 후보자로서 당해 선거와 동시에 행하여지는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의 후보자 인 자 이외의 자 및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제외한다. 다음 조에서 제164조의3까지에 있어서 같다), 후보자신고정당 및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은 다음에 열거한 시설(후보자신고정당인 경우는 그 신고한 후보자의 선거구를 포함하는 都·道·府·縣구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을 사용하여 개인연설회, 정당연설회 또는 정당등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학교 및 공민관「사회교육법(1949년 법률제207호)제21조에 규정하는 공민관을 말함.」
 2. 지방공공단체의 관리에 속하는 공회당
 3. 전2호 외에 市·町·村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시설
- ②전항의 시설에 대해서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리자가 필요한 설비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 ③市·町·村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제3호의 시설의 지정을 한 때는 즉시 都·道·府·縣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 ④전항의 보고가 있었을 때에는 都·道·府·縣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취지를 고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161조의2 (공영시설 이외의 시설사용의 개인연설회) 공직후보자는 전조제1항에 규정하는 시설 이외의 시설(건물 기타의 시설의 구내를 포함함.)을 사용하여 개인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62조 (개인연설회등에 있어서의 연설) ①개인연설회에 있어서는 당해 공직후보자는 그 선거운동을 위한 연설을 할 수 있다.

②개인연설회에 있어서는 당해 공직후보자 이외의 자도 당해 공직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연설을 할 수 있다.

③후보자신고정당이 개최하는 정당연설회에서는 연설자는 당해 후보자신고정당이 신고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연설을 할 수 있다.

④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이 개최하는 정당연설회에서는 연설자는 당해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의 선거운동을 위한 연설을 할 수 있다.

제163조 (개인연설회등개최의 신청) 제161조(공영시설 사용의 개인연설회)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연설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공직후보자, 정당연설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후보자신고정당 또는 정당등연설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중의원명부신고정당은 개최

일전 2일까지에 사용할 시설, 개최할 일시 및 공직후보자의 성명(후보자신고정당 또는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의 경우는 그 명칭)을 문서로 市·町·村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164조 (개인연설회의 시설의 무료사용) 제161조(공영시설사용의 개인연설회)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연설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시설(설비를 포함함.)의 사용에 대하여는 공직후보자 1인에 대하여 동일시설(설비를 포함함.)마다 1회에 한하여 무료로 한다.

제164조의2 (개인연설회장의 게시의 특례) ①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 또는 都·道·府·縣知事의 후보자는 그 개인연설회의 개최중, 다음항에 규정하는 입간판 또는 간판류를 회장앞의 공중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연설회의 회장앞에 게시하지 않으면 안되는 입간판 및 간판류는 종 273cm, 구 73cm를 초과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하고, 이것들에는 都·道·府·縣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의 표시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③전항에 규정하는 입간판 및 간판류의 수는 당해 선거마다 합계 5를 초과할 수 없다.

④제2항에 규정하는 입간판 및 간판류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개인연설회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위해서 사용하는 문서도화는 제143조(문서도화의 게시)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연설회의 회장외에 있어서는 게시할 수 없다.

⑤제2항에 규정하는 입간판 및 간판류는 개인연설회의 회장외의 어느 장소에 있어서도 선거운동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입간판 및 간판류의 게시장소에 대해서는 제145조(포스터의 게시장소등)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 또는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공직후보자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령으로 정하는 액의 범위 안에서 제2항에 규정된 입간판 및 간판류를 무료로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제141조(자동차, 선박 및 확성기의 사용) 제5항의 단서규정을 준용한다.

제164조의3 (타연설회의 금지) ①선거운동을 위해서 하는 연설회는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개인연설회, 정당연설회 및 정당동연설회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명의로 하든 불문하고 개최할 수 없다.

②공직후보자 이외의 자가 2인이상의 공직후보자의 합동연설회를 개최하는 경우, 후보자신고정당 이외의 자가 2이상의 후보자신고정당의 합동연설회를 개최하는 경우 및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 이외의 자가 2이상의 중의원명부명부신고정당등의 합동연설회를 개최하는 경우는 전항에 규정하는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164조의4 (개인연설회등 및 가두연설에 있어서의 녹음반의 사용) 개인연설회, 정당

연설회, 정당등연설회 및 가두연설에 있어서는 선거운동을 위해 녹음반을 사용하여 연설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164조의5 (가두연설) ①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 이외의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운동을 위해서 하는 가두연설(옥내로부터 가두로 향하여 하는 연설을 포함함. 이하 같음.)은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가 아니면 행할 수 없다.

1. 연설자가 그 장소에 멈추어 제3항에 규정하는 표기를 게양하여 행하는 경우

2. 후보자신고정당 또는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이 제141조(자동차, 선박 및 확성기의 사용)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선박으로 정지하고 있는 차 위나 또는 선박 위 및 그 주위에서 행하는 경우

②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도 선거운동을 위해서 하는 가두연설은 이를 행할 수 없다.

③선거운동을 위해서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두연설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직후보자는 미리 당해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양식의 표기의 교부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

④전항의 표기는 공직후보자 1인에 대하여 하나를 교부한다.

⑤제1항제1호의 표기는 당해 공무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것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164조의6 (야간의 가두연설의 금지등) ①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의 사이는 선거운동을 위해 가두연설을 할 수 없다.

②제140조의2제2항(연호행위에 있어서의 청운의 유지)의 규정은 선거운동을 위한 가두연설을 하는 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③선거운동을 위한 가두연설을 하는 자는 장시간에 걸쳐 동일장소에 멈추어서 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164조의7 (가두연설의 경우의 선거운동등의 제한) ①제164조의 5 제1항(가두연설)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두연설에 있어서는, 선거운동에 종사하는 자[운전수「제141조제1항(자동차, 선박 및 확성기의 사용)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위해서 사용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 1인에 한함.」 및 선원을 제외하고 운전수의 조수 기타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포함함.]는 공직후보자 1인에 대하여 15인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에 종사하는 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완장 또는 제141조의2제2항(승차 또는 승박하는 자의 완장)의 규정에 의한 완장을 착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165조 삭제

제165조의2 (근접하는 선거의 경우의 개인연설회등의 제한) 누구든지 2이상의 선거가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 하나의 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이 다른 선거의 선거기일에 걸리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당일 당해 투표소를 폐쇄하는 시각까지의 사이는 그 투표소를 설치한 장소의 입구로부터 300m이내의 구역에서 선거운동을 위해서 하는 연설회(연설을 포함함.)를 개최할 수 없다. 선거운동을 위해서 가두연설을 하는 것 및 제140조의2제1항(연호행위의 금지)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또는 선박의 위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연호행위를 하는 것도 또한 같다.

제166조 (특정의 건물 및 시설에 있어서의 연설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에 게시하는 건물 또는 시설에 있어서는 어떠한 명의로 하든 불문하고, 선거운동을 위해서 하는 연설 및 연호행위를 행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게시하는 건물에서 제161조(공영시설사용의 개인연설회등)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설회, 정당연설회 또는 정당동연설회를 개최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소유하거나 또는 관리하는 건물(공영주택을 제외함.)
2. 기차, 전차, 승합자동차, 선박[제141조 제1항 내지 제3항(선거운동에 사용하는 경우)의 선박을 제외함.] 및 정차장 기타 철도지내
3. 병원, 진료소 기타의 요양시설

제167조 (선거공보의 발행) ①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 또는 都·道·府·縣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후보자의 성명·경력·정견등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선거(선거의 일부무효에 의한 재선거를 제외함.)마다 1회 발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중의원의원 및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에 대하여는 공직후보자의 사진을 게재하지 않으면 안된다.

②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都·道·府·縣선거관리위원회는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 또는 참의원명부신고정당등의 명칭 및 약칭, 정견, 중의원명부등제자 또는 참의원명부등제자의 성명, 경력 및 당선인으로 될 순위등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선거(선거의 일부무효에 의한 재선거를 제외함.)마다 1회 발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③선거공보는 선거구마다(선거구가 없을 때는 선거가 행하여지는 구역을 통틀어), 발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④특별한 사정이 있는 구역에 있어서는, 선거공보는 발행하지 않는다.

⑤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공보를 발행하지 않는 구역은 都·道·府·縣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168조 (계재문의 신청) ①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 또는 都·道·府·縣知事의 선거에 있어서 공직후보자가 선거공보에 성명, 경력, 정견등의 게재를 받으려고 할 때는 그 계재문(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 또는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의 경우는 동시에 사진을 첨부하는 것으로 한다.)을 갖추어 당해

선거기일의 공시 또는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2일간(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의 경우는 당해 선거기일의 공시 또는 고시가 있는 날)에 당해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서로 신청하지 않으면 안된다.

②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 또는 참의원명부신고정당등이 선거공보에 그 명칭 및 약칭, 정견, 중의원명부등재자 또는 참의원명부등재자의 성명, 경력 및 당선인으로 될 순위 등의 게재를 받으려고 할 때는 그 게재문을 갖추어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의 경우에는 당해 선거 기일의 공시 또는 고시가 있는 날에,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의 경우는 당해 선거기일의 공시 또는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2일간에 중앙선거관리회에 문서를 신청하지 않으면 안된다.

③전2항의 게재문은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 또는 都·道·府·縣知事の 선거에 있어서는 자수 2천,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중의원명부등재자 또는 참의원명부등재자의 수에 따라 자치성령으로 정하는 자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게재문의 자수가 전항의 제한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선거공부에 게재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게재문에 대하여는 제150조의2(정견방송에 있어서의 품위의 유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9조 (선거공보의 발행절차) ①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 대하여 전조제2항의 신청이 있는 때는, 중앙선거관리회는 그 게재문(게재문의 자수가 동조제3항의 제한을 초과할 때는 그 제한내의 게재문)의 사본 2통을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의 경우는 그 선거 기일 전 9일까지,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의 경우는 그 선거기일전 11일까지 都·道·府·縣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②都·道·府·縣선거관리위원회는 전조제1항의 신청 또는 전항의 게재문의 사본의 송부가 있는 때는 게재문 또는 그 사본을 원문대로 선거공보에 게재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 대하여는 중의원명부등재자 또는 참의원명부등재자 수에 따라 자치성령으로 정하는 규격에 의하여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③중의원선거에서는 소선거구선출의원의원의 선거와 관련한 선거공고와 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와 관련한 선거공고는 다른 용지로 발행하여야 한다.

④참의원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 관계되는 선거공보와 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에 관계되는 선거공보는 별도의 용지로 발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⑤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 또는 都·道·府·縣知事의 선거에 대하여 하나의 용지에 2인이상의 공직후보자의 성명, 경력, 정견, 사진등을 게재하는 경우 또는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 대하여 하나의 용지에 2이상의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 또는 2이상의 참의원명부신고정당등의 명칭 및 약칭, 정견, 중의원명부등재자 또는 참의원명부등재자의 성명, 경력 및 당선인으로 될 순위등을 게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게재의 순서는 都·道·府·縣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첨으로 정한다.

⑥전조제1항의 신청을 한 공직후보자나 그 대리인 또는 동조제2항의 신청을 한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 또는 참의원명부신고정당등의 대표자나 그 대리인은 전항의 추첨에 입회할 수 있다.

제170조 (선거공보의 배포) 선거공보는 都·道·府·縣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町·村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선거에 사용할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자가 속하는 각 세대에 대하여 선거기일전 2일까지 배포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7조(선거의 동시시행)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시에 선거를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172조의2(임의제선거공보의 발행)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기일까지에 배포하는 것으로 한다.

②市·町·村선거관리위원회는 전항의 각 세대에 선거공보를 배포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都·道·府·縣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선거공보에 대하여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포하여야 할 날까지 신문기워넣기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한 배포를 행하는 것에 의하여 동항의 규정에 의한 배포에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市·町·村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소, 정·촌역장 기타 적당한 장소에 선거공보를 비치하는 등 당해 방법에 의한 선거공보의 배포를 보완하는 조치를 강구함에 의하여 선거인이 선거공보를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171조 (선거공보의 발행을 중지하는 경우) 제100조 제1항 내지 제4항(무역투표당선)의 규정에 해당하여 투표를 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게된 때 또는 천재 기타 피할 수 없는 사고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선거공보발행절차는 중지한다.

제172조 (선거공보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 제167조 내지 전조(선거공보의 발행절차)에 규정하는 것 외에, 선거공보의 발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회)가 정한다.

제172조의2 (임의제선거공보의 발행) 都·道·府·縣의회의원, 市·町·村的회의원 및 市·町·村장의 선거(선거의 일부무효에 의한 재선거를 제외함)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67조에서 제171조까지(선거공보

의 발행절차)의 규정에 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공보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게재문은 자수500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3조 및 제174조 삭제

제175조 (투표 기재소의 성명등의 게시) ①市·町·村선거관리위원회는 각선거에 대하여 그 선거당일,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투표소내의 투표의 게재를 하는 장소에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 또는 참의원명부신고정당등의 명칭 및 약칭 그리고 중의원명부등재자 또는 참의원명부등재자의 성명 및 당선인으로 될 순위의 게시, 기타의 선거에 있어서는 투표소내의 투표의 게재를 하는 장소 기타 적당한 장소에 공직후보자의 성명 및 당파별(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의 경우는 당해 후보자의 후보자신고정당의 명칭)의 게시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만, 제46조의2(임의제기호식투표)제1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투표를 행하는 선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게시의 게재 순서는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의 경우는 都·道·府·縣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제46조 제6항(투표용지에 인쇄하는 후보자 성명등의 순서)의 규정에 따라 선거구별로 정하는 순서로,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의 경우는 중앙선거관리회가 동항의 규정에 따라 정하는 순서로, 참의원(비례대표)의원선거의 경우는 어느 게시의 게재순서도 동일하게 되도록 都·道·府·縣선거관리위원회가 都·道·府·縣마다, 기타의 선거에 있어서는 市·町·村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구마다 추첨으로 정하는 순서에 의한다.

③공직후보자(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참의원명부신고정당등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은 전항의 추첨에 입회할 수 있다.

④전3항에 규정하는 것 외에, 제1항의 게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都·道·府·縣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176조 (교통기관의 이용)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 및 都·道·府·縣知事의 선거에 있어서는 공직후보자, 추천신고자 기타 선거운동에 종사하는 자가 선거운동기간중 관계구역내에 있어서 철도, 궤도, 일반승합여객자동차 운송사업등의 교통기관을 이용하기 위하여 공직후보자는 운수대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료로 함께15매의 특수승차권의 교부를 받을 수 있다.

제177조 (통상엽서등의 반환 및 양도금지) ①제142조제1항 및 제6항(무료엽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통상엽서의 교부를 받은 자, 동조 제8항(증지의 교부) 또는 제144조 제2항(검인 또는 증지의 교부)의 규정에 의하여 증지의 교부를 받은 자,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승차권의 교부를 받은 자는 다음에 열거한 때는 즉시 그 전부를 반환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만, 선거운동에 사용했기 때문에 그 전부를 반환할 수 없을 때는 선거운동에 사

용한 것을 증명하는 명세서를 첨부하여 나머지를 반환하지 않으면 안된다.

1. 공직후보자(후보자신고정당의 신고와 관련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는 같다)의 경우는 제86조(공직후보자의 입후보신고등) 제9항 또는 제86조의 4(공직후보자의 입후보신고등)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후보자의 신고를 각하한 때 또는 제86조 제12항 또는 제86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후보자를 사퇴한 때(제91조(공무원이었던 자의 취급) 제2항 또는 제103조(당선인이 겸직금지직에 있는 경우등의 특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후보자를 사퇴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후보자신고정당의 신고와 관련한 후보자인 경우는 제8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의 신고를 각하한 때 또는 동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신고정당이 당해 후보자의 신고를 취하한 때(제91조 제1항 또는 제10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의 신고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는 때를 포함한다)

3.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의 경우는 제86조의 2(명부에 의한 후보자의 신고등)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취하한 때 또는 동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각하한 때

②제142조제1항, 제2항 및 제6항(통상엽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위해서 사용하는 통상엽서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후보자신고정당, 동조 제8항 또는 제1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치의 교부를 받은 자, 후보자신고정당 또는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 또는 전조에 규정하는 특수승차권의 교부를 받은 자는 이것들을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안된다.

제178조 (선거기일후의 인사행위의 제한) 누구든지 선거기일[제100조(무투표당선)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를 행하지 않게된 때는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일]후에 있어서 당선 또는 낙선에 관하여 선거인에게 인사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에 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거인에 대하여 호별방문을 하는 것
2. 자필의 신서 및 당선 또는 낙선에 관한 축사, 문안등의 답례를 위해서 하는 신서를 제외하고는 문서도화를 배포하거나 또는 게시하는 것
3. 신문 또는 잡지를 이용하는 것.
4. 제151조의5(선거운동방송의 제한)에 게시하는 방송설비를 이용하여 방송하는 것.
5. 당선축하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하는 것
6. 자동차를 일렬로 연이어 또는 대오를 조직하여 왕래하는 등에 의하여 기세를 고조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
7. 당선에 관한 답례를 위해 당선인의 성명 또는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명칭을 말

하며 다니는 것.

제178조의2 (선거기일후의 문서도화의 철거) 제143조(문서도화의 게시)제1항제5호의 포스터[제144조의2(포스터게시장)제1항 및 제8항의 게시장에 게시된 것을 제외함.] 및 제164조의2(개인연설회장의 게시의 특례)제2항의 입간판 및 간판류를 게시하는 자는 선거기일[제100조(무투표당선)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를 행하지 않게 된 때는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일]후에 신속하게 이것을 철거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178조의3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의원선거에 있어서의 선거운동의 태양) ①중의원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와 관련한 선거운동의 제한에 관한 이 장의 규정은 소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와 관련한 선거운동의 이 법률이 허용하는 태양에 있어서 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 관련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②중의원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와 관련한 선거운동의 제한에 관한 이 장의 규정은 후보자신고정당인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이 행하는 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와 관련한 선거운동이 이 법률이 허용하는 태양에 있어서 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와 관련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③참의원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 관계되는 선거운동의 제한에 관한 본장의 규정은, 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에 관계되는 선거운동이 이 법률에 있어서 허용되는 태양에 있어서 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 관계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제14장 선거운동에 관한 수입 및 지출과 기부

제179조 (수입, 기부 및 지출의 정의) ①이 법률에 있어서 「수입」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상의 이익의 수수, 그 수수의 승락 또는 약속을 말한다.

②이 법률에 있어서 「기부」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상의 이익의 공여 또는 교부, 그 공여 또는 교부의 약속으로 당비, 회비 기타 채무의 이행으로서 행하여지는 것 이외의 것을 말한다.

③이 법률에 있어서 「지출」이라 함은 그면, 물품 기타의 재산상의 이익의 공여 또는 그 공여 또는 교부의 약속을 말한다.

④전3항의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상의 이익에는 회환, 공화, 향전 또는 축의로서 공여되거나 또는 교부되는 것, 기타 이에 유사한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179조의 2 (적용제외) 다음 조 내지 제197조의 규정은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

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0조 (출납책임자의 선임 및 신고) ①공직후보자는 그 선거운동에 관한 수입 및 지출의 책임자(이하 출납책임자라 한다) 1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만, 공직후보자가 스스로 출납책임자로 되거나 후보자신고정당 또는 추천신고자(추천신고자가 수인 있을 때는 그 대표자. 이하 이 항에 있어서는 같다)가 당해 후보자의 승락을 얻어 출납책임자를 선임하거나 또는 추천신고자가 당해 후보자의 승낙을 얻어 스스로 출납책임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②출납책임자를 선임한 자(선임한 자가 후보자신고정당인 경우는 그 대표자)는 문서로 출납책임자가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액을 정하고 출납책임자와 함께 이에 서명·날인하지 않으면 안된다.

③출납책임자를 선임한 자(스스로 출납책임자로 된 자를 포함함)는 즉시 출납책임자의 성명·주소·직업·생년월일 및 선임년월일 그리고 공직후보자의 성명을 문서로 당해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④후보자신고정당 또는 추천신고자가 출납책임자를 선임한 경우에 있어서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는 그 선임에 있어서 공직후보자의 승락을 얻은 것을 증명하는 서면(추천신고자가 출납책임자를 선임한 경우에 있어 추천신고자가 수인 있을 때는 동시에 그 대표자인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181조 (출납책임자의 해임 및 사임) ①공직후보자는 문서로 통지함에 의하여 출납책임자를 해임할 수 있다. 출납책임자를 선임한 후보자신고정당 또는 추천신고자가 당해 후보자의 승락을 얻은 때도 또한 같다.

②출납책임자는 문서로 공직후보자 및 당해 출납책임자를 선임한 자에게 통지함에 의하여 사임할 수 있다.

제182조 (출납책임자의 이동) ①출납책임자에 이동이 있는 때는 출납책임자를 선임한 자는 즉시 제180조(출납책임자의 선임 및 신고)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의 예에 의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해임 또는 사임에 의한 이동에 관한 것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는 것을 증명할 서면을 첨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후보자신고정당 또는 추천신고자가 출납책임자를 해임한 경우에 있어서는 동시에 그 해임에 있어 공직후보자의 승락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183조 (출납책임자의 직무대행) ①공직후보자 또는 후보자신고정당이 출납책임자를 선임한 경우 및 추천신고자가 스스로 출납책임자가 된 경우는 출납책임자에게 사고가 있을 때 또는 출납책임자가 없을 때는 공직후보자가 대신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②추천신고자가 출납책임자를 선임한 경우에 있어 출납책임자에게 사고가 있을 때

또는 출납책임자가 없을 때는 당해 추천신고자가 대신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당해 추천신고자에게도 사고가 있을 때 또는 그 자도 없을 때는 공직후보자가 대신하여 출납책임자의 직무를 행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납책임자에 대신하여 그 직무를 행하는 자는 제180조(출납책임자의 선임 및 신고)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의 예에 의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는 출납책임자의 성명(출납책임자의 선임을 한 추천신고자에게도 사고가 있을 때 또는 그 자도 없을 때에는 동시에 그 성명), 사고 또는 없는 것의 사실 및 그 직무대행을 시작한 연월일을 기재하지 않으면 안된다. 출납책임자에 대신하여 그 직무를 행하는 자가 이것을 그만둔 때는 그 사유 및 그 직무대행을 그만둔 연월일을 기재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183조의2(출납책임자의 신고의 효력) 제180조(출납책임자의 선임 및 신고)제3항 및 제4항, 제182조(출납책임자의 이동) 또는 전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자료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인수시각증명의 취급으로 이것을 우편국에 위탁한 때로써 이들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184조(신고전의 기부금의 수령 및 지출의 금지) 출납책임자[출납책임자에 대신하여 그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함. 제190조(출납책임자의 사무인계)의 규정을 제외하고 이하 같음.]는 제180조(출납책임자의 선임 및 신고)제3항 및 제4항, 제182조(출납책임자의 이동) 또는 제183조(출납책임자의 직무대행)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된 후가 아니면 공직후보자의 추천, 지지 또는 반대 기타의 운동을 위해서 어떠한 명의로써 하든 불문하고 공직후보자를 위해에 기부를 받거나 또는 지출을 할 수가 없다.

제185조(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 ①출납책임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에 제시하는 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면 안된다.

1. 선거운동에 관한 모든 기부 및 기타의 수입(공직후보자를 위해서 공직후보자 또는 출납책임자와 의사를 통하여 행하여진 기부를 포함함)

2. 전호의 기부를 한 자의 성명, 주소 및 직업 그리고 기부의 금액(금전이회의 재산상의 이익에 대해서는 시가로 견적한 금액. 이하 같음.) 및 연월일

3. 선거운동에 관한 모든 지출(공직후보자를 위해서 공직후보자 또는 출납책임자와 의사를 통하여 행하여진 지출을 포함함)

4. 전호의 지출을 받은 자의 성명, 주소 및 직업 그리고 지출의 목적, 금액 및 연월일

②전항의 회계장부의 종류 및 양식은 자치성령으로 정한다.

제186조(명세서의 제출) ①출납책임자 이외의 자로 공직후보자를 위해서 선거운동에

관한 기부를 받은 자는 기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기부를 한 자의 성명·주소 및 직업 그리고 기부의 금액 및 연월일을 기재한 명세서를 출납책임자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만, 출납책임자의 청구가 있을 때는 즉시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②전항의 기부로, 당해 후보자가 후보자신고가 있기 전에 받은 것에 대해서는 입후보신고후 즉시 출납책임자에게 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187조 (출납책임자의 지출권한) ①입후보준비를 위해서 요하는 지출 및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에 요하는 지출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에 관한 지출은 출납책임자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다만, 출납책임자의 문서에 의한 승락을 얻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입후보준비를 위해서 요한 지출로 공직후보자나 출납책임자로 된 자가 지출하거나 또는 다른 자가 그 자와 의사를 통하여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출납책임자는 그 취임후 즉시 당해 후보자 또는 지출자에 대하여 그 정산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188조 (영수증등의 징수 및 송부) ①출납책임자 또는 공직후보자나 출납책임자와 의사를 통하여 그를 의하여 지출을 한 자는 선거운동에 관한 모든 지출에 대하여 지출의 금액, 연월일 및 목적을 기재한 영수증 기타 지출을 증명할 서면을 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만, 이것을 징구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직후보자 또는 출납책임자와 의사를 통하여 그를 위하여 지출을 한 자는 전항의 서면을 즉시 출납책임자에게 송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189조 (선거운동에 관한 수입 및 지출의 보고서의 제출) ①출납책임자는 공직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관하여 행하여진 기부 및 기타의 수입 그리고 지출에 대하여 제185조(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 제1항 각호에 게시하는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전조 제1항의 영수증 기타의 지출을 증명할 서면의 사본(동항의 영수증 기타의 지출을 증명한 서면을 징구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는 그 취지 그리고 지출의 금액, 연월일 및 목적으로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1. 당해 선거기일의 공시 또는 고시일전까지, 선거기일의 공시 또는 고시일로부터 선거기일까지 및 선거기일 경과후에 행하여진 기부 및 기타 수입 그리고 지출에 대하여는 이것을 함께 정산하여 선거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2. 전호의 정산신고후에 행하여진 기부 및 기타의 수입 그리고 지출에 대하여는 그 기부 및 기타의 수입 그리고 지출이 행하여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②전항의 보고서의 양식은 자치성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보고서에는 사실의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을 선서하는 취지의 문서를 첨부

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190조 (출납책임자의 사무인계) ①출납책임자가 사임하거나 또는 해임된 경우에 있어서는 즉시 공직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관하여 행하여진 기부 및 기타의 수입 그리고 지출의 계산을 하여, 새로이 출납책임자로 된 자에 대하여, 새로이 출납책임자로 된 자가 없을 때는 출납책임자에 대신하여 그 직무를 행하는 자에 대하여 인계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출납책임자에 대신하여 그 직무를 행하는 자에 대하여 인계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출납책임자에 대신하여 그 직무를 행하는 자가 사무의 인계를 받은 후 새로이 출납책임자가 정해진 때도 또한 같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인계를 하는 자가 인계의 예에 의하여 인계서를 작성하고, 인계의 취지 및 인계 연월일을 기재하며, 인계를 하는 자 및 인계를 받는 자가 함께 서명압인하여 현금 및 장부 기타의 서류와 함께 인계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191조 (장부 및 서류의 보존) 출납책임자는 회계장부, 명세서 및 제188조제1항(영수증등의 청구)의 영수증 기타의 지출을 증명할 서면을 제189조(선거운동에 관한 수지 및 지출의 보고서의 제출)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제출일로부터 3일간 보존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192조 (보고서의 공표, 보존 및 열람) ①제189조(선거운동에 관한 수입 및 지출의 보고서의 제출)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수리한 때는, 당해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치성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표하지 않으면 안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는, 都·道·府·縣선거관리위원회에 있어서는 都·道·府·縣의 공표에 의하여, 市·町·村선거관리위원회에 있어서는 그가 미리 고시로써 정한 바와 주지시키기 쉬운 방법에 의하여 행한다.

③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는 당해 보고서를 수리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수리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하지 않으면 안된다.

④누구든지 전항의 기간내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고서의 열람을 청구할 수가 있다.

제193조 (보고서의 조사에 관한 자료의 요구) 都·道·府·縣선거관리위원회 또는 市·町·村선거관리위원회는 189조(선거운동에 관한 수입 및 지출의 보고서의 제출)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공직후보자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4조 (선거운동에 관한 지출금액의 제한) ①선거운동에 관한 지출금액은 다음에 열거한 선거 이외의 선거에 있어서는 공직후보자 1인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수를 당해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곱하여 얻은 액과 당

해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곱하여 얻은 액과 당해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정령으로 정하는 액과를 합산한 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

그 선거기일의 공시 또는 고시일에 있어서 당해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의 총수

2.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

통상선거에 있어서의 당해 선거구내의 의원정수로써 그 선거기일의 공시 또는 고시일에 있어서 당해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의 총수를 나누어 얻은 수

3. 지방공공단체의회의원의 선거

당해 선거구내의 의원정수(선거구가 없을 때는 의원의 정수)로써 그 선거기일의 고시일에 있어서 당해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의 총수를 나누어 얻은 수

4. 지방공공단체장의 선거

그 선거기일의 고시일에 있어서 당해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의 총수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100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는 그 단수는 100엔으로 한다.

제195조 (선거의 일부무효 및 선거기일등의 정기의 경우의 선거운동에 관한 지출금액의 제한) 선거의 일부무효에 의한 재선거, 제57조(조정투표)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의 정기 그리고 제86조의 4 제7항(장의 후보자가 1인으로 된 경우) 및 제126조제2항(都·道·府·縣知事와 市·町·村장의 후보자가 1인으로 된 경우의 선거기일의 정기) [이들 규정 및 제86조의 4 제6항(장의 후보자가 사망한 경우등)의 규정에 대하여 제46조의2(임의제기호식투표)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의 규정에 의한 선거기일의 정기의 경우에 있어서의 선거운동에 관한 지출금액은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직후보자1인에 대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6조 (선거운동에 관한 지출금액의 제한액의 고시) 당해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선거기일의 공시 또는 고시가 있는 후에 즉시 전2조의 규정에 의한 액을 고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197조 (선거운동에 관한 지출로 보지 않는 것의 범위) ①다음에 게시하는 지출은 선거운동에 관한 지출이 아닌 것으로 본다.

1. 입후보준비를 위해서 요한 지출로 공직후보자 또는 출납책임자로 된 자가 한 지출 또는 그 자와 의사를 통하여 한 지출 이외의 것.

2. 제86조(공직후보자의 입후보의 신고등)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8항 또는 제86조의 4(공직후보자의 입후보신고등) 제1항, 제2항, 제5항, 제6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후에 공직후보자 또는 출납책임자와 의사를 통하여 한 지출이외의 것.

3. 공직후보자가 승용하는 선차마등을 위해서 요한 지출
4. 선거기일후에 있어서 선거운동의 잔무정리를 위해서 요한 지출
5. 선거운동에 관하여 지불하는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조세 또는 수수료
6. 후보자신고정당이 행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요하는 지출
7. 제201조의4(추천단체의 선거운동의 특례 또는 제14장의3(정당 기타의 정치단체 등의 선거에 있어서의 정치활동)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 기타의 정치단체가 행하는 선거운동을 위해서 요한 지출

②제141조(선거운동에 사용하는 경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선박을 사요하기 위해서 요한 지출도 또한 전항과 같다.

제197조의2 (실비변상 및 보수의 액) ①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 이외의 선거에서는 선거운동(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에서 후보자신고정당이 행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다음 항에 있어서는 같다)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는 실비변상 그리고 선거운동을 위해서 사용하는 노무자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는 보수 및 실비변상의 액에 대하여는 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②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 이외의 선거에서는 선거운동에 종사하는 자(선거운동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무원 및 오로지 제141조(자동차, 선박 및 확성기의 사용)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위해서 사용되는 자동차 또는 선박의 위에 있어서의 선거운동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 외에 당해 선거에 대하여 제86조(공직후보자의 입후보신고)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8항 또는 제86조의 4(공직후보자의 입후보신고등) 제1항, 제2항, 제5항, 제6항 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후보자의 신고가 있는날로부터 그 선거기일의 전일까지의 사이에 한하여 공직후보자 1인에 대하여 1일 50인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각선거마다 정령으로 정하는 인원수의 범위내에서 1인 1일에 대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액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③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신고정당은 당해 후보자신고정당이 행하는 선거운동에 종사하는 자(당해 후보자신고정당이 행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무원 및 오로지 제1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또는 선박 위에서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에 한한다)에 대하여 당해 선거에 관하여 제86조 제1항 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날로부터 그 선거기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한하여 1인 1일에 대하여 정령이 정하는 액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④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에서는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은 당해 중의원명부신

고정당등이 행하는 선거운동에 종사하는 자(당해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이 행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무원 및 오로지 제1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또는 선박 위에서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에 한한다)에 대하여 당해 선거에 관하여 제86조의 2(명부에 의한 입후보의 신고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날로부터 그 선거기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한하여 1인 1일에 대하여 정령이 정하는 액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⑤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공직후보자가 미리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자에 한한다.

제198조 삭제

제199조 (특정의 기부의 금지) ①중의원의원 및 참의원의원의 선거에 관해서는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관해서는 당해 지방공공단체와 청부 기타 특별한 이익을 수반하는 계약의 당사자인 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기부를 하여서는 안된다.

②회사 기타의 법인이 용자(시험연구, 조사 및 재할복구에 관계되는 것은 제외함)를 받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용자를 행하고 있는 자가 당해 용자에 대하여 중의원의원 및 참의원의원의 선거에 관해서는 국가로부터, 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관해서는 당해 지방공공단체로부터 이자보급금의 교부의 결정(이자보급금에 관계되는 계약의 승락의 결정을 포함함. 이하 본조에 있어서 같음.)을 받은 때는 당해 이자보급금의 교부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당해 이자보급금의 교부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을 경과한 날(당해 이자보급금의 교부결정의 전부의 취소가 있는 때는 당해 취소의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상, 당해 회사 기타의 법인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기부를 해서는 안된다.

제199조의2 (공직후보자등의 기부의 금지) ①공직후보자 또는 공직후보자로 되려고 하는 자(공직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는 『공직후보자등』이라 한다)는 당해 선거구(선거구가 없을 때는 선거가 행하여지는 구역. 이하 이조에서는 같다) 내에 있는 자에 대하여 어떠한 명의로써 하든 불문하고, 기부를 해서는 안된다. 다만, 정당 기타의 정치단체나 그 지부 또는 당해 공직후보자등의 친족에 대하여 하는 경우 및 당해 공직후보자등이 오로지 정치상의 주의 또는 시책을 보급하기 위하여 행하는 강습회 기타 정치교육을 위한 집회(참가자에게 향응접대(통상 정도의 식사제공은 제외한다), 당해 선거구 밖에서 행하여지는 것 및 제199조의 5(후원단체에 관한 기부등의 금지) 제4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당해 선거마다 당해 각호에 정하는 기간내에 행하여지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 있어서는 같다)에 관하여 필요 부득이한 실비의 보상(식비에 대한 실비의 보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 있

어서는 같다)으로서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직후보자등을 기부(의 명의인)으로 하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 대한 기부(에 대해서는 당해 공직후보자등 이외의 자는 어떠한 명(의)에 의한 것이든 불문하고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당해 공직후보자등의 친족에게 하는 경우 및 당해 공직후보자등이 오로지 정치(상)의 주(의)나 시책(을) 보급(하)기 위하여 행(하)는 강(습)회 기타 정치(교)육(을) 위한 집(회)에 필(요) 불(가)피(한) 실(비)의 보(상)으로 하는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③누구든지 공직후보자등에 대하여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 대한 기부(를) 권(유)하거나 또는 요(구)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당) 기타 정치(단)체 및 그 지(부) 또는 당(해) 공직후보자등의 친(족)에게 기부(를) 권(유)하거나 요(구)하는 경우 및 당(해) 공직후보자등이 오로지 정치(상)의 주(의)나 시책(을) 보급(하)기 위하여 행(하)는 강(습)회 기타 정치(교)육(을) 위한 집(회)에 필(요)불(가)피(한) 실(비)의 보(상)으로 기부(를) 권(유)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④누구라도 공직후보자등을 기부(의 명의인)으로 하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 대한 기부(에 대해서는 당해 공직후보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 이를 권(유)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공직후보자등의 친(족)에 대한 기부(를) 권(유)하거나 요(구)하는 경우 및 당해 공직후보자등이 오로지 정치(상)의 주(의) 또는 시책(을) 보급(하)기 위하여 행(하)는 강(습)회 기타 정치(교)육(을) 위한 집(회)에 관(하)여 필(요)불(가)피(한) 실(비)의 보(상)으로 기부(를) 권(유)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199조의3 (공직후보자등의 관계회사등의 기부(의) 금지) 공직후보자 또는 공직후보자로 되려고 하는 자(공직(에) 있는 자(를) 포함(함))가 그 임(직)원 또는 구(성)원인 회(사) 기타의 법(인) 또는 단(체)는 당(해) 선(거)구(선(거)구가 없을 때는 선(거)가 행(하)여(지)는 구(역) 내(에) 있는 자(에) 대(하)여 어(떠)한 명(의)로(써) 하(든) 불(문)하고 이(들)의 성(명)을 표(시)하(거)나 또는 이(들)의 성(명)이 유(추)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기(부)를 하(여)서(는) 안(되)다. 다만 정(당) 기타의 정치(단)체 또는 그 지(부)에 대(하)여 기(부)를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9조의4 (공직후보자등의 성명(을) 붙인 단(체)의 기부(의) 금지) 공직후보자 또는 공직후보자로 되려고 하는 자(공직(에) 있는 자(를) 포함(함))의 성(명)이 표(시)되(거)나 또는 그 성(명)이 유(추)되(는) 것(과) 같(은) 명(칭)이 표(시)되(어) 있(는) 회(사) 기타의 법(인) 또는 단(체)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당(해) 선(거)구(선(거)구가 없을 때는 선(거)가 행(하)여(지)는 구(역) 내(에) 있는 자(에) 대(하)여 어(떠)한 명(의)로(써) 하(든) 불(문)하고 기(부)를 하(여)서(는) 안(되)다. 다만 정(당) 기타의 정치(단)체나 그 지(부) 또는 당(해) 공직후보자나, 공직후보자로 되려고 하는 자(공직(에) 있는 자(를) 포함(함))에 대(하)여 기(부)를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9조의5 (후원(단)체에 관한 기(부)등(의) 금지) ①정(당) 기타의 단(체) 또는 그 지(부)로, 특

정의 공직후보자나 공직후보자로 되려고 하는 자(공직에 있는 자를 포함함.)의 정치상의 주의나 시책을 지지하거나 또는 특정의 공직후보자나 공직후보자로 되려고 하는 자(공직에 있는 자를 포함함.)를 추천하거나 지지하는 것이 그 정치활동중 주된 것인 자(이하 「후원단체」라 함.)는 당해 선거구(선거구가 없을 때에는 선거가 행하여지는 구역) 안에 있는 자에게 어떠한 명의로서 하든 불문하고 기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당 기타의 정치단체나 그 지부 또는 당해 공직후보자나 공직후보자로 되려고 하는 자(공직에 있는 자를 포함함.)에 대하여 기부를 하는 경우 및 당해 후원단체가 그 단체의 설립목적에 따라 행하는 행사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기부(花輪·헌화·축의·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제4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당해 선거의 기간 안에 행하여지는 것은 제외한다)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후원단체의 총회 기타의 집회(후원단체를 결성하기 위한 집회를 포함함.) 또는 후원단체가 행하는 견학, 여행 기타의 행사에 있어서 제4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당해 선거마다 일정기간, 당해 선거구(선거구가 없을 때는 선거가 행하여지는 구역)내에 있는 자에 대하여 향응접대(통상 행해지는 정도의 식사의 제공을 제외함.)를 하거나 또는 금전이나 기념품 기타의 물품을 공여하여서는 안된다.

③공직후보자 또는 공직후보자로 되려고 하는 자(공직에 있는 자를 포함함.)는 제199조소2(공직후보자등의 기부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당해 선거마다 일정기간, 당해 공직후보자 또는 공직후보자로 되려고 하는 자(공직에 있는 자를 포함함.)에 관계되는 후원단체[정치자금규정법(1948년 법률 제194호)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된 정치단체를 제외함.]에 대하여 기부를 하여서는 안된다.

④본조에 있어서 「일정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1. 중의원의원의 총선거에 있어서는 중의원의원의 임기만료일전 90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당해 총선거기일까지의 사이 또는 중의원의 해산일의 익일부터 당해 총선거기일까지의 사이

2. 참의원의원의 통상선거에 있어서는 참의원의원의 임기만료일전 90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당해 통상선거기일까지의 사이

3. 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원 또는 장의 선거(재선거 및 보결선거를 제외함.)에 있어서는 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대하여서는 그 임기만료일전 90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당해 선거기일까지의 사이,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이외의 선거에 대하여는 당해 선거를 행할 사유가 발생한 때 그 취지를 당해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고시한 날의 익일부터 당해 선거기일까지의 사이

4. 중의원의원, 참의원의원 그리고 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원 또는 장의 재선거 또는 보결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를 행할 사유가 발생한 때 그 취지를 당해 선거

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회)가 고시한 날의 익일부터 당해 선거 기일까지의 사이

제200조 (특정인에 대한 기부의 권유, 요구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제 199조(특정의 기부의 금지)에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 기부를 권유하거나 또는 요구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제199조에 규정하는 날로부터 기부를 받아서는 안된다.

제201조 삭제

제14장의2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선거의 특례

제201조의2 (특례의 범위)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에 대하여는 이 장에 규정하는 특례에 의하는 외에 이 법률의 기타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있다.

제201조의3 삭제

제201조의4 (추천단체의 선거운동의 특례) ①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정당 기타의 정치단체로 제86조의 4 제3항(입후보계의 기재사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 기타의 정치단체에 소속하는 자로 기재된 후보자(이하 「소속후보자」라 함.)로 그가 속하는 정당 기타의 정치단체가 제201조의 6(통상선거에서의 정치활동의 규제) 제3항(제201조의 7 제2항(참의원의원의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의 경우의 규제))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의 확인서의 교부를 받은 정당 기타의 정치단체인 자 이외의 공직후보자로 추천하거나 또는 지지하는 자는 당해 공직후보자의 신고가 있는 날로부터 당해 선거기일의 전일까지의 사이 그 추천하거나 또는 지지하는 공직후보자(이하 본조 및 제201조의 6에 있어서 「추천후보자」라 함.)가 속하는 선거구에 대하여 당해 추천후보자수의 4배에 상당하는 회수이내에서 당해 추천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추천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으려고 하는 정당 기타의 정치단체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천하거나 또는 지지하려고 하는 공직후보자의 당해 정당 기타의 정치단체의 추천후보자로 되는 것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당해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都·道·府·縣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여 그 확인서를 교부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

③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하나의 정당 기타의 정치단체의 추천후보자로 된자는 당해 선거에 있어서 당해 하나의 정당 기타의 정치단체 이외의 정당 기타의 정치단체의 추천후보자로 될 수 없고 또한 제201조의 6 제3항(제201조의 7 제2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의 확인서의 교부를 받은 정당 기타의 정치단체의

소속후보자이었던 자는 당해 선거에 있어서 정당 기타의 정치단체의 추천후보자로 될 수 없다.

④제2항의 확인서를 교부한 都·道·府·縣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그 취지를 자치 대신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⑤제166조(특정의 건물 및 시설에 있어서의 연설등의 금지)(제1호에 관계되는 부분에 한함.)의 규정은 제1항의 추천연설회에 적용하지 않는다.

⑥제1항의 추천연설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문서도화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하여 게시 또는 배포할 수 있다.

1. 추천연설회의 개최를 주지시키기 위해서 게시하는 포스터

2. 추천연설회의 회장에 있어서 그 추천연설회의 개최중 게시하는 포스터, 입간판 및 간판류

⑦전항제1호의 포스터는 하나의 추천연설회의 회장에 대하여 500매를 초과할 수 없다.

⑧제6항제1호의 포스터에 대하여는 당해 선거구의 특정후보자의 성명 또는 그 성명이 유추되는 것과 같은 사항을 기재해서는 안된다.

⑨제143조제6항(선거당일에 있어서의 포스터의 게시), 제144조제2항, 제4항 및 제5항(포스터의 검인등), 제145조(포스터의 게시개소등)그리고 제178조의2(선거기일후의 문서도화의 철거)의 규정은 제6항제1호의 포스터에 대하여, 제143조제8항 및 제9항(연설회장에 있어서의 포스터, 입간판 및 간판류의 수 및 규격)그리고 제143조의2(문서도화의 철거의무)의 규정은 제6항제2호의 포스터, 입간판 및 간판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제144조 제5항 후단 중 「게시책임자」는 「제201조의 4제2항(추천단체의 확인)의 확인서의 교부를 받은 정당 기타의 정치단체」로, 「당해 후보자신고정당 또는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인 것은 「당해 정당 기타 정치단체」로, 제145조제1항단서중 「자치성령으로 정하는 것 및 제144조의 2 및 제144조의 4 (임의제포스터게시장)의 게시장에 게시하는 경우」는 「명령으로 정한 것」으로 대체하여 읽는다.

제14장의3 정당 기타 정치단체등의 선거에 있어서의 정치활동

제201조의5 (총선거에 있어서의 정치활동의 규제) 정당 기타의 정치활동을 행하는 단체는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정치활동중 정당연설회 및 가두정당연설의 개최, 포스터의 게시, 입간판 및 간판류(정당 기타의 정치단체의 본부 또는 지부의 사무소에 있어서 게시하는 것을 제외함. 이하 같음.)의 게시 및 배라(이에

유사한 문서도화를 포함함. 이하 같음.)의 배포(이들의 게시 또는 배포에는 각각 포스터, 입간판이나 간판류 또는 뼈라로 정당 기타의 정치활동을 행하는 단체의 심벌마크를 표시하는 것의 게시 또는 배포를 포함함. 이하 같음.) 그리고 선전고지(정당 기타의 정치활동을 행하는 단체가 발행하는 신문 및 잡지의 보급·선전을 포함함. 이하 같음.)를 위한 자동차, 선박 및 확성기의 사용에 대하여는 중의원의원의 총선거기일의 고시일로부터 선거당일까지의 사이에 한하여 이것을 할 수 없다.

제201조의6 (통상선거에 있어서의 정치활동의 규제) ①정당 기타의 정치활동을 행하는 단체는 그 정치활동중 정담연설회 및 가두정담연설의 개최, 포스터의 게시, 입간판 및 간판류의 게시 및 뼈라의 배포 그리고 선전·고지를 위한 자동차 및 확성기의 사용에 대하여는, 참의원의원의 통상선거기일의 공시일로부터 선거당일까지의 사이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이거나 또는 당해 선거에 있어서 전국을 통틀어 10인이상의 소속후보자를 갖는 정당 기타의 정치단체가 다음 각호에 게시하는 정치활동에 대하여 그 선거기일의 공시일로부터 선거기일의 전일까지의 사이 당해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담연설회의 개최에 대하여는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의 1선거구마다 1회

2. 가두정담연설의 개최에 대하여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정지하고 있는 것의 차상 및 그 주위

3. 정책의 보급·선전(정당 기타 정치단체가 발행하는 신문 및 잡지의 보급·선전을 포함한다. 이하에서는 같다) 및 연설의 고지를 위한 자동차의 사용에 대하여는 정당 기타의 정당단체의 본부 및 지부를 통틀어 6대 이내 소속후보자(중의원명부등 재자를 포함함. 이하 이 조에 있어서는 같다)의 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초과하는 수가 5인을 증가할 때마다 1대를 6대에 더한 대수 이내

3의2. 정책의 보급·선전 및 연설의 고지를 위한 확성기의 사용에 대하여는 정담연설회의 회장, 가두정담연설(정담연설을 포함함.)의 장소 및 전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의 차상

4. 포스터의 게시에 대하여는 길이 85cm, 폭 60cm 이내의 것 7만매 이내, 소속후보자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초과하는 수가 5인을 증가할 때마다 5천매를 7만매에 더한 매수 이내

5. 입간판 및 간판류의 게시에 대하여는

가. 그 개최하는 정담연설회의 고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하나의 정담연설회마다 입간판 및 간판류를 통틀어 5이내) 및 그 회장내에서 사용하는 것.

나.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

6. 뼈라의 배포(산포를 제외함.)에 대하여는 자치대신에게 신고할 것 3종류 이내.

②전항 제4호의 포스터 및 동항 제6호의 전단은 제142조(문서도화의 배포) 및 제

143조(문서도화의 게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참의원명부신고정당등 또는 소속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선거구(선거구가 없는 때에는 선거가 행하여지는 구역)의 특정후보자의 성명 또는 그 성명이 유추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③제1항 단서규정의 적용을 받는 정당 및 기타 정치단체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후보자의 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자치성대신에게 신청을 하여 그 확인서의 교부를 받아야 한다.

④자치대신은 전항의 확인서를 교부하는 때는 그 뜻을 도도부현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1항규정의 적용에 대하여서는 제3항외 확인서의 교부를 받은 하나의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소속후보자가 된 자는 당해 선거에서 당해 하나의 정당 기타 정치단체 이외의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소속후보자가 될 수 없으며 또한 하나의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추천후보자가 된 자는 당해 선거에서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소속후보자가 될 수 없다.

제201조의7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의원의 재선거 및 보결선거의 경우의 규제) ①제201조의5(총선거에 있어서의 정치활동의 규제)의 규정은 중의원의원의 재선거 또는 보결선거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동조 「중의원의원의 재선거 또는 보결선거가 행하여지는 구역에 있어서 그 선거기일의 고시일로부터 선거당일까지의 사이에 한하여」로, 동항 단서중 「전국을 통틀어 25인」은 「1인」으로, 「공시」는 「고시」로 대체하여 읽는 것으로 하고, 동항제3호에 규정하는 자동차의 대수는 소속후보자수에 불구하고 1대로 하고 동항제6호의 뼈라의 신고는 당해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행하는 것으로 한다.

②전조의 규정은 참의원의원의 재선거 또는 보결선거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동조 제1항 본문 중 「참의원의원의 통상선거기일의 공시일로부터 선거당일까지의 사이에 한하여」는 「참의원의원의 재선거 또는 보결선거가 행하여지는 구역에 있어서 그 선거기일의 고시일로부터 선거당일까지의 사이에 한하여」로, 동항 단서중 「전국을 통틀어 10인」은 「1인」으로, 「공시」는 「고시」로 대체하여 읽는 것으로 하고, 동항제3호에 규정하는 자동차의 대수는 소속 후보자(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참의원명부등재자)의 수에 불구하고 1대로 하며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의 재선거 또는 보결선거에 대하여는 동항제4호에 규정하는 포스터의 매수는 소속후보자수에 불구하고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의 1선거구마다 7백매 이내로 하고 동항제6호의 뼈라의 신고는 당해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201조의8 (都·道·府·縣 또는 指定都市의 의회의원의 선거에 있어서의 정치활동의

규제) ①정당 기타의 정치활동을 행하는 단체는 그 정치활동중 정담연설회 및 가두 정담연설의 개최, 포스터의 게시, 입간판 및 간판류의 게시 및 배라의 배포 그리고 선전·고지를 위한 자동차 및 확성기의 사용에 대하여는 都·道·府·縣의회의원 또는 지정도시의회의원의 일반선거가 행하여지는 구역이 있어서 그 선거기일의 고시일로부터 선거당일까지의 사이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선거가 행하여지는 구역을 통틀어 3인이상의 소속후보자를 갖는 정당 기타의 정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게시하는 정치활동에 대하여 그 선거기일의 고시일로부터 선거기일의 전일까지의 사이 당해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담연설회의 개최에 대하여는 소속후보자수의 4배에 상당하는 회수
2. 가두정담연설의 개최에 대하여는 다음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정지하고 있는 것의 차상 및 그 주위

3. 정책의 보급·선전 및 연설의 고지를 위한 자동차의 사용에 대하여는 정당 기타의 정치단체의 본부 및 지부를 통틀어 1대, 소속후보자수가 3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초과하는 수가 5인을 증가할 때마다 1대를 1대에 더한 대수 이내.

3의2. 정책의 보급·선전 및 연설의 고지를 위한 확성기의 사용에 대하여는 정책연설회의 회장, 가두정담연설(정담연설을 포함함.)의 장소 및 전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의 차상

4. 포스터게시에 대하여는 1선거구마다 길이 85cm, 폭 60cm 이내의 것 100매 이내, 당해 선거구의 소속후보자수가 1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초과하는 수가 1인을 증가할 때마다 50매를 100매에 가한 대수 이내

5. 입간판 및 간판류의 게시에 대하여는

가. 그 개최하는 정책연설회로의 고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하나의 정담연설회마다 입간판 및 간판류를 통틀어 5이내) 및 그 회장내에서 사용하는 것.

나.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

6. 배라의 배포(산포를 제외함.)에 대하여는 당해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것 2종류 이내

②제201조의 6(총선거에 있어서의 정치활동의 규제) 제2항의 규정은 전항 제4호의 포스터 및 동항제6호의 배라에 대하여, 동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단서의 규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동조 제2항 중 「당해 참의원명부신고정당등 또는 소속후보자」인 것은 「소속후보자」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자치대신」은 「당해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③전 2항의 규정은 都·道·府·縣의회의원 및 지정도시의회의원의 재선거, 보결선거 또는 증원선거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제1항중 「선거가 행하여지는 구역을 통틀어 3인이상의 소속후보자」는 「소속후보자」로 대체하여 읽는 것으로

로 한다.

제201조의9(都·道·府·縣知事 또는 시장의 선거에 있어서의 정치활동의 규제) ①정당 기타의 정치활동을 행하는 단체는 그 정치활동중 정담연설회 및 가두정담연설의 개최, 포스터의 게시, 입간판 및 간판류의 게시 및 삐라의 배포 그리고 선전·고지를 위한 자동차 및 확성기의 사용에 대하여는 都·道·府·縣知事 또는 시장의 선거가 행하여지는 구역에 있어서 그 선거기일의 고지일로부터 선거당일까지의 사이에 한하여 이것을 할 수 없다. 다만 정당 기타의 정치단체로 소속후보자 또는 지원후보자(제86조의4(공직후보자의 입후보신고)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 기타의 정치단체에 소속하는 자로서 기재되지 않은 공직후보자로 당해 정당 기타의 정치단체가 추천하거나 또는 지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 및 201조의11(정치활동의 태양)에 있어서 같다)를 갖는 자가 다음의 각호에 게시하는 정치활동에 대하여 그 선거기간의 고지일로부터 선거기일의 전일까지의 사이에 당해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담연설회의 개최에 대하여는 都·道·府·縣知事의 선거에 있어서는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구마다 1회, 시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선거가 행하여지는 구역에 대하여 1회.

2. 가두정담연설의 개최에 대하여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정지하고 있는 것의 차상 및 그 주위

3. 정책의 보급·선전 및 연설의 고지를 위한 자동차의 사용에 대하여는 정당 기타의 정치단체의 본부 및 지부를 통틀어 1대.

3의2. 정책의 보급·선전 및 연설의 고지를 위한 확성기의 사용에 대하여는 정담연설회의 회장, 가두정담연설(정담연설을 포함함.)의 장소 및 전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의 차상.

4. 포스터의 게시에 대하여는 都·道·府·縣知事의 선거에 있어서는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의 1선거구마다 길이 85cm, 폭 60cm 이내의 것 7백매 이내, 시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가 행하여지는 구역에 대하여 길이 85cm, 폭 60cm 이내의 것 천매 이내

5. 입간판 및 간판류의 게시에 대하여는

가. 그 개최하는 정담연설의 고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하나의 정담연설회마다 입간판 및 간판류를 통틀어 5이내) 및 그 회장내에서 사용하는 것.

나.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

6. 삐라의 배포(산포를 제외함.)에 대하여는 당해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것 2종류 이내

②제201조의 6(총선거에 있어서의 정치활동의 규제) 제2항의 규정은 전항 제4호의

포스터 및 동향 제6호의 뼈라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 동조 제2항 중 「당해 참의원명부신고정당등 또는 소속후보자」인 것은 「소속후보자 또는 지원후보자」로 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의 적용을 받으려고 하는 정당 기타의 정치단체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후보자 또는 지원후보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지원후보자에 대하여는 당해 정당 기타의 정치단체의 지원후보자로 되는 것에 대한 본인의 동의를 첨부하여 당해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여 그 확인서의 교부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

④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전항의 확인서의 교부를 받은 하나의 정당 기타의 정치단체의 소속후보자 또는 지원후보자로 된 자는 당해 선거에 있어서 당해 하나의 정당 기타의 정치단체 이외의 정당 기타의 정치단체의 소속후보자 또는 지원후보자로 될 수 없고 또한 당해 선거에 있어서 당해 하나의 정당 기타의 정치단체의 지원후보자 또는 소속후보자로 될 수 없다.

제201조의10 (2이상의 선거가 행하여지는 경우의 정치활동) 제5조의 규정은 이들 조에 게시하는 선거의 2이상의 것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 하나의 선거가 행하여지는 구역의 다른 선거가 행하여지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고 또한 하나의 선거기일의 공시 또는 고시일로부터 그 선거당일까지의 사이가 다른 선거기일의 공시 또는 고시일로부터 그 선거당일까지의 사이에 해당할 때는 이들 조의 각각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활동을 행할 수 있는 정당 기타의 정치단체가 그 2이상의 선거가 중복하여 행하여지는 구역에 있어서 그 기간 각각의 규정에 따라서 정치활동을 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제201조의11 (정치활동의 태양) ①본장의 규정에 의한 정담인설회 및 가두정담연설에 있어서는 정책의 보급·선전 외에 공직후보자의 추천, 지지 기타 선거운동(참의원 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참의원명부신고정당등의 선거운동)을 위한 연설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제164조의3(타연설회의 금지) 및 제166조(특정의 건설 및 시설에 있어서의 연설등의 금지) (제1호에 관계되는 부분에 한함)의 규정은 정담연설회에, 제164조의5(가두연설)의 규정은 가두정담연설에 적용하지 않는다.

②본장의 규정에 의한 정담연설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정당 기타의 정치단체는 미리 당해 정담연설회장이 소재하는 都·道·府·縣의 선거관리위원회(지정도시의 의회의원 및 시의 장의 선거에 대하여는 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③본장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는 자치대신(都·道·府·縣의 의회의원, 都·道·府·縣知事, 지정도시의 의회의원 및 시의 장의 선거에 대하여는 당해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의 표시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④본장의 규정에 의한 포스터는 그 게시하려고 하는 장소가 소재하는 都·道·府·縣의 선거관리위원회(참의원의원의 통상선거 및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에 대하여는 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都·道·府·縣선거관리위원회(참의원의원의 통상선거 및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에 대하여는 자치대신, 지정도시의 의회의원 또는 시의 장의 선거에 대하여는 시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하는 검인을 받거나 또 그 교부하는 증지를 첨부하지 않으면 게시할 수 없다. 이 경우에 있어서 都·道·府·縣선거관리위원회(지정도시의 의회의원의 선거에 대하여는 시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하는 검인 또는 그 교부하는 증지는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구(都·道·府·縣의 의회의원 또는 지정도시의 의회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의 선거구)마다 구분하지 않으면 안된다.

⑤본장의 규정에 의한 포스터에는 그 표면에 당해 정당 기타의 정치단체의 명칭 그리고 게시책임자 및 인쇄자의 성명(법인에 있어서는 명칭) 및 주소, 본장의 규정에 의한 뼈라에는 그 표면에 당해 정당 기타의 정치단체의 명칭, 선거의 종류 및 본장의 규정에 대한 뼈라인 취지를 표시하는 기호를 기재하지 않으면 안된다.

⑥제145조(포스터의 게시개소등)의 규정은 이 장의 규정에 의한 포스터 그리고 입간판 및 간판의 류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동조제1항단서중 「명령으로 정하는 것 및 제144조의 2 및 제144조의 4(임의제포스터게시장)의 게시장에 게시하는 경우」는 「자치성형으로 정하는 것으로」 대체하여 읽는 것으로 한다.

⑦제143조(문서도화의 게시)제6항의 규정은 이 장의 규정에 의한 포스터에 대하여, 제178조의2(선거기일후의 문서도화의 철거)의 규정은 이 규정에 의한 포스터로서 소속후보자(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참의원명부신고정당 등, 도도부현지사 또는 시장의 선거에서는 소속후보자 또는 지원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준용한다.

⑧본장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연설회의 개최에 대하여 그 고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입간판 및 간판류에는 당해 정당연설회장이 소재하는 都·道·府·縣의 선거관리위원회(지정도시의 의회의원 및 시의 장의 선거에 대하여는 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의 표시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⑨전항의 입간판 및 간판류에는 그 표면에 게시책임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지 않으면 안된다.

⑩본장의 규정에 의하여 입간판 또는 간판류를 게시한 자는, 본장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정책의 보급·선전 및 연설의 고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그

만든 때 또는 정담연설회가 종료한 때는 즉시 이것을 철폐하지 않으면 안된다.

(11)都·道·府·縣 또는 市·町·村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문서도화로 본장의 규정에 위반하여 게시한 것 또는 전향에 위반하여 철폐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인정할 때는 철폐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都·道·府·縣 또는 市·町·村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미리 그 취지를 당해 경찰서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한다.

제201조의12 (정담연설회등의 제한) ①정당 기타의 정치단체는 오전 8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의 사이는 본장의 규정에 의한 가두정담연설을 개최할 수 없다.

②정당 기타의 정치단체는 2이상의 선거가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 하나의 선거기일의 공시 또는 고시일로부터 그 선거기일의 전일까지의 사이가 다른 선거기일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당일 당해 투표소를 폐쇄하는 시각까지의 사이는 그 투표소를 설치한 장소의 입구로부터 300m이내의 구역에 있어서 본장의 규정에 의한 정담연설회 또는 가두정담연설을 개최할 수 없다. 다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상에 있어서 정치활동을 위한 연호행위를 하는 것도 또한 같다.

③제140조의2제2항(연호행위에 있어서의 정온의 유지) 및 제164조의6제3항(장시간에 걸치는 가두연설의 규제)의 규정은 본장의 규정에 의한 가두정담연설을 개최하는 정당 기타의 정치단체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201조의13 (연호행위등의 금지) ①정당 기타의 정치활동을 행하는 단체는 각선거에 대하여 그 선거기일의 공시 또는 고시일부터 그 선거당일까지의 사이에 한하여 정치활동을 위해 다음 각호에 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의 연호행위에 대하여는 본장의 규정에 의한 정담연설회의 회장 및 가두정담연설의 장소에서 하는 경우, 그리고 오전 8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사이에 한하여 본장의 규정에 의하여 정책의 보급·선전 및 연설의 고지를 위해서 사용되는 자동차상에서 하는 경우, 그리고 제3호의 문서도화의 배포에 대하여는 본장의 규정에 의한 정담연설회의 회장에서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호행위를 하는 것

2. 어떠한 각의로써 하든 불문하고 게시 또는 배포하는 문서도화(신문 및 잡지를 제외함.)에 당해 선거구(선거구가 없을 때는 선거가 행하여지는 구역)의 특정후보자의 성명 또는 그 성명이 유추되는 것과 같은 사항을 배제하는 것.

3.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소유하거나 또는 관리하는 건물(오로지 직원의 거주용에 제공되고 있는 것 및 공영주택을 제외함)에 있어서 문서도화(신문 및 잡지를 제외함.)의 배포(우편 또는 신문끼워넣기의 방법에 의한 배포를 제외함.)를 하는 것.

②제140조의2제2항(연호행위에 있어서의 정온의 유지)의 규정은 전항 단서의 규정

에 의하여 정치활동을 위한 연호행위를 하는 정당 기타의 정치단체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201조의14 (정당 기타의 정치단체의 기관지) ①정당 기타의 정치단체가 발행하는 신문 및 잡지에 대하여는 중의원의원, 참의원의원, 都·道·府·縣의 의회의원, 都·道·府·縣知事, 지정도시의 의회의원 또는 시장의 선거기일의 공시 또는 고시일로부터 그 선거당일까지의 사이에 한하여 제148조제3항(신문 및 잡지의 정의)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중의원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신고정당 또는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의 본부, 중의원의원선거 이외의 선거에서는 당해 선거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 선거에 대하여 본장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 기타의 정치단체의 본부에 있어서 직접 발행하고 또한 통상의 방법(기관신문에 대하여는 정담연설회(중의원의원선거에서는 정당연설회 또는 정당동연설회)의 회장에 있어서 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의하여 배포하는 기관신문 또는 기관잡지로, 자치대신(都·道·府·縣의 의회의원, 都·道·府·縣知事, 지정도시의 의회의원 또는 시장의 선거에 대하여는 당해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것 각 하나에 한하고 또한 당해 기관신문 또는 기관잡지의 호외, 임시호, 중간호 기타의 임시로 발행하는 것을 제외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동조제2항중 “통상의 방법(선거운동기간중 및 선거당일에 있어서 정기구독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 배포하는 신문 또는 잡지에 대하여는 유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이라 함은 당해 기관신문 또는 기관잡지로 발행되고 있는 기간이 6월에 이르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통상의 방법(정담연설회의 회장에 있어서 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당해 기관신문 또는 기관잡지로 계속하여 발행되고 있는 기간이 6월 이상의 것에 대하여는 “통상의 방법(당해 선거기일의 공시 또는 고시일전 6월간에 있어서 평상시 행하여지고 있던 방법을 말하고 그 사이에 행하여진 임시 또는 특별한 방법을 포함하지 않음)”으로 대체하여 읽는 것으로 한다.

②전항의 신고에는 당해 기관신문 또는 잡지의 명칭 그리고 편집인 및 발행인의 성명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면 안된다.

③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신문 또는 기관잡지의 호외, 임시호, 중간호 기타의 임시로 발행하는 것으로 당해 선거에 관한 보도 및 평론을 게재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하여도 당해 선거구(선거구가 없을 때는 선거가 행하여지는 구역)의 특정후보자의 성명 또는 그 성명이 유추되는 것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때는 당해 선거구(선거구가 없을 때는 선거가 행하여지는 구역)내에 있어서는 동항에 규정하는 당해 기관신문 또는 기관잡지의 호외, 임시호, 중간호 기타 임시로 발행하는 것으로 본다.

제201조의15 (신문에 의한 정책광고) 참의원의원의 통상선거에 있어서는, 제201조의6 (총선거에 있어서의 정책활동의 규제)제2항 (201조의6(통상선거에 있어서의 정치활동의 규제)제3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확인서의 교부를 받은 정당 기타의 정치단체가 선거운동기간중 정책의 보급·선전 및 연설의 고지를 위해 행하는 광고로 자치대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일규격으로 어느 하나의 신문에 있어서 행하는 것에 대하여는 4회에 한하여 무료로 한다.

제15장 쟁송

제202조 (지방공공단체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효력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의 청구) ①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 그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선거인 또는 공직후보자는 당해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문서로 당해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市·町·村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 있어서 그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서를 교부를 받은 날 또는 제215조(결정서의 요지의 고시)의 규정에 의한 고시일로부터 21일 이내에 문서로 당해 都·道·府·縣선거관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203조 (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효력에 관한 소송) ①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 전조제1항의 이의신청 또는 동조제2항의 심사청구에 대한 都·道·府·縣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 또는 재결에 불복이 있는 자는 당해 都·道·府·縣선거관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 또는 재결서의 교부를 받은 날 또는 제215조(결정서, 재결서의 요지의 고시)의 규정에 의한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고등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효력에 관한 소송은 전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都·道·府·縣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 또는 재결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다.

제204조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의원의 선거의 효력에 관한 소송)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그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 또는 공직후보자(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신고정당,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에서는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에서는 참의원명부신고정당)는,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 및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都·道·府·縣선거관리위원회를,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회를 피고로 하여

당해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고등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05조 (선거무효의 결정, 재결 또는 판결) ①선거효력에 관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 선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이 있었을 때는 선거결과 의 이동이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재판소는 그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를 결정, 재결 또는 판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재판소는 그 선거의 일부를 무효를 결정하거나 재결하거나 또는 판결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선에 이동이 있을 우려가 없는 자를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자에 한하여 당선을 상실하지 않는 취지를 함께 결정하거나 재결하거나 또는 판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③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당선에 이동이 있을 우려가 유무에 대하여 판단을 받는 자 (이하 본조중 "당해 후보자"라고 함.)의 득표수(일부무효에 관계하는 구역 이외의 구역에 있어서의 득표수를 말함. 이하 본조중 같음.)에서 다음에 게시하는 각 득표수를 각각 빼서 얻은 각 수의 합계수가 선거의 일부무효에 관계하는 구역에 있어서의 선거인의 수보다 많은 때에는 당해 후보자는 당선에 이동을 생길 우려가 없는 자로 한다.

1. 득표수가 가장 많은 자부터 순차로 세어서 당해 선거에 있어서 선거해야 할 의 원 수에 상당하는 수에 이르니 순위의 다음 순위에 있는 후보자의 득표수

2. 득표수가 전호의 후보자보다 많고 당해 후보자보다 적은 각 후보자의 각각의 득 표수

④전항의 선거의 일부무효에 관계하는 구역에 있어서의 선거인이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재결 또는 판결의 직전(판결의 경우에 있어서는 고등재판소의 판결의 기본인 구두변론종결의 직전)에 당해 선거의 일부무효에 관계하는 구역에 있어서 행하여진 선거당일 투표할 수 있는 자이었던 자로 한다.

⑤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 대해서는 전3 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의 일부를 무효로 하는 판 결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중의원명부신고정당 또는 참의원명부신고정당에 관계 하는 당선인수의결정 및 당선인의 결정은 당해 재선거의 결과에 기한 새로운 결정 에 관계하는 고시가 있을 때까지의 사이(제34조(기타의 선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의원의 임기만료 일까지의 사이)는 계속 그 효력을 갖는다.

제206조 (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원 또는 장의 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의 신청 및 심 사 청구) ①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원 또는 장의 선거에 있어서 그 당선의 효력에 관해 불복이 있는 선거인 또는 공직후보자는 제101조의3제2항(당선인결정의 고시) 또는 제106조제2항(당선인이 없는 경우 등의 고시)의 규정에 의한 고시일부부터 14일

이내에 문서로 당해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市·町·村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 있어서 그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서의 교부를 받은날 또는 제215조(결정서의 요지의 고시)의 규정에 의한 고시일로부터 21이내에 문서로 당해 都·道·府·縣선거관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207조 (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송) ①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 전조제1항의 이의신청 또는 동조제2항의 심사 청구에 대한 都·道·府·縣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 또는 재결에 불복이 있는 자는 당해 都·道·府·縣선거관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 또는 재결서의 교부를 받은 날 또는 제215조(결정서, 재결서의 요지의 고시)의 규정에 의한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제203조제2항(선거의 효력에 관한 소송의 제기)의 규정은 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08조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의원의 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송) ①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당선을 하지 않은 자(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구에서는 후보자신고정당,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구에서는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서는 참의원명부신고정당등을 포함함.)로 당선의 효력에 관해 불복이 있는 자는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 또는 중의원(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都·道·府·縣선거관리위원회를,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를 피고로 하여 제101조제2항(당선인결정의 고시), 제101조의2제2항(당선인수 및 당선인결정의 고시) (동조제4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1조의3제2항(당선인결정의 고시) 또는 제106조제2항(당선인이 없는 경우 등의 고시)의 규정에 의한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의 경우는 당해 선거와 동시에 행하여지는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에서의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한 사유를 이유로 하여 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②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에 관계된 당선인수의 결정에 과오가 있는 때는 판결소는 당해 명부신고정당 등에 관계된 당선인수의 결정의 무효를 판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명부신고정당 등에 의해 실격되지 않는 당선인수를 함께 판결하는 것으로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의 효력에 관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동항 중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인 것은 “참의원명부신고정당등”으로 한다.

제209조 (당선의 효력에 관한 쟁송에 있어서의 선거무효의 결정, 재결 또는 판결) ① 전3조의 규정에 의한 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때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재판소는 그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재결하거나 또는 판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②제20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준용한다.

제209조의2 (당선의 효력에 관한 쟁송에 있어서의 잠재무효투표) 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선거당일 선거권을 갖지 않은 자의 투표 기타 본래 무효이어야 할 투표로서 그 무효원인이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투표로 유효투표에 산입된 것이 추정되고 또한 그 귀속이 불명한 투표가 있는 것이 판명된 때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재판소는 제95조(당선인) 또는 제95조의2(명부신고정당등에 관계된 당선인의 수)의 규정의 적용에 관한 각 공직후보자 또는 각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 또는 각 참의원명부신고정당등의 유효투표의 계산에 대해서는 그 개표구마다 공직후보자 또는 각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 또는 각 참의원명부신고정당등의 득표수에서 당해 무효투표수를 공직후보자 또는 각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 또는 각 참의원명부신고정당등의 득표수에 따라 배분하여 얻은 수를 각각 빼는 것으로 한다.

제210조 (총괄주재자, 출납책임자 등의 선거범죄에 의한 공직후보자이었던 자의 당선의 효력 및 후보자자격에 관한 소송등) ①제251조의2(총괄주재자, 출납책임자 등의 선거범죄에 의한 공직후보자이었던 자의 당선무효 및 입후보의 금지)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게시하는 자가 제221조(대수 및 이해유도죄)제3항, 제222조(다수인대수 및 다수인이해유도죄)제3항, 제223조(공직후보자 및 당선인에 대한 대수 및 이해유도죄)제3항 또는 제223조의2(신문, 잡지의 불법이용죄)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에 처해진 경우 또는 출납책임자가 제247조(선거비용의 법정액위반)의 규정에 의하여 형에 처해진 경우에 있어서 이들에 관계된 공직후보자이었던 자가 제254조의2(총괄주재자, 출납책임자등의 처형의 통지)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는 당해 공직후보자이었던 자는 검찰관을 피고로 하고 당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고등재판소에 이들이 당해 당선인에 관계된 제2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게시하는 자 또는 출납책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동조제4항 각호에 열거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하여 당해 공직후보자이었던 자가 당해 선거와 관련한 선거구(선거구가 없는 때는 선거가 행하여지는 구역)에서 행하여지는 당해 공직과 관련한 선거에서 공직후보자가 되거나 또는 공직후보자가 될 수 없는 것으로 되지 않는 것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공직후보자이었던 자가 제2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당해 공직후보자이었던 자가 당해 선거에서 당선인으로 정하여 지고 당해 당선인과 관련한 제 101조제2항(당선인결정의 고시) 또는 제101조의3제2항(당선인결정의 고시)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없는 때는 당해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인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출소기간은 당해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제251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열거한 자가 제221조제3항, 제222조제3항, 제223조제3항 또는 제2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에 처하여진 경우 또는 출납책임자가 제2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에 처해진 경우에 있어서 이들과 관련한 공직후보자이었던 자가 제25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한 날 이후에 당해 공직후보자이었던 자가 당해 선거에서 당선인으로 정하여 지고 당해 당선인과 관련한 제 101조제2항 또는 제10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는 때는 제251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라고 인정하는 검찰관은 당선인을 피고로 하여 당해 고시가 있는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제211조 (총괄주재자, 출납책임자등의 선거범죄에 의한 공직후보자이었던 자의 당선무효 및 입후보금지의 소송) ①제251조의2(총괄주재자, 출납책임자등의 선거범죄에 의한 공직후보자이었던 자의 당선무효 및 입후보금지)제1항각호에 든 자가 제221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22조(다수인매수 및 다수인이해유도죄), 제223조(공직후보자 및 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또는 제223조의2(신문, 잡지의 불법이용죄)의 죄를 범하고 형에 처해졌기 때문에 제25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공직후보자 또는 공직후보자이었던 자(이하 이 조 및 제219(당선관계소송에 대한 소송법규의 적용)제1항에서는 “공직후보자등”이라고 한다)의 당해 선거에서의 당선이 무효이거나 또는 당해 공직후보자등 이었던자가 당해 선거의 선거구(선거구가 없을 때는 선거가 행하여지는 구역)에서 행하여지는 당해 공직과 관련한 선거에서 공직후보자가 되거나 또는 공직후보자라고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검찰관은 전조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공직후보자이었던 자을 피고로 하여 그 재판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고등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만, 당해 재판확정일 후 당해 공직후보자등이었던 자가 당해 선거에서 당선인으로 정하여지고 당해 당선인과 관련한 제101조제2항(당선인결정의 고시) 또는 “101조의3제2항(당선인결정의 고시)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는 때는 당해 당선인의 당선과 관련한 당선무효소송의 출소기간은 당해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제251조의3(공무원등의 선거범죄에 의한 당선무효)제1항각호에 든 자가 제221조 내지 제223조의2, 제225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제226조(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의

자유방해죄), 제239조(사전운동, 교육자의 지위이용등의 제한위반)제1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 또는 제239조의2(공무원등의 선거운동등의 제한위반)의 죄를 범하여 형에 처해졌기 때문에 제25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라고 인정하는 검찰관은 당선인을 피고로 하여 그 재판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고등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경우에는 전항 단서규정을 준용한다.

제212조 (선거인등의 출두 및 증언의 청구) ①선거관리위원회는 본장에 규정하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결정 또는 재결을 위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선거인 기타 관계인의 출두 및 증언을 구할 수 있다.

②민사소송법(1980년법률제29호)중 증언의 신문에 관한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 기타 관계인의 출두 및 증언을 구하는 경우에 대해서 준용한다. 다만, 벌금, 포유, 포인 또는 과료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두한 선거인 기타 관계인이 요한 실비는 당해 지방공공단체가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변상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213조 (쟁송의 처리) ①본장에 규정하는 쟁송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은 그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송의 판결은 사건을 수리한 날부터 100일 이내에 이것을 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②전항에 소송에 대해서는 재판소는 다른 소송의 순서에 불포하고 신속하게 그 재판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214조 (쟁송의 제기 및 처분의 집행) 본장에 규정하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소송의 제기가 있어도 처분의 집행은 정지하지 않는다.

제215조 (결정서, 재결서의 교부 및 그 요지의 고시) 제202조제1항(선거의 효력에 관한 이의신청) 및 제206조제1항(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신청)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제202조제2항(선거의 효력에 관한 심사청구) 및 제206조제2항(당선의 효력에 관한 심사청구)의 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은 문서로써 하고 이유를 붙여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에게 교부함과 함께 그 요지를 고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216조 (행정불복심사법의 준용) ①제202조제1항(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효력에 관한 이의신청) 및 제206조제1항(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신청)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이 장에 규정하는 것 외에 행정불복심사법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총대, 대리인등), 제15조(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제1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 제6호, 제2항 및 제4항, 제21조(보정), 제24조(참가인), 제25조(심리의 방식), 제26조(증거서류등의 제출),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사건의 제출요건, 검증등), 제36조(절차의 병합 또는 분리), 제39조(심사청구의

취하), 제44조(증거서류등의 반환) 그리고 47조(결정)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202조제2항(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효력에 관한 심사청구) 및 제206조제2항(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당선의 효력에 관한 심사청구)의 심사청구에 대해서는 이 장에 규정하는 것 외에 행정불복심사법제9조(불복신청의 방식)제2항,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총대, 대리인등), 제15조(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제2항 및 제4항,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보정, 변명서의 제출등),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물건의 제출요구, 검증등), 제33조(처분청으로부터의 물건의 제출 및 열람), 제36조(절차의 병합 또는 분리), 제39조(심사청구의 취하), 제40조(재결)제1항 및 제2항, 제43조(재결의 포속력)제1항 그리고 제44조(증거서류등의 반환)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전2항의 경우에 있어서 전2항에 규정하는 행정불복심사법의 규정중 “처분청”이라고 되어있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로 대체해서 읽는 것으로 한다.

제217조 (소송의 관할) 제203조제1항(선거의 효력에 관한 소송), 제204조(선거의 효력에 관한 소송), 제207조제1항(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송), 제208조제1항(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송), 제210조(총괄주재자, 출납책임자등의 선거범죄에 의한 공직후보자이었던 자의 당선의 효력 및 입후보자격에 관한 소송등) 또는 제211조(총괄주재자, 출납책임자등의 선거범죄에 의한 공직후보자이었던 자의 당선무효 및 입후보의 금지의 소송)의 규정에 의한 소송은 당해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재판소(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 대해서는 동경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218조 (선거관계소송에 있어서의 검찰관의 입회) 재판소는 본장의 규정에 의한 소송을 재판함에 있어 검찰관으로 하여금 구두변론에 입회시킬 수 있다.

제219조 (선거관계소송에 대한 소송법규의 적용) ①이 장(제210조(총괄주재자, 출납책임자등의 선거범죄에 의한 공직후보자이었던 자의 당선의 효력 및 입후보자격에 관한 소송등)을 제외함)에 규정하는 소송에 대해서는 행정사건소송법 1962년법률제139호)제43조(관련청구에 관계되는 소송의 이송), 제19조 내지 제21조까지(원고에 의한 청구의 추가적 병합 등), 제25조 내지 제29조까지(집행정지등), 제31조(특별한 사정에 의한 청구의 기각)) 및 제34조(제3자의 재심의 소)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고 또한 동법제16조 내지 제18조(청구의 객관적병합 등)의 규정은 하나의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수개의 청구, 제207조(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송) 또는 제208조(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송)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선거에 있어서의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수개의 청구, 제2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후보자이었던 자의 당선의

효력을 다루는 수개의 청구, 제211조(총괄주재자, 출납책임자등의 선거범죄에 의한 공직후보자이었던 자의 당선무효 및 입후보금지의 소송)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후보자이었던 자의 당선의 효력 또는 입후보자격의 효력을 다루는 수개의 청구 또는 선거의 효력을 다루는 청구와 그 선거에 있어서의 당선의 효력에 관해 제207조 또는 제208조의 규정에 의해 이것을 다루는 청구에 관해서만 준용한다.

②제210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송에 대해서는 행정사건소송법제41조(항고소송에 관한 규정의 준용)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제13조(관련청구에 관계되는 소송의 이송), 제17조(공동소송) 및 제18조(제3자에 의한 청구의 추가적 병합)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고 또한 동법제16조(청구의 객관적병합) 및 제19조(원고에 의한 청구의 추가적병합)의 규정은 제210조의 규정에 의해 공직후보자이었던 자의 당선의 효력 또는 입후보금지를 다루는 수개의 청구에 관해서만 준용한다.

제220조 (선거관계소송에 관한 통지 및 판결서등본의 송부) ①제203조(선거의 효력에 관한 소송), 제204조(선거의 효력에 관한 소송), 제207조(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송), 제208조(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송)의 규정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재판소장은 그 취지를 자치대신에게 통지하고, 또한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호, 이 법률에 정하는 기타의 선거에 대해서는 관계지방공공단체장을 경유하여 당해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소송이 계속하지 않게된 때 도 또한 같다.

②제210조(총괄주재자, 출납책임자등의 선거범죄에 의한 공직후보자이었던 자의 당선의 효력 및 입후보자격에 관한 관한 소송등) 또는 제211조(총괄주재자, 출납책임자등의 선거범죄에 의한 공직후보자이었던 자의 당선무효 및 입후보금지의 소송)의 규정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있어서 그 소송이 계속되지 않게 된 때 도 또한 전항과 같다.

③전2항에 제시된 소송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때는 재판장은 그 판결서의 등본을 자치대신에게 송부하고 또한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호, 이 법률에 정하는 기타의 선거에 대해서 관계지방공공단체장을 경유하여 당해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경우에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의원에 대해서는 중의원의장 또는 참의원의장에게, 지방공공단체의회의원에 대해서 당해 의회의장에게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제221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다음 각호에 게시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엔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당선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또는 선거운동자에 대하여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무의 공여, 그 공여의 신청 또는 약속을 하거나 향응접대, 그 신청 또는 약속을 한 때.

2. 당선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또는 선거운동자에 대하여 그 자 또는 그 자와 관계있는 신사와 사찰, 학교, 사회, 조합, 시·정·촌등에 대한 용수, 소작, 채권, 기부 기타 특수한 직접 이해관계를 이용해서 유도를 한 때

3. 투표표를 하거나 하지 않은 것, 선거운동을 하거나 중지한 것 또는 그 주선권유를 한 것의 보수로 하는 목적으로 선거인 또는 선거운동자에 대하여 제1호에 게시하는 행위를 한 때

4. 제1호 또는 전호의 공여, 향응접대를 받거나 요구하고 제1호나 전호의 요구를 승락 또는 제2호의 유도에 응하거나 이것을 재촉한 때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게시하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자에 대하여 금전이나 물품의 교부, 교부의 신청 또는 약속을 하거나 선거운동자가 그 교부를 받거나, 그 교부를 요구하거나 그 신청을 승락한 때

6. 전각호에 게시하는 행위에 관해 주선 또는 권유를 한 때

②중앙선거관리회의 위원이나 중앙선거관리회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치성의 직원,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투표관리자, 개표관리자, 선거장이나 선거분회장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의 공무원이 당해 선거에 관해 전항의 죄를 범한 때는 4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백만엔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안위원회의 위원 또는 경찰과이 그 관계구역내의 선거에 관해 전항의 죄를 범한 때도 또한 같다.

③다음 각호에 게시하는 자가 제1항의 죄를 범한 때는 4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백만엔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공직후보자

2. 선거운동을 총괄주행한 자

3. 출납책임자[공직후보자 또는 출납책임자와 의사를 통하여 당해 공직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에 관한 지출금액중 제196조(선거운동에 관한 지출금액의 제한액의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액의 2분의 1이상에 상당하는 액을 지출한 자를 포함함.]

4. 3이내로 분할된 선거구(선거구가 없는 때는 선거가 행해지는 구역)의 지역중 1 또는 2의 지역에 있어서의 선거운동을 주행할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게시하는

자중에서 정해져 당해 지역에 있어서의 선거운동을 수행한 자
제222조 (다수인매수 및 다수인이해유도죄) ①아래의 각호에 게시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1. 재산상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공직후보자 또는 공직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를 위해 다수의 선거인 또는 선거운동자에 대해 전조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에 게시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하게 한 때.

2. 재산상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공직후보자 또는 공직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를 위해 다수의 선거인 또는 선거운동자에 대해 전조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에 게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청부받거나 혹은 청부받게 하거나 또는 그 신청을 한 때.

②전조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의 죄를 범한 자가 상습자일때도 또한 전항과 같다.

③전조제3항 각호에 게시하는 자가 제1항의 죄를 범한때는 6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223조 (공직후보자 및 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다음 각호에 게시하는 행위를 한 자는 4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공직후보자인 것 또는 공직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것을 그만두게 할 목적으로 공직후보자나 공직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에 대해서 또는 당선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당선인에 대해서 제221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게시하는 행위를 한 때.

2. 공직후보자인 것 또는 공직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것을 그만 둔 것, 당선을 사퇴한 것 또는 그 주선·권유를 한 것의 보수로 할 목적으로 공직후보자이었던 자, 공직후보자가 되려고 한 자 또는 당선인이었던 자에 대해서 제221조제1항제1호에 게시하는 행위를 한 때.

3. 전2호의 공여, 향응접대를 받거나 요구하거나 전2호의 신청을 승락하거나 또는 제1호의 유도에 응하거나 이것을 재촉한 때.

4. 전각호에 게시하는 행위에 관하여 주선 또는 권유를 한 때.

②중앙선거관리회의 위원이나 중앙선거관리회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치성의 직원,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투표관리자, 개표관리자, 선거장이나 선거분회장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가 있는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의 공무원이 당해 선거에 관해 전항의 죄를 범한 때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公安위원회의 위원 또는 경찰관이 그 관계구역내의 선거에 관해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221조제3항 각호의 게시하는 자가 제1항의 죄를 범한 때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3조의2 (신문·잡지의 불법이용죄) ①제148조의2(신문·잡지의 불법이용등의 제한)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②제221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3항 각호에 게시하는 자가 전항의 죄를 범한때는 6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224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경우의 몰수) 전4조의 경우에 있어서 수수 또는 교부를 받은 이익은 몰수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가 없을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224조의2 (유도죄) ①제251조의2(총괄주행자, 출납책임자등의 선거범죄에 의한 공직후보자이었던 자의 당선무효 및 입후보금지)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에 의하여 공직후보자의 당선을 상실시킬 목적으로 당해 공직후보자 이외의 공직후보자 기타 그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종사하는 자와 의사를 통하여 당해 공직후보자에 관계되는 동조제1항 각호에 게시하는 자를 유도하거나 또는 도발해서 그 자로 하여금 제221조(매수 및 이해유발죄), 제22조(다수인매수 및 다수인이해유도죄), 제223조(공직후보자 및 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23조의2(신문·잡지의 불법이용죄) 또는 제247조(선거비용의 법정액 위반)의 죄를 범하게 한 자는 1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②제251조의2 제1항 각호에 게시하는 자가 동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에 의하여 당해 공직후보자 또는 공직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는 “공직후보자등”이라고 한다)의 당선을 실효하게 하거나 또는 입후보자격을 상실하도록 할 목적으로 당해 공직후보자등 이외의 공직후보자등 기타 그 공직후보자등의 선거운동에 종사하는 자와 의사를 통하여 제221조 내지 제223조의2 또는 제247조의 죄를 범한 때는 1년이상 6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224조의3 (후보자의 선정에 관한 죄) ①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의 후보자 자의 선정, 중의원명부등재자의 선정 또는 참의원명부등재자의 선정에 관한 권한을 갖는 자가 그 권한의 행사에 관해 청탁을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또는 이를 요구하거나 약속한 때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이익을 공여 또는 그 신청이나 약속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수수한 이익은 몰수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가 없을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225조 (선거의 자유방해죄)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 게시하는 행위를 한 자는 4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선거인, 공직후보자, 공직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 선거운동자 또는 당선인에

대하여 폭행이나 위력을 가하거나 또는 이것을 유인한 때.

2. 교통이나 집회의 편리를 방해하거나 연설을 방해하거나 또는 문서·도화를 훼손하거나 기타 위계·사술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때.

3. 선거인, 공직후보자, 공직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 선거운동자나 당선인 또는 그 관계가 있는 신사, 사찰, 학교, 회사, 조합, 시·정·촌등에 대한 용수, 소작채권, 기부, 기타 특수한 이해관계를 이용해서 선거인, 공직후보자, 공직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 선거운동자 또는 당선인을 협박할 때.

제226조 (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의 자유방해죄) ①선거에 관하여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의 공무원, 중앙선거관리회의 위원이나 중앙선거관리회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치성의 직원,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투표관리자, 개표관리자 또는 선거장이나 선거분회장이 고의로 그 직무의 집행을 태만히 하거나 또는 부당한 이유가 없이 공직후보자나 선거운동자에 추도하여 그 거택이나 선거사무소에 들어 가는 등 그 직권을 남용하여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때는 4년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②국가나 지방공공단체의 공무원, 중앙선거관리회의 위원이나 중앙선거관리회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치성의 직원,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투표관리자, 개표관리자, 또는 선거장이나 선거분회장이 선거인에 대하여 그 투표하려 했거나 또는 투표한 피선거인의 성명(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 있어서의 정당 기타의 정치단체의 명칭 또는 약칭)의 표시를 요구한 때는 6월이하의 금고 또는 30만엔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7조 (투표의 비밀침해죄) 중앙선거관리회의 위원이나 중앙선거관리회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치성의 직원,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투표관리자, 개표관리자, 선거장이나 선거분회장, 선거사무에 관계가 있는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의 공무원, 입회인[제48조(대리투표)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를 보조할 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 또는 감시자가 선거인이 투표한 피선거인의 성명(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정당 기타의 정치단체의 명칭 또는 약칭)을 표시한 때는 2년이하의 금고 또는 30만엔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 표시한 사실이 허위일 때도 또한 같다.

제228조 (투표간섭죄) ①투표소 또는 개표소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없이 선거인의 투표에 간섭하거나 또는 피선거인의 성명(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정당 기타의 정치단체의 명칭 또는 약칭)을 인지하는 방법을 행한 자는 1년이하의 금고 또는 30만엔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령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투표함의 투표를 꺼낸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엔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9조 (선거사무관계자·시설등에 대한 폭행죄·소요죄등) 투표관리자, 개표관리자,

선거장, 선거분회장, 입회인이나 선감시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 개표소, 선거회장이나 선거분회장을 소요하거나 투표, 투표함 기타 관계서류를 억류, 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4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230조 (다중의 선거방해죄) ①다중이 집합하여 제225조(선거의 자유방해죄)제1호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서 처단한다. 선거에 관하여 다중이 집합하여 교통이나 집회의 편리를 방해하거나 또는 연설을 방해한 자도 같다.

1. 주모자는 1년이상 7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2. 타인을 지휘하거나 또는 타인에 술선해서 세를 도운 자는 6월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3. 부화수행한 자는 20만엔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전항의 죄를 범하기 위해 다중이 집합하여 당해 공무원으로부터 해산의 명령을 받는 것이 3회이상에 이르러도 해산하지 않는때는, 주모자는 2년이하의 금고에 처하고, 기타의 자는 20만엔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31조 (흥기 휴대죄) ①선거에 관하여 총포, 도검, 곤봉 기타 사람을 살상함에 족한 물건을 휴대한 자는 2년이하의 금고 또는 30만엔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당해 경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전항의 물건을 령지할 수 있다.

제232조 (투표소, 개표소, 선거회장등에 있어서의 흥기휴대죄) 전조의 물건을 휴대하여 투표소, 개표소, 선거회장 또는 선거분회장에 들어간 자는 3년이하의 금고 또는 50만엔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3조 (휴대흥기의 몰수) 전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휴대한 물건을 몰수한다.

제234조 (선거범죄의 선동죄) 연설 또는 신문·잡지·전단·전보·포스터 기타 여하한 방법으로써 하든 불문하고 제221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22조(다수인매수 및 다수인이해유도죄), 제223조(공직후보자 및 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25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제228조(투표간섭죄), 제229조(선거사무관계자·시설등에 대한 폭행죄·소요죄등), 제230조(다중의 선거방해죄), 제231조(흥기휴대죄) 또는 제232조(투표소·개표소·선거회장등에 흥기휴대죄)를 범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선동한 자는 1년이하의 금고 또는 30만엔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5조 (허위사향공표죄) ①당선을 하거나 또는 하게 할 목적으로 공직후보자 또는 공직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의 신분, 직업이나 경력, 그 자의 정당 기타의 단체에의 소속, 그 자와 관련한 후보신고정당의 후보자신고 또는 그 자에 대한 타인이나 정당 기타의 단체의 추천이나 지지에 관하여 허위의 사향을 공표한 자는 2년이하의 금고 또는 30만엔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당선을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직후보자 또는 공직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항을 공표하거나 또는 사실을 왜곡해서 공표한 자는 4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만엔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5조의2 (신문·잡지가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금고 또는 30만엔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8조제1항단서(선거보도등의 공정확보) (제201조의14(정당 기타의 정치단체의 기관지)제1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해서 신문 또는 잡지가 선거의 공정을 해한 때는 그 신문이나 잡지의 편집을 실제로 담당한 자 또는 그 신문이나 잡지의 경영을 담당한 자

2. 제148조제3항(신문 및 잡지의 정의)에 규정하는 신문 및 잡지 그리고 제201조의14에 규정하는 기관신문 및 기관잡지 이외의 신문 및 잡지(당해 기관신문 및 기관잡지의 호외·임시호·증간호 기타의 임시로 발행하는 것을 포함함.)가 선거운동기간중 및 선거당일 당해 선거에 관하여 보도 또는 평론을 게재한 때는 이를 신문이나 잡지의 편집을 실제로 담당한 자 또는 신문이나 잡지의 경영을 담당한 자

3. 제148조의2제3항(신문·잡지에 대한 지위이용의 제한)의 규정에 위반해서 선거에 관한 보도 또는 평론을 게재하거나 게재시킨 자

제235조의3 (정견방송 또는 선거공보의 불법이용죄) ①정견방송 또한 선거공보에 있어서 제235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백만엔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정견방송 또는 선거공보에 있어서 특정한 상품의 광고 기타 영업에 관한 선전을 한 자는 30만엔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5조의4 (선거방송등의 제한 위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금고 또는 30만엔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1조의3 단서(선거방송의 공정성 확보)의 규정에 위반해서 선거의 공정을 해한 때에는, 그 방송을 하거나 또는 편집을 한 자

2. 제151의5(선거운동방송의 제한)의 규정에 위반해서 방송을 하거나 또는 방송을 하게 한 자

제235조의5 (성명등의 허위표시죄) 당선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 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해서 우편, 전보 또는 전화에 의하여 통신을 한 자는 2년이하의 금고 또는 30만엔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5조의 6 ①제152조(인사를 목적으로 한 유료광고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를 게재하거나 또는 방송을 한 자(후원단체의 경우는 그 임원이나 구성원으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는 50만엔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5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직후보자나 공직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공

직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후원단체의 임원이나 구성원을 협박하여 광고를 게재하도록 하거나 방송을 하도록 요구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6조 (허위등록, 허위선언죄등) ①허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록을 시킨 자는 6월이하의 금고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인명부에 등록을 시킬 목적으로 주민기본대장법 제22조(수입계)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는 것에 의하여 선거인명부에 등록을 시킨 자도 전항과 같다.

③제50조제1항(선거인의 확인을 위한 선언)의 경우에 있어서 허위의 선언을 한 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7조 (허위투표 및 투표위조·증감죄) ①선거인이 아닌 자가 투표를 한 때는 1년이하의 금고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성명을 사칭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또는 투표하려고 한 자는 2년이하의 금고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투표를 위조하거나 또는 그 수를 증감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중앙선거관리회의 위원이나 중앙선거관리회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치성의 직원,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투표관리자, 개표관리자, 선거장이나 선거분회장, 선거사무에 관계가 있는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의 공무원, 입회인 또는 감시자가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7조의2 (대리투표에 있어서의 기재의무 위반) 제48조(대리투표) 제2항(제46조제9항 또는 제10항(자유식투표) 또는 제46조의2(임의제기호식투표)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후보자,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에 대하여 ○기호 또는 공직후보자의 성명이나 또는 중의원명부신고정당이나 참의원명부신고정당등의 명칭이나 약칭을 기재해야 할 것으로 정해진 자가 선거인이 지시하는 후보자의 성명이나 명부신고정당등의 명칭이나 약칭 또는 후보자에 대해서 ○의 기호로 기재하지 않은 때는 2년이하의 금고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8조 (입회인의 의무를 태만하는 죄) 입회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률이 정하는 의무를 결한 때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8조의2 (입후보에 관한 허위선서죄) ①제86조(공직후보자의 입후보신고등)제5항(동조제9항에 있어서 그 예에 의할 것으로 된 경우를 포함함.), 제7항(동조제9항에서 그 예에 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0항(제98조(피선거권의 상실과 당선인의 결정등)제4항(제112조(의원 또는 장이 결원인 경우등의 조상

보충)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6조의2(명부에 의한 입후보의 신고 등)제2항(동조제9항에 있어서 그 예에 의할 것으로 된 경우를 포함함) 또는 제8항(제98조제4항 “제112조제7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제86조의3(명부에 의한 입후보의 신고 등)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86조의 2 제2항, 제8항(제98조제4항(제112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항 또는 제86조의4(공직후보자의 입후보자신고 등)제4항(동조제5항, 제6항 또는 제8항에서 그 예에 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된 선서서에 있어서 허위의 선서를 한 자는 30만엔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죄는 당해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중의원비례대표 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회)의 고발을 기다려 논한다.

제239조 (사전운동, 교육자의 지위이용등의 제한위반)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금고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1. 제129조(선거운동기간), 제137조(교육자의 지위이용의 선거운동금지), 제137조의2(선거운동기간), 제137조(교육자의 지위이용의 선거운동금지), 제137조의2(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의 금지) 또는 제137조의3(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지 않는 자의 선거운동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해서 선거운동을 한 자

2. 제134조(선거사무소의 폐쇄명령)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

3. 제138조(야간호별방문의 금지등)의 규정에 위반해서 호별방문을 한 자

4. 제138조의2(서명운동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해서 서명운동을 한 자

②후보자신고정당,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 또는 참의원명부신고정당등이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해서 선거사무소를 폐쇄하지 않은 때는 당해 후보자신고정당,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 또는 참의원명부신고정당등의 임직원 또는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는 1년이하의 금고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9조의2 (공무원등의 선거운동등의 제한위반) ①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공무원 및 공단등의 임직원(공직에 있는 자를 제외함.)으로,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공직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로 다음 각호에 게시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제129조(선거운동의 기간)의 규정에 위반해서 선거운동을 한 자로 간주하고 2년이하의 금고 또는 30만엔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당해 공직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선거구(선거구가 없을 때는 선거가 행하여지는 구역·이하 이 항에 있어서 “당해 선거구”라고 함.)에 있어서 직무상의 여행 또는 직무상 출석한 회의 기타의 집회의 기회를 이용해서 당해 선거에 관해 선거인에게 인사하는 것.

2. 당해 선거구에 있어서 그 지위 및 성명(이러한 자가 유추될 수 있는 명칭을 포함.)을 표시한 문서도화를 당해 선거에 관해 게시하거나 또는 배포하는 것.

3. 그 직무의 집행에 있어서 당해 선거구내에 있는 자에 대하여 당해 선거에 관해 그 자에 관계되는 특별한 이익을 공여하거나 또는 공여하는 것을 약속하는 것.

4. 그 지위를 이용해서 당해 선거에 관해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공무원 및 공단등의 임직원등으로 하여금 그 직무의 집행에 있어서 당해 선거구내에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자에 관계되는 특별한 이익을 공여시키거나 또는 공여하는 것을 약속하게 하는 것.

②제136조의2(공무원등의 지위이용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해서 선거운동등 또는 행위를 한 자는 2년이하의 금고 또는 10만엔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0조 (선거사무소·휴게소등의 제한위반)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30만엔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1조제1항(선거사무소의 수)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자

1의2. 제131조제2항(선거사무소의 이동제한)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사무소를 이동(폐지에 수반하는 설치를 포함함.)한 자

2. 제132조(선거당일의 선거사무소의 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자

3. 제133조(휴게소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휴게소 기타 이에 유사한 설비를 설치한 자

②후보자신고정당,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 또는 참의원명부신고정당등이 제131조제1항 및 제13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때 또는 제13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소를 이동(폐지에 수반하는 설치를 포함함)한 때는 당해 후보자신고정당,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 또는 참의원명부신고정당등의 임직원 또는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는 30만엔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1조 (선거사무소설치위반, 특정공무원 등의 선거운동의 금지위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금고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0조(선거사무소의 설치)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자

2.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의 선거운동의 금지) 또는 제136조(특정공무원의 선거운동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고운동을 한 자

제242조 (선거사무소의 설치신고 및 표시위반) ①제130조(선거사무소의 설치 및 신고)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자 또는 제131조제3항(선거사무소의 표시)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찰을 게시하지 않은 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후보자신고정당, 중의원명부신고정당 또는 참의원명부신고정당 등이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제13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

찰을 게시하지 않은 때는 후보자신고정당, 중의원명부신고정당 또는 참의원명부신고정당 등의 임직원 또는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2조의2 (인기투표의 공표의 금지위반) 제138조의3(인기투표의 공표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기투표의 경과 또는 결과를 공표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신문 또는 잡지에 있어서는 그 편집을 담당한 자를 벌한다.

제243조 (선거운동에 관한 각종 제한위반, 그 1)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9조(음식물제공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음식물을 제공한 자
- 1의2. 제140조의2 제1항(연호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연호행위를 한 자
2. 제141조(자동차, 선박 및 확성기의 사용)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 선박 및 확성기를 사용한 자
- 2의2. 제141조의2(자동차 등의 승차제한)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승차하거나 또는 승선한 자
- 2의3. 제141조의3(車上의 선거운동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3. 제142조(문서도화의 배포)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서도화를 배포한 자
4. 제143조(문서도화의 게시) 또는 제144조(포스터의 수)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서도화를 게시한 자
5. 제146조(문서도화의 배포 또는 게시에 있어서 금지를 면하는 행위의 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문서도화를 배포하거나 또는 게시한 자
- 5의2. 제147조(문서도화의 철거)의 규정에 의한 철거처분(동조제1호, 제2호 또는제5호에 해당하는 문서도화에 관련된 것에 한한다)에 따르지 않은 자
6. 제148조(신문, 잡지의 보도 및 논평 등의 자유)제2항 또는 제149조(신문광고)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문 또는 잡지를 배포하거나 또는 게시한 자
7. 제149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문광고를 한 자
8. 삭제
- 8의2. 제164조의2(개인연설회장의 게시의 특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간판이나 간판류를 게시하지 않은 자 또는 동조 제2항이나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서도화를 게시한 자
- 8의3. 제164조의3(타연설회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연설회를 개최한 자
- 8의4. 제164조의5(가두연설)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두연설을 한 자
- 8의5. 삭제

8의6. 제164조의7(가두연설의 경우의 선거운동원 등의 제한)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에 종사한 자

9. 제165조의2(근접하는 선거의 경우의 연설회동의 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연설회를 개최하거나 또는 연설이나 연호행위를 한 자

10. 제166조(특정의 건물 및 시설에 있어서의 연설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연설 또는 연호행위를 한 자

②후보자신고정당, 중의원명부신고정당 등 또는 참의원명부신고정당 등이 제1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문광고를 한 때 또는 후보자신고정당 또는 중의원명부신고정당 등이 제165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연설회 또는 정당 등 연설회를 개최한 때는 당해 후보자신고정당, 중의원명부신고정당 등 또는 참의원명부신고정당 등의 임직원 또는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4조(선거운동에 관한 각종제한위반, 그 2)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0조(기세를 고조시키는 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41조(자동차, 선박 및 확성기의 사용)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않은 자

3. 제145조(포스터의 게시개서등)제1항 또는 제2항(제164조의2(개인연설회장의 게시의 특례)제5항에 있어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서도화를 게시한 자

4. 제147조(문서도화의 철거)의 규정에 의한 철거 처분(동조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문서도화에 관계되는 것에 한한다)에 순응하지 않은 자

5. 삭제

5의2. 제164조의5(가두연설)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기의 제시를 거부한자

6. 제164조의6제1항(야간의 가두연설의 금지)의 구정에 위반한 자

7.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서 제177조제1항(통상엽서등의 반환)의 구정에 의한 반환을 하지 않은 자

8. 제177조제3항(통상엽서등의 양도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양도한 자

②중의원명부신고정당 등이 정당한 이유가 없이 제1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을 하지 않은 때 또는 후보자신고정당 또는 중의원명부신고정당 등의 임직원 또는 구성원으로서 당해 행위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5조 (선거기일 후의 인사행위의 제한 위반) 제178조(선거기일후의 인사행위의 제한)의 규정에 위반한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6조 (선거운동에 관한 수입 및 지출의 규제위반) 다음의 각호에 계기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금고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4조(신고전 기부의 수령 및 지출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부를 받거나 또는 지출을 하였을 때

2. 제185조(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계장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또는 회계장부에 기재를 아니하거나 혹은 이에 허위의 기입을 하였을 때

3. 제186조(명세서의 제출)의 규정에 위반하여 명세서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또는 이에 허위의 기입을 하였을 때

4. 제187조제1항(출납책임자의 지출권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출을 하였을 때

5. 제188조(영수증등의 징수 및 송부)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수증 기타의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모으지 않거나 혹은 이를 송부치 않거나 또는 이에 허위의 기입을 하였을 때

5의2. 제189조제1항(선거운동에 관한 수입 및 지출 보고서의 제출)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서 혹은 이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또는 이들에 허위의 기입을 하였을 때

6. 제190조(출납책임자의 사무인계)의 규정에 의한 인계를 아니할 때

7. 제191조(장부 및 서류의 보존)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계장부, 명세서 또는 영수증 기타의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보존하지 아니한 때

8. 제19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해야 할 회계장부, 명세서 또는 영수증 기타의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에 허위의 기입을 하였을 때

9. 제193조(보고서의 조사에 관한 자료의 요구)의 규정에 의하는 보고서 혹은 자료의 제출을 거부 또는 허위의 보고 혹은 자료를 제출할 때

제247조 (선거비용의 법정액위반) 출납책임자가 제196조(선거운동에 관한 지출금액의 제한액의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액을 초과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지출을 하거나 또는 시켰을 때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8조 (기부의 제한위반) ①제199조(특정의 기부의 금지)제1항에 규정하는 자(회사 기타의 법인을 제외함)가 동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부를 했을 때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회사 기타의 법인이 제19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부를 했을 때는 그 회사 기타 법인의 임직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9조 (기부의 권유, 요구 등의 제한 위반) 제200조(특정인에 대한기부의 권유, 요구 등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부를 권유하거나 혹은 요구하거나 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부를 받은 자(회사 기타의 법인 또는 단체에 있어서는

그 임직원 또는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9조의2(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기부의 제한 위반) ①제199조의2(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기부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해 선거에 관해서 기부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통상 일반의 사교의 정도를 넘어서 제19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부한 자는 당해 선거에 관해서 동항의 규정에 위반한자로 본다.

③제19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부(당해선거에 무관한 것 또 통상 일반의 사교의 정도를 넘지 않은 것에 한한다)를 한 자는 다음의 각호에 계기된 기부 이외의 기부를 한 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당해 공직의 후보자는 공직의 후보자로 되려고 하는 자(공직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는 '공직의 후보자 등'이라 한다)가 결혼피로연에 자신이 출석하여 그 결혼피로연에 관한 축의의 공여

2. 당해 공직의 후보자 등이 장례식(고별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동일하다)에 자신이 출석하여 그 장소에서 하는 부의금(여기에 비슷한 조의를 표하기 위해 제공하는 금전을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의 공여 또는 당해공직의 후보자 등이 장례식날자(장례식이 2회 이상 치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최초로 치루어지는 장례식날자)까지의 기간에 자신이 조문하고 그곳에 하는 부의금의 공여

④제19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부를 한 자(회사 기타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또는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제19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직후보자등을 위협하여 기부를 권유하거나 또는 요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금고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공직후보자 등의 당선 또는 피선거권을 상실케 할 목적으로 제19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3항 각호의 계기된 기부(당해 선거에 무관한 것 또는 통상일반의 사교의 정도를 넘지 않는 한에 한한다) 이외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금고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제199의2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해 공직후보자 등 이외의 자(당해 공직후보자 이외의 자가 회사 기타의 법인 또는 단체인 때는 그 임직원 또는 구성원)를 협박하여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금고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9조의 3 (공직후보자 등의 관계회사 등의 기부의 규제위반) 회사 기타의 법인 또는 단체가 제199조의3(공직후보자 등의 관계회사 등의 기부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해 선거에 관하여 기부를 하였을 때는 그 회사 기타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임

직원 또는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9조의4 (공직후보자 등의 성명등을 위에 붙인 단체의 기부제한의 위반) 회사기타의 법인 또는 단체가 제199조의4(공직후보자 등의 성명등을 위에 붙인 단체의 기부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부를 하였을 때는 그 회사 기타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또는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9조의5 (후원단체 등에 관한 기부 등의 제한 위반) ①후원단체의 제199조의5(후원단체 등에 관한 기부등의 금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부를 하였을 때는 그 후원단체의 임직원 또는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99조의5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供應接待를 하거나 또는 금전 혹은 기념품 기타의 물품을 공여한 자(회사 기타의 법인 또는 단체를 제외함)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회사 기타의 법인 또는 단체가 제199조의5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供應接待를 하거나 또는 금전 혹은 기념품 기타의 물품을 공여할 때는 그 회사 기타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또는 구성원으로서 해당 위반행위를 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제199조의5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부를 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0조 (징역 또는 금고 및 병과, 중과실의 처벌) ①제246조(선거운동에 관한 수입 및 지출의 규제위반), 제247조(선거비용의 법정액위반), 제248조(기부의 제한위반), 제249조(기부의 권유, 요구 등의 제한 위반) 및 제249조의2(공직후보자 등의 기부의 제한위반)(제3항 및 제4항을 제외한다)의 죄를 범한 자는 정황에 따라 징역 또는 금고 및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중대한 과실에 따라 제246조, 제247조, 제248조, 제249조 및 제249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죄를 범한 자도 처벌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재판소는 정황에 따라 그의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251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연무효) 당선인이 그 선거에 관하여 본장에 계기하는 죄(제235조의 6(인사를 목적으로 하는 유료광고의 제한위반), 제245조(선거기일 후의 인사행위의 제한위반), 제246조(선거운동에 관한 수입 및 지출의 규제위반), 제2호내지 제9호, 제248조(기부의 제한위반), 제249조의 2(공직후보자등의 기부의 제한위반)제3항 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 제249조의 3(공직후보자등의 관계회사 등의 기부의 제한위반), 제249조의 4(공직후보자등의 성명등을 붙인 단체의 기부의 규제위반), 제249조의 5(후원단체에 관한 기부등의 규제위반)제1항 및 제3항, 제252조의 2(추천단체의 선거운동의 규제위반), 제252조의 3(정당 기타의 정치활동을 행

하는 단체의 정치활동의 규제위반) 및 제253조(선거인 등의 위증죄)의 죄를 제외한다.』를 범하여 형에 처해진 때는 그 당선인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제251조의2 (총괄주재자, 출납책임자등의 선거범죄에 의한 공직후보자등이었던 자의 당선무효 및 입후보금지)

①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자가 제221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22조(다수인 매수 및 다수인 이해유도죄), 제223조(공직후보자 및 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또는 제223조의 2(신문지, 잡지의 불법이용죄)의 죄를 범하여 형에 처해진 때(제4호에 계기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죄를 범하고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진 때)는 당해 공직후보자 또는 공직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는 '공직후보자등'이라 한다)인 자의 당선은 무효로 하고, 또 이러한 자는 제251조의 4(입후보금지의 효과가 생기는 시기)에서 규정하는 시간으로부터 5년간, 당해선거에 관련한 선거구(선거구가 아닌 때는 선거가 행해지는 구역)에 있어서 행해지는 당해 공직에 관련한 선거에서 공직후보자가 되거나 또는 공직후보자로 나설수 없다.

1. 선거운동을 총괄주재한 자

2. 출납책임자(공직후보자 또는 출납책임자와 의사를 통하여 당해 공직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에 관한 지출 금액 중 제196조(선거운동에 관한 지출금액의 제한액의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액의 2분의 1 이상에 상당하는 액을 지출한 자를 포함한다)

3. 3 이내로 구분된 선거구(선거구가 없을 때는 선거가 행해지는 구역)의 지역 중 1 또는 2의 지역에 있어서의 선거운동을 주재해야 할 자로서 공직후보자 또는 제1호에 계기하는 자로부터 정해져 당해 지역에 있어서의 선거운동을 주재한 자

4. 공직후보자 등의 부모, 배우자, 자 또는 형제자매로 당해 공직후보자 또는 제1호나 전호에 계기하는 자와 의사를 통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5. 공직후보자 등의 비서(공직후보자에게 사용되는 자로서 당해 공직후보자 등의 정치활동을 보좌하는 자를 말한다)로서 당해 공직후보자등 또는 제1호 혹은 제3호에 계기된 자와 의사를 통해서 선거운동을 한 자

②공직후보자 등의 비서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또는 여기에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 공직후보자등이 이러한 명칭의 사용을 승낙 또는 용인하는 경우에는 당해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전항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공직후보자의 비서로 추정한다.

③출납책임자가 제247조(선거비용의 법정액위반)의 죄를 범하여 형에 처해진 때는 당해 출납책임자에 관련된 공직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하고 또 그 자는 제251조의 4에 규정한 시간부터 5년간, 당해 선거에 관련된 선거구(선거구가 아닌 때는 선거가 행해지는 구역)에서 행해지는 당해 공직에 관련한 선거에서 공직후보자가 되거나

또는 공직후보자로 나설 수 없다.

④전3항의 규정(입후보의 금지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제1항 또는 전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행위에 관한 한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제1항 또는 전항에 규정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당해행위를 한 자 이외의 자의 권유 또는 도발에 의하거나 또는 그 권유 또는 도발이 제1항 또는 전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에 따라 당해 공직후보자 등의 당선을 상실시키거나 또는 입후보의 자격을 상실시킬 목적으로 당해 공직후보자등 이외의 공직후보자 등 기타 그 공직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에 종사하는 자와 의사를 통하고 있는 때

2. 제1항 또는 전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제1항 또는 전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에 따라 당해 공직후보자등의 당선을 상실시키거나 또는 입후보의 자격을 상실시킬 목적으로 당해 공직후보자 이외의 공직후보자등 기타 그 공직후보자등의 선거운동에 종사하는 자와 의사를 통하고 있는 때

⑤전 각항의 규정은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251조의3 (공무원등의 선거범죄에 의한 당선무효) ①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공무원 및 공단등의 임직원등(공직에 있는자를 제외함. 이하 이 조에서 '공무원등'이라 한다)이었던 자가 공무원등의 직을 떠난날 이후 최초로 공직후보자(선거기일까지 공직후보자이었던 경우의 공직후보자에 한한다)가 된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의원의 선거(그 자가 공무원등의 직을 떠난날 이후 3년이내에 행하여진 것에 한한다)에 있어서 당선인이 된 경우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계기한 자가 당해 당선인을 위해서 행한 선거운동 또는 행위에 관하여 제221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2조(다수인 매수 및 다수인 이해유도죄), 제223조(공직후보자 및 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23조의 2(신문, 잡지의 불법이용죄), 225조(선거의 자유방해죄), 226조(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의 자유방해죄), 제239조(사전운동, 교육자의 지위이용 등의 제한위반)제1항제1호, 제3호나 제4호 또는 제239조의 2(공무원등의 선거운동등의 제한위반)의 죄를 범하여 형에 처해진 때는 당해 당선인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1. 당해 당선인이 재직한 공무원등의 직(그 자가 당해 공무원등의 직을 떠난 날 전 3년간에 재직한 것에 한함, 이하 이 조에서 동일함)과 동일한 직에 있는 공무원등 또는 당해 당선인이 재직한 공무원등의 직의 所掌에 관계되는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등으로 당해 당선인으로부터 당해 선거에 관하여 지시 또는 요청을 받은 자

2. 당해 당선인이 재직한 공무원등의 직의 所掌에 관계되는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등으로 당해 당선인에 관계되는 전호에 계기하는 자로부터 당해 선거에 관하여 지시 또는 요청을 받은 자

3. 당해 당선인이 재직한 공무원등의 직의 所掌에 관계되는 사무와 동종이고, 또한 그 처리에 관하여 이것과 관계있는 사무를 그 종사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지방공공단체의 공무원 및 공사등의 임직원등으로 당해 당선인 또는 당해 당선인에 관계되는 전2호에 계기하는 자로부터 당해 선거에 관하여 지시 또는 요청을 받은 자

②전항의 규정은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251조의4 (당선무효 및 입후보금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기) 전2항의 규정에 의한 당선무효 및 입후보금지의 효과는 제210조(총괄주재자, 출납책임자등의 선거범죄에 의한 공직후보자인 자의 당선의 효력 및 입후보자격에 관한 소송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에 관해서 원고패소의 판결(소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포함함)이 확정되었을 때, 당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동항에 규정하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때 또는 당해 소송에 대한 소의 취하가 있을 때 또는 동조 제2항 또는 제211조(총괄주재자, 출납책임자등의 선거범죄에 의한 공직입후보자등인자의 당선무효 및 입후보금지소송)의 규정에 의한 소송에 대한 원고승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 있어서 각각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제252조 (선거범죄 처형자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정지) ①이 장에 계기하는 죄(제240조(선거사무소, 휴식소등의 제한위반), 제242조(선거사무소 설치의 신고위반), 제244조(선거운동에 관한 각종 제한위반, 그2), 제245조(선거기일후의 인사행위의 제한위반), 제252조의 2(추천단체의 선거운동의 규제위반), 제252조의 3(정당 기타의 정치활동을 행하는 단체의 정치활동의 규제위반) 및 제253조(선거인등의 위증죄)의 죄를 제외함)를 범하여 벌금형에 처해진 자는 그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형의 집행유예의 언도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형의 집행을 받지 않게 될 때 까지의 사이) 이 법률에 규정하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지 않는다.

②이 장에 계기하는 죄(제253조의 죄를 제외함)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진 자는 그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형의 집행을 끝낼 때까지의 사이나 형의 시효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 형의 집행을 면제를 받을 때까지의 사이 및 그 후 5년간 또는 그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형의 집행을 받지 않게 될 때까지의 사이, 이 법률에 규정하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지 않는다.

③제221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22조(다수인 매수 및 다수인 이해유도죄), 제223조(공직후보자 및 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또는 제223조의 2(신문, 잡지의 불법이용죄)의 죄에 관하여 형에 처해진 자로 다시 제221조에서 제223조의 2까지의 죄에 관하여 형에 처해진 자에 대해서는 전2항의 5년간은 10년간으로 한다.

④재판소는 정상에 의하여 형의 언도와 동시에 제1항에 규정하는 자(제221조에서 제223조의 2까지의 죄에 관해 형에 처해진 자를 제외함에 대하여 동항의 5년간이나 형의 집행유예 중의 기간에 대해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지 않는 취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또는 그 기간 중 이를 적용해야 할 기간을 단축하는 취지를 선고하거나 제1항에 규정하는 자로 제221조에서 제223조의 2까지의 죄에 관해 형에 처해진 자 및 제2항에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제1항이나 제2항의 5년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언도를 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지 않는 취지의 규정을 적용해야 할 기간을 단축하는 취지를 선고하거나 또는 전항에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 동항의 10년간의 기간을 단축하는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제252조의2 (추천단체의 선거운동의 규제위반) ①제201조의4제2항(추천단체의 확인)의 확인서의 교부를 받은 정당 기타의 정치단체가 동조 제1항 또는 제6항부터 제8항까지 또는 동조 제9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제143조제8항이나 제9항(연설회의 회장에 있어서의 포스터, 입간판 및 간판류의 수 및 규격)이나 제144조제4항(포스터의 규격)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때는 그 정당 기타의 정치단체의 임직원 또는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201조의4제9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제144조제2항이나 제5항(포스터의 검인등) 또는 제145조(포스터의 게시장소등)제1항이나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포스터를 게시한 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2조의3 (정당 기타의 정치활동을 행하는 단체의 정치활동의 규제위반) ①정당 기타의 정치활동을 행하는 단체가 제201조의5(총선거에 있어서의 정치활동의 규제)(제201조의7제1항(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의 경우의 규제)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제201조의6(통상선거에 있어서의 정치활동의 규제)제1항(제201조의7제2항(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의 경우의 규제)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제201조의 8(都·道·府·縣 또는 지정도시의 의회의원의 선거에 있어서의 정치활동의 규제)제1항(동조 제3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제201조의9(都·道·府·縣지사 또는 시장의 선거에 있어서의 정치활동의 규제)제1항, 제201조의11제2항(정답연설회 개최의 신고), 제201조의12제1항이나 제2항(정답연설회등의 제한)이나 제201조의13제1항(연호행위의 금지)의 규정 또는 제201조의14(정당 기타의 정치단체의 기관지)제1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제148조(신문, 잡지의 보도 및 논평 등의 자유)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치활동을 한 때는 그 정당기타의 정치활동을 행하는 단체의 임직원 또는 구성원으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1조의11 제3항 또는 제8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않은 때
2. 제201조의11 제4항, 제5항이나 제9항의 규정이나 동조 제6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제145조(포스터의 표시개소등)제1항이나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포스터, 입간판이나 간판류를 게시하거나 또는 제201조의11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뼈대를 배포한 때

3. 제201조의11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철거의 처분에 따르지 않은 때

제253조 (선거인등의 위증죄) ①제212조(선거인등의 출석 및 증언의 요구)제2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한 선거인 기타의 관계인이 허위의 진술을 할 때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②전항의 죄는 당해 선거관기위원회의 고발을 기다려 논한다.

③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당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소원에 대한 재결이 행하여지기 전에 자백한 때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53조의2 (형사사건의 처리) ①당선인에 관계되는 이 장에 제기하는 죄(제235조의6(인사를 목적으로 하는 유료광고의 제한위반), 제245조(선거기일후의 인사행위의 제한위반), 제246조(선거운동에 관한 수입 및 지출의 규제위반)제3호부터 제9호까지, 제248조(기부의 제한위반), 제49조의2(공직후보자등의 기부의 제한위반)제3항부터 제5항 및 제7항, 제249조의3(공직후보자등의 관계회사등의 기부제한 위반), 제249조의4(공직후보자등의 성명등을 붙인 단체의 기부의 제한위반), 제249조의5(후원단체에 관한 기부등의 제한위반)제1항 및 제3항, 제252조의2(추천단체의 선거운동의 규제위반), 제252조의3(정당 기타 정치활동을 행하는 단체의 정치활동의 규제위반) 및 제253조(선거인등의 위증죄)의 죄를 제외한다), 제251조의2(총괄주제자, 출납책임자등의 선거범죄에 의한 공직후보자등인 자의 당선무효 및 입후보금지)제1항 각호에 제기하는 자에 관계되는 제221조부터 제223조의2의 죄, 출납책임자에 관계되는 제247조(선거비용의 법정액위반)의 죄 또는 제251조의3(공무원등의 선거범죄에 의한 당선무효)제1항 각호에 제기하는 자는 관계되는 제221조부터 제223조의2까지, 제225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제226조(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의 자유방해죄), 제239조(사전운동, 교육자의 지위이용등의 제한위반)제1항제1호, 제3호 혹은 제4호 또는 제239조의2(공무원등의 선거운동등의 제한위반)의 죄에 관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소송의 판결은 사건을 수리한 날로부터 100일 이내에 이것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소송에 대해서는 재판장은 제1회의 공판기일전에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판기일을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일괄하여 정하여야 한다.

1. 제1회의 공판기일은 사건을 수리한 날로부터 제1심은 30일 이내, 항소심은 50일 이내의 날을 정한다.

2. 제2회 이후의 공판기일은 제1회의 공판기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7일을 경과할 때마다 그 7일의 기간마다 1회 이상이 되도록 정한다.

③전항의 소송에 대해서는 재판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다른 소송의 순서에 관계없이 신속하게 재판을 하여야 한다.

제254조 (당선인등의 처벌의 통지) 당선인이 그 당선에 관하여 본장에 제기하는 죄(제235조의 6(인사를 목적으로 하는 유료광고의 제한위반), 제245조(선거기일후의 인사행위의 제한위반), 제246조(선거운동에 관한 수입 및 지출의 규제위반)제3호부터 제9호까지, 제248조(기부의 제한위반), 제49조의 2(공직후보자등의 기부의 제한위반)제3항부터 제5항 및 제7항, 제249조의 3(공직후보자등의 관계회사등의 기부제한 위반), 제249조의 4(공직후보자등의 성명등을 붙인 단체의 기부의 제한위반), 제249조의 5(후원단체에 관한 기부등의 제한위반)제1항 및 제3항, 제252조의 2(추천단체의 선거운동의 규제위반), 제252조의 3(정당 기타 정치활동을 행하는 단체의 정치활동의 규제위반) 및 제253조(선거인등의 위증죄)의 죄를 제외한다)를 범하여 형에 처해진 때, 제251조의 2(총괄주제자, 출납책임자등의 선거범죄에 의한 공직후보자등인자의 당선무효 및 입후보금지)제1항 각호에 제기하는 자가 제221조부터 제223조의 2의 죄를 범하여 형에 처해진 때, 출납책임자에 관계되는 제247조(선거비용의 법정액위반)의 죄를 범하여 형에 처해진 때 또는 제251조의 3(공무원등의 선거범죄에 의한 당선무효)제1항 각호에 제기하는 자가 제221조부터 제223조의 2까지, 제225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제226조(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의 자유방해죄), 제239조(사전운동, 교육자의 지위이용등의 제한위반)제1항 제1호, 제3호 혹은 제4호 또는 제239조의 2(공무원등의 선거운동등의 제한위반)의 죄를 범하여 형에 처해진 때는 재판소장은 그 취지를 자치대신에게 통지하고 또한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회에, 이 법률에 정하는 기타의 선거에 관하여는 관계지방공공단체장을 경유하여 당해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의원인 당선인이 형에 처해진 경우에 있어서는 중의원의장 또는 참의원의장에게, 지방공공단체의 회의 의원인 당선인이 형에 처해진 경우에는 당해 의회의장에게 함께 통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254조의2 (총괄주제자, 출납책임자등의 처형의 통지) ①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 이외의 선거에 관하여 제251조의 2(총괄주제자, 출납책임자등의 선거범죄에 의한 공직후보자등인자의 당선무효 및 입후보의 금지) 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제기하는 자가 제221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3항, 제222조(다수인 매수 및 다수인 이해유도죄)제3항, 제223조(공직후보자 및 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3항 또는 제223조의 2(신문, 잡지의 불법이용죄)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에 처해진 때 또는 출납책임자가 제247조(선거비용의 법정액 위반)의 규정에 의하여 형에 처해진 때는 당해 사건이 係屬한 최후의 심급의 재판소는 검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그 취지를 이러한 자에 관계되는 공익후보자인 자에게 서면에 의하여 신속하게 통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②전항의 통지는 송달의 방법으로서 행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당해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제1편제4장제3절(송달)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행하여진 때에는 재판소장은 그 취지를 자치대신에게 통지하고 또한 관계 지방공공단체장을 경유하여 당해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255조 (부재자투표의 경우의 별칙의 적용) ①제49조(부재자투표)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에 관하여는 그 투표를 관리하는 자는 이것을 투표관리자, 그투표를 기재해야 할 장소는 이것을 투표소, 그 투표에 입회해야 할 자는 이것을 투표입회인, 선거인이 지시하는 공직후보자 1인의 성명, 하나의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의 명칭 또는 약칭 또는 하나의 참의원명부신고정당등의 명칭이나 약칭을 기재해야 할 것으로 정해진 자는 이것을 제48조(투표대리)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 1인 또는 하나의 중의원명부신고정당등에 대해서 ○의 기호 또는 하나의 참의원명부신고정당등의 명칭 또는 약칭 또는 공직의 후보자 1인의 성명을 기재해야 할 것으로 정해진 자로 간주하여 본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에 관하여는 선거인이 투표의 기재의 준비에 착수하고서부터 투표를 기재한 투표용지를 우송하기 위해 이것을 봉입할 때까지의 사이에 있어서 당해 투표에 관한 행위를 행하는 장소를 투표소로 보고 제228조(투표 간섭죄)제1항 및 제234조(선거범죄의 선동죄) 중 동항에 관계되는 부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56조 (중의원의원의 임기의 기산) 중의원의원의 임기는 총선거일로부터 기산된다. 다만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가 중의원의원의 임기만료일전에 행하여진 때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의 익일부터 기산된다.

제257조 (참의원의원의 임기의 기산) 참의원의원의 임기는 앞의 통상선거에 의한 참의원의원의 임기만료일의 익일부터 기산한다. 다만, 통상선거가 앞의 통상선거에 의한 참의원의원의 임기만료일의 익일후에 행하여진 때는 통상선거의 기일부터 기산한다.

제258조 (지방공공단체 의회의원의 임기의 기산) 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원의 임기는 일반선거일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임기만료에 의한 일반선거가 지방공공단체 의회의원의 임기만료일전에 행하여진 경우에 있어서 전임의원이 임기만료일까지 재임한 때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의 익일부터, 선거기일후에 전임의원이 모두 없어지게 된

때는 의원이 모두 없게 된 날의 익일부터 각각 기산한다.

제259조 (지방공공단체장의 임기의 기산) 지방공공단체장의 임기는 선거일부터 기산한다. 다만,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가 지방공공단체장의 임기만료일전에 행하여진 경우에 있어서 전임의 장이 임기만료일까지 재임한 때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의 익일부터, 선거기일후에 전임의 장이 흠결한 때는 그 흠결한 날의 익일부터 각각 기산한다.

제259조의2 (지방공공단체장의 임기의 기산의 특례) 지방공공단체장의 직의 퇴직을 신청한 자가 당해 퇴직신청이 있는 것에 의하여 고시된 지방공공단체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선인이 된 때는 그 자의 임기에 관하여는 당해 퇴직신청 및 당해 퇴직신청이 있는 것에 의하여 고시된 선거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고 전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60조 (보궐의원의 임기) ①중의원의원, 참의원의원 또는 지방공공단체 의회의원의 보궐의원은 각각 전임자의 잔임기간 중 재임한다.

②지방공공단체 의회의원의 정수에 異動이 생겼기 때문에 새롭게 선거된 의원은 일반선거에 의하여 선거된 의원의 재임만료일까지 재임한다.

제261조 (선거관리비용의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와의 부담구분) 선거에 관한 비용으로 국가와 지방공공단체가 부담하는 것의 구분에 관하여는 본장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1948년 법률 제109호)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61조의2 (선거에 관한 상시계발의 비용의 재정줄티) 都·道·府·縣 및 市·町·村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선거에 관한 상시계발을 위한 아래에 계기하는 비용 그리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중의원의원 및 참의원의원의 선거의 결과의 속보에 요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1. 강연회, 토론회, 연수회, 강습회, 영화회 등의 개최에 요하는 비용
2. 신문, 팜플렛, 포스터 등의 문서도화의 간행 또는 배포에 요하는 비용
3. 관계 각종의 단체, 기관등과의 연락을 도모하기 의해서 요하는 비용
4. 기타 필요한 사업을 행함에 요하는 비용

제262조 (각 선거에 통하는 선거관리비용의 재정조치) 선거에 관해 다음에 계기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1. 선거인명부의 調製에 요하는 비용
2. 접자기의 조제에 요하는 비용
3. 삭제
4. 제167조(국회의원 및 지사의 선거공보)의 규정에 의한 선거공보의 발행에 요하는 비용

5. 제192조(모든 선거에 있어서의 선거운동에 관한 수입 및 지출의 보고서)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공표, 보존 및 열람의 시설에 요하는 비용
- 제263조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의원의 선거관리비용의 국고부담)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의원의 선거에 관해 다음에 제기하는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1. 투표용지 또는 봉투, 제49조(부재자투표)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에 관한 부재자투표증명서 그 봉투 그리고 투표함의 조제에 요하는 비용
 2. 선거사무를 위해 都·道·府·縣 또는 市·町·村의 선거관리위원회, 투표관리자, 개표관리자, 선거장 또는 선거분회장에 있어서 요하는 비용
 3. 투표소, 개표소, 선거회장 또는 선거분회장에 요하는 비용
 4.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에 관한 선거사무를 위해 부재자투표관리자에 있어서 요하는 비용 또는 그 투표기재장소에 요하는 비용 그리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행하여지는 우송에 요하는 비용
 5. 투표관리자, 개표관리자, 선거장, 선거분회장, 투표입회인, 개표입회인 또는 선거입회인에 대한 보수 또는 비용상환에 요하는 비용
- 5의2. 제131조제3항(선거사무소의 표시)의 규정에 의한 표찰에 요하는 비용
- 5의3. 제141조제6항(자동차, 선박 또는확성기의 표시) 또는 제164조의2제2항(개인연설회장의 게시의 특례)의 규정에 의한 표시에 요하는 비용
- 5의 4. 제141조제8항(선거운동용 자동차의 사용의 공영)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용 자동차의 사용에 요하는 비용
6. 제142조제1항(선거운동용 통상엽서)의 규정에 의한 통상엽서의 비용 또는 동조 제11항(통상엽서 또는 뼈라작성의 공영)의 규정에 의한 통상엽서 또는 뼈라의 작성에 요하는 비용
- 6의2. 제143조제14항(입찰 또는 간판류 또는포스터작성의 공영)의 규정에 의한 입찰 또는 간판류 또는 포스터의 작성에 요하는 비용
7. 제144조의2(포스터게시장)의 규정에 의한 게시장의 설치에 요하는 비용
8. 제149조(선거에 관한 신문광고)의 규정에 의한 신문광고에 요하는 비용
9. 제150조(정견방송) 또는제151조(경력방송)의 규정에 의한 방송에 요하는 비용
10. 제161조(공영시설사용의 개인 연설회)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설회를 위한 시설(설비를 포함함), 제164조의5(가두연설)의 규정에 의한 표기 그리고 제141조의2(자동차 등의 승차제한) 또는 제164조의7(가두연설의 경우의 선거운동원등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완장에 관한 비용
- 10의 2. 제164조의2제6항(개인연설회장의 입찰 또는 간판류의 작성의 공영)의 규정에 의한 입찰 또는 간판류의 작성에 요하는 비용
11. 제175조(투표기재소의 성명등의 게시)의 규정에 의한 게시에 요하는 비용

12. 제176조(선거운동을 위한 교통기관의 이용)의 규정에 의한 교통기관의 사용에
요하는 비용

13. 제201조의15(신문에 의한 정책광고)의 규정에 의한 신문광고에 요하는 비용
제264조 (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원 또는 장의 선거관리비용의 지방공공단체부담) ①지
방공공단체의 의회의원 또는 장의 선거에 관해 다음에 제기하는 비용은 당해 지방
공공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1. 전조제1호 내지 제4호, 제5호의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제기하는 비용

2. 전조제5호에 제기하는 자에 대한 보수 또는 비용변상에 요하는 비용

②都·道·府·縣지사의 선거에 관한 전조 제5호의2, 제7호 내지 제9호 또는 제12호
에 제기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당해 都·道·府·縣의 부담으로 한다.

③제141조제9항(임의제선거운동용자동차의 사용의 공영)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용
자동차의 사용에 요하는 비용, 제143조제15항(임의제 포스터작성의 공영)의 규정에
의한 포스터의 작성에 요하는 비용, 제144조의2(포스터게시장)제8항 또는 제144조의
4(임의제포스터게시장)의 규정에 의해 게시장의 설치에 요하는 비용 그리고 제172
조의2(임의제 선거공보의 발행)의 규정에 의한 선거공보의 발행에 요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당해 지방공공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④都·道·府·縣의 의회의원 또는 都·道·府·縣지사의 선거와 市·町·村 의회
의원 또는 市·町·村장의 선거를 동시에 행하는 경우의 비용의 부담부분에 대해서
는 관계지방공공단체가 협의해서 정한다.

제265조 (행정불복심사법에 의한 불복신청의 제한)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처분 기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불복심사법에 의한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제266조 (특별구의 특례) ①이 법률 중 시에 관한 규정은 특별구에 적용한다.

②都의회의원의 각 선거구에 있어서 선거해야 할 의원의 수에 대해서는, 특별구가
존재하는 구역이외에 구역을 구역으로 하는 각 선거구에 있어서 선거해야 할 의원
수를 특별구가 존재하는 구역을 하나의 선거구로 간주하여 정하고 특별구의 구역을
구역으로 하는 각 선거구에 있어서 선거해야 할 의원수를 특별구가 존재하는 구역
을 하나의 선거구로 간주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구역에 있어서 선거해야 할 것으로
된 의원수를 특별구의 구역을 구역으로 하는 각 선거구에 배분함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267조 (지방공공단체조합의 특례) ①지방공공단체조합의 선거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
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都·道·府·縣이 가입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
법률 중 都·道·府·縣에 관한 규정, 시 및 특별구가 가입하는 것으로 都·道·府
·縣이 가입하지 않는 것에 있어서는 이 법률 중 시에 관한 규정, 기타의 것에 있

어서는 이 법률 중 市·町·村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중의원의원, 참의원의원 그리고 都·道·府·縣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관하여 이 법률의 규정을 적용함에 대해서는 全部事務組合 또는 役場事務組合은 1 町·村으로 보고 그 組合사무소는 町·村사무소로 본다.

제268조 (재산구의 특례) 재산구 의회의원의 선거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295조(재산구에 관한 조례의 설정)의 규정에 의한 조례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률 중 町·村 의회의원의 선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피선거권의 유무는 市·町·村 또는 특별구의 의회가 결정한다.

제269조 (지정도시에 대한 본법의 적용관계) 중의원의원, 참의원의원, 都·道·府·縣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그리고 지정도시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그리고 지정도시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관하여 이 법률의 규정을 적용함에 관해서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시에 있어서는 구를 시로 보고, 구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을 시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있어서 제22조(등록)의 규정의 적용에 관해서는 동조 중 “자격을 갖는 자”라고 있는 것은 “자격을 갖고 또한 그 날에 있어서 당해 구의 구장이 작성하는 주민기본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자”로 한다.

제270조 (선거에 관한 신고 등의 시간) 이 법률 또는 이 법률에 근거한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대신, 중앙선거관리회, 선거관리위원회, 투표관리자, 개표관리자, 선거장, 선거분회장 등에 대하여 하는 신고, 청구, 신청 기타의 행위는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의 사이에 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만 제29조제3항(선거인명부의 수정에 관한 조사청구)의 규정에 의한 선거인 명부의 수정에 관한 조사청구는 당해 市·町·村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에 관하여 정해져 있는 집행시간 내에 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270조의2 (선거에 관한 신고 등의 기한) 이 법률 또는 이 법률에 근거한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대신, 중앙선거관리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신고, 청구, 신청 기타의 행위(내각총리대신, 선거관리위원회등이 자치대신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하는 행위를 포함함)의 기한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1988년 법률제91조)제2조 본문(기한의 특례) 및 지방자치법 제4조의 2제4항 본문(기한의 특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제15장(쟁송)에 관계되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기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1조 (都·道·府·縣 의회의원의 선거구의 특례) ①제15조제1항에서 제5항까지(都·道·府·縣 의회의원의 선거구) 및 제15조의 2제3항(선거구의 선거기간 중의 특례)중 군이라고 있는 것은 都에 있어서는 지청의 소관구역을 포함하고, 道에 있어서는 지청의 소관구역을 한다.

②1966년 1월1일 현재에 있어서 설치되어 있는 都·道·府·縣 의회의원의 선거구에 대해서는 당해 구역의 인구가 당해 都·道·府·縣의 인구를 당해 都·道·府·縣 의회의원의 정수로 나누어 얻은 수의 반수에 달하지 않게 된 경우에 있어서도 당분간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례에 의하여 당해구역으로 1선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271조의2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의 특례)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에 관해서는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재선거가 행하여지는 구역, 선거운동기간 등에 따라 정령으로 특별히 규정할 수 있다.

제271조의3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재선거 또는 보결선거의 특례)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재선거 또는 보결선거에 대하여 이 법률의 규정에 따르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령으로 특별히 정할 수 있다.

제271조의4 (재입후보의 경우의 특례) 공직후보자임을 사퇴한(공직후보자임을 사퇴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후 다시 당해 선거의 공직후보자로 된 자 및 候補者신고政黨의 신고에 관련된 후보자로서 당해 候補者신고政黨이 당해 신고를 취하한(당해 신고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후 다시 당해 선거의 후보자로 된 자 및 당해 신고가 각하된(제86조(중의원 소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에서 입후보의 신고등)제9항제3호에 계기된 사유에 따라 각하된 경우를 제외한다) 후 다시 당해 선거의 후보로 된 자에 대해서는 당해 선거의 선거운동 및 선거운동에 관한 수입, 지출등에 관하여 정령으로 특별한 규정을 둘 수 있다.

제272조 (시행에 관한 명령등) ①이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절차 기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은 명령으로 정한다.

②이 법률 중 『장』과 『조』 및 『항』의 밑에 붙인 괄호『 () 』는 각 조항을 인용하는 경우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표제이고 각 규정의 내용을 한정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제273조 (선거사무의 위촉) 都·道·府·縣 또는 市·町·村의 선거관리위원회가 都·道·府·縣 지사 또는 市·町·村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 都·道·府·縣 또는 市·町·村의 보조기관인 직원에게 선거에 관한 사무를 위촉한 때는, 이러한 직원은 충실히 그 사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별표 제1을 삭제한다.

별표 제2중 별표 제2를 별표 제2(제14조 관계로 하고 동표를 별표로 한다)

부 칙

※ 1994. 2. 4. 개정(부칙중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4항 내지 제6항을 1항씩 올리며, 제7항 내지 제21항을 삭제한다).

1. 이 법률은 1950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
2. 호적법(1957년 법률제224호)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당분간 정지한다.
3. 전향의 자는 선거인명부에 등록할 수 없다.
4. 해상의 교통이 막히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지역에서 정령으로 지정하는 곳에 있어서는 정령으로 정할 때까지는 선거는 행하지 아니한다.
5. 전향에 든 지역에 있어 처음으로 행하는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부칙 (1989년 11월17일 법률제69호)

1.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2. 이 법률의 시행전에 중의원의원의 2이상의 선거구에서 설치되고 이법률 시행시 현재 공직선거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구의 소속이 정해져 있지 않은 지방자치법(1947년 법률제67호)제252조의19제1항의 지정도시의 구에 대해서는 이 법률에 의한 개정후의 공직선거법 부칙제13항 및 제1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1989년12월19일 법률제81호)

1. (시행기일) 이 법률은 199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어업법의 일부개정) 어업법(1949년 법률제267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생략)
3. (농업위원회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 농업위원회등에 관한 법률(1951년 법률제 88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1992년4월2일 법률제29호)抄

1.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령으로 정한 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년12월16일 일법률제97호)

1. 이 법률은 다음 총선거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년 12월16일 일법률제98호)

제1조 (시행기일)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3조에 1항을 추가한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의 규정은 1993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구분) ①이 법률에 의한 개정후의 공직선거법(이하 신법이라 한다)의 규정(신법 제11조제1항, 제143조제16항부터 제18항까지, 제147조 및 제253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제외한다)은 중의원의원 및 참의원의원의 선거에 대해서는 이 법률의 시행일(이하 시행일이라 한다) 이후 그 기일을 공시 또는 고시한 선거부터, 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 선거에 대해서는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3개월을 경과한 일자 이후 그 기일을 고시한 선거부터 적용하고, 시행일 전일까지에 그 기일을 공시 또는 고시한 중의원의원 및 참의원의원의 선거 및 시행일로부터 기산하여 3개월을 경과한 날의 전일까지에 그 기일을 고시한 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대해서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②신법 제11조제1항(다른 법률에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한 행위에 의해 형에 처해진 자에 대해서 적용하고, 시행일전에 한 행위에 의해 형에 처해진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례에 따른다.

제3조 (문서도화의 게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143조에 1항을 추가한 개정규정의 시행일전에 게시한 문서도화로서 그 개정규정의 시행시 현재에 신법 제143조제16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문서도화는 신법 제147에 규정하는 문서도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동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일전에 행한 행위 및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종전의 례에 의하는 사항으로서 시행일 이후에 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 법률에 의한 개정전의 공직선거법 제16장(다른 법률에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의 예에 의한다.

제5조 (최고재판소재판관 국민심사법의 일부개정) 최고재판소재판관 국민심사법(1947

년 법률제136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생략)

제6조 (개정후의 최고재판소재판관 국민심사법의 적용구분) 전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후의 최고재판소재판관 국민심사법의 규정은 시행일 이후 그 기일을 고시한 심사에 대해서 적용하고, 시행일전에 그 기일을 고시한 심사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7조 (국회의원선거등의 집행경비의 기준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 국회의원선거등의 집행경비의 기준에 관한 법률(1950년 법률제179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생략)

제8조 (개정후의 국회의원선거등의 집행경비의 기준에 관한 법률의 적용구분) 전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후의 국회의원선거등의 집행경비의 기준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중의원의원 및 참의원의원의 선거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후 그 기일을 공시 또는 고시한 선거부터, 최고재판소재판관 국민심사 및 일본국 헌법제95조의 규정에 의한 투표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후 그 기일을 고시한 최고재판소재판관 국민심사 또는 일본국 헌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투표부터 적용하고, 시행일 전일까지에 그 기일을 공시 또는 고시한 중의원의원 및 참의원의원의 선거 및 시행일 전일까지 그 기일을 고시한 최고재판소재판관 국민심사 및 일본국헌법제95조의 규정에 의한 투표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1994년 2월 4일 법률제2호)

제1조 (시행기일) 이 법률은 이 법률에 의한 개정후의 공직선거법 제13조제1항에 규정된 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목차의 개정규정 [“제231조(兇器携帶罪), 제232조(투표소, 개표소, 선거회장등에 있어서 兇器携帶罪)”를 “제231조(凶器携帶罪), 제232조(투표소, 개표소, 선거회장등에 있어서 凶器携帶罪)”로, “제234조(선거범죄선동죄)”를 “제234조(선거범죄선동죄)”로, “제238조(입회인의 의무해태죄)”를 “제238조(입회인의 의무를 해태한 죄)”로, “제245조(선거기일후의 인사행위의 제한위반)”을 “제245조(선거기일후의 인사행위의 제한위반)”으로 개정된 부분에 한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및 제143조제16항제2호의 개정규정, 동조에 1항을 추가한 개정규정, 제147조, 제147조의2, 제221조, 제223조, 제224조의 3제2항 및 제225조의 개정규정, 제226조제2항의 개정규정(“10만엔”을 “30만엔”으로 개정된 부분에 한한다), 제227조의 개종규정(“10만엔”을 “30만엔”으로 개정된 부분에 한한다), 제228조제1항의 개정규정(“10만엔”을 “30만엔”으로 개정된 부분에 한한다) 및 동조 제2항의 개정규정, 제230조부터 제232조까지의 개정규정, 제234조의 개정규정, 제235조제1항의

개정규정("10만엔"을 "30만엔"으로 개정한 부분에 한한다) 및 동조 제2항의 개정규정, 제235의2 내지 제237조의 개정규정, 제237조의2의 개정규정("10만엔"을 "30만엔"으로 개정한 부분에 한한다), 제238조의 개정규정, 제23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10만엔"을 "30만엔"으로 개정한 부분에 한한다), 제239제1항의 개정규정("10만엔"을 "30만엔"으로 개정한 부분에 한한다) 및 동조 제2항의 개정규정("10만엔"을 "30만엔"으로 개정한 부분에 한한다), 제239조의 2의 개정규정, 제240조제1항의 개정규정("10만엔"을 "30만엔"으로 개정한 부분에 한한다) 및 동조 제2항의 개정규정("10만엔"을 "30만엔"으로 개정한 부분에 한한다), 제241조의 개정규정("10만엔"을 "30만엔"으로 개정한 부분에 한한다), 제242조제1항의 개정규정("5만엔"을 "20만엔"으로 개정한 부분에 한한다) 및 동조 제2항의 개정규정("5만엔"을 "20만엔"으로 개정한 부분에 한한다), 제242조의 2의 개정규정, 제243조제1항의 개정규정("20만엔"을 "50만엔"으로 개정한 부분 및 제5호에 다음의 1호를 추가한 부분에 한한다) 및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20만엔"을 "50만엔"으로 개정한 부분에 한한다), 제244조의 개정규정("10만엔"을 "30만엔"으로 개정한 부분 및 제4호에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 제245조부터 제249조의 5까지 및 제251조의 개정규정, 제252조의 2제1항의 개정규정("30만엔"을 "100만엔"으로 개정한 부분에 한한다) 및 동조 제2항의 개정규정 및 제252조의 3제1항의 개정규정("30만엔"을 "100만엔"으로 개정한 부분에 한한다) 및 동조 제2항의 개정규정 및 제253조제4항 및 부칙 제6조의 규정 및 부칙 제10조 중 최고재판소재판관 국민심사법(1947년 법률제136호) 제44조 및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3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구분) ①이 법률에 의한 개정후의 공직선거법(이하 신법이라 한다)의 규정(신법 제11조제1항제4호, 제15조제5항, 제18조(도도부현의 의회의원의 선거에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 제86조의5, 제143조제16항제2호 및 제19항, 제147조, 제147조의 2, 제16장(벌금액에 관한 부분 및 제243조제1항제5호의2 및 24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한한다) 및 제271조제1항의 규정을 제외한다) 및 이 법률에 의한 개정후의 국회의 원선거등의 집행경비의 기준에 관한 법률(1950년 법률제179호) 및 시정촌의 합병 특례에 관한 법률(1965년 법률제6호) 제11조의 규정은 중의원의원의 선거에 대해서는 이 법률의 시행일(이하 "시행일"이라 한다) 이후 최초로 그 기일을 공시한 총선거부터, 중의원의원의 선거 이외의 선거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후 그 기일을 공시한 또는 고시한 선거에 대해서 적용하고,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그 기일을 공시한 중의원의원의 총선거, 시행일 이후 최초로 그 기일을 공시한 중의원의원의 총선거 기일의 공시일 전일까지에 그 기일을 고시한 중의원의원의 선거 및 시행일 전일까지 그 기일을 공시 또는 고시한 선거(중의원의원의 선거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②신법 제15조제5항, 제18조(도도부현의 의회의원의 선거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제271조제1항 및 이 법률에 의한 개정후의 시정촌의 합병특례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그 기일을 고시한 일반선거부터 적용하고, 시행일 이후 최초로 그 기일을 고시한 일반선거의 고시일 전일까지에 그 기일을 고시한 선거에 대해서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③이 법률에 의한 최고재판소재판관 국민심사법(제44조 및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를 제외한다), 어업법(1949년 법률제267호) 및 농업위원회등에 관한 법률(1951년 법률제8호)의 규정은 시행일 이후 그 기일을 고시한 심사 또는 선거에 대해서 적용하고, 시행일 전일까지 그 기일을 고시한 심사 또는 선거에 대해서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④신법 제11조제1항(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 후에 행한 행위에 따라 형에 처해진 자에 대해서 적용하고, 이 법률의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의해 형에 처해진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제3조 (정당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일 이후 최초로 그 선거의 기일을 공시한 중의원의원의 총선거 및 당해 총선거의 모든 당선인에 대해서 신법 제101조제2항 또는 제101조의 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는 날의 전일까지 그 선거의 기일을 공시 또는 고시한 참의원의원선거에 대해서 신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신법 제86조제1항제2호, 제86조의 2제1항제2호 및 제86조의 3제1항제2호 중 “중의원의원의 총선거에 있어서 소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 혹은 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를 “중의원의원의 총선거”로 한다.

제4조 (후보자의 선정절차의 제출등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일 이후 최초로 그 선거기일을 공시한 중의위의원의 총선거의 모든 당선인에 대해서 신법 제101조제2항 또는 제101조의 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는 날의 전일까지, 신법 제86조의 5제1항이 규정한 후보자의 선정절차를 정한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대해서 동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동항 중 “제86조(공직후보자의 입후보의 제출등)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정당 기타 정치단체”는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있어서 당해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소속하는 중의위의원의 혹은 참의원의원을 5인 이상 보유 또는 최근에 행해진 중의원의원의 총선거 혹은 참의원의원의 통상선거에 있어서 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 혹은 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득표 총수가 당해 선거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 얻은 정당 및 정치단체”로 한다.

제5조 (정당등의 명칭의 제출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률의 시행시 현재 존재하는 정당 기타 정치단체로서 신법 제8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대해서 신법 제86조의6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1항 중 “중의원의원의 총선거 기일로부터 30일 이내”는 “공직선거법의 일부를 개정한 법률(1994년 법률 제2호)의 시행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②이 법률의 시행시 시행일 이후 최초로 그 기일을 공시한 참의원의원의 통상선거에 대해서 이 법률에 의한 개정전의 공직선거법(이하 “구법”이라 한다)제16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행해진 경우에는 신법 제86조의3제2항에서 준용하는 신법 제86조의2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당해 고시는 신법 제86조의7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로 본다.

제6조 (문서도화의 게시에 관한 경과조치) ①부칙 제1조 단서에 규정한 개정규정의 시행일전에 게시한 문서도화로서 당해 개정규정의 시행시 현재 또는 당해 개정규정의 시행후에 신법 제143조제16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문서도화는 신법 제147조제2호의 문서도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동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신법 제243조제1항제5호의2의 규정은 신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한 철거처분에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해서 적용하고, 구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한 철거처분에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제7조 (소송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신법의 규정에 의해 행한 선거에 관련하여 이 법률의 시행전에 행한 범죄에 의한 당선외의 효력에 관한 소송 및 당선무효의 소송에 대해서는 동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구법 제210조 및 제211조(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전에 행한 행위 및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종전의 례에 따라 행한 선거 또는 심사에 관해 이 법률의 시행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해서는 종전의 례에 따른다.

제9조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 지방자치법(1947년 법률제67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생략)

제10조 (최고재판소재판관 국민심사법의 일부개정) 최고재판소재판관 국민심사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생략)

제11조 (어업법의 일부개정) 어업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생략)

제12조 (국회의원의 선거등의 집행경비의 기준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 국회의원의 선거등의 집행경비의 기준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생략)

제13조 (농업위원회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 농업위원회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생략)

제14조 (조세특별조치법의 일부개정) 조세특별조치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생략)

제15조 (국회의원호조연금법의 일부개정) 국회의원호조연금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생략)

제16조 (市町村합병특례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 市町村합병특례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생략)

제17조 (자치성설치법의 일부개정) 자치성설치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생략)

衆議院議員選舉區劃定審議會設置法¹⁾

제1조 (설치) 총리부에 중의원의원선거구획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소장사무) 심의회는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구의 개정에 관하여 조사 심의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개정안을 작성해서 내각총리대신에게 권고한다.

제3조 (개정안의 작성의 기준)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안의 작성은 각 선거구의 인구의 균형을 고려하고, 각 선거구의 인구(관보에 공시된 최근의 국세조사 또는 이에 준하는 전국적인 인구조사의 결과에 의한 인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중 가장 많은 것을 가장 적은 것으로 나눈 수가 2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행정구획 지세 교통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개정안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각 都·道·府·縣의 구역내의 중의원 소선거구 선출의원의 수는, 1에, 공직선거법(1950년 법률 제100호)제4조제1항에 규정하는 중의원 소선거구선출의원의 정수에 상당하는 수에서 都·道·府·縣의 수를 공제한 수를 인구에 비례하여 각 都·道·府·縣에 배당한 수를 더한 수로 한다.

제4조 (권고의 기한등)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권고는 국세조사(통계법 제4조제2항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10년마다 행하여지는 국세조사에 한한다)의 결과에 의한 인구가 최초로 관보에 공시된 날부터 1년이내에 행하는 것으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의회는 각 선거구의 인구의 현저한 불균형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제5조 (권고의 존중) ①내각총리대신은 심의회로부터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받은 때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내각총리대신은 심의회로부터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받은 때는 이를 국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 (조직) ①심의회는 위원 7인으로 조직한다.

②위원은 국회의원이외의 자로서 식견이 높고, 중의원 소선거구 선출의원의 선거구의 개정에 관하여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자중 양의원의 동의를 얻어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한다.

③위원의 임기가 만료하거나 결원이 생긴 경우에 있어서, 국회의 폐회 또는 중의원

1) 1994년 2월 4일 제정, 법률 제3호

의 해산으로 인하여 양의원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내각총리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에 정한 자격을 가진 자중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④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임명후 최초의 국회에서 양의원의 사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양의원의 사후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내각총리대신은 즉시 그 위원을 파면하여야 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내각총리대신은 위원이 심신의 고장으로 인하여 직무의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에게 직무상의 의무위반 기타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한 비행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양의원의 동의를 얻어 그 위원을 파면할 수 있다.

⑦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 직을 퇴직한 후에도 또한 같다.

⑧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7조 (회장) ①심의회에 회장을 두되, 위원의 호선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②회장은 회무를 총리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③회장에게 사고가 있는 때에는 미리 회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8조 (자료제출 기타의 협력) 심의회는 그 소장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기관 및 지방공공단체의 장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개진 설명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정령에의 위임) 이 법률에 정한 것외에 심의회의 조직 및 운영 기타 이 법률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기일) 이 법률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장사무등의 특례) ①심의회는 제2조에 규정한 사무를 관장하는 외에, 공직선거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1994년 법률제2호)에 의한 개정후의 공직선거법의 규정의 시행준비를 위하여 중의원 소선거구 선출위원의 선거구의 획정에 관하여 조사 심의해서, 그 획정안을 작성하여 내각총리대신에게 권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는 위원이 임명된 날부터 6월이내에 행하는 것으로 한다.

③제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획정안의 작성에 관하여, 제5조의 규정은 동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조 (특별직의직원의보수에관한법률의 일부개정) : 생략

제4조 (선거제도심의회설치법의 일부개정) : 생략

政治資金規正法¹⁾

< 목 차 >

- 제1장 총 칙
- 제2장 정치단체의 신고 등
- 제3장 공직의 후보자에 관련된 자금관리단체의 신고 등
- 제4장 보고서의 공개
- 제5장 기부에 관한 제한
- 제6장 벌 칙
- 제7장 보 칙
- 부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률은 의회제 민주정치하에 있어서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능의 중요성 및 공직후보자의 책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정당정치 및 공직의 후보자에 의하여 행해지는 정치활동이 국민의 부단한 감시와 비판하에 행해지도록 하기 위하여, 정치단체의 신고, 정치단체에 관련되는 정치자금수지의 공개 및 정치단체와 공직의 후보자에 관련된 정치자금의 수수의 규정 기타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정치활동의 공명과 공정을 확보하며, 나아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이 법률은 정치자금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달을 희구하여 거출되는 국민의 정재임에 비추어, 그 수지상황을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하고 이에 대한 판단은 국민에게 맡기며, 적어도 정치자금의 지출에 관한 국민의 자발적 의사를 억제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②정치단체는 그 책임을 자각하여, 그 정치자금의 수수에 있어서는, 결코 국민의 의혹을 초래하지 않도록 이 법률에 의거하여 공명정대하게 행하여야 한다.

1) 1948년 7월 29일 제정, 1994년 2월 4일 개정(법률 제4호). 신설 또는 개정된 내용은 해당부분에 밑줄(____)을 그어 표시하였다.

③(1994.2.4.삭제)

제3조 (규정 등) ①이 법률에 있어서 "정치단체"라고 함은 다음의 단체를 말한다.

1. 정치상의 주의 또는 시책을 추진, 지지하거나 이에 반대하는 것을 본래의 목적으로 하는 단체
2. 특정공직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지지하거나 이에 반대하는 것을 본래의 목적으로 하는 단체
3. 전2호에 열거한 것외에 다음에 열거하는 활동을 그 주된 활동으로서 조직적이며 계속적으로 행하는 단체
 - 가. 정치상의 주의 또는 시책을 추진, 지지하거나 이에 반대하는 것
 - 나. 특정공직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지지하거나 이에 반대하는 것

②이 법률에서 "정당"이라고 함은 정치단체중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것엔가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정치단체에 소속하는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의원을 5인이상 가진 것
2. 직근에 행해진 중의원의원 총선거의 소선거구 선출의원의 선거 비례대표 선출의원의 선거 또는 참의원의원 통상선거의 비례대표 선출의원의 선거 선거구 선출의원의 선거에 있어서의 당해 정치단체의 득표총수가 당해 선거에 있어서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인 것
3. (1994.2.4.삭제)

③전항 각호의 규정은 타 정당 [제6조제1항(동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란 취지의 신고를 한 것에 한한다.]에 소속하고 있는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의원이 소속하고 있는 정치단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이 법률에서 "공직후보자"란 공직선거법(소화 25년 법률 제100호)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로서 신고가 있는 자, 동법 제86조의2 또는 제8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후보자로 된 자 또는 동법 제8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로서 신고가 있는 자(당해 후보자로 되고자 하는 자 및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직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⑤제2조항제1호에 규정하는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의원의 수의 산정, 동항제2호에 규정하는 정치단체의 득표총수의 산정 기타 동항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4조 ①이 법률에서 "수입"이란 금전·물품기타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여 제8조의 3각호에 열거한 방법에 의한 운용을 위하여 공여하거나 교부한 금전등(금전 기타 정령에서 정한 재산상의 이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당해운용에 관련한 당해 금전등에 상당하는 금전등의 수수 이외의 것을 말한다.

②이 법률에서 “당비 또는 회비”란 어떠한 명칭을 불문하고 정치단체의 당칙·규약 기타 이에 상당하는 것에 의거한 금전상의 채무이행으로서 당해 정치단체의 구성원이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③이 법률에서 “기부”란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의 공여 또는 교부로서, 당비 또는 회비 기타 채무이행으로서 행해지는 것 이외의 것을 말한다.

④이 법률에서 “정치활동에 관한 기부”란 정치단체에 대하여 행해지는 기부 또는 공직의 후보자의 정치활동(선거운동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행해지는 기부를 말한다.

⑤이 법률에서 “지출”이란 금전·물품 기타의 재산상의 이익의 공여 또는 교부로서 제8조의 3 각호에 열거한 방법에 의한 운용을 위하여 하는 금전등의 공여 또는 교부이외의 것을 말한다.

제5조 ①이 법률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에 열거하는 단체는 정치단체로 본다.

1. 정치상의 주의 또는 시책을 연구하는 목적을 가지는 단체로서,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의원이 주재하는 것 또는 그의 주요 구성원이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의원인 것

2. 정치자금단체(정당을 위하여 자금상의 원조를 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제6조의 2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행해진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이 법률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법인 기타 단체가 부담하는 당비 또는 회비는 기부로 본다.

제 2 장 정치단체의 신고 등

제6조 (정치단체의 신고 등) ①정치단체는 그의 조직일 또는 제3조 제1항 각호 또는 전조 제1항 각호의 단체로 된 날(동항 제2호의 단체에 있어서는 차조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우편에 의하지 않는 문서로써 그의 취지, 당해 정치단체의 목적·명칭·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그의 활동을 주로 하는 구역, 당해 정치단체의 대표자·회계 책임자 및 회계책임자에게 사고가 있으며 또는 회계책임자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 그의 직무를 행할 자 각각 1인의 성명·주소·생년월일 및 선임년월일, 당해 정치단체가 정당 또는 정치자금단체인 경우에는 그 취지·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호에 상응하여 당해각호에 열거한 都·道·府·縣의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자치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都·道·府·縣의 구역에서 주로 그 활동을 행하는 정치단체(정당 또는 정치 단체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都·道·府·縣의 선거관리 위원회

2. 2이상의 都·道·府·縣의 구역에 걸치거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都·道·府·縣의 구역외의 지역에서 주로 그 활동을 행하는 정치단체 : 주된 사무소의 都·道·府·縣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자치대신

3. 정당 및 정치자금단체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都·道·府·縣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자치대신

②정치단체는 전항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강령·당칙·규약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문서(제7조제1항에서 “강령등”이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에 관련된 정치단체의 명칭은, 제7조의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정당 또는 정치자금단체의 명칭 및 이들과 유사한 명칭이외의 명칭이어야 한다.

④제1항의 문서양식은 자치성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정당이외의 정치단체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함으로써 정당으로 된 경우에 관해 이를 준용한다.

제6조의 2 ①정당은 각각 하나의 단체를 당해 정당의 정치자금단체가 될 단체로서 지정할 수 있다.

②정당은 전항의 지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취지를 자치대신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취소한 때에도 같다.

제6조의3 정치단체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주로 활동을 행하는 구역의 변동에 의하여, 제6조제1항각호의 구분에 따라, 동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아야 할 都·道·府·縣의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자치대신에게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변동일부 7일이내에, 당해 변동이 생긴 것에 의하여 동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아야 할 都·道·府·縣의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자치대신에 대하여, 동항 및 동조제2항의 예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①정치단체는 제6조제1항(동조 제5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 및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예에 의하기로 된 경우를 포함한다. 차조 및 제7조의 3에 있어서도 동일하다)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사항에 이동이 있는 때에는, 제6조제5항에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이동이 있는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이동에 관한 사항을 동조 제1항의 예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동조 제2항(동조 제4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정치단체가 제출한 강령 등의 내용에 이동이 있는 때에도 같다.

②제6조제3항의 규정은, 정치단체가 전항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관하여 준

용한다.

제7조의2 (정치단체명칭 등의 공표) ①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신고를 받은 都·道·府·縣의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자치대신은, 그 신고에 관계되는 정치단체의 명칭·대표자 및 회계책임자의 성명·당해 정치단체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당해 정치단체가 정당 또는 정치자금단체인 때에는 그 취지를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이들 사항에 관하여 전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도 같다.

②都·道·府·縣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전항의 고시를 한 때에는 즉시 당해 고시의 사본을 자치대신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정당이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게 됨으로써 정당이 아니게 된 때, 또는 정치자금단체에 관한 제6조의 2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자치대신은 지체없이 그 취지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의3 ①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都·道·府·縣의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자치대신은 그 신고에 관련한 정치단체의 대장을 조제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대장의 기재사항 기타 조제 및 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치성령으로 정한다.

제8조 (신고전의 기부 또는 지출의 금지) 정치단체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행해진 후가 아니면 정치활동(선거운동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어떠한 명의를 불문하고 기부를 받거나 또는 지출을 할 수 없다.

제8조의2 (정치자금파티개최) 정치자금파티(대가를 징수하여 행하는 모임으로서 당해 모임의 대가에 관련한 수입금액으로 부터 당해모임에 요하는 경비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당해모임을 개최한 자 또는 그 자이외의 자의 정치활동(선거운동을 포함. 이들 자가 정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활동)에 관해 지출하는 것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정치단체에 의하여 개최되어야 한다.

제8조의3 (정치단체 및 공직후보자의 정치자금의 운용) 정치단체는 그 가지는 금전등을, 공직후보자는 그 자가 정당으로부터 받은 정치활동에 관한 기부 기타 정치자금에 관련한 금전등을 다음에 열거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로의 예금 또는 저금, 우편저금
2.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정부보증증권(그 원본의 상환 및 이자의 지불에 관하여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을 말한다) 또는 은행, 농림중앙금고, 상공조합중앙금고 또는 전국을 지구로하는 신용금고연합회가 발행하는 채권(차조 제1항제3호의2에서 "국채증권등"이라 한다)의 취득

3. 신탁업무를 영위하는 은행 또는 신탁회사에로의 금전신탁으로 원본 보유의 계

약이 있는 것

제9조 (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 ①정치단체의 회계책임자(회계책임자에게 사고가 있거나 회계 책임자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할 자. 제50조를 제외하고, 이하 같다.) (회계장부의 기재에 관한 부분에 한하며, 회계책임자의 직무를 보좌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회계장부를 비치하여 이것에 당해 정치단체에 관한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모든 수입 및 이에 관련한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

가. 개인이 부담하는 당비 또는 회비에 관해서는 그 건수·금액 및 납입년월일

나. 기부(제22조의 6 제2항에 규정하는 기부를 제외한다. 이하 나 및 제12조제1항 제1호 나.에서 같다)에 관해서는 그 기부를 한 자의 성명·주소 및 직업(기부를 한 자가 단체인 경우에는 그의 명칭·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차조 제1항과 제2항 및 제12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같다.) 및 당해 기부의 금액(금전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에 관하여서는 시가로 견정한 금액. 이하 동조에서 같다) 및 연월일

다. 기부중에서 차조 제2항의 알선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알선을 한 자의 성명·주소 및 직업(알선을 한 자가 단체인 때에는 그의 명칭·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동항 및 제12조제1항제1호 다목에서 같다.)과 당해 알선에 관계되는 기부의 금액, 이를 모은 기간 및 이것이 당해 정치단체에 제공된 연월일

라. 제22조의6 제2항에 규정하는 기부에 관해서는 동일의 날에 동일의 장소에서 받은 기부마다 그 금액의 합계액 및 당해연월일 및 장소

마. 기관지지의 발행·기타의 사업에 의한 수입에 관해서는, 그 사업의 종류 및 당해 종류별의 금액 및 수입연월일

바. 기관지지의 발행 기타 사업에 의한 수입 중 정치자금파티의 대가에 관련한 수입에 관해서는 정치자금파티마다 그 명칭, 개최년월일, 개최장소 및 대가에 관련한 수입금액 및 대가의 지불을 한 자의 성명, 주소 및 직업(대가의 지불을 한 자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차조 제3항 및 제12조제1항제1호 사목에서 같다) 및 당해대가의 지불에 관련한 수입금액 및 연월일

사. 정치자금파티의 대가와 관련한 수입 중 차조 제3항의 알선에 관한 것에 관해서는 정치자금파티마다 당해대가의 알선을 한 자의 성명, 주소 및 직업(대가의 알선을 한 자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성명. 동항 및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도 같다) 및 당해대가의 알선에 관련한 수입금액, 이를 모은 기간 및 이것이 당해 정치단체에 제공된 연월일

아. 차입금에 관해서는 그 차입처, 그 차입처별의 금액 및 차입년월일

2. 모든 지출(당해정치단체를 위하여 그 대표자 또는 회계책임자와 의사를 통하여 행한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2조 및 제17조에서도 같다) 및 지출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지출을 받은 자가 단체인 때에는 그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차조 제1항 및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같다.) 및 그 지출의 목적·금액 및 연월일

3. 금전 등의 운용에 관한 다음에 열거한 사항

가. 예금(보통예금 및 당좌예금을 제외, 이하 이 호 및 제12조제1항제3호 마에서 같다) 또는 저금(보통저금을 제외, 이하 이 호 및 제12조 제1항 제3호 마에서 같다) 또는 우편저금(통상우편저금을 제외, 이하 이 호 및 제12조 제1항 제3호 마에서 같다)에 관해서는 이를 예입한 경우에는 당해예금 또는 저금, 우편저금의 종류, 예입된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의 명칭 및 소재지 및 예입금액과 연월일, 이를 인출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예금 또는 저금, 우편저금의 종류, 인출받은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의 명칭 및 소재지와 인출한 금액 및 연월일

나. 국채증권 등에 관해서는 이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국채증권 등의 종류 및 증권명, 취득처의 성명·명칭 및 주소·소재지·취득가액·연월일, 이를 양도하거나 상환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국채증권 등의 종류 및 증권명, 양도처의 성명·명칭·주소·소재지·양도가액·연월일 또는 상환을 받은 가액 및 연월일

다. 금전신탁에 관해서는 이를 신탁한 경우에는 당해금전신탁의 수탁자의 명칭 및 소재지, 신탁한 금전액 및 신탁의 설정연월일 및 기간, 당해금전신탁이 종료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명칭 및 소재지, 위탁자에게 귀속한 금전액 및 신탁의 종료연월일

②전항의 회계장부의 종류·양식 및 기재요령은 자치성령으로 정한다.

제10조 (회계책임자에 대한 명세서의 제출) ①정치단체의 대표자 또는 회계책임자와 의사를 통하여 당해 정치단체를 위하여 기부를 받거나 지출을 한 자는 기부를 받거나 지출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기부한 자의 성명 주소와 직업 및 당해기부의 금액과 연월일 또는 지출을 받은 자의 성명·주소 및 당해 지출의 목적·금액 및 연월일을 기재한 명세서를 회계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책임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치단체를 위하여 기부의 알선(특정 정치단체 또는 공직 후보자를 위하여 정치활동에 관한 기부를 모아 이를 당해 정치단체 또는 공직의 후보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자는, 그 알선을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기부를 한 자 및 당해 기부의 알선을 한자의 성명·주소 및 직업, 당해 기부금액 및 연월일과 당해 기부의 알선과 관련한 금액 및 이를 모은 기간을 기재한 명세서를 회계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치단체를 위하여 정치자금파티의 대가의 지불의 알선(특정정치단체를 위하여 정치자금파티의 대가로서 지불하는 금전 등을 모아 이를 당해 정치단체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자는 그 대가의 지불의 알선을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대가의 지불을 한 자 및 당해 대가의 지불의 알선을 한 자의 성명·주소 및 직업·당해 지불된 대가 금액 및 연월일과 당해 대가의 지불의 알선과 관련한 금액 및 이를 모은 기관을 기재한 명세서를 회계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회계책임자 등이 지출을 한 경우의 절차) ①정치단체의 회계책임자 또는 정치단체의 대표자 또는 회계책임자와 의사를 통하여 당해 정치단체를 위하여 지출을 한 자는, 1건 5만원 이상의 모든 지출에 관하여 당해 지출의 목적·금액 및 연월일을 기재한 영수증 기타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이하 "영수증등"이라 한다)을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구비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정치단체의 대표자 또는 회계책임자와 의사를 통하여 당해 정치단체를 위하여 1건 5만원 이상의 지출을 한 자는, 영수증 등을 바로 회계책임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 (보고서의 제출) ①정치단체의 회계책임자(보고서의 기재에 관련된 부분에 한하며, 회계책임자의 보조자를 포함한다.)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당해 정치단체에 관련한 당해 년도에 있어서의 수입·지출 기타 사항에서 다음에 열거한 것(이들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을 기재한 보고서를 그날의 다음날부터 3월 이내(그 사이에 중의원의원의 총선거 또는 참의원의원의 통상선거의 공시일로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4월 이내)에 제6조 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호에 열거한 都·道·府·縣의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자치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모든 수입에 관하여 그 총액 및 자치성령으로 정하는 항목별의 금액 및 다음에 열거한 사항

가. 개인이 부담하는 당비 또는 회비에 관해서는 그 금액 및 이를 납입한 자의 수

나. 동일한 자로부터의 기부로서, 그 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5만원을 초과하는 것에 관해서는 그 기부를 한 자의 성명·주소 및 직업, 당해 기부의 금액 및 연월일

다. 동일한 자에 의하여 알선 기부로서, 그 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5만원을 초과하는 것에 관하여는, 그 알선을 한 자의 성명·주소·직업 및 당해 알선에 관한 기부금액, 이를 모은 기간 및 이것이 당해 정치단체에 제공된 연월일

라. 제22조의 6 제2항에 규정하는 기부에 관해서는 동일한 날에 동일한 장소에

서 받은 기부마다 그 금액의 합계액 및 당해 연월일과 장소

마. 기관지지의 발행 기타 사업에 의한 수입에 관해서는 그 사업의 종류 및 당해 종류마다의 금액

바. 기관지지의 발행 기타 사업에 의한 수입 중 특정 파티(정치자금파티 가운데 당해 정치자금파티의 대가와 관련한 수입금액이 천만엔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 2에서도 같다) 또는 특정 파티라고 인식되는 정치자금파티의 대가와 관련한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파티별로 그 명칭, 개최연월일, 개최장소 및 대가에 관련한 수입금액 및 대가의 지불을 한 자의 수

사. 하나의 정치자금파티의 대가와 관련한 수입(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수입이 있는 해의 전년이전의 수입을 포함) 중 동일한 자로 부터의 정치자금파티의 대가의 지불로서 그 금액의 합계액이 20만엔을 초과하는 것에 관해서는 그 해에 있어서 대가의 지불에 관하여 당해대가의 지불을 한 자의 성명, 주소 및 직업과 당해대가지불과 관련한 수입금액 및 연월일

아. 하나의 정치자금파티의 대가와 관련한 수입(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수입이 있는 해의 전년이전의 수입의 포함) 중 동일한 자에 의하여 대가의지의 알선에 관하여 그 금액의 합계액이 20만엔을 초과하는 금액에 관해서는 그 해에 있어서 대가의 지불의 알선에 관하여 당해대가의 지불의 알선을 한 자의 성명, 주소 및 직업과 당해대가의 지불의 알선과 관련한 수입금액, 모은 기간 및 이것이 당해정치단체에 제공된 연월일

자. 차입금에 관해서는 차입처 및 당해차입처별의 금액

차. 기타 수입(기부 및 나, 마 및 자의 수입이외의 수입으로 1건당 금액(수회에 걸쳐서 행해진 경우에는 그 합계금액)이 10만엔이상의 것에 한한다)에 관해서는 그 기인이 된 사실 및 그 금액과 연월일

2. 모든 지출에 관해서는 그 총액 및 자치성령으로 정한 항목별금액 및 인건비, 광열수비 기타 자치성령으로 정하는 경비이외의 경비의 지출(1건당 금액(수회에 걸쳐서 행해진 경우에는 그 합계금액)이 5만엔 이상의 것에 한한다)에 관해서는 그의 지출을 받은 자의 성명·주소 및 당해 지출의 목적·금액 및 연월일

3. 12월 31일에 가지는 자산등(다음에 열거하는 자산 및 차입금을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7조 제1항에서도 같다)에 관하여 당해자산등의 구분에 상응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

가. 토지 : 소재지 및 면적과 취득가액 및 연월일

나. 건물 : 소재지 및 면적과 취득가액 및 연월일

다.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또는 토지의 임차권 : 당해권리와 관련한 토지의 소재 및 면적과 당해권리의 취득가액 및 연월일

- 라. 취득가액이 100만엔을 초과하는 동산 : 품목 및 수량과 취득가액 및 연월일
- 마. 예금 또는 저금, 우편저금 : 예금 또는 저금, 우편저금액의 잔고
- 바. 금전신탁 : 신탁하고 있는 금전액 및 신탁설정연월일
- 사. 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유가증권 : 종류, 증권명 및 수량과 취득가액 및 연월일

- 아. 출자에 의한 권리 : 출자처 및 당해출자처별의 금액과 연월일
- 자. 대부처별의 잔고가 100만엔을 초과하는 대부금 : 대부처 및 대부잔고
- 차. 지불된 금액이 100만엔을 초과하는 권리금 : 지불처 및 당해지불된 대부금액 및 연월일
- 카. 취득가액이 100만엔을 초과하는 시설이용에 관한 권리 : 종류 및 대상이 되는 시설명칭과 취득가액 및 연월일

- 타. 차입처별의 잔고가 100만엔을 초과하는 차입금 : 차입처 및 차입잔고
- ②정치단체의 회계책임자는 전항의 보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동항 제2호에 규정하는 경비의 지출에 관하여 자치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수증 등의 사본(영수증 등을 받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취지 및 당해 지출의 목적·금액 및 연월일을 기재한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정치단체의 회계책임자(회계책임자의 직무를 보좌하는 자를 포함한다. 제19조의4 및 제19조의 5에서 같다.)는 제1항 제1호 바목 내지 아목의 특정파티 또는 정치자금파티의 대가와 관련한 수입 중 동항의 규정에 의해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수입이 있는 해의 전년이전에 수수된 것이 있는 경우에 당해특정파티 또는 정치자금파티에 관련한 사항에 관하여 동항의 규정에 의해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수입이 있는 해의 전년이전에 수수된 것에 관하여 동호 바목 내지 아목에 열거한 사항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보고서의 양식·기재요령은 자치성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전조 제1항의 규정은 정치단체의 회계책임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해야 할 기부이외의 기부에 관하여 동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해야 할 기부에 준하여 기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정치자금파티의 대가와 관련한 수입에 관해서도 같다.

제14조 (감사의견서의 첨부) ①정당 또는 정치자금단체의 회계책임자는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정당 또는 정치자금단체의 당칙·규약 기타 이에 상당하는 것에 의거하여 설치된 회계감사를 행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보고서에 관한 회계장부·명세서(제10조에 규정되어 있는 명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영수서등에 관한 감사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당해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서면의 양식은 자치성령으로 한다.

제15조 (회계책임자의 사무의 인계) ①정치단체의 회계책임자의 경질이 있는 경우에는 전임자는 퇴직일부터 15일 이내에 그가 담임하는 사무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전임자가 인계하거나 후임자가 인계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회계책임자의 직무를 행하는 자가 인계하거나 인계를 받아야 한다. 회계책임자의 직무를 행하는 자가 사무의 인계를 받은 후에, 후임자에 인계할 수 있게 된 때에는 바로 인계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계를 하는 경우에는 인계를 하는 자가 인계서를 작성하여 인수의 취지·인계의 연월일을 기재하며, 인계를 하는 자 및 인계를 받는 자가 함께 서명·날인하며, 현금과 장부 기타의 서류와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제16조 (회계장부등의 보존) 정치단체의 회계책임자(정치단체가 차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정치단체의 회계책임자였던 자)는 회계장부·명세서 및 영수증 등을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것에 관계되는 보고서의 요지가 공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제17조 (해산의 신고등) ①정치단체가 해산하거나 목적의 변경 기타에 의하여 정치단체가 아닌 것이 된 때에는, 그 대표자 및 회계책임자였던 자는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취지·연월일과 함께 제12조 제1항의 규정의 예에 따라, 그날 현재로서 수입 및 지출과 자산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치단체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정치단체가 당해 제출기한까지 당해 제출기한이 속하는 해의 전년에 있어서 동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할 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정치단체는 당해 제출기한이 경과한 날 이후에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③정치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전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6조 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都·道·府·縣의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자치대신은 지체없이 그 뜻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제12조 제2항 부터 제4항까지,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은 제1항의 보고서에 관하여, 제7조의 2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都·道·府·縣의 선거관리위원회가 고시한 때에 각각 준용한다.

제18조 (정치단체의 지부) 정치단체(정치자금단체를 제외함)가 지부를 가지는 경우에는, 당해 정치단체의 본부 및 지부는 각각 하나의 정치단체로 보아 이 장의 규정(이에 관한 벌칙을 포함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6조 제5항, 제6조의 2, 제7조의 2 제3항 및 제14조(전조 제4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차조의 규정은 당해 정치단체의 지부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기타 이 장의 규정

의 당해 정치단체의 본부 및 지부에 대한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기술적 이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 2(정치단체이외의 자가 특정파티를 개최하는 경우의 특례) ①정치단체이외의 자가 특정파티라고 인식되는 정치자금파티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당해정치단체이외의 자는 당해정치자금파티에 관해서는 당해정치자금파티를 개최하려는 때로부터 정치단체로 보며, 이 장(제6조 제5항, 제6조의 2, 제7조의 2, 제12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 제14조, 제17조 제3항 및 전조의 규정을 제외)의 규정(이와 관련한 벌칙을 포함한다)을 적용한다. 정치단체이외의 자가 개최하는 정치자금파티가 특정파티가 된 경우에도 같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6조제1항중 “그 조직일 또는 제3조제1항 각호 또는 전조제1항 각호의 단체로 된 때(동항 제2호의 단체에 있어서는 차조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해 신고가 행해진 날)”란 “제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정치단체이외의 자가 정치단체로 간주된 날”, “주로 그 활동을 행하는 구역”이란 “개최하는 정치자금파티의 개최장소”, 동항제1호 및 제2호중 “주로 그 활동을 행하는”이란 “정치자금파티를 개최하는”, 동조제2항중 “강령, 당칙, 규약”이란 “당해정치자금파티의 명칭, 개최년월일 및 개최장소와 당해정치자금파티의 대가와 관련한 수입의 예정금액 및 당해대가와 관련한 수입금액으로 부터 당해정치자금파티에 요하는 경비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출하는 자의 성명(그 자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을 기재한 문서”, “강령등”이란 “계획서등”, 동조제4항중 “제1항”이란 “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중 “주로 활동을 행하는 구역”이란 “정치자금파티의 개최장소”, 제7조제1항중 “강령등”이란 “개최계획서등”, 제8조중 “정치활동(선거운동을 포함)”이란 “정치자금파티의 개최”, “기부”란 “당해정치자금파티와 관련한 대가의 지불”, 제8조의3중 “그 가지는”이란 “정치자금파티의 개최에 관하여 행해진 수입에 관련한 금전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제9조제1항중 “정치단체와 관련하는”이란 “정치단체가 개최하는 정치자금파티와 관련하는”, 제12조제1항중 “의 회계책임자”란 “의 대표자 및 회계책임자”, “매년 12월 31일현재로서 당해정치단체에 관련한 그 해 수입, 지출 기타 사항으로 다음에 열거하는 것”이란 “당해정치단체가 개최한 정치자금파티와 관련한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 “그 날의 익일부터 3월이내(그 사이에 중의원의원의 총선거 또는 참의원의원의 통상선거의 공시일로 부터 선거기일까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4월이내)”란 “당해정치자금파티가 종료한 날로부터 3월이내”, 동항제1호중 “모든 수입”이란 “모든 수입(예정되는 수입을 포함. 이하 이호에서 같다)”, 동호 나 및 다 중 “년간 100만엔”이란 “20만엔”, 동호 사목 및 아목 중 “그 해에 있어서 대가”란 “당해대가”, 동항 제2호중 “모든 지출”이란 “모든 지출(예정되는 지출을 포함.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동조 제2항중 “지출에 관하여”란 “지출

(예정되는 지출을 제외한다)에 관하여”, 제16조중 “차조제1항”이란 “제18조의2 제4항”, 제17조제1항중 “정치단체가 해산하거나 목적의 변경 기타 정치단체가 아니게 된 경우”란 “제1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정치단체로 간주되는 정치단체이외의 자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한 정치단체파티의 개최를 중지한 때”, “회계책임자였던 자”란 “회계책임자(보고서의 기재에 관련된 부분에 한하며, 회계책임자의 직무를 보좌하는 자를 포함한다.)”, 동조제2항중 “제12조제1항”이란 “제12조제1항 또는 전항”,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당해정치단체가 당해제출기한까지 당해제출기한에 속하는 해의 전년에 동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23조중 “기부”란 “대가의 지불”로 하며 기타 이 장의 규정의 당해정치단체이외의 자에 관한 적용에 관해 필요한 기술적 이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③제1조후단의 규정에 의해 정치단체로 간주되는 정치단체이외의 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해 이해되어 적용되는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간내에 동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기까지의 사이에 동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제1조의 규정에 의해 정치단체로 간주된 정치단체이외의 자에 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이해되어 적용되는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이해되어 적용되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된 정치자금파티의 개최가 중지된 경우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이해되어 적용되는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당해정치단체로 간주되는 정치단체이외의 자는 정치단체가 아닌 것으로 본다.

제 3 장 공직의 후보자에 관련된 자금관리단체의 신고 등

제19조 (자금관리단체의 신고등) ①공직의 후보자는, 그가 대표자인 제3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치단체중에서 1의 정치단체를 그를 위하여 정치자금을 거출받을 정치단체로서 지정할 수 있다.

②공직의 후보자는 전항의 지정을 한 때에는, 그 지정일부터 7일 이내에 문서로써 그 취지, 그 자와 관계되는 공직의 종류 및 그 지정을 한 정치단체(이하 “자금관리단체”라 한다)의 명칭·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을 당해 정치단체의 제6조 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호에 열거하는 都·道·府·縣의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자치대신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자금관리단체의 신고”라고 한다)를 한 자는 제1항의 지정을 취소한 때 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

는, 그 취소일 또는 변동일부터 7일내에 동항의 규정의 예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한 취지 및 변동된 사항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양식은 자치성명으로 정한다.

제19조의 2 (자금관리단체의 명칭등의 공표) ①자금관리단체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자금관리단체의 신고를 받은 都·道·府·縣의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자치대신은 그 자금관리단체의 신고를 한 자의 성명·그 자와 관계되는 공직의 종류·자금관리단체의 명칭·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을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이들 사항에 관하여 전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도 같다.

②都·道·府·縣의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자치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를 한 때에는 곧 당해 고시의 사본을, 都·道·府·縣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있어서는 자치대신 및 정령으로 정한 都·道·府·縣의 선거관리위원회, 자치대신에 있어서는 정령으로 정한 都·道·府·縣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9조의 3 (자금관리단체에 대한 기부와 관련한 통지) ①자금관리단체의 신고를 한 공직의 후보자는, 그가 공직의 후보자인 기간에 정당으로부터 받은 정치활동에 관한 기부에 관련되는 금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전 등을 당해 자금관리단체로 하여금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자금관리단체에 기부한 때에는, 문서로써 그 취지를 당해 자금관리단체의 회계책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자금관리단체의 회계책임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통지에 관계되는 문서를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통지에 관계되는 동항에 규정된 보고서의 요지가 공표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하는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제19조의 4 (자금관리단체의 회계장부의 기재) 자금관리단체의 회계책임자는, 특정기부(자금관리단체의 신고를 한 공직의 후보자가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금관리단체에 대하여 기부를 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정치단체의 회계책임자로서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장부의 기재를 하는 경우에는,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된 사항을 아울러 기재하여야 한다.

제19조의 5 (자금관리단체의 보고서의 기재) 자금관리단체(제12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에 기재해야 할 수입 및 지출이 있는 연도에 자금관리단체였던 것을 포함한다)의 회계책임자는 특정기부에 관하여 정치단체의 회계책임자로서 제12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 기재를 하는 경우에 그 총액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19조의 6 (기부를 가지는 정치단체에 관련한 이 장 규정의 적용) 제19조제1항에 규정된 정치단체가 기부를 가지는 경우에는, 당해 정치단체의 본부 및 지부는 각각 하나의 정치단체로 보며, 이 장의 규정(이에 관계되는 벌칙을 포함한다)을 적용한

다. 이 경우 이 장의 규정의 당해 정치단체의 본부 내지 지부에 대한 적용에 관해 필요한 기술적 이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 4 장 보고서의 공개

제20조 (수지보고서의 요지공표) ①제12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자치대신 또는 都·道·府·縣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치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는, 자치대신에 있어서는 관보에 의하여, 都·道·府·縣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있어서는 都·道·府·縣의 공보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③都·道·府·縣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의 보고서 요지를 공표한 때에는 즉시 그 사본을 자치대신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0조의2 (수지보고서등의 보존 및 열람) ①전조제1항에 규정된 보고서 및 제14조제1항(제1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서면은 이를 수리한 자치대신 또는 都·道·府·縣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의 요지를 공표한 날부터 3년을 경과하는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②누구든지 전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의 요지가 공표된 날부터 3년간, 자치대신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치성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都·道·府·縣의 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보고서 또는 서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제 5 장 기부에 관한 제한

제21조 (회사등의 기부의 제한) ①회사 노동조합 [노동조합법(昭和 24년 법률 제174호) 제2조에 규정하는 노동조합을 말한다. 제3항 및 제21조의3제1항, 제2항에서 같다.] 직원단체 [국가공무원법(昭和 22년 법률 제120호) 제108조의2 또는 지방공무원법(昭和 25년 법률 제261호) 제52조에 규정하는 직원단체를 말한다. 제3항 및 제21조의3제1항, 제2항에서 같다.] 기타 단체는 정당 및 정치자금단체이외의 자에 대하여 정치활동에 관한 기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전항의 규정은 정치단체가 하는 기부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누구든지 회사 노동조합 직원단체 기타 단체(정치단체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정치활동에 관한 기부(정당 및 정치자금단체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를 할 것을 권유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1항 및 전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정당의 지부로서 1이상의 市町村(특별구를 포함한다.)의 구역 [지방자치법(昭和 22년 법률 제67호) 제252조의19 제1항의 지정도시에 있어서는 그 구의 구역] 또는 공직선거법 제12조에 규정하는 선거구의 구역을 단위로 하여 설치된 지부 이외의 것은, 정당 및 정치자금단체이외의 각각 1의 정치단체로 본다.

제21조의2 ①누구든지, 공직의 후보자의 정치활동(선거운동을 제외한다.)에 관하여 기부(금전등에 의한 것에 한하고, 정치단체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전항의 규정은 정당이 하는 기부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의3 (기부의 총액의 제한) ①정당 및 정치자금단체에 대하여 행하여진 정치활동에 관한 기부는 각년중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규정된 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개인이 행하는 기부 : 2천만엔
2. 회사가 하는 기부 : 다음 표에 열거하는 회사의 자본 또는 출자금액의 구분에 따라 각각 동표에 열거한 금액
<표생략>
3. 노동조합 또는 직원단체가 하는 기부
4. 전 2호의 단체이외의 단체(정치단체를 제외한다.)가 하는 기부
<표생략>

②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이 백억엔 이상의 회사, 조합원등의 수가 15만인 이상의 노동조합, 직원단체 또는 전년의 연간경비액이 8천만엔 이상의 전항제4호의 단체에 관하여는 동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액은 3천만엔으로, 각각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이 50억엔을 초과하는 금액 50억엔마다, 조합원등의 수가 10만인을 초과하는 수 5만인마다, 또는 전년에 있어서의 년간경비의 액이 6천만엔을 넘는 금액 24만엔마다 5백만엔(그 합계액이 3천만엔에 달한 이후에는 3천만엔)을 가산한 금액(그 가산금액의 합계액이 7천만엔을 넘는 경우에는 7천만엔을 가산한 금액)으로서 동항을 적용한다.

③개인이 하는 정치활동에 관한 기부로서 정당 및 정치자금단체이외의 자에 대해서 하는 것은 각년중에 있어서 1,000만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1항 및 전항의 규정은 특정기부 및 유증을 통해 하는 기부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 동항제3호에 규정하는 조합원 등의 수 및 동항제4호에 규정하는 연간경비액의 계산, 기타 동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22조 (동일한 자에 대한 기부의 제한) ①개인이 하는 정치활동에 관한 기부는 각 년중에 있어서, 정당 및 정치자금단체 이외의 동일한 자에 대해서는 150만엔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전항의 규정은 자금관리단체가 신고한 공직의 후보자가 당해 자금관리단체에 대하여 행한 기부 및 유증에 의하여 하는 기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삭제

제22조의2 (양적 제한등에 위반하는 기부의 수량의 금지) 누구든지, 제21조 제1항, 제21조의2 제1항, 제21조의3제1항, 제2항, 제3항 또는 전조제1항의 어느 1에 위반해서 행하는 기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22조의3 (기부의 질적제한) ①국가로부터 보조금 부담금 이자補給金 기타의 급부금 (시험연구, 조사 또는 재해복구에 관계되는 것, 기타 성질상 이익을 수반하지 않는 것을 제외한다. 제4항에 있어서도 같다)의 교부결정(이자보급금에 관계되는 계약의 승락의 결정을 포함한다. 제4항에 있어서도 같다)을 받은 회사·기타 법인은, 당해 급부금의 교부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한 날(당해 급부금의 교부결정의 전부의 취소가 있는 때에는, 당해 취소의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사이에 정치활동에 관한 기부를 해서는 안된다.

②국가로부터 자본금·기본금·기타 이에 준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의 출자 또는 거출을 받고 있는 회사 기타 법인은 정치활동에 관한 기부를 하여서는 안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이들 규정에 해당하는 회사·기타의 법인이 지방공공단체의 의회 의원 또는 장에 관계되는 공직의 후보자, 이들에 관련된 자금관리단체 또는 이들에 관계되는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 나 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치단체에 대하여 하는 정치활동에 관한 기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회사 기타 법인이 당해 각호의 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원 또는 장에 관계되는 공직의 후보자, 이들에 관련된 자금관리단체 또는 이들을 추천·지지하며, 또는 이들에 반대하는 정치단체에 대하여 하는 정치활동에 관한 기부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공공단체로부터 보조금·부담금·이자보급금·기타의 교부의 결정을 받은 회사 기타 법인

2. 지방공공단체로부터 자본금·기본금·기타 이에 준하는 전부 또는 일부의 출자 또는 거출을 받고 있는 회사 기타 법인

⑤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이들 규정을 제4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임을 알면서 그 자에 대하여 정치활동에 관한 기부를 할 것을 권유하거나 요구해서는 안된다.

⑥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이들 규정을 제4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해지는 기부임을 알면서 이를 받아서는 안된다.

제22조의4 ①3차사업년도 이상에 걸쳐 계속하여 정령으로 정한 결원이 있는 회사는 당해 결원의 충원시까지 정치활동에 관한 기부를 해서는 안된다.

②누구든지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해지는 기부임을 알면서 이를 받아서는 안된다.

제22조의5 누구든지 외국인·외국법인 또는 그의 주된 구성원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단체·기타의 조직으로부터 정치활동에 관한 기부를 받아서는 안된다.

제22조의 6 ①누구든지 본인명의이외의 명의 또는 익명으로 정치활동에 관한 기부를 해서는 안된다.

②전항 및 제4항의 규정(익명기부의 금지와 관련한 부분에 한한다)은 가두 또는 일 반에게 공개되는 연설회 또는 집회장에서 정당 또는 정치자금단체에 대해 하는 기부로서 그 금액이 1000엔이하의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③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해지는 기부를 받아서는 안된다.

③제1항의 기부에 관계되는 금전 또는 물품의 제공이 있는 때에는 당해 금전 또는 물품의 소유권은 국고에 귀속하며, 그와 보유자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속히 국고에 귀속시키는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의7 (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 ①누구든지 정치활동에 관한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업무·고용·기타 관계 또는 조직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위협하는 등 부당하게 그 의사를 구속하는 방법으로 당해 알선에 관계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②정치활동에 관한 기부의 알선을 하는 자는 어떠한 방법에 의하던 기부를 하려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금·공임·하청대금·기타 성질상 이와 유사한 것으로부터의 공제의 방법으로 당해 기부를 모아서는 안된다.

제22조의 8(정치자금파티의 대가지불에 관한 제한) ①정치자금파티를 개최하는 자는 하나의 정치자금파티에 관해 동일인으로 부터 150만엔을 초과하여 당해 정치자금파티의 대가지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②정치자금파티를 개최하는 자는 당해정치자금파티의 대가지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대가의 지불을 하는 자에 대해 당해대가의 지불이 정치자금파티의 대가지불인 취지를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③누구든지 정치자금파티의 대가지불을 하는 경우에 하나의 정치자금파티에 관해 150만엔을 초과하여 당해정치자금파티의 대가지불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2조의6제1항 및 제3항과 전조의 규정은 정치자금파티의 대가지불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22조의6제1항중 “정치활동에 관한 기부”가 되며, 또한 동조 제3항중 “기부”는 “정치자금파티의 대가지불”로, 전조제1항중 “정치활동에 관한 기

부와 관련한 알선”은 “정치자금파티의 대가지불알선”으로, “당해기부의 알선”은 “당해대가의 지불알선”으로, 동조제2항중 “정치활동에 관한 기부와 관련한 알선”은 “정치자금파티의 대가지불알선”으로, “기부”란 “대가의 지불”로, “당해기부”란 “당해대가로서 지불하는 금전등”으로 한다.

⑤제2항에 규정하는 고지와 관련한 서면에 기재하여야 할 문언에 관해서는 자치성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9(정치활동에 관한 기부 또는 정치자금파티의 대가지불에 대한 공무원의 관여 등 금지)

①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공무원으로서 다음에 열거하는 자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정치활동에 관한 기부를 요구하거나 받거나 자기이외의 자가 하는 정치활동에 관한 기부에 관여하거나 정치자금파티에 대가를 지불하여 참가할 것을 요구하거나 정치자금파티의 대가의 지불을 받거나 자기이외의 자가하는 이들 행위에 관여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일반직에 속하는 직원(고문, 참여 기타 비상근직원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

2. 법원직원임시조치법에 규정하는 법관 및 법관비서관이외의 법원직원(비상근직원으로서 최고재판소의 규칙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

3. 국회직원법 제1조에 규정하는 국회직원(동법 제24조의 2에 규정하는 국회직원 및 양의원의 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비상근직원을 제외)

4. 자위대법 제2조제5항에 규정하는 대원(동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소 집명령에 의해 소집되고 있는 자 이외의 예비자위관을 제외)

5. 지방공무원법 제3조제2항에 규정하는 일반직에 속하는 직원(지방공영기업노동관계법 제3조제2항에 규정하는 직원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자 및 동법부칙 제5항에 규정하는 단순노무에 고용되는 직원을 제외)

6. 지방공영기업법 제7조에 규정하는 관리자

②누구든지 전항 각호에 열거한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공무원에 대해 동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공무원이 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제 6 장 벌 칙

제23조 정치단체가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부를 받거나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정치단체의 임직원 또는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100만엔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회사, 정치단체 기타 단체(이하 이장에서 “단체”라 한다)에 관해서는 그 임직원 또는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만엔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계장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동조 또는 제19조의4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9조제1항의 회계장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기재를 한 자

2.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명세서의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이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기재를 하지않거나 허위기재를 한 자

3.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수증을 보관 또는 송부하지 않거나 허위기재한 자

4.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계장부, 명세서 또는 영수증을 보존하지 않은 자

5.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보존하여야 할 회계장부, 명세서 또는 영수증등에 허위기재한 자

6.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를 하지 않은 자

7. 제31조의 규정에 의해 요구된 설명을 거부하거나 허위설명을 하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동조의 보고서등의 정정을 거부하거나 이들에 허위정정한 자

제25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100만엔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서 또는 이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제17조 또는 제19조의5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12조 제1항, 제17조제1항의 보고서 또는 이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1항 제17조제1항의 보고서 또는 이와 함께 제출하여야 할 서면에 허위의 기재를 한 자

② 전항의 경우(제17조의 규정과 관련한 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 정치단체의 대표자가 당해정치단체의 회계책임자의 선임 및 감독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50만엔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단체에 있어서는 그 임직원 또는 구성원으로서 당해위반행위를 한 자)는 1년이하의 금고 또는 50만엔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제1항, 제21조의2 제1항, 제21조의3 제1항 제2항 제3항 또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부한 자

2.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부할 것을 권유하거나 요구한 자(1994. 2. 4 신설)

3. 제22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부를 받은 자 제26조의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는 3년이하의 금고 또는 50만엔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부를 한 회사 기타 법인의 임직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
2. 제22조의3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부를 할 것을 권유하거나 요구한 자(단체에 있어서는 그 임직원 또는 구성원으로서 당해위반행위를 한 자)
3. 제22조의3제6항, 제22조의5 또는 제22조의6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부를 받은 자(단체에 있어서는 그 임직원 또는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
4. 제22조의6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부를 한 자(단체에 있어서는 그 직원 또는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
5. 제22조의8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22조의6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가의 지불을 한 자(단체에 있어서는 그 임직원 또는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
6. 제22조의8제4항에 준용하는 제22조의6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가의 지불을 받은 자(단체에 있어서는 그 임직원 또는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

제26조의3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엔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부를 한자의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
2. 제22조의4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부를 받은 자(단체에 있어서는 그 임직원 또는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
3. 제22조의8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가의 지불을 받은 자(단체에 있어서는 그 임직원 또는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
4. 제22조의8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지를 하지 않은 자(단체에 있어서는 그 임직원 또는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
5. 제22조의8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가의 지불을 한 자(단체에 있어서는 그 임직원 또는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

제26조의4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금고 또는 30만엔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의7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부알선에 관련한 행위를 한 자(단체에 있어서는 그 임직원 또는 구성원으로서 당해위반행위를 한 자)
2. 제22조의8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22조의 7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가의 지불알선에 관련한 행위를 한 자(단체에 있어서는 그 임직원 또는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
3. 제22조의9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치활동에 관한 기부를 요구하거나 받거나 또는 자기이외의 자가 하는 정치활동에 관한 기부에 관여하거나 정치자금파티에 대가를 지불하여 참가할 것을 요구하거나 정치자금파티의 대가의 지불을

받거나 자기이외의 자가 하는 이들 행위에 관여한 자

4. 제22조의9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조제1항 각호에 열거한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공무원에 대해 동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공무원이 할 수 없는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한 자(단체에 있어서는 그 임직원 또는 구성원으로서 당해위반행위를 한 자)

제26조의5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단체에 있어서는 그 임직원 또는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의7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부를 모은 자

2. 제22조의8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22조의7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가로서 지불되는 금전 등을 모은 자

제27조 ①제23조, 제24조,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6조의2 및 제26조의4의 죄를 범한 자는 정황에 따라 금고 및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중대한 과실에 의해 제24조 및 제25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도 이를 처벌한다. 다만 법원은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28조 ①제23조 내지 제26조의5 및 전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벌금의 형에 처하여진 자는, 그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5년간(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관하여는, 그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될 때까지의 기간), 공직선거법에 규정하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②제23조, 제24조,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6조의2, 제26조의4 및 전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금고의 형에 처하여진 자는, 그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형의 집행을 종료할 때까지의 기간 또는 형의 시효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형의 집행을 면제받을 때까지의 기간 및 그 후 5년간 또는 그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될 때까지의 기간, 공직선거법에 규정하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③재판소는, 정상에 의하여, 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제1항에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 동항의 5년간 또는 형의 집행유예기간중의 기간에 관하여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중 이를 적용할 기간을 단축한다는 취지를 선고하거나, 전항에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 동항의 5년간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집행유예중의 기간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할 기간을 단축하는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④공직선거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은, 전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3항중 “제1항 또는 제252조”란 “정치자금규정법 제28조”로

한다.

제28조의2 제23조, 제26조제3호, 제26조의3제3호, 제26조의3제2호 및 제26조의4제3호의 규정의 위반행위에 의해 받은 기부와 관련한 재산상의 이익(제22조의 6 제4항에 규정하는 기부와 관련한 금전 또는 물품을 제외)은 몰수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28조의 3 ①단체의 임직원 또는 구성원은 제23조 및 제26조 내지 제26조의5의 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정치단체에 대해서 당해각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해 제23조의 위반행위에 관한 단체에 벌금형을 과하는 경우에 시효기간은 동조의 죄에 관한 시효기간으로 한다.

③법인이 아닌 단체에 관해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이 있는 경우 그 대표자가 그 소송행위에 관해 그 정치단체를 대표하는 외에 법인을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는 경우의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7 장 보 칙

제29조 제12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자는 이들 각각 진실의 기재가 행하여 졌음을 서약하는 취지의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0조 이 법률의 집행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치대신은 都·道·府·縣의 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감독할 수 있다.

제31조(감독상의 조치) 자치대신 또는 都·道·府·縣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신고서류, 보고서 또는 이에 첨부 또는 병행제출하여야 할 서면(이하 이 조에서 “보고서 등”이라 한다)에 형식상의 불비가 있거나 기재되어야 할 사항의 기재가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보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거나 이유를 제시하여 당해보고서 등의 정정을 명할 수 있다.

제32조(정치자금의 규정에 관한 사무와 관련한 국고부담) 다음 각호의 경비는 국고부담으로 한다.

1.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표에 관한 비용
2. 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보존에 요하는 비용
3.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열람시설을 위하여 요하는 비용

제32조의 2(과세특례) 개인이 정치활동에 관한 기부를 한 경우에 당해기부에 관한 이 법률 또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보고가 행해진 경우에는 조세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개인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에 특별조치를 강구한다.

제33조(정령에의 위임) 이 법률의 실시를 위한 절차 기타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기일) 이 법률은 공직선거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平成 6년 법률 제2호)의 시행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의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2항의 개정규정 동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동조에 1항을 추가하는 개정규정 제6조의 개정규정 제7조의 개정규정(“을 포함한다.”를 “및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예에 의하는 것으로 된 경우를 포함한다.”로 개정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제7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 제18조의2의 개정규정 [“제6조 제4항”을 “제6조제5항”으로 개정하는 부분 “동조제3항”을 “동조제4항”으로 개정하는 부분 및 {“전2항과”, 제7조}를 {“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중 “주로 활동을 행하는 구역”을 “정치자금파티의 개최장소”, 제7조 제1항}]으로 개정하는 부분(제6조의3에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에 한한다.] 및 차조와 부칙 제3조의 규정은, 동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당의 정의에 관한 경과조치) 전조 단서에 규정하는 규정의 시행일(차조에서 “일부시행일”이라 한다.)부터 공직선거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의한 개정후의 공직선거법(昭和 25년 법률 제100호)의 시행일 이후 처음으로 그 선거기일이 공시되는 중의원의원 총선거의 모든 당선인에 관하여 동법 제101조 제2항 또는 제10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행하여진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한하되, 이 법률에 의한 개정후의 정치자금규정법(이하 “신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동호중 “중의원의원 총선거에 있어서의 소선거구 선출의원의 선거 또는 비례대표 선출의원의 선거”란 “중의원의원 총선거”로 한다.

제3조 (정당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률에 의한 개정전의 정치자금규정법(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정치단체로서 동조 제2항의 정당이던 취지를 구법 제6조제1항(동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이하 이 조에서 “구정당”이라 한다.)중, 일부시행일에 있어서 신법 제3조제2항의 정당에 해당하는 것은, 일부시행일부터 7일 이내에, 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부시행일부터 당해 신고가 행하여질 때까지의 기간은, 동조에 의한 신고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구정당으로서 신법 제3조제2항의 정당에 해당하는 것이외의 정치단체는, 일부시행일에 있어서 신법 제7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아니게 된 취지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일부시행일에 있어서 현존하는 정치단체(구정당을 제외한다.)로서 신법 제3조제2

항의 정당에 해당하는 것은, 일부시행일부터 7일이내에, 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보고서의 제출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신법 제12조제1항제1호(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예에 의하기로 된 경우 및 신법 제1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조의 본래의 용어가 다른 용어로 의제되어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일(이하 "시행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해이후의 기간에 관련된 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보고서의 기재(신법 제19조의5의 규정에 의한 기재를 포함한다.) 및 제출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신법 제12조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은 기부중 기부의 알선에 관련된 것으로 시행일이후에 모집된 기부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신법 제12조제1항제1호 사목 및 아목의 규정은 정치자금파티의 대가의 지불중 대가의 지불의 알선에 관련된 것으로 시행일이후에 모집된 대가의 지불에 관하여 적용하고, 정치자금파티의 대가의 지불중 대가의 알선에 관련된 것으로 시행일전에 모집된 대가의 지불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5조 (특정기부에 관한 경과조치) 신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공직의 후보자가 구법 제19조의6 제1항의 보유금에 의하여 당해 신고에 관련된 자금관리 단체에 대하여 행하는 기부로서 시행일부터 1년을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행하여진 것은 신법 제19조의4에 규정하는 특정기부로 본다.

제6조 (특정공직의 후보자에 관련된 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 이전의 기간에 관련된 구법 제19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및 시행일전에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보고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일전에 행한 행위 및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예에 의하기로 된 구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와 구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기재와 제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시행일이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8조 (정령에의 위임) 부칙 제2조 내지 전조에 정한 것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조치는 정령으로 정한다.

제9조 (수정) 이 법률의 시행후 5년을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는, 정치자금의 개인에 의한 거출의 상황에 입각하고 정당재정의 상황등을 감안하여, 회사 노동조합 기타의 단체가 정당 및 정치자금단체에 대하여 행하는 기부의 방식에 관하여 수정을 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내지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 생략

政黨助成法¹⁾

< 목 차 >

- 제1장 총칙
- 제2장 정당의 신고
- 제3장 정당교부금의 산정 등
- 제4장 정당교부금의 용도의 보고
- 제5장 정당의 해산 등에 관한 조치
- 제6장 보고서 등의 공표
- 제7장 정당교부금의 반환 등
- 제8장 잡칙
- 제9장 벌칙
- 부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률은 의회제민주정치에 있어서의 정당의 기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가가 정당에 대하여 정당교부금에 의한 조성을 행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의 요건 정당의 신고 기타 정당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절차를 정함과 아울러 그 용도의 보고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에 의하여 정당의 정치활동의 건전한 발달의 촉진 및 그 공명과 공정의 확보를 도모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당의 정의) ①이 법률에서 "정당"이라 함은 정치단체 [政治資金規正法(1948년 법률 제194호)제3조제1항에 규정하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정치단체에 소속하는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의원을 5인이상 가진 것
2. 전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치단체에 소속하지 아니하는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

1) 1994년 2월 4일 제정(법률제5호).

의원을 가진 것으로서, 최근에 행하여진 중의원의원의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에서의 소선거구 선출의원의 선거 비례대표 선출의원의 선거 또는 참의원의원의 통상선거(이하 "통상선거"라 한다)에서의 비례대표 선출의원의 선거 선거구 선출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정치단체의 득표총수가 당해 선거의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3이상인 것

②전항각호의 규정은 다른 정당 [정치자금규정법 제6조제1항(동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란 내용의 신고를 한 것에 한한다.]에 소속하고 있는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의원이 소속하고 있는 정치단체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정당에 대한 당교부금의 교부등) ①국가는 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에 대하여 정당교부금을 교부한다.

②정당교부금은 의원수배당(정당에 소속하는 중의원의원 및 참의원의원의 수에 따라 교부되는 정당교부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득표수배당(총선거의 소선거구 선출의원의 선거와 비례대표 선출의원의 선거 및 통상선거의 비례대표 선출의원의 선거와 선거구 선출의원의 선거에서의 정당의 득표총수에 따라서 교부되는 정당교부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4조 (이 법률의 운용등) ①국가는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존중하고, 정당교부금을 교부함에 있어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에 관한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정당은 정당교부금이 국민으로부터 징수된 세금 기타 귀중한 재원으로부터 조달된 것이란 점을 특히 유의하고, 그 책임을 자각해서 국민의 신뢰에 반하지 아니하도록 이를 적절히 사용하여야 한다.

제2장 정당의 신고

제5조 (정당교부금의 교부를 받을 정당의 신고) ①정당교부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정당은 그 해 1월 1일(동일이 전년에 행하여진 총선거 또는 통상선거에 관련된 다음조제1항의 선거기준일전인 경우에는, 당해 선거기준일로 한다. 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에 있어서,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5일 이내에 자치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약칭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칭 및 그 약칭)
2. 주도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회계책임자 및 회계책임자에게 사고가 있거나 회계책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행할 자 각각 1인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및 선임년월일

4. 회계감사를 행할 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및 선임년월일
5. 소속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의원의 성명 주소, 중의원의 소선거구 선출의원이나 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의 비례대표 선출의원이나 선거구 선출의원별 및 당해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의원이 선출된 선거의 기일

6. 다음에 열거하는 득표총수

가. 최근에 행하여진 총선거(이하 이호 및 제8조제3항에서 "전회의 총선거"라 한다)의 소선거구 선출의원의 선거에 있어서의 당해 정당의 득표총수

나. 전회의 총선거의 비례대표 선출의원의 선거에 있어서의 당해 정당의 득표총수
 다. 최근에 행하여진 통상선거(이하 이호 및 제8조제3항에서 "전회의 통상선거"라 한다.) 및 당해 전회의 통상선거의 최근의 통상선거(이하 이호 및 제8조제3항에서 "전전회의 통상선거"라 한다.)의 비례대표 선출의원의 선거에 있어서의 당해 정당의 각각의 득표총수

라. 전회의 통상선거 및 전전회의 통상선거의 선거구 선출의원의 선거에 있어서의 당해 정당의 각각의 득표총수

7. 지부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부의 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 회계책임자와 회계책임자에 사고가 있거나 회계책임자가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행할 자 각각 1인의 성명과 주소

8. 기타 자치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정당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강령 기타 당해 정당의 목적 기본정책등을 기재한 문서
2. 당칙 규약 기타 당해 정당의 조직 관리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
3. 당해 정당에 소속하는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의원으로 그 성명 기타 전항제5호에 열거하는 사항이 기재된 것에 관한 당해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의원의 승낙서 및 동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당해 정당이외의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자의 성명 기타 동호에 열거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당해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의원이 맹세하는 취지의 선서서
4. 기타 자치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

③정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기준일후에 총선거 또는 통상선거가 행하여진 경우 및 정당이 해산하거나, 목적의 변경등에 의하여 정치단체가 아니게 되거나 제2조제1항각호의 어느 1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치단체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 변동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에, 그 변동에 관한 사항을 제1항의 규정의 예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제출한 문서의 내용에 변동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자치대신은 동항각호에 열거된 사항(동항제7호에 열거된 사항에 관해서는 지부의 수로 한다.)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들 사항에 관하여 전항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 (총선거 또는 통상선거가 행하여진 경우의 신고) ①정당교부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정당은, 그 해에 총선거 또는 통상선거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전조제1항각호에 열거된 사항을, 당해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중의원의원이나 참의원의원의 임기를 기산하는 날(이하 이 항에서 "임기의 초일"이라 한다.) 또는 당해 선거의 기일의 익일(이하 이 항에서 "선거의 익일"이라 한다.)중 뒤의 날(당해 선거에 관련된 공시일부터 임기의 초일 또는 선거의 익일중 뒤의 날까지의 사이에 다른 총선거 또는 통상선거에 관련된 공시일부터 임기의 초일 또는 선거의 익일중 뒤의 날까지의 기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이들 선거에 관련된 임기의 초일 또는 선거의 익일중 가장 뒤의 날로 한다.)현재로, 선거기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5일 이내(자치성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자치성령으로 정하는 기간내)에, 자치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신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3항중 "기준일"은 "당해 신고에 관련된 다음조제1항의 선거기준일"로 본다.

③제1항 및 전항에서 준용하는 전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정당은 동조제1항 동조제3항전단(전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신고한 사항 또는 동조제2항이나 제3항후단(이들 규정을 전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제출한 문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는 때에는, 제1항 및 전항에서 준용하는 동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치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들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사항 또는 제출하여야 할 문서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은 선거기준일이 그 해 12월에 속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장 정당교부금의 산정 등

제7조 (정당교부금의 총액등) ①매년분으로 각 정당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정당교부금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정당교부금의 총액은, 기준일에 있어서의 인구(기준일의 직근에 관보에 공시된 국세조사의 결과에 의한 확정수를 말한다.)에 250엔을 곱해서 얻은 액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으로 정한다.

②매년분의 의원수배당 및 득표수배당의 총액은 전항의 총액의 각각 2분의 1에 상당하는 액으로 한다.

제8조 (정당교부금의 액의 산정) ①매년분으로 각 정당〔그해분에 관하여 제5조제1항의 신고(제6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이 있는 경우는 동항의 신고)를 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 교부하여야 할 정당교부금의 액은, 다음항에서 정하는 의원수배당의 액과 제3항에서 정하는 득표수배당의 액을 합제한 액으로 한다.

②각 정당에 대해서 교부하여야 할 의원수배당의 액은, 의원수배당의 총액에 당해 정당에 소속하는 중의원의원 및 참의원의원의 수를 각 정당에 소속하는 중의원의원 및 참의원의원의 수로 합산한 수로 나누어서 얻은 수를 곱해서 얻은 액으로 한다.

③각 정당에 대해서 교부해야 할 득표수배당의 액은, 득표수배당의 총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액에 다음에 열거하는 수를 각각 곱해서 얻은 액을 합제한 액으로 한다.

1. 전회의 총선거의 소선거구 선출의원의 선거에서의 당해 정당의 득표총수를 당해 선거에서의 각 정당의 득표총수를 합산한 수로 나누어서 얻은 수
2. 전회의 총선거의 비례대표 선출의원의 선거에서의 당해 정당의 득표총수를 당해 선거에서의 각 정당의 득표총수를 합산한 수로 나누어서 얻은 수
3. 다음에 열거하는 수를 합산한 수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수

가. 전회의 통상선거의 비례대표 선출의원의 선거에서의 당해 정당의 득표총수를 당해 선거에서의 각 정당의 득표총수를 합산한 수로 나누어서 얻은 수

나. 전전회의 통상선거의 비례대표 선출의원의 선거에서의 당해 정당의 득표총수를 당해 선거에서의 각 정당의 득표총수를 합산한 수로 나누어서 얻은 수

4. 다음에 열거하는 수를 합산한 수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수

가. 전회의 통상선거의 선거구 선출의원의 선거에서의 당해 정당의 득표총수를 당해 선거에서의 각 정당의 득표총수를 합산한 수로 나누어서 얻은 수

나. 전전회의 통상선거의 선거구 선출의원의 선거에서의 당해 정당의 득표총수를 당해 선거에서의 각 정당의 득표총수를 합산한 수로 나누어서 얻은 수

제9조 ①그해분으로서 각 정당(그해분에 관하여 제5조제1항의 신고를 한 것에 한한다.)에 대해서 교부하여야 할 정당교부금의 액은 그해의 기준일현재에 있어서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액으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의 기준일이 속하는 해에 총선거 또는 통상선거가 행해진 경우에 있어서는, 그해분으로서 각 정당(그해분에 관하여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의 신고를 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 교부하여야 할 정당교부금의 액은, 기준일현재에 있어서 산정된 전조제1항의 액(제27조제1항에서 "기준액"이라 한다.)에 그해 1월부터 당해 총선거 또는 통상선거에 관련된 선거 기준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달수를 곱하여 얻은 액을 12로 나누어서 얻은 액(다음항

및 제27조제1항에서 "기준액의 월당총액"이라 한다.)과, 당해 선거기준 일현재로 산정된 전조제1항의 액(다음항 및 제27조제1항에서 "재산정액"이라 한다.)에 당해 선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해 12월까지의 달수를 12로 나누어서 얻은 액을 합계한 액으로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항의 선거기준일이 속하는 해에 당해 선거기준일후에 총선거 또는 통상선거가 행해진 경우에 있어서는, 그해분으로서 각 정당에 대해서 교부해야 할 정당교부금의 액은, 기준액의 월당총액과, 재산정액에 당해 재산정에 관련된 선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당해 선거기준일후에 행해진 총선거 또는 통상선거에 관련된 선거기준일(이하 이조 및 제27조제1항에서 "재재산정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달까지의 달수를 곱하여 얻은 액을 12로 나누어서 얻은 액(제27조제1항에서 "재산정액의 월당총액"이라 한다.)과, 당해 재재산정일현재로 산정된 전조제1항의 액(제27조제1항에서 "재재산정액"이라 한다.)에 당해 재재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해 12월까지의 달수를 곱해서 얻은 액을 12로 나누어서 얻은 액과를 합계한 액으로 한다.

④전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재산정일이 속하는 해에 당해 재재산정일후 총선거 또는 통상선거가 행해진 경우에 있어서는, 그해분으로서 각 정당에 대해서 교부해야 할 정당교부금의 액은, 전항의 예에 의하여 산정한 액으로 한다.

제10조 (정당교부금의 교부의 결정등) ①자치대신은 그해분으로서 교부해야 할 정당교부금을 계상하는 연도의 국가 예산이 성립한 때에는, 신속하게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해분으로서 각 정당에 대해서 교부해야 할 정당교부금의 액을 산정하여, 당해 정당교부금의 교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자치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후 총선거 또는 통상선거가 행해진 경우에 있어서는, 제6조제1항에 정하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이후, 신속하게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해분으로서 각 정당에 대해서 교부하여야 할 정당교부금을 다시 산정해서, 그 액이 기결정에 관련된 액과 다른 때에는 당해 결정을 변경하고, 새로이 정당교부금을 받아야 할 정당이 있는 때에는 그해분으로서 당해 정당에 대해서 교부해야 할 정당교부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자치대신은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교부금의 교부의 결정 또는 그 변경을 한 때에는, 신속하게 자치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정당교부금의 교부를 받아야 할 정당에 대해서, 그해분으로서 당해 정당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정당교부금의 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자치대신은 전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정당교부금의 교부를 받아야 할 정당의 명칭 및 그해분으로서 각 정당에 대해서 교부하여야 할 정당교부금의 액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정당교부금의 교부시기등) ①각 정당에 대해서 교부하여야 할 정당교부금은, 자치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4월에 그해분으로서 당해 정당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정당교부금의 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액을, 7월에 그해분으로서 당해 정당에 대해서 교부하여야 할 정당교부금의 액에서 그해에 이미 당해 정당에 대하여 교부한 정당교부금의 액을 공제한 잔액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액을, 10월에 그해분으로서 당해 정당에 대해서 교부하여야 할 정당교부금의 액에서 그해에 이미 당해 정당에 대하여 교부한 정당교부금의 액을 공제한 잔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액을, 12월에 그해분으로서 당해 정당에 대해서 교부하여야 할 정당교부금의 액에서 그해에 이미 당해 정당에 대하여 교부한 정당교부금의 액을 공제한 잔액을, 각각 교부해야 한다.

②정당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교부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자치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치대신에 대해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청구서를 동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그해분의 정당교부금은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해 12월의 교부시기까지 당해 청구서의 제출이 있는 때에는 당해 청구서에 관련된 정당교부금에 관하여는, 자치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부한다.

제12조 (교부절차의 특례등) 당해분으로서 교부하여야 할 정당교부금을 계상하는 연도의 국가예산이 성립하지 아니한 것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2조의 규정에 따르기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의 정당교부금의 교부절차 교부시기 및 교부시기별 교부액에 관해서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례를 둘 수 있다.

제13조 (교부결과의 공표) 자치대신은 매년 12월 31일현재, 자치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해분으로서 교부한 정당교부금의 총액 및 각 정당에 대해서 교부한 정당교부금의 액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4장 정당교부금의 용도의 보고

제14조 (정당교부금에 의한 지출의 정의등) ①이 장에서 "정당교부금에 의한 지출"이라 함은, 정당의 지출(정치자금규정법 제4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지출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정당교부금을 할당하거나 정당기금(특정목적에 위하여 정당교부금의 일부를 적립한 적립금을 말하고, 이에 관련된 果實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털어서 할당한 것(차입금의 변제 또는 대부금의 대부를 제외한다.)을 말하고, 지부정당교부금의 지급을 포함하되, 지부정당교부금에 의한 지출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②이 장에서 "지부정당교부금"이라 함은, 정당의 본부로부터 지부 [1이상의 市·町·村(특별구를 포함한다.)의 구역 [지방자치법(1947년 법률 제67호)제252조의19제1항의 지정도시의 구의 구역을 포함한다.] 또는 공직선거법(1950년 법률 제100호)제12조에 규정하는 선거구의 구역을 단위로 설치된 것에 한한다.이하 같다.]에 대하여 지급되는 금전등(정치자금규정법 제4조제1항에 규정하는 금전등을 말한다.이하 이항에서 같다.)으로서 정당교부금을 할당하거나 정당기금을 헐어서 할당하는 것을 말하고, 한 지부로부터 다른 지부에 대하여 지급되는 금전등으로서 지부정당교부금을 할당하거나 지부기금(특정 목적을 위하여 지부정당교부금의 일부를 적립한 적립금을 말하고, 이에 관련된 과실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을 헐어서 할당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이 장에서 "지부정당교부금에 의한 지출"이라 함은, 정당의 지부가 행하는 지출중 지부정당교부금을 할당하거나 지부기금을 헐어서 할당하는 것(차입금의 변제 및 대부금의 대부를 제외한다.)을 말하고, 지부정당교부금의 지급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 (정당의 회계장부의 기재등) ①정당(그해에 정당교부금을 교부받거나 정당교부금에 의한 지출을 행한 것 또는 정당기금의 잔고를 가진 것에 한한다.)의 회계책임자(회계책임자에게 사고가 있거나 회계책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할 자로 하고, 회계장부의 기재에 관련된 부분에 한하며, 회계책임자의 직무를 보좌하는 자를 포함한다. 다음조제1항에서 같다.)는 정당교부금에 관련된 수지의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장부에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정당교부금에 관해서는 그 교부받은 금액 및 연월일
2. 정당교부금에 의한 지출에 관해서는, 이를 받은 자의 성명과 주소(그 자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제17조제1항에서 같다.) 및 그 목적, 금액과 연월일 및 당해 정당교부금에 의한 지출에 충당된 정당교부금의 금액 또는 이에 충당하기 위하여 헐어서 쓴 정당기금의 금액
3. 정당기금에 관해서는, 그 명칭과 목적, 적립하거나 헐어서 쓴 금액과 연월일, 그 운용에 의하여 수수한 과실의 금액과 收受의 연월일 및 잔고

②정당의 회계책임자(회계책임자에게 사고가 있거나 회계책임자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직무를 행할 자. 다음조제1항을 제외하고, 이하 같다.)는 1건 5만엔이상의 정당교부금에 의한 지출을 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목적 금액 및 연월일을 기재한 영수증 기타 서면(이하 "영수증등"이라 한다.)을 징수해야 한다. 다만, 사회관습 기타 사정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정당의 회계책임자는 정당기금에 관해서 자치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잔

고를 증명하는 서면(이하 "잔고증명등"이라 한다.)을 징수하여야 한다.

④정당의 회계책임자는 제1항의 회계장부, 제2항의 영수증등 및 전항의 잔고증명등을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들에 관한 보고서의 요지가 공표된 날부터 5년을 경과하는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⑤정당의 회계책임자는 그 지부에 대해서 지부정당교부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와 동시에 당해 지부의 회계책임자에게 그 내용 및 금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정당의 지부의 회계장부의 기재등) ①정당의 지부(그해에 지부정당교부금을 지급받거나 지부정당교부금에 의한 지출을 행한 것 또는 지부기금의 잔고를 가진 것에 한한다.)의 회계책임자는 지부정당교부금에 관련된 수지의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장부에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부정당교부금에 관해서는 그 지급받은 금액 및 연월일

2. 지부정당교부금에 의한 지출에 관해서는, 이를 받은 자의 성명과 주소(그 자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제18조제1항에서 같다.) 및 그 목적, 금액과 연월일 및 당해 지부정당교부금에 의한 지출에 상당한 지부정당교부금의 금액 또는 이에 충당하기 위하여 헐어서 쓴 지부기금의 금액

3. 지부기금에 관해서는, 그 명칭과 목적, 적립하거나 헐어서 쓴 금액과 연월일, 그 운용에 의하여 수수한 과실의 금액과 수수의 연월일 및 잔고

②전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정당의 회계책임자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2항중 "정당교부금에 의한 지출"은 "지부정당교부금에 의한 지출"로, 동조제3항중 "정당기금"은 "지부기금"으로, 동조제4항중 "제1항"은 "다음조제1항"으로, "제2항"은 "동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2항"으로, "전항"은 "동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전항"으로, "보고서"는 "지부보고서"로, 동조제5항중 "그 지부"는 "당해 정당의 다른 지부"로, "당해 지부"는 "당해 다른 지부"로 본다.

제17조 (정당의 보고서의 제출등) ①제15조제1항의 정당의 회계책임자(보고서의 기재에 관한 부분에 한하며, 회계책임자의 직무를 보좌하는 자를 포함한다. 제28조제1항에서 같다.)는, 12월 31일현재, 당해 정당의 그해에 있어서의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이들의 사항이 없는 때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를 동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월이내(그 사이에 총선거 또는 통상선거의 공시일부터 선거기일까지의 기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4월이내)에 자치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당교부금에 관해서는 그 총액 및 그 교부받은 금액과 연월일

2. 정당교부금에 의한 지출에 관해서는, 그 총액과 자치성령으로 정하는 항목별 금액 및 당해 항목별로 정당교부금에 의한 지출에 상당한 정당교부금의 금액 또는 이에 충당하기 위하여 헐어서 쓴 정당기금의 금액

3. 정당교부금에 의한 지출중 인건비 기타 자치성령으로 정하는 경비이외의 경비에

관한 것으로 1건당 금액(수회에 걸친 경우에는 그 합계금액)이 5만원이상인 것에 관해서는 이를 받은 자의 성명과 주소 및 그 목적, 금액과 연월일 및 당해 정당교부금에 의한 지출에 충당한 정당교부금의 금액 또는 이에 충당하기 위하여 헐어서 쓴 정당기금의 금액

4. 지부정당교부금에 관해서는, 그 지급받은 지부의 명칭 및 지급의 목적, 금액과 연월일

5. 정당기금에 관해서는, 그 명칭과 목적, 적립하거나 헐어서 쓴 금액과 연월일, 그 운용에 의하여 收受한 과실의 금액과 수수의 연월일 및 잔고

②정당의 회계책임자는 전항의 보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자치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서면 또는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전항제3호의 정당교부금에 의한 지출에 관련된 영수증등의 사본(사회관습 기타 사정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내용 및 당해 정당교부금에 의한 지출의 목적 금액 및 연월일을 기재한 서면) 및 정당기금에 관한 잔고증명등의 사본

2. 다음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지부보고서 및 제1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감사의견서 및 다음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지부보고서 감사의견서(당해 정당의 지부에 관하여 제20조제2항의 규정의 적용이 있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이들 문서를 포함한다.)

3. 전항에 열거하는 지부보고서에 기재된 사항을 자치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집계한 총괄문서

4. 전항의 보고서 및 제2호에 열거하는 지부보고서에 기재된 사항을 자치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집계한 총괄문서

제18조 (정당의 지부의 지부보고서의 제출등) ①제16조제1항의 지부의 회계책임자(지부보고서의 기재에 관한 부분에 한하며, 회계책임자의 직무를 보좌하는 자를 포함한다. 제29조제1항에서 같다.)는, 자치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12월 31일현재, 당해 지부의 그해의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이들 사항이 없는 때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 지부보고서를, 그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2월이내(그 사이에 총선거 또는 통상선거의 공시일부터 선거기일까지의 기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3월이내)에, 당해 지부에 지부정당교부금을 지급한 정당의 회계책임자(당해 지부가 정당의 다른 지부로부터 지부정당교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다른 지부의 회계책임자로 하고, 당해 다른 지부가 자치성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치성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제20조제2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부정당교부금에 관해서는 그 총액 및 그 지급받은 금액과 연월일

2. 지부정당교부금에 의한 지출에 관해서는, 그 총액과 자치성령으로 정하는 항목별 금액 및 당해 항목별로 지부정당교부금에 의한 지출에 상당한 지부정당교부금의 금액 또는 이에 상당하기 위하여 헐어서 쓴 지부기금의 금액

3. 지부정당교부금에 의한 지출중 인건비 기타 자치성령으로 정하는 경비이외의 경비에 관한 것으로 1건당 금액(수회에 걸친 경우에는 그 합계금액)이 5만엔이상인 것에 관해서는, 이를 받은 자의 성명과 주소 및 그 목적, 금액과 연월일 및 당해 지부정당교부금에 의한 지출에 상당한 지부정당교부금의 금액 또는 이에 상당하기 위하여 헐어서 쓴 지부기금의 금액

4. 지급받은 지부정당교부금에 관해서는, 그 지급받은 지부의 명칭 및 지급의 목적, 금액과 연월일

5. 지부기금에 관해서는, 그 명칭과 목적, 적립하거나 헐어서 쓴 금액과 연월일, 그 운용에 의하여 收受한 과실의 금액과 收受의 연월일 및 잔고

②정당의 지부의 회계책임자는 전항의 지부보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자치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서면 또는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전항제3호의 지부정당교부금에 의한 지출에 관련된 영수증등의 사본(사회관습 기타 사정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내용 및 당해 지부정당교부금에 의한 지출의 목적금액 및 연월일을 기재한 서면) 및 지부기금에 관한 잔고증명등의 사본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부보고서 및 다음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감사의견서(당해 정당의 다른 지부에 관하여 제20조제2항의 규정의 적용이 있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이들 문서를 포함한다.)

3. 전항의 규정을 순차 적용한 경우에 다른 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것으로 되는 당해 다른 지부이외의 지부의 지부보고서 및 감사의견서

4. 전2호에 열거하는 지부보고서에 기재된 사항을 자치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집계한 지부총괄문서

③정당의 지부의 회계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부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당해 제출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해서 7일이내에, 동항의 지부보고서 및 전항제4호에 열거하는 지부 총괄문서를 당해 지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都·道·府·縣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감사의견서등의 첨부) ①정당의 회계책임자는 제17조제1항의 보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당해 보고서에 관련된 회계장부 영수증등 및 잔고증명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행하여야 하는 자의 감사의견을 기재한 감사의견서를 당해 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당의 회계책임자는 제17조제1항의 보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동항각호에 열거하는 사항에 관해서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법인이 자치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 감사에 근거하여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당해 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법인에 관한 공인회계사법(1948년 법률 제103호) 제32조제2항(동법 제34조의21제2항 및 제46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항(동법 제34조의21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관해서는 동법 제33조(동법 제34조의21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은 제16조제1항의 지부의 회계책임자가 전조제1항 또는 제3항의 지부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중 "회계감사를 행하여야 하는 자"는 "당해 지부에 있어서 준비된 회계감사를 행하여야 하는 자"로 본다.

제20조 (지부보고서등의 제출의 특례) ①정당이 제15조제1항의 정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지부로부터 제18조제1항 제2항 또는 다음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부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당해 정당의 회계책임자는 제17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에 열거하는 문서를 동조제1항이 정하는 기한까지 자치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당의 지부가 제16조제1항의 지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당해 정당의 다른 지부로부터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부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당해 지부의 회계책임자는 동조제1항에 정하는 기한까지 동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에 열거하는 문서를 당해 정당의 회계책임자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이들 문서를 당해 정당의 회계책임자에게 제출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해서 7일 이내에 동항제4호에 열거하는 지부총괄문서를 동조제3호에 규정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당의 지부로서 제16조제1항의 지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당해 정당의 다른 지부로부터 이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부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장 정당의 해산 등에 관한 조치

제21조 (정당이 해산한 경우등의 신고) ①정당(그해분에 관하여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의 신고를 한 것, 제15조제1항의 정당에 해당하는 것 및 제16조제1항의 지부를 그 지부로 하는 것에 한한다.)이 해산이나 목적의 변경등에 의하여 정치단체가 아니게 되거나, 제2조제1항각호의 어느 1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치단체로 된

경우에는, 당해 정당의 대표자였던 자는 그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5일 이내(총선거 또는 통상선거가 행하여진 경우로서, 자치성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자치성령으로 정하는 기간내)에 그 내용과 연월일 및 그 원인이 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에는 자치대신은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2조 (정당이 해산한 경우등에 있어서의 정당교부금의 교부) 정당(그해분에 관하여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의 신고를 한 것에 한한다. 제27조제1항에서 같다.)이 전조제1항에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해분으로서 당해 정당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정당교부금은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항에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된 날전에 교부된 정당교부금(다음 조 및 제27조제1항에서 "기교부금"이라 한다.)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정당의 합병등의 경우에 있어서의 정당의 신고 및 정당교부금의 교부) ①2이상의 정당 [기준일 또는 선거기준일중 합병일의 최근의 것에 관한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의 신고(이하 이 항에서 "최근신고"라 한다.)를 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합병한 경우에 있어서, 그해분으로서 합병에 의하여 해산하는 정당(이하 "합병해산정당"이라 한다.)에 교부하여야 할 정당교부금은,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합병후에 존속하는 정치단체로 당해 합병일에 있어서 제2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최근신고를 한 것에 한한다. 이하 "존속정당"이라 한다.) 또는 당해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정치단체로 당해 설립일에 있어서 동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설정당"이라 한다.)에 대해서 교부한다. 이 경우 당해 교부액은 그해분으로서 합병해산정당에 대해서 교부하여야 할 정당교부금의 액에서 기교부금의 액을 공제한 잔액에 상당하는 액으로 한다.

②2이상의 정당이 합병하는 경우에 있어서, 합병후에 존속하는 정치단체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정치단체에 관련된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합병후에 존속하는 정치단체에 있어서는 그 득표총수에 당해 합병에 관련된 합병해산정당의 득표총수를 더한 수를,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정치단체에 있어서는 당해 합병에 관련되는 합병해산정당의 득표총수를 합산한 수를, 각각 당해 정치단체의 득표총수로 한다.

③정당의 분할이 행해지는 경우에 있어서, 그해분으로서 당해 분할에 의하여 해산하는 정당(이하 "분할해산정당"이라 한다.)에 대해서 교부하여야 할 정당교부금은,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정치단체로 당해 설립일에 있어서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이하 "분할정당"이라 한다.)에 대해서 교부한다. 이 경우, 당해 교부액은, 그해분으로서 분할해산정당에 대해서 교부하여야 할

정당교부금의 액에서 기교부금의 액을 공제한 잔액에 상당하는 액에 그 설립일현재 당해 분할정당에 소속하는 증의원의원 또는 참의원의원중 그 해산일 현재 당해 분할해산정당에 소속하고 있던 자의 수(이하 이 항 및 제25조에서 "소속의원수"라 한다.)를 곱해서 얻은 액을 당해 분할에 관련된 각 분할정당의 소속의원수를 합산한 수로 나누어서 얻은 액으로 한다.

④존속정당이나 신설정당 또는 분할정당은, 제1항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아야 할 정당교부금(이하 이 조에서 "미교부금"이라 한다.)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그 합병일 또는 분할정당설립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해서 15일 이내(당해 합병일 또는 분할정당설립일이 속하는 해의 12월의 교부시기까지의 사이에 한한다.)에, 그 내용 당해 합병해산정당 또는 분할해산정당의 명칭 그해분으로서 합병해산정당 또는 분할해산정당에 대해서 교부되어야 할 정당교부금의 액 및 미교부금의 액 당해 합병일 또는 분할정당의 설립일현재에 있어서의 제5조제1항각호(제6호를 제외한다.)에 열거하는 사항 기타 자치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자치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존속정당이나 신설정당 또는 분할정당은, 전항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각호에 열거하는 문서 존속정당 및 합병해산정당의 사이에 합의된 합병에 관한 문서의 사본(신설정당에 있어서는 각 합병해산정당간의 합병에 관한 문서의 사본으로 하고, 분할정당에 있어서는 분할해산정당의 분할에 관한 문서의 사본으로 한다.) 기타 자치성령으로 정하는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 한다.

⑥자치대신은, 제4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 신고일(당해 신고가 제10조제1항에 규정하는 예산의 성립전에 행해진 때에는 당해 예산의 성립일)후 신속하게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신고를 한 존속정당이나 신설정당 또는 분할정당에 관련된 미교부금의 액을 산정하여, 이를 당해 존속정당이나 신설정당 또는 분할정당에 교부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⑦제4항의 신고에 관련된 합병 또는 분할후, 그해에 총선거 또는 통상선거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에 관련된 존속정당이나 신설정당 또는 분할정당에 관련된 미교부금중, 당해 선거에 관한 선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해 12월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액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액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부하지 아니한다.

⑧제6조제3항의 규정은 존속정당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관하여,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자치대신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경우에 관하여,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3항중 "동조제1항"은 "전조제1항"으로, "제1항 및 전항에서 준용하는 동조제2항 및 제3항"은 "제23조제4항 및 제5항"으로, 제10조제3항중 "당해 정당교부금의 교부"는

"당해 미교부금의 교부"로, "그해분으로서 당해 정당에 대해서 교부하여야 할 정당 교부금의 액"은 "당해 미교부금의 액"으로, 동조제4항중 "전항"은 "제23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전항"으로, "정당교부금의 교부"는 "미교부금의 교부"로, "그해분으로서 각 정당에 대해서 교부하여야 할 정당교부금의 액"은 "당해 미교부금의 액"으로 본다.

⑨신설정당 또는 분할정당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를 제출한 때에는, 그 합병일 또는 분할정당의 설립일현재에 있어서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동조제3항과 제4항 제6조제3항 제21조 전조 및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4조 (합병에 관련된 정당교부금의 산정의 특례등) ①존속정당 또는 신설정당은,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당해 합병에 관련된 합병해산정당에 관련된 제5조제1항제6호에 열거하는 각각의 득표총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존속정당 또는 신설정당은, 동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존속정당 및 합병해산정당간에 합의된 합병에 관한 문서의 사본(신설정당에 있어서는 각 합병해산정당간의 합병에 관한 문서의 사본) 기타 자치성령으로 정하는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당해 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5조제4항전단의 규정은 제1항의 신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4항중 "동항각호에 열거하는 사항(동항제7호에 열거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지부의 수로 한다.)"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가 있는 사항"으로 본다.

④존속정당 또는 신설정당에 대한 제8조제3항의 적용에 관해서는, 존속정당에 있어서는 그 득표총수에 당해 합병에 관련된 합병해산정당의 득표총수를 더한 수를 당해 존속정당의 득표총수로 보고, 신설정당에 있어서는 당해 합병에 관련된 합병해산정당의 득표총수를 합산한 수를 당해 신설정당의 득표총수로 본다. 다만, 당해 존속정당 또는 신설정당이 제1항의 신고를 아니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 (분할에 관련된 정당교부금의 산정의 특례등) ①분할정당은,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당해 분할에 관련된 분할해산정당에 관한 제5조제1항제6호에 열거하는 각각의 득표총수 및 당해 분할정당의 소속의원수(그 선출된 총선거 또는 통상선거에 있어서 당해 분할해산정당에 소속하는 후보자였던 자에 관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당해 분할에 관련된 각 분할정당의 소속의원수를 합산한 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분할정당은, 동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분할해산정당에 있어서의 분할에 관한 문서의 사본 기타 자치성령으로 정하는 문서를 함께 제출하

여야 한다. 다만, 이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당해 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5조제4항전단의 규정은 제1항의 신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4항전단중 "동항각호에 열거하는 사항(동항제7호에 열거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지부의 수로 한다.)"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사항"으로 본다.

④분할정당에 대한 제8조제3항각호의 규정의 적용에 관해서는, 당해 분할에 관련된 분할해산정당의 득표총수에 당해 분할정당의 소속의원수를 곱해서 얻은 수를 당해 분할에 관련된 각 분할 정당의 소속의원수를 합산한 수로 나누어서 얻은 수를 당해 분할정당의 득표총수로 본다. 다만, 당해 분할정당이 제1항의 신고를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 (합병 및 분할이 병행된 경우등의 조치) 전3조에 정한 것외에 합병 및 분할이 병행된 경우 기타의 경우에 있어서 정당의 신고 정당교부금의 교부 기타 조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정령으로 정한다.

제27조 (정당이 아니게 된 정치단체로서 존속하는 경우의 조치) ①정당이 제2조제1항 각호의 어느 1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치단체로 된 경우는,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경우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호에 정하는 교부금(이하 이 조에서 "특정교부금"이라 한다.)을 당해 정치단체에 대해서 교부한다.

1. 그해 분으로서 당해 정당에 대해서 교부하여야 할 정당교부금의 액이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경우 : 기준액에 그해 1월부터 당해 정당이 제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이하 이 항에서 "정당이 아니게 된 날"이라 한다.)이 속하는 달까지의 달수를 곱해 얻은 액을 12로 나누어서 얻은 액에서 기교부금의 액을 공제한 잔액

2. 그해 분으로서 당해 정당에 대해서 교부하여야 할 정당교부금의 액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경우 : 기준액의 월배당총액과, 재산정액에 당해 선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정당이 아니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달수를 곱해 얻은 액을 12로 나누어서 얻은 액을 합제한 액에서 기교부금의 액을 공제한 잔액

3. 그해 분으로서 당해 정당에 대해서 교부하여야 할 정당교부금의 액이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경우 : 기준액의 월배당총액 및 재산정액의 월당총액과, 재재산정액에 당해 재재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정당이 아니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달수를 곱해 얻은 액을 12로 나누어서 얻은 액을 합제한 액에서 기교부금의 액을 공제한 잔액

4. 그해 분으로서 당해 정당에 대해서 교부하여야 할 정당교부금의 액이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경우 : 전호의 규정의 예에 의하여 산정한 액

②전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치단체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교부금을 교부받으려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는, 그 내용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정치단체에 대해서 교부되어야 할 특정교부금의 액 제5조제1항각호(제5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에 열거하는 사항 기타 자치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치단체는, 전항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강령 기타 당해 정치단체의 목적 기본정책등을 기재한 문서, 당칙 규약 기타 당해 정치단체의 조직 관리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 및 자치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가 있는 날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교부금의 교부시기에, 제6항에서 준용하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액에 상당하는 액의 전액을 교부한다.

⑤정당교부금의 교부에 대하여 제12조의 적용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전항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치성령으로 정한다.

⑥제5조제4항전단의 규정은 제2항의 신고에 관하여, 제6조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관하여, 제10조(제2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제2항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치단체가 동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특정교부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 관하여, 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정치단체에 대해서 교부한 특정교부금의 액에 관하여,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제2항의 신고를 한 정치단체에 관하여,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5조제4항전단중 "동항 각호"는 "제1항각호(제5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로, "로 한다)"는 "로 한다.)" 및 제27조제2항의 자치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제6조제3항중 "동조제1항"은 "전조제1항"으로, "제1항 및 전항에서 준용하는 동조제2항이나 제3항"은 "제27조제2항 및 제3항"으로, 제10조제1항중 "성립한 때에는"는 "성립한 날전에 제27조제2항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예산이 성립한 날후, 당해 성립한 날이후에 동항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신고일후"로, "전조"는 "동조제1항"으로, "그해분으로서 각 정당"은 "동조제2항의 신고를 한 정치단체"로, "정당교부금의 액"은 "특정교부금의 액"으로, "당해 정당교부금의 교부"는 "당해 특정교부금의 액"으로, 동조제3항중 "전2항"은 "제27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제1항"으로, "정당교부금의 교부의 결정 또는 그 변경"은 "특정교부금의 교부의 결정"으로, "당해 정당교부금의 교부를 받아야 할 정당"은 "당해 특정교부금의 교부를 받아야 할 정치단체"로, "그해분으로서 당해 정당에 대해서 교부하여야 할 정당교부금"은 "당해 특정교부금"으로, 동조제4항중 "전항"은 "제27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전항"으로, "정당교부금"으로, 동조제4항중 "전항"은 "제27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전항"으로, "정당교부금"으로,

부금을 교부받아야 할 정당"은 "특정교부금을 교부받아야 할 정치단체"로, "그해분으로서 각 정당에 대해서 교부하여야 할 정당교부금"은 "당해 정치단체에 대해서 교부하여야 할 특정교부금"으로, 제11조제3항중 "제출하지 아니한 정당"은 "제출하지 아니한 정치단체"로, "정당교부금"은 "특정교부금"으로, 제21조제1항중 "이나"는 "또는"으로, "아니게 되거나 제2조제1항각호의 어느 1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치단체로 된"으로, "아니하게 된"으로, "당해 정당"은 "당해 정치단체"로, 제22조중 "전조제1항"은 "제27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전조제1항"으로, "당해 정당"은 "당해 정치단체"로, "정당교부금"은 "특정교부금"으로, "정당교부금(다음조 및 제27조제1항에서 "기교부금"이라 한다.)"은 "특정교부금"으로 본다.

⑦제1항에 규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동항에 규정하는 정치단체가 특정교부금을 교부 받은 때 및 제15조제1항의 정당이 제1항에 규정하는 정치단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정치단체를 정당으로 보고, 당해 특정교부금은 정당교부금으로 보며, 前章 및 다음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이들 규정에 관련된 벌칙을 포함한다.)을 적용한다.

제28조 (해산등에 관한 보고서 제출의 특례) ①제15조제1항의 정당이 해산하거나 목적의 변경등에 의하여 정치단체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당해 정당의 회계책임자였던 자는, 자치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현재, 제17조제1항각호에 열거하는 사항(이들의 사항이 없는 때에는 그 내용.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기재한 보고서(그해의 전년에 있어서 동조제1항각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자치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7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2항제2호중 "다음조제1항"은 "제29조제1항"으로, "제1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동조제1항"은 "동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19조제1항"으로, "및 다음조제2항"은 "(제29조제1항제1호에 열거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출받은 이들 문서에 한한다.) 및 제2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다음조제2항"으로, "지부에 관하여 제20조제2항"은 "지부의 회계책임자였던 자에 관하여 제30조제2항"으로, 동항제4호중 "전항"은 "제28조제1항"으로 본다.

제29조 (해산등에 관련된 정당의 지부보고서의 제출의 특례) ①제16조제1항의 지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지부의 회계책임자였던 자는, 자치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현재, 제18조제1항각호에 열거하는 사항(이들 사항이 없는 때에는 그 내용.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기재한 보고서(그 해의 전년도에 있어서 동조제1항각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한 지부보고서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지부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다음 각호에 열

거하는 경우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호에 정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지부를 그 지부로하는 정당이 해산하거나 목적의 변경등에 의하여 정치단체가 아니게 된 경우 : 당해 지부에 지부정당교부금(제14조제2항에 규정하는 지부정당교부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지급한 정당의 회계책임자였던 자(당해 지부가 정당의 다른 지부로부터 지부정당교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다른 지부의 회계책임자였던 자로하고, 당해 다른지부가 자치성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치성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다음조제2항에서 같다.)

2. 당해 지부가 해산한 경우 기타 자치성령으로 정하는 경우(전호에 열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당해 지부에 지부정당교부금을 지급한 정당의 회계책임자(당해 지부가 정당의 다른 지부로부터 지부정당교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정당 및 당해 다른 지부의 회계책임자)

②전항제2호에 열거하는 경우에 있어서 동항의 지부보고서를 제출받은 정당의 회계책임자는, 자치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부보고서 및 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감사의견서를 자치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지부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2항중 "서면 또는 문서"는 "서면 또는 문서(제29조제1항제2호에 열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1호에 열거하는 서면)"으로, 동항제2호중 "전항"은 "제29조제1항"으로, "다음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동조제1항"은 "동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19조제1항"으로, "당해 정당의 다른 지부에 관하여 제20조제2항"은 "제29조제1항제1호에 열거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출받은 이들 문서에 한하는 것으로 하고, 당해 정당의 다른 지부의 회계책임자였던 자에 관하여 제30조제2항"으로 본다.

④제19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 또는 전항에서 준용하는 제18조제3항의 지부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제1항중 "회계감사를 행하여야 할 자"는 "당해 지부에 있어서 준비된 회계감사를 행하여야 할 자"로 본다.

제30조 ①전조제1항제1호에 열거하는 경우에 있어서, 정당이 제15조제1항의 정당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지부의 회계책임자였던 자로부터 전조제1항, 동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8조제2항 또는 다음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당해 정당의 회계책임자였던 자는, 자치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17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에 열거하는 문서를 자치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조제1항제1호에 열거하는 경우에 있어서, 정당의 지부가 제16조제1항의 지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도, 당해 정당의 다른 지부의 회계책임자였던 자로

부터 전조제1항 또는 동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부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당해 지부의 회계책임자였던 자는, 자치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8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에 열거하는 문서를 당해 정당의 회계책임자였던 자에게 제출함과 아울러, 이들 문서를 당해 정당의 회계책임자였던 자에게 제출한 날의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전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8조제2항제4호에 열거하는 지부총괄문서를 전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8조제3항에 규정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당의 지부로서 제16조제1항의 지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의 회계책임자였던 자가 당해 정당의 다른 지부의 회계책임자였던 자로 부터 이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부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제6장 보고서 등의 공표

제31조 (보고서등의 요지의 공표) 자치대신은, 제17조제1항 또는 제28조제1항의 보고서 및 제17조제2항(제2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9조제2항의 지부보고서와 총괄문서(제20조제1항 또는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이들 문서를 포함한다.)를 수리한 때에는, 자치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보에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32조 (보고서등의 보존 및 열람) ①자치대신은 제5조제1항 동조제3항(제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조제1항 제21조제1항(제27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또는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이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문서를 이들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련된 고시를 한 날부터 5년을 경과하는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②자치대신은, 제17조제1항 또는 제28조제1항의 보고서 제17조제2항(제2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9조제2항의 지부보고서 감사의견서와 총괄문서(제20조제1항 또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이들 문서를 포함한다.), 제19조제1항(제2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감사의견서 및 제19조제2항(제2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감사보고서를,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지를 공표한 날부터 5년을 경과하는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③都·道·府·縣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조제3항(제2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지부보고서와 지부총괄문서(제20조제2항 또는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이들 문서를 포함한다.) 및 제19조제4항과 제29조제4

항에서 준용하는 제19조제1항의 감사의견서를, 자치대신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지를 공표한 날부터 5년을 경과하는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④누구든지, 제1항에 규정하는 고시를 한 날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요지의 공표를 한 날부터 5년간, 자치대신에 대하여, 자치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서나 이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문서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보고서 지부보고서 총괄문서 감사의견서나 감사보고서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⑤누구든지, 제2항에 규정하는 요지의 공표를 한 날부터 5년간, 都·道·府·縣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항에 규정하는 지부보고서 지부 총괄문서 또는 감사의견서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장 정당교부금의 반환 등

제33조 ①자치대신은, 정당(제2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치단체를 포함한다. 제3항 및 제4항을 제외하고, 이하 이 조 다음조 및 제40조에서 같다.)이 이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교부금(제2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정교부금을 포함한다. 제3항을 제외하고, 이하 이 조 다음조 및 제40조에서 같다.)의 교부의 결정(이미 이루어진 결정의 변경을 포함한다.)을 받은 정당인 경우에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정당이 정당교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받지 아니한 때에 있어서는 그 정당교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교부를 정지하고, 당해 정당이 정당교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받은 때에 있어서는 당해 정당(당해 정당이 해산하거나 목적변경등에 의하여 정치단체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였던 자로 한다.)에 대하여 기한을 정해서 그 교부받은 정당교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②자치대신은, 정당교부금을 교부받은 정당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자치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정당(당해 정당이 해산하거나 목적변경등에 의하여 정치단체가 아니게 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였던 자로 한다. 제6항 제8항 및 제9항에서 같다.)에 대하여, 기한을 정해서, 당해 각호에 열거하는 경우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호에 정하는 액에 상당하는 액의 정당교부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당해 정당이 그해에 교부받은 정당교부금의 총액(그해 12월 31일의 정당기금의 잔고가 그 전해 12월 31일의 정당기금의 잔고를 하회하는 경우에는 당해 하회하는 액을 가산한 액으로 한다.)에서, 당해 정당이 그해에 행한 정당교부금에 의한 지출(제14조제1항에 규정하는 정당 교부금에 의한 지출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의 총액(그해 12월 31일의 정당기금의 잔고가 그 전해 12월 31일의 정당기금의 잔고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회하는 액을 가산한 액으로 한다.)을 공제하고 잔여가 있는 경우 : 당해 잔액

2. 당해 정당의 지부가 그해에 지급받은 지부정당교부금(제14조제2항에 규정하는 지부정당교부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총액(그해 12월 31일의 지부기금의 잔고가 그 전해 12월 31일의 지부기금의 잔고를 하회하는 경우에는 당해 하회하는 액을 가산한 액으로 한다.)에서, 당해 정당의 지부가 그해에 행한 지부정당교부금에 의한 지출(제14조제3항에 규정하는 지부정당교부금에 의한 지출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총액(그해 12월 31일의 지부기금의 잔고가 그 전해 12월 31일의 지부기금의 잔고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회하는 액을 가산한 액으로 한다.)을 공제하고 잔여가 있는 경우 : 이 호에 해당하는 모든 지부에 관련된 당해 잔액의 합계액

3. 당해 정당이 해산(제23조제1항에 규정하는 2이상의 정당의 합병 또는 동조제3항에 규정하는 정당의 분할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거나 목적의 변경등에 의하여 정치단체가 아니게 된 경우에 있어서, 그해 1월 1일부터 제21조제1항의 신고를 한 날까지 교부받은 정당교부금의 총액 [당해 신고를 한 날(신고가 없는 때에는 그해 12월 31일.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정당기금의 잔고가 그 전해 12월 31일의 정당기금의 잔고를 하회하는 경우에는 당해 하회하는 액을 가산한 액으로 한다.]에서, 당해 정당이 그해 1월 1일부터 당해 해산을 하거나 목적의 변경등에 의하여 정치단체가 아니게 된 날(이하 이 항에서 "해산등의 날"이라 한다.)까지 행한 정당교부금에 의한 지출의 총액(당해 해산등의 날의 정당기금의 잔고가 그 전해 12월 31일의 정당기금의 잔고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회하는 액을 가산한 액으로 한다.)을 공제하고 잔여가 있는 때 : 당해 잔액 및 당해 신고를 한 날의 정당기금의 잔고의 합계액

4. 당해 정당이 해산하거나 목적의 변경등에 의하여 정치단체가 아니게 된 경우 또는 제29조제1항제2호에 열거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정당의 지부가 그해 1월 1일부터 제21조제1항의 신고가 있는 날(동호에 열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자치성령으로 정하는 날. 이하 이 호에서 같다.)까지 지급받은 지부정당교부금의 총액 [당해 신고가 있는 날(신고가 없는 때에는 그해 12월 31일.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지부기금의 잔고가 그 전해 12월 31일의 지부기금의 잔고를 하회하는 경우에는 당해 하회하는 액을 가산한 액으로 한다.]에서, 당해 지부가 그해 1월 1일부터 당해 해산등의 날(제29조제1항제2호에 열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사실이 있는 날. 이하 이 호에서 같다.)까지 행한 지부정당교부금에 의한 지출의 총액(당해 해산등의 날의 지부기금의 잔고가 그 전해 12월 31일의 지부기금의 잔고를 상회하는 경우에

는 당해 상회하는 액을 가산한 액으로 한다.)을 공제하고 잔여가 있는 때 :이 호에 해당하는 모든 지부에 관련된 당해 잔액 및 당해 신고가 있는 날에 있어서의 지부 기금의 잔고의 합계액

③합병해산정당이나 분할해산정당 또는 이들 정당의 지부가 그해에 있어서 당해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의 날까지 교부 또는 지급받은 정당교부금과 지부정당교부금으로, 당해 해산의 날까지 정당교부금에 의한 지출 또는 지부정당교부금에 의한 지출에 충당하지 아니한 것(정당기금 또는 지부기금으로 적립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이들 정당 또는 그 지부가 당해 해산의 날에 있어서 가지고 있던 정당기금과 지부기금을 인계한 당해, 합병에 관련된 존속정당이나 분할정당(이하 이 조에서 "존속정당등"이라 한다.)은, 자치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내용을 자치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이 경우, 당해 정당교부금 및 지부정당교부금은 당해 합병 또는 분할의 날에 당해 존속정당등에 대하여 정당교부금으로서 교부된 것으로 보며, 당해 정당기금 및 지부기금은 당해 합병 또는 분할의 날에 당해 존속정당등에 대하여 교부되고 그날에 정당기금으로 적립된 것으로 보아 제4장 제28조 내지 제30조 및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이들의 규정에 관련된 별칙을 포함한다.)을 적용한다.

④존속정당등이 전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분할은, 제23조제1항에 규정하는 2이상의 정당의 합병 또는 동조제3항에 규정하는 정당의 분할이 아닌 것으로 보아,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제21조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신고에 관하여, 전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당해 신고에 관련된 신고서에 관하여 각각 준용한다.

⑥자치대신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교부금의 교부를 정지하거나 정당교부금의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당해 정당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하고 그 내용 및 당해 정지에 관련된 정당교부금의 액 또는 반환하여야 할 정당교부금의 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⑦자치대신은, 전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자치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내용 당해 정당의 명칭 및 당해 정지에 관련된 정당교부금의 액 또는 반환하여야 할 정당교부금의 액을 고시하여야 한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교부금의 반환을 명령받은 정당은,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반환하여야 할 정당교부금의 수령일부터 납기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당해 정당교부금의 액(그 일부를 납부한 경우, 그후의 기간에 관하여는 기납액을 공제한 액)에 관하여 연 14.6%의 비율로 계산한 가산금을 국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⑨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교부금의 반환을 명령받은 정당이 납기일

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기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연 14.6%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금을 국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⑩자치대신은, 제1항 제2항 및 전2항의 경우에 있어서,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해분으로서 교부하여야 할 정당교부금중 교부하지 아니한 것 또는 그 다음해 이후에 교부하여야 할 정당교부금의 액에서, 반환을 명령받은 정당교부금 또는 가산금이나 연체금의 액을 공제할 수 있다.

(11)제6항의 규정은, 자치대신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6항중 "당해 정지에 관련된 정당교부금의 액 또는 반환하여야 할 정당교부금의 액"은 "당해 공제한 정당교부금 또는 가산금이나 연체금의 액"으로 본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정당교부금 또는 이에 관련된 가산금이나 연체금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정당교부금 또는 이에 관련된 가산금이나 연체금의 선취특권의 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으로 한다.

제34조 ①자치대신은,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23조제4항 또는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정당이 당해 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해에 있어서 제출하여야 할 제17조제1항의 보고서 동조제2항의 영수증등이나 잔고증명등의 사본 지부보고서 감사의견서나 총괄문서(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이들 문서를 포함한다.), 제19조제1항의 감사의견서 또는 동조제2항의 감사보고서(이하 이 항에서 "보고서등"이라 한다.)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치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보고서등의 제출이 있을 때까지, 그해분으로서 당해 정당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정당교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교부를 정지할 수 있다.

②전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은, 자치대신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에 규정하는 교부를 정지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도조제6항 및 제7항중 "당해 정지에 관련된 정당교부금의 액 또는 반환하여야 할 정당교부금의 액"은 "당해 정지에 관련된 정당교부금의 액"으로 본다.

제8장 잡 칙

제35조 (보고서등의 진실성의 확보를 위한 조치) 제17조제1항 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제18조제1항 동조제3항(제2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부보고서를 제출하는 자는, 이들에 각각 진실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서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첨부하여

야 한다.

제36조 (정당교부금에 관한 사무의 감독) 자치대신은, 이 법률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都·道·府·縣의 선거관리위원회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37조 (신고서류등의 설명청취등) 자치대신 또는 都·道·府·縣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류 보고서 지부보고서나 이들과 함께 제출하여야 할 서면이나 문서(이하 이 조에서 "신고서류등"이라 한다.)에 형식상의 불비가 있거나, 이들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기재가 불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신고서류등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거나 이유를 제시하여 당해 신고서류등의 정정을 명할 수 있다.

제38조 (정당교부금에 관한 사무에 관련된 재정상의 조치) 국가는, 제3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부보고서 지부총괄문서 및 감사의견서의 보존 및 열람을 위한 경비에 관하여 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제39조 (행정불복심사법에 의한 불복신청의 제한)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처분 기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행정불복심사법(1962년 법률 제160호)에 의한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제40조 (단수계산)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분으로서 각 정당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정당교부금의 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1,000엔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금액을 버린다.

제41조 (정령에의 위임) ①이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의원의 수 및 총선거 또는 통상선거에 관련된 득표총수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②전항에 정하는 것외에 이 법률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 기타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42조 (자치성령에의 위임)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회계장부 보고서 총괄문서 지부보고서 지부총괄문서 감사의견서 감사보고서 기타 서류의 양식 기재요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자치성령으로 정한다.

제9장 벌 칙

제43조 정당(정치단체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같다.)가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정당교부금(제27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정교부금을 포함한다.)을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정당의 임직원 또는 구성원으로서 당해 행위를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50만엔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제44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100만엔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1. 제17조제1항 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제2항(제2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조제1항 제29조제2항 또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수증등 또는 잔고증명등의 사본 감사의견서 또는 총괄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1항 동조제3항(제2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부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이들 규정을 제2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조제2항 또는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수증등 또는 잔고증명등의 사본, 다른 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부보고서 감사의견서 또는 지부총괄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1항(제2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19조제2항(제2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제4항 및 제2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17조제1항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또는 제17조제2항(제2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총괄문서(제20조제1항 또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자
6. 제18조제1항 동조제3항(제2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부보고서 또는 제18조제2항 제3항(이들의 규정을 제2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지부총괄문서(제20조제2항 또는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자
7. 제17조제1항 제28조제1항의 보고서, 제17조제2항(제2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영수증등이나 잔고증명등의 사본 지부보고서 총괄문서(제20조제1항 또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이들 문서를 포함한다.), 제18조제1항 동조제3항(제2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9조제1항이나 제2항의 지부보고서, 제18조제2항(제2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영수증등이나 잔고증명등의 사본 지부보고서 지부총괄문서(제20조제2항 또는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이들 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제18조제3항(제2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지부총괄문서에 허위의 기입을 한 자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정당 또는 그 지부의 대표자가 당해 정당 또는 지부의 회계책임자의 선임 및 감독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한 때에는 50만엔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5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금고 또는 50만엔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1.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계장부를 비치하지 아니 하거나 또는 이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 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수증등을 징수하지 아니 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잔고증명등을 징수하지 아니 하거나, 동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계장부 영수증등 또는 잔고증명등을 보존하지 아니 하거나, 동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지하를 아니한 자.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계장부를 비치하지 아니 하거나 또는 또는 이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 하거나, 동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수증등을 징수하지 아니 하거나, 제1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잔고증명등을 징수하지 아니 하거나, 제1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계장부 영수증등 또는 잔고증명등을 보존하지 아니 하거나, 제1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지를 아니한 자

3.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의 회계장부 제15조제2항(제1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영수증등 또는 제15조제3항(제1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잔고증명등에 허위의 기입을 하거나, 허위의 제15조제5항(제1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통지를 한 자

4.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된 설명의 거부 또는 허위의 설명을 하거나, 동조의 규정의 명령에 위반하여 동조의 신고서류등의 정정을 거부하거나 또는 이들에 허위의 정정을 한 자

제46조 제19조제1항(동조제4항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감사의견서 또는 제19조제2항(제2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감사보고서에 허위의 기재한 자는 30만엔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제44조제1항 또는 제45조의 위반행위를 한 자는 당해 각조의 형을 과한다. 다만, 정상에 의하여 그 형을 경감할 수 있다.

제48조 ①정당의 임직원 또는 구성원이 제4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정당에 대하여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②감사법인의 社員이 그 감사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감사법인에 대하여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3조의 위반행위에 관해서 정당에 벌금형을 과하는 경

우에 있어서 시효의 기간은 동조의 죄에 관한 시효의 기간에 의한다.

④정당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가 소송행위에 관하여 정당을 대표하는 외에, 법인을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는 경우의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기일) 이 법률은 공직선거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1994년 법률 제2호)의 시행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의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의 날(이하 "시행일"이라 한다.)부터 공직선거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의한 개정후의 공직선거법의 시행일 이후 처음으로 그 선거의 기일이 공시되는 총선거(다음조에서 "신공직선거법에 의한 총선거"라 한다.)의 기일까지의 기간에 있어서의 이 법률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2조제1항제2호중 "중의원의원의 총선거(이하 단순히 "총선거"라 한다.)에 있어서의 소선거구 선출의원의 선거나 비례대표 선출의원의 선거"는 "중의원의원의 총선거(이하 단순히 "총선거"라 한다.)"로, 제3조제2항중 "총선거의 소선거구 선출의원의 선거"는 "총선거"로, 제5조제1항제5호중 "중의원의 소선거구 선출의원이나 비례대표 선출의원"은 "중의원의원"으로, 동항제6호중 "다음에 열거하는 득표총수"는 "다음에 열거하는 득표총수(나목에 열거하는 것을 제외한다.)"로, 동호가목중 "총선거(이하 이호 및 제8조제3항에서 "전회의 총선거"라 한다.)의 소선거구 선출의원의 선거"는 "총선거(제8조제3항에서 "전회의 총선거"라 한다.)"로, 제8조제3항중 "총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액에 다음에 열거하는 수를 각각 곱해서 얻은 액"은 "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액에 제1호의 수를 곱해서 얻은 액과 당해 총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액에 제3호 및 제4호의 수를 각각 곱해서 얻은 액과"로, 동항제1호중 "총선거의 소선거구 선출의원의 선거"는 "총선거"로 한다.

제3조 ①시행일전에 행하여진 직근의 통상선거의 직근통상선거후, 시행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 "특정기간"이라 한다.)에 있어서 2이상의 정당요건을 갖춘 정치단체가 합병한 경우에 관하여는, 당해 합병에 관련된 존속정당에 상당하는 정치단체가 시행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5일 이내에 자치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합병에 의하여 해산하는 정당요건을 갖춘 정치단체를 합병해산정당으로, 당해 존속정당에 상당하는 정치단체 또는 신설정당에 상당하는 정치단체를 존속정당 또는 신설정당으로 보아,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특정기간에 있어서 2이상의 정당요건을 갖춘 정치단체가 합병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에 관련된 존속정당에 상당하는 정치단체 또는 신설정당에 상당하는 정치단체 (전항의 신고를 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존속정당에 상당하는 정치단체에 있어서는 그 득표총수에 당해 합병에 의하여 해산한 정당요건을 갖춘 정치단체의 득표총수를 더한 수를, 신설정당에 상당하는 정치단체에 있어서는 당해 합병에 의하여 해산한 정당요건을 갖춘 정치단체의 득표총수를 더한 수를, 각각 당해 정치단체의 득표총수로 본다.

③특정기간에 있어서 정당요건을 갖춘 정치단체의 분할이 행하여진 경우에 관하여는, 당해 분할에 관련된 분할정당에 상당하는 정치단체가 시행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5일 이내에 자치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분할에 의하여 해산하는 정당요건을 갖춘 정치단체를 분할해산정당으로, 당해 분할정당에 상당하는 정치단체를 분할정당으로 보아,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전3항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용어의 의미는 당해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정당요건을 갖춘 정치단체 : 당해 합병 또는 분할의 날에 있어서 다음의 1에 해당하고 있었던 정치단체를 말한다.

가. 당해 정치단체에 소속하는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의원을 5인이상 가진 것

나. 가목에 해당하는 정치단체에 소속하고 있지 아니한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의원을 가진 것으로, 당해 합병 또는 분할의 날의 직근에 행하여진 총선거(당해 합병 또는 분할의 날 전에 신공직선거법에 의한 총선거가 행하여진 경우에 있어서는, 총선거에서의 소선거구 선출의원의 선거 또는 비례대표 선출의원의 선거) 또는 통상선거에서의 소선거구 선출의원의 선거 또는 비례대표 선출의원의 선거에서의 당해 정치단체의 득표총수가 당해 선거에 있어서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인 것

2. 존속정당에 상당하는 정치단체 : 2이상의 정당요건을 갖춘 정치단체가 합병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합병후에 존속하기로 된 정치단체로서 당해 합병일에 있어서 전호가목 또는 나목의 1에 해당하고 있었던 것을 말한다.

3. 신설정당에 상당하는 정치단체 : 2이상의 정당요건을 갖춘 정치단체가 합병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정치단체로서 당해 설립일에 있어서 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1에 해당하고 있었던 것을 말한다.

4. 분할정당에 상당하는 정치단체 : 정당요건을 갖춘 정치단체의 분할이 행하여진 경우에 있어서, 당해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정치단체로서 당해 설립일에 있어서 제1호가목에 해당하고 있었던 것을 말한다.

⑤제2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하여, 제23조제2항의 규정은 등호나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하여,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2조제2항중 "청당("은 "부칙 제3조제1항에 규정하는 정당요건을 갖춘

정치단체("로,")의 규정 "은 ")의 규정 [당해 합병 또는 분할이 정치자금규정법의 일부를개정하는법률(1994년 법률 제4호) 부칙 제1조단서에 규정하는 규정의 시행일 전에 행하여진 경우에 있어서는, 동법에 의한 개정전의 정치자금규정법 제6조제1항(동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 "으로, 제23조제2항중 "합병 해산정당"은 "부칙 제3조제1항에 규정하는 합병에 의하여 해산하는 정당요건을 갖춘 정치단체"로 본다.

제4조 (정령에의 위임) 전2조에 정한 것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조치는 정령으로 정한다.

제5조 (정당교부금의 총액의 수정) 이 법률의 시행후 5년을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는, 정당교부금의 총액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의일부를개정하는법률에 의한 개정후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규정법의일부를개정하는법률(1994년 법률 제4호)에 의한 개정후의 정치자금규정법의 시행상황에 입각하고, 정당의 정치활동의 상황, 정당재정의 상황, 정치자금의 개인에 의한 거출상황, 회사 노동조합 기타 단체의 기부상황을 감안하여 그 수정을 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 (자치성설치법의 일부 개정) :(생략)

외국법제분석 94-1 日本의 政治改革法制

1994年 2月 26日 印刷

1994年 2月 28日 發行

發行人 張 明 根

發行處 **한국법제연구원**

印刷處 (株) 韓國 컴퓨터 産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03

전 화 : 722-2901/3, 722-0163/5

등록번호 : 1981. 8.11 제 1-190호

本院의 承認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

값 3,500원

